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2021. 3.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 2021년도 본예산이 집행된 지 2개월이 지난 3월 4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총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을 위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피해지원 대책 추진을 위해 제출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지출 증가분은 15조원 규모이며,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는 ①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에 8.1조원, ② 일자리 창출 등 긴급 고용대책에 2.8조원, ③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대책에 4.1조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0.8조원, 기금 여유재원 1.7조원의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국제발행도 9.9조원 이루어지는 만큼 국가채무는 965.9조원으로 GDP대비 48.2%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본예산에 비하여 13.5조원 만큼 적자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국회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2장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는 추경안의 편성요건·재원·재정건전성·경제여건 등에 대해 총괄적으로 분석하였고, 2장에서는 각 부처에 편성된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필요성·효과성,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 의 상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I. 추경안 개괄

① 개 요	1
1. 추경안의 구성	1
2. 추경안의 편성배경	3
② 재정총량	5
1. 규모 및 자원	5
2. 재정총량 변화	7
③ 주요 내용	9
1.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	9
2. 세부사업별 내역	10
3. 회계·기금별 내역	13
④ 경제여건	14

II. 총량분석

① 편성요건 분석	24
1. 추경안의 편성요건	24
2. 분석의견	25
② 자원 및 재정건전성 분석	30
1. 자원구조	30
2. 재정건전성 분석	38

III. 주요 정책별 분석

㉑ 개 관	42
1. 추경안의 주요 내용	42
2.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	44
㉒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 실적 분석	46
1. 코로나19 확산과 재난지원 프로그램 지급 현황	46
2. 분석의견	47
㉓ 긴급 피해지원금 사업 분석	60
1. 긴급 피해지원금 편성 현황	60
2. 분석의견	62
㉔ 직접일자리 사업 분석	67
1. 직접일자리 사업 편성 현황	67
2. 분석의견	69
㉕ 방역 대책사업 분석	78
1. 방역 대책사업 편성 현황	78
2. 분석의견	79

제2장 위원회별 분석

I. 기획재정위원회

1. 개 요	85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85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85
2. 사업별 분석	87
가. 예비비 소요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예산을 일반사업으로 전환 검토(기획재정부)	87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발행 국고채 이자상환 적정성 검토 필요(기획재정부)	91

II. 교육위원회

1. 개 요	94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94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94
2. 사업별 분석	96
가.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의 사업계획 보완 필요(교육부)	96
나.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의 집행시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 필요(교육부)	101
다.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의 지원효과성 제고 필요(교육부)	105
라. 온라인 튜터 사업계획 보완 필요(교육부)	111
마.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의 임금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등(교육부)	117

II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개 요	122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122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22
2. 사업별 분석	124
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추경 편성 취지를 고려한 사업 추진 및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4
나.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데이터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0
다. 바이오연구데이터 활용기반조성 사업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데이터 구축 방안 마련 필요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6

IV. 행정안전위원회

1. 개 요	141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141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42
2. 사업별 분석	143
가. 희망근로지원 사업의 차별성 확보 및 실수요기반 운영으로 사업성과 제고 필요(행정안전부)	143
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추경편성 효과 제고방안 모색 필요(경찰청)	154

V.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개 요	159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159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59

2. 사업별 분석	161
가.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문화체육관광부)	161
나.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164
다.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등 (문화체육관광부)	168
라.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실적 제고 노력 필요 등 (문화체육관광부)	173
마.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 마련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76
바. 민간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 선정 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181

V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개 요	186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186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88
2. 사업별 분석	191
가.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충분한 수요확보 및 계속고용을 위한 사업설계 필요(농림축산식품부)	191
나.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은 사업추진의 근거 보완 및 사업집행 효율화 방안 검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196
다. 수산분야 일자리 사업은 사업효과 증대를 위한 면밀한 사업설계 필요 (해양수산부)	201

라.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 사업은 DB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 및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해양수산부)	206
마. 산림청 소관 직접일자리사업의 보완 필요 사항(산림청)	210
바.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 사업의 보완 필요 사항(산림청)	220
사.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 검토 필요 (해양경찰청)	224

VII.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개 요	228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228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229
2. 사업별 분석	232
가.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의 재정소요 및 지원방식 점검 필요 등 (산업통상자원부)	232
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소요 명확화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중소벤처기업부)	242
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251
라.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비대면 분야별 합리적인 지원 배분기준 마련 필요(중소벤처기업부)	257

VIII. 보건복지위원회

1. 개 요	261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61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262

2. 사업별 분석	264
가.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가구의 명확한 선별기준 마련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보건복지부)	264
나. 자활사업의 사업유형별 대상자 규모 조정을 통한 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 (보건복지부)	269
다. 노인요양시설의 규모·여건에 부합하는 방역 인력운영 방식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	274
라.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의 개별 약국의 다양한 수요 반영 필요 및 추진절차 간소화 필요(보건복지부)	278
마.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의 철저한 방역인력 관리필요(보건복지부)	281
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 필요(보건복지부)	285
사.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사업을 통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 도모 필요(질병관리청)	290

IX. 환경노동위원회

1. 개 요	295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295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296
2. 사업별 분석	299
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의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타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방안 강구 필요 등(환경부)	299
나.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의 인력 활용계획 구체화 등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환경부)	305
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의 사전조사 완료 등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환경부)	311
라.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환경부)	317

마. 청년도전 지원 시범사업의 구직단념청년 중심 멘토링 집행관리 강화 및 타 멘토링과의 차별성 마련 필요 등(고용노동부)	325
바. 목표인원 증가를 고려한 청년디지털일자리 내실 있는 실무경험 제공 필요 (고용노동부)	332
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자 목표 인원 증가에 따른 집행관리 필요 (고용노동부)	337
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인원 확대를 고려한 양질의 일경험 제공 기업 적극 발굴 필요(고용노동부)	341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향후 유사 사업 수행 이전 재정부담 경감 방안 고려 필요(고용노동부)	346
차.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집행관리 철저 및 적정예산 편성 필요 등(고용노동부)	351
카. 고용안정장려금 당초 계획액 산출의 정확성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357

X. 여성가족위원회

1. 개 요	362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362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362
2. 사업별 분석	364
가.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의 고용안정성 효과 제고 필요(여성가족부)	364
나.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장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여성가족부)	368
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 및 아이돌보미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여성가족부)	373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추경안 개괄

1 개요

1. 추경안의 구성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8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이 2021년 3월 4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번 추경안은 총지출 기준 17개 부처 7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개)

구분	회계기금명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증감 사업수 (총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1
		교육위원회	교육부	5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1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6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3 3 4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1 1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9 1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고용노동부	4 10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3

(단위: 개)

구분	회계기금명	소관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	증감 사업수 (총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1
	고용보험기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6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1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근로자복지진흥기금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2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1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해양 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
	방송통신발전기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합계				7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제작성

참고로, 2020년도 제1회~제4회 추경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소관 부처 및 총지출 기준 증액사업 수는 다음 표와 같다.

[2020년도 및 2021년도 추경안의 소관 부처 및 세부사업수 현황]

(단위: 조원, 개)

구분		규모		소관 상임위원회수	소관 부처수	증액 세부사업수 (총지출 기준)
		세출증액				
2020	제1회	11.7	8.5	7	8	42
	제2회	7.6	7.6	1	1	1
	제3회	35.3	23.9	16	28	299
	제4회	7.8	7.8	7	7	18
2021	제1회	15	15	10	17	70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바탕으로 제작성

2. 추경안의 편성배경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편성배경에 대하여 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¹⁾에 대한 방역조치 연장과 그에 따른 피해 누적으로 인한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②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하게 대응하며, ③ 대규모 백신 구매·접종 등 방역소요를 뒷받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는 2020년 1월 20일 최초 확진 이후 2021년 2월 28일 자정까지 406일간 확진자 90,029명, 사망자 1,605명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내 최초 확진(2015년 5월 20일) 후 69일³⁾간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을 기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메르스”)의 피해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20년 3월 11일 대유행(Pandemic)을 선포하는 등 피해규모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현황]

구분	집계기간	확진자수	사망자수
코로나19	406일 (2020. 1. 20. ~ 2021. 2. 28.)	90,029명	1,605명
메르스	69일 (2015. 5. 20. ~ 7. 28.)	186명	38명

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2021년 3월 2일 20시 접속 및 「2015 메르스 백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20년 8월 27일 자정기준 441명에 이르렀다가 그 이후 다소 안정세를 보였으나, 다시 증가세를 보여 2020년 12월 25일 자정기준 1,240명을 기록하여 최고점에 이르렀다. 최근 다소 진정세에 접

1)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2)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1. 3., p.1.

3) 메르스 사태는 2015년 12월 24일 0시에 공식 종결선언 되었으나, 보건복지부 「2015 메르스 백서」는 정부의 “향후 조치 계획”이 발표된 2015년 7월 28일을 “사실상 유행 종료” 시점으로 보고 있다.

어들어 2021년 2월 28일 자정 기준 35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재확산의 위험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및 방역조치가 장기간 지속되자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근로자 등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및 그에 대응한 방역조치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근로자 및 국민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친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였다.

[1차~3차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규모]

(단위: 조원)

구분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프로그램		
	1차	2차	3차
규모	12.2 ¹⁾	7.8	9.3
예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2021년 본예산 및 2020년 집행잔액

주: 1) 지방비 2.1조원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14.3조원

자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20.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20. 9.,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정부(보도자료), 2020. 12.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조치의 연장과 그에 따른 피해 누적으로 인해 추가지원이 불가피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전년대비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⁴⁾하고 있는 등 고용상황 악화에 긴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2021년 2월 기준 월 누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1,495명(일 평균 411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백신의 구매·접종 등을 위해 충분한 재원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므로, 추경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취업자수(전년동기대비, 만명): ('20. 8월)△27.4, ('20. 10월)△42.1, ('20. 12월)△62.8, ('21. 1월)△98.2

1. 규모 및 재원

이번 추경안의 규모는 총 15조원으로서, 전액이 세출예산 및 기금지출계획액 증액(이하 “세출증액”)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15.0조원의 규모는 2008년 이후 13차례의 추경안 중 4번째로 큰 규모로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보이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시작된 2020년도에는 4회에 걸쳐 62.4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제출되고 국회에서 66.8조원(회당 평균 16.7조원)의 추경예산이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모가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2008~2021년간 추경안의 규모 현황]

(단위: 조원)

구분	총 편성규모			국회확정	
	세출증액	세입경정			
2008년	4.9	4.9	-	4.6	
2009년	28.9	17.7	11.2	28.4	
2013년	17.3	5.3	12.0	17.3	
2015년	11.8	6.2	5.6	11.6	
2016년	11.0	11.0 ¹⁾	-	11.0	
2017년	11.2	11.2	-	11.0	
2018년	3.9	3.9	-	3.8	
2019년	6.7	6.7	-	5.8	
2020년	제1회	11.7	8.5	3.2	11.7
	제2회	7.6	7.6	-	12.2
	제3회	35.3	23.9	11.4	35.1
	제4회	7.8	7.8	-	7.8
	소계	62.4	47.8	14.6	66.8
2021년	15.0	15.0	-	심의예정	

주: 1) 2016년도 추경안의 지출확대분에는 국채상환지출 1.2조원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19에 대응한 4번째 재난지원 프로그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거 3차례의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 보다는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1차~4차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규모]

(단위: 조원)

구분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프로그램			
	1차	2차	3차	4차
규모	12.2 ¹⁾	7.8	9.3	15.0 ²⁾
예산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2021년 본예산 및 2020년 집행잔액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주: 1) 지방비 2.1조원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14.3조원

2) 정부는 피해지원 대책 프로그램의 전체 규모를 기정예산 4.5조원을 포함하여 19.5조원으로 발표하고 있음

자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20.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20. 9.,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정부(보도자료), 2020.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21. 3.

한편, 정부는 이상 15조원의 추경안 규모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국채 추가발행분 9.9조원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특회계”)·에너지및자원산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0.8조원 및 기금의 여유재원 1.7조원 등을 활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재원별 상세내역 및 함의, 분류기준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II장에서 분석하였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규모 및 재원]

(단위: 조원)

규 모		재 원	
- 세출 증액	15.0	- 국채 추가발행	9.9
		- 농특·환특·에특회계 세계잉여금	2.6
		- 한은 잉여금	0.8
		- 기금 여유재원 활용	1.7
합 계	15.0	합 계	15.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바탕으로 제작됨

2. 재정총량 변화

이번 추경안의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0.8조원 증가한 483.4조원으로,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총 15조원 증가한 573.0조원으로 변경되었다.

[추경안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단위: 조원, %, %p)

구 분	2020					2021		증 감 (B-A)
	본예산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제3회 추경	제4회 추경	본예산 (A)	제1회 추경안(B)	
총수입 (증가율) ¹⁾	481.8 -	481.6 -	482.2 -	470.7 -	470.7 -	482.6 (2.5)	483.4 (2.7)	0.8
총지출 (증가율) ¹⁾	512.3 -	523.1 -	531.1 -	546.9 -	554.7 -	558.0 (0.6)	573.0 (3.3)	15.0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30.5 (△1.5)	△41.5 (△2.1)	△48.9 (△2.5)	△76.2 (△3.9)	△84.0 (△4.4)	△75.4 (△3.7)	△89.6 (△4.5)	△14.2 (△0.8)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71.5 (△3.5)	△82.0 (△4.1)	△89.4 (△4.5)	△111.5 (△5.8)	△118.6 (△6.1)	△112.5 (△5.6)	△126.0 (△6.3)	△13.5 (△0.7)
국가채무 (GDP대비)	805.2 (39.8)	815.5 (41.2)	819.0 (41.4)	839.4 (43.5)	846.9 (43.9)	956.0 (47.3)	965.9 (48.2)	9.9 (0.9)

주: 1)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대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등을 바탕으로 제작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89.6조원(GDP 대비 △4.5%)으로서 본예산의 △75.4조원(GDP 대비 △3.7%) 보다 적자폭이 14.2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¹⁾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26.0조원(GDP 대비 △6.3%)으로서 본예산 △112.5조원(GDP 대비 △5.6%) 보다 적자폭이 13.5조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통합재정수지 적자의 확대규모(14.2조원)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확대규모(13.5조원)보다 0.7조원 큰 것은 이번 추경안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수지(고용보험기금수지)가 0.7조원 악화되기 때문이다²⁾.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 관리재정수지 변동분(△13.5조원) = 통합재정수지 변동분(△14.2조원)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변동분(△0.7조원)

마지막으로 국가채무는 올해말 기준 965.9조원(GDP 대비 48.2%)으로, 본예산의 956.0조원(GDP 대비 47.3%) 보다 9.9조원(GDP 대비 0.9%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규모 전액은 이번 추경안에서 재원으로 활용되는 국고채 발행규모 확대에 기인한다.

1.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

정부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8.1조원), ② 악화된 고용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고용대책 예산(2.8조원), ③ 코로나19 방역대책(4.1조원) 등이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단위:조원)
		규모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6.7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0.6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 지원	0.3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0.2
방역대책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
	의료기관 손실 보상	0.7
총 규모		15.0

자료: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 3., 기획재정부

한편,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2021년도 기정예산 4.5조원을 더하여 총 19.5조원 규모를 “맞춤형 피해대책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추경안을 제외한 기정예산 4.5조원의 내용을 보면,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2.5조원), ② 고용지원(1.8조원), ③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지원(0.2조원) 등이다.

2. 세부사업별 내역

총지출 기준으로 이번 추경안의 세출증액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총 70개 세부사업의 14조 9,828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며,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부사업별 세출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 ¹⁾	제1회 추경안	증감
기획재정부 (2)	일반	예비비	8,600,000	9,700,000	1,100,000
	공자	국고채이자상환	2,210,006	2,392,285	182,189
교육부 (5)	일반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994,569	4,019,569	25,000
	일반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	41,852	41,852
	일반	온라인 튜터	-	48,720	48,720
	일반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	-	38,000	38,000
	일반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	11,012	11,01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4)	일반	디지털 전환 지원(정보화)	-	18,600	18,600
	일반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78,728	93,728	15,000
	정진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389,905	487,405	97,500
	방발	ICT 창의기업 육성	14,757	16,377	1,620
행정안전부 (1)	일반	희망근로 지원사업	-	213,026	213,026
경찰청 (1)	일반	아동안전지킴이	54,044	58,311	4,267
문화체육 관광부 (7)	일반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11,595	51,975	-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6,780
		(공연예술분야 인력 지원)			33,600
	일반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54,063	76,863	22,800
	일반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32,148	43,448	11,300
	일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39,283	44,683	5,400
	일반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	4,520	4,520
	일반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	3,390	3,390
체육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36,584	105,944	69,360	
농림축산 식품부 (3)	농특	농촌고용인력지원	5,300	5,978	678
	농특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	4,747	4,747
	예특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13,920	16,520	2,600
	농지	농지이용관리지원	18,395	23,274	4,879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 ¹⁾	제1회 추경안	증감
해양 수산부 (3)	일반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15,787	17,267	1,480
	일반	어업지도관리	70,374	71,111	737
	농특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	1,960	1,960
산림청 (4)	일반	산림재해일자리	98,950	107,562	8,612
	일반	산림생물다양성증진	15,929	19,835	3,906
	일반	산림휴양등산증진	10,786	15,586	4,800
	농특	숲가꾸기	188,396	194,499	6,103
해양 경찰청 (1)	일반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4,686	5,711	1,025
산업통상 자원부 (1)	예특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	220,205	220,205
중소벤처 기업부 (2)	일반	창업사업화지원	442,456	532,456	90,000
	소진	소상공인성장지원	131,396	6,886,442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노점상 지원)			6,735,046 20,000
보건 복지부 (9)	일반	긴급복지	185,639	592,247	406,608
	일반	자활사업	620,031	653,123	33,092
	일반	다함께 돌봄 사업	41,259	43,702	2,443
	일반	지역아동센터 지원	187,418	211,619	24,201
	일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614,123	1,624,972	10,849
	일반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	37,887	37,887
	일반	노인요양시설 확충	66,917	107,939	41,022
	일반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지원	-	8,160	8,160
	일반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662,280	- 12,280 650,000
질병 관리청 (1)	일반	감염병예방관리	32,341	2,380,741	2,348,400
환경부 (4)	환특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4,403	119,603	115,200
	환특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32,017	37,617	5,600
	환특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505,561	509,561	4,000
	환특	환경지킴이	43,537	51,937	-
		(국립공원환경지킴이) (5대강환경지킴이)			4,200 4,200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	본예산 ¹⁾	제1회 추경안	증감
고용 노동부 (18)	일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456,277	456,277
	일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56,000	56,000
	일반	고용센터인력지원	88,531	95,926	7,395
	일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467,600	1,028,720	561,120
	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54,181	174,715	120,534
	일반	청년센터 운영	4,273	10,733	6,460
	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828,647	948,900	-
		(청년지원확대)			107,841
		(기간제인건비)			12,412
	일반	내일배움카드(일반)	214,504	261,904	47,400
	일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	52,000	52,000
	균특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48,029	188,029	-
		(고졸청년)			20,000
		(경력단절여성)			20,000
	고보	고용유지지원금	1,563,623	1,766,903	203,280
	고보	고용유지자금융자(융자)	15,000	56,660	41,660
	고보	고용창출장려금	186,481	486,541	-
		(청년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120,024
		(코로나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180,036
	고보	내일배움카드(고보)	897,436	917,436	20,000
고보	고용안정장려금	200,215	253,406	53,191	
고보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90,597	131,645	41,048	
근복	생활안정자금(융자)	99,051	149,051	50,000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46,000	76,900	30,900	
여성 가족부 (3)	일반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6,094	7,406	1,312
	일반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	70,170	74,333	4,163
	일반	아이돌봄지원	251,493	252,454	961
합계(70개 세부사업)			55,987,188	572,707,658	14,982,870

주: 1) 기금은 제1회 추경안 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바탕으로 제작됨

3. 회계·기금별 내역

이번 추경안의 총지출 기준 지출 확대분 15.0조원(70개 세부사업)을 회계·기금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6.7조원(45개 세부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었고, 0.4조원(11개 세부사업)은 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나머지 7.9조원(14개 세부사업)은 기금(고용보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8개)에 편성되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회계·기금별 구성 체계 및 내역]

회계·기금 (사업수)	예산 (총지출)	주요 사업	주요 내부거래·보전거래
예 산	일반회계 (4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예방관리(2조 3,484억원)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4,563억원) · 긴급복지(4,066억원) · 희망근로 지원사업(2,130억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1,205억원) 	·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금(10조 5,470억원) 등
	특별회계 (1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2,202억원) ·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47억원) ·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1,152억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 계(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 감액 (△2조 3,101억원)
	소 계 (56개)	-	-
기 금	공공자금 관리기금 (1개)	· 국고채 이자상환(1,822억원)	· 공자기금에서 일반회 계로 예탁금(10조 5,470억원) 등
	고용보험기금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지원금(2,033억원) · 고용창출장려금(3,001억원)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1개)	· 소상공인 성장지원(6조 7,550억원)	· 일반회계 전입금 (6조 7,550억원)
	정보통신 진흥기금 (1개)	· 지능정보산업인프라 조성(975억원)	
	방송통신 발전기금 (1개)	· ICT 창의기업 육성(16억원)	
	체육진흥기금 (1개)	·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694억원)	
	농지관리기금 (1개)	· 농지이용관리지원(49억원)	
	근로복지 진흥기금 (2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정자금(유자)(500억원) · 방문돌봄중사자 한시지원금(309억원) 	· 공자기금 예탁금 축소(△500억원)
	소 계 (14개)		
합 계 (70개)	15.0조원	-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바탕으로 제작됨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수요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경제활동 제약으로 소비와 고용 부진이 심화되었다. 특히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소득 및 고용 여건의 어려움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회복을 제약하는 경제 취약부문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 세계 경제여건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으로 인해 2020년 세계 경제는 깊은 침체를 보였으며, 2021년에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영국과 유로지역의 경우 백신 공급에도 불구하고 2021년 들어서도 봉쇄 혹은 이동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2022년 초까지 팬데믹의 경제적 손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IMF의 전망(2021.1월)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는 전년대비 3.5% 감소에서 2021년 5.5%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선진국은 2020년 4.9% 감소에서 2021년 4.3% 회복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어 선진국 경제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2022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2021년 세계경제가 4.0% 회복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하여 IMF보다 비관적이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제조업생산증가율이 지난해 11월, 12월 각각 전기대비 0.8%, 0.9%로 10월 1.3%에 비해 둔화되었고 유로지역 제조업생산과 일본 광공업생산은 12월 중 각각 전월대비 1.7%, 1.6% 감소하였다.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긴요한 국제적인 협력이 충분치 못하기

유승선 경제분석관(yssun@assembly.go.kr, 6788-4658)

황중률 경제분석관(rhwang@assembly, 6788-4659)

오현희 경제분석관(hhoh@assembly.go.kr, 6788-4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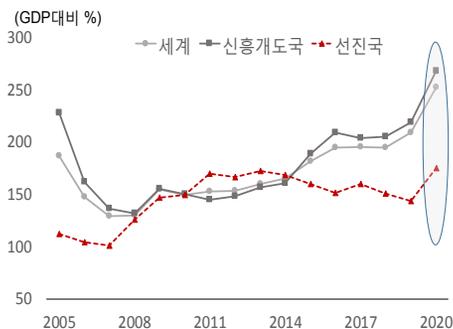
때문이다. 선진국이 백신을 자국에 우선 공급하고 있어 팬데믹의 고통이 큰 개발도상국에게는 2021년 중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발도상국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통제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다.

[국제기구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21년 1월」

[세계 정부부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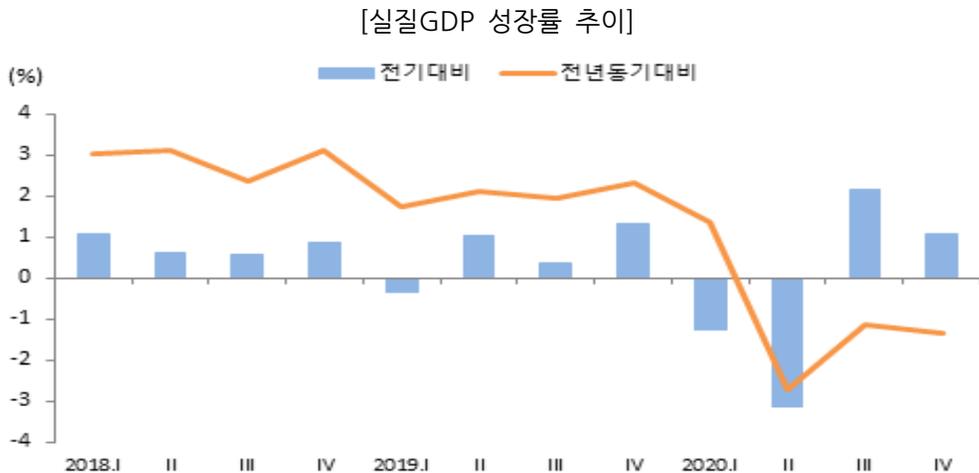
자료: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21년 1월」

또 다른 불안요인은 국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고통이 큰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정부부채를 비롯한 국가부채가 급증한 것이다. 팬데믹 이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개혁을 추진해온 선진국은 비교적 부채가 안정적이었으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에만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31.8%p(143.7%→175.5%)가 상승하였다. 신흥개도국의 경우 정부부채비율은 48.6%p(219.6%→268.2%)로 증가하여 증가폭이 더 큰 편인데,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최근 들어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급등과 미국 등 선진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추진으로 물가불안 우려가 나타나며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의 경우 2021년 초 0.93%에서 2.25일 1.54%로 급등하였다. 이처럼 국제금리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해져 개발도상국의 금융불안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나. 국내 경제여건

(1) 경제성장률

2020년 국내 실질GDP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전년대비 1.0% 감소하였다. 지난해 상반기 중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과 세계교역량 급감으로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실질GDP 성장률은 전기대비로 1/4분기 -1.3%에 이어 2/4분기 중에 -3.2%까지 급락하였다. 하반기 중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진정과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힘입어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국면을 보이면서 3/4분기 2.1%, 4/4분기 1.2% 각각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한 하방위험이 지속되며 소비와 고용의 부진이 계속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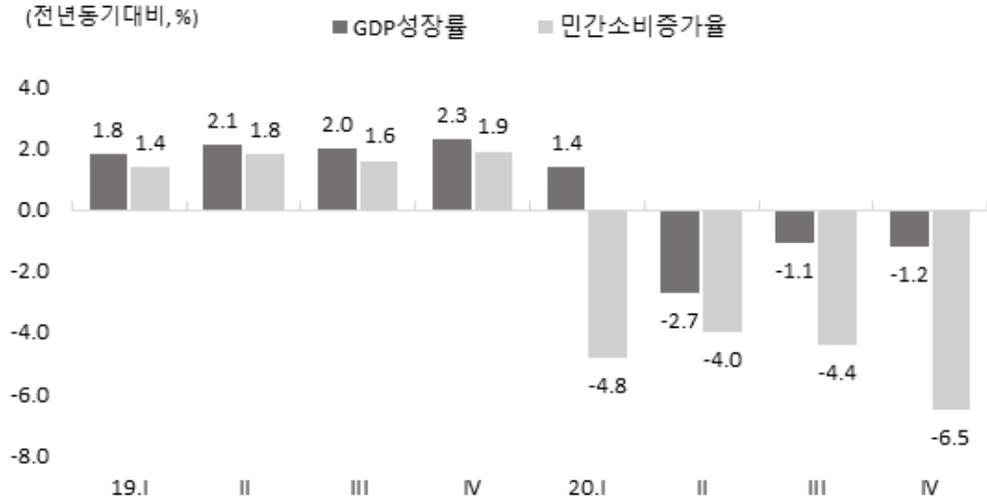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2) 소비

최근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3차 확산세가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심리가 하락하였고 대면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국내총생산과 민간소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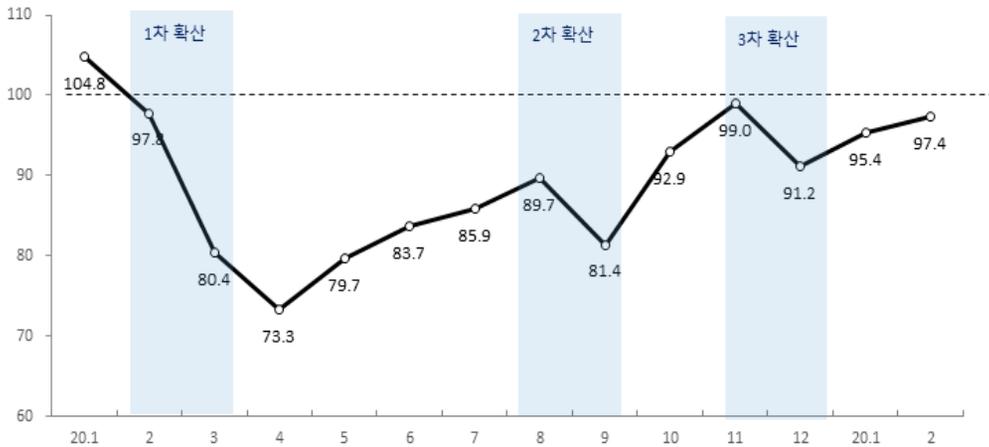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2020년 4/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6.5% 감소하여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민간소비는 1/4분기 코로나19 확산으로 4.8% 감소한 후 2/4분기와 3/4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감소폭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4/4분기 중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영향으로 재차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가계의 소득여건이 악화되어 소비여력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영향으로 2020년 1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7.8p 하락하였다. 경제주체들의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이 특히 악화되며 현재경기판단 CSI와 향후경기전망 CSI가 각각 16p, 10p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2021년 1~2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나 2월 97.4로 여전히 기준선(100)을 하회하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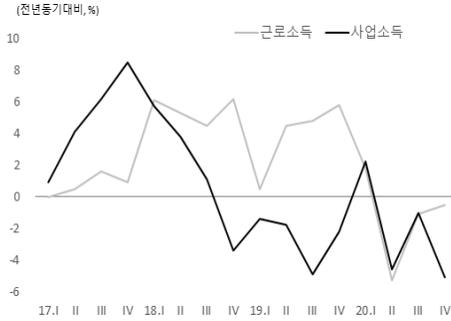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 고용여건 악화, 임금상승세 둔화, 자영업 부진 등으로 소득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가계의 소비여력이 제한되는 모습이다. 2020년 국내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전년 대비 21만 8천명 감소하였다. 또한, 기업실적 악화와 최저임금 상승률 둔화 등의 영향으로 명목임금 상승률은 1.0%의 낮은 수준¹⁾을 나타냈다.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임금상승세가 둔화되어 근로소득은 2020년 2/4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2/4분기부터 3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며,²⁾ 2/4분기 중에는 근로소득이, 4/4분기 중에는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4/4분기 중 사업소득은 전년동기대비 5.1% 감소하여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부진 등이 반영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

1) 2018년과 2019년 연간 명목임금 상승률은 각각 5.3%, 3.4%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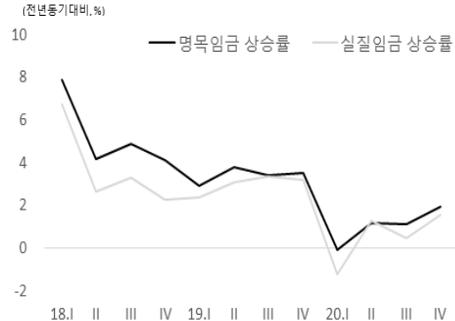
2) 근로소득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1/4분기)1.8 → (2/4분기)-5.3 → (3/4분기)-1.1 → (4/4분기)-0.5
 사업소득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20.1/4분기)2.2 → (2/4분기)-4.6 → (3/4분기)-1.0 → (4/4분기)-5.1

[취업자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명목 및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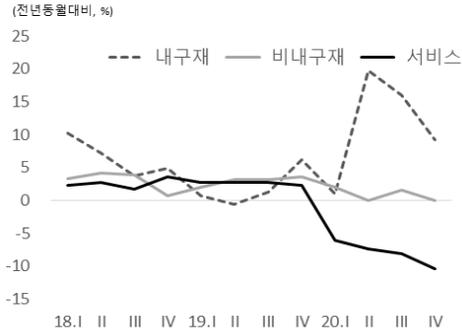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형태별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상품소비는 내구재를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방역강화로 인해 서비스업 소비가 부진한 상황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코로나19로 대면접촉과 외부활동을 기피하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³⁾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⁴⁾의 부진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지속적으로 영업에 제한을 받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자릿수의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제한조치로 여행과 항공업종이 타격을 입으면서 육상·수상·항공운송 등을 담당하는 운수업⁵⁾과 여행사·여행보조서비스를 포함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⁶⁾의 하락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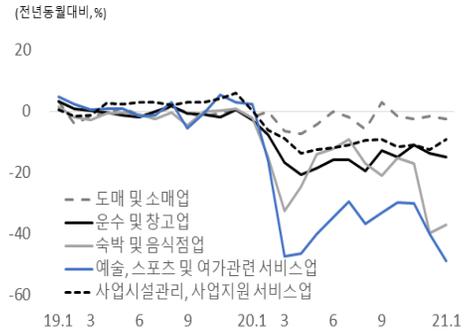
- 3) 숙박업(호텔업, 여관업, 휴양 콘도 운영업, 민박업), 음식점업(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커피 전문 등))
- 4) 공연시설 운영업, 공연단체(연극단체, 무용 및 음악단체), 자영 예술가(공연 예술가, 비공연 예술가), 공연 기획업, 독서실 운영업, 스포츠 서비스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등),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오락장 운영업(전자 게임장 운영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등)
- 5) 육상 여객 운송업(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운송업(항공 여객 운송업) 등
- 6) 여행사업(관광여행 알선, 국내여행 알선서비스, 국내여행사, 국내외 여행 관련서비스, 국외여행사, 국제 관광여행사, 국제여행사),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개인여행 안내, 관광안내소, 관광여행안내소, 매표 대리서비스(여행 및 운송관련), 매표소 운영, 버스승차권 판매 대리서비스, 숙박예약 대리, 여행사 숙식 알선, 여행자 안내(가이드업), 카풀체계 운영, 항공권 예매 대리)

[형태별 소비지출 추이]



자료: 한국은행

[업종별 서비스업 생산 추이]



자료: 통계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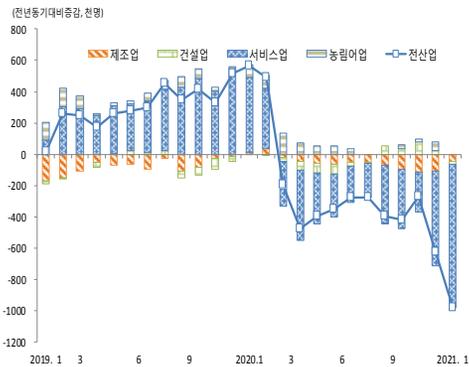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5종) 유흥업소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 썰매장
집합제한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스탠딩공연장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3)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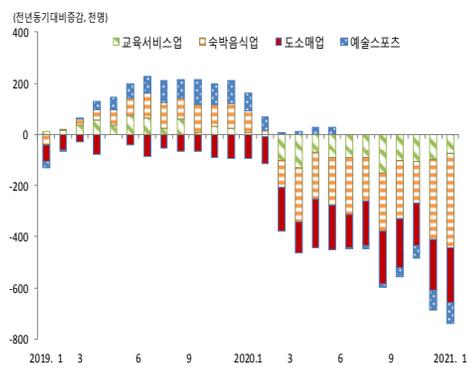
최근 들어 고용은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며 전체 취업자 수 감소폭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전년동월대비 62.8만명(-2.3%) 감소에서 2021년 들어 1월 중 -98.2만명(-3.7%)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특히 1월 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부진,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종료 및 재개 시차에 따른 일시적 요인, 전년 동월의 양호한 고용 증가폭(56.8만명)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용감소폭이 확대되었다. 이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기간 중 월 평균 100만 명을 상회하는 고용감소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7)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재개지연 등의 영향으로 1월 들어 전년동월대비 89.8만 명 감소하여 전월(-60.3만명)보다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특히 가계의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도소매업(-21.8만 명), 숙박·음식업(-36.7만 명), 교육서비스업(-7.5만 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8.1만 명) 등 대면서비스업종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에서는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 10월 이후 고용 감소폭이 완화되고 있으나, 건설업은 겨울 한파 등의 영향으로 5개월 만에 감소 전환되었다.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주요 대면 서비스업종 취업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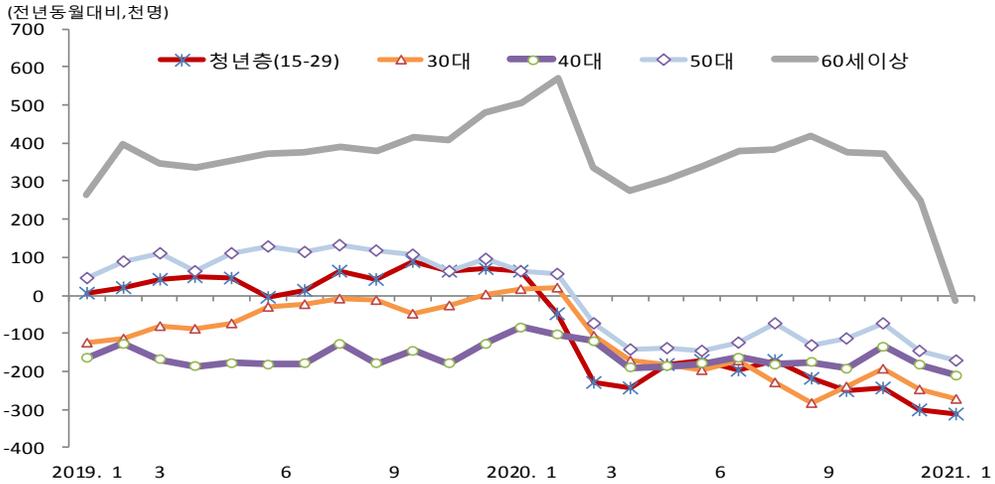


주: 주요 대면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지난해 3월 이후 60세 이상 연령층을 제외한 전연령대에서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1월 중에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취업자 수도 131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7) 지난 19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취업자 수의 전년동월대비 감소폭은 100만 명을 상회하며 월 평균 135.5만 명을 기록하였다.

[연령별 취업자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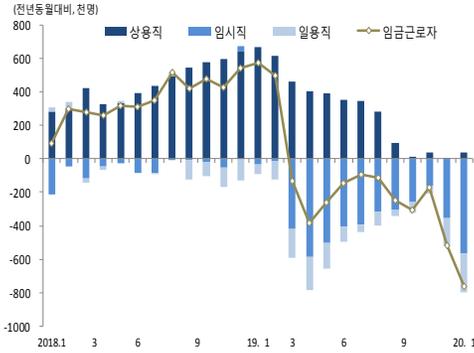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상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9월의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상용직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감소폭도 12월의 3차 확산 이후 확대되는 양상이다. 상용직 근로자는 지난해 3월 이후 8월까지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비교적 완만하게 둔화되었으나, 9월 이후 가파른 둔화를 보이며 최근 5개월간 월평균 3.8만명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시직과 일용직근로자는 지난해 4월 이후 감소폭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12월 이후 감소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임시직의 감소폭은 최근 2개월 중 12월 -35.1만 명에서 1월 -56.3만 명으로 확대되고, 동기간 일용직은 -17.0만 명에서 -23.2만 명으로 확대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자영업자의 감소폭은 지난해 6월 이후 축소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12월 이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다. 자영업자는 지난해 6월 중 전년동월대비 -15.5만 명까지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11월 -5.0만 명으로 감소폭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2021년 들어 1월 중에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5.8만 명)을 중심으로 다시 감소폭이 확대되고, 무급가족종사자도 지난해 12월 중 -5.0만 명에서 1월 중 -9.6만 명으로 감소폭이 확대되고 있다.

[임금근로자¹⁾ 고용 증감 추이]



[비임금근로자²⁾ 고용 증감 추이]



주: 1) 임금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용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면 임시직, 1개월 미만 또는 매일 고용되어 일급,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일용직으로 구분
 2)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

편성요건 분석

1. 추경안의 편성요건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¹⁾은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재정법」상 요건 외에도 추경예산 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목적적합성·예측불가능성·보충성·시급성·연내집행가능성·한시성 등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추경안 편성의 일반요건]

요건	세부내용
①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②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③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④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⑤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⑥ 한시성	향후 일정 기간 지속될 사업 및 신규 사업의 편성을 지양하고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1)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2. 분석의견

이번 추경안은 총괄적인 측면에서 「국가재정법」상 편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로 인한 경기 및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상 요건 중 “대규모 재해”와 “경기침체·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이번 추경안을 큰 틀에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 극복의 일환으로 본다면 「국가재정법」상 “대규모 재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2)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는 사회재난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을 규정하고 있다.³⁾ 코로나19는 코로나 바이러스(CoV)가 비말 등을 통해 사람 및 동물에 감염되어 발열·기침·호흡곤란·폐렴 등을 유발하는 증상이라는 점에서 감염병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피해는 「국가재정법」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음 “대규모” 요건을 만족하는지와 관련해서도, 국내에서 코로나19는 최초 확진(2020년 1월 20일) 이후 2021년 2월 28일 자정까지 406일간 확진자 90,029명, 사망자 1,605명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는 국내 최초 확진(2015년 5월 20일) 후 69일⁴⁾간 확진자 186명, 사망자 38명을 기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이하 “메르스”)의 피해규모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3) 당초 「국가재정법」은 ‘재해’의 범위로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만을 의미하였으나 메르스 유행 등을 계기로 2015년 12월 15일 법률 개정을 통해 사회재난을 포괄하기 시작하였다.

4) 메르스 사태는 2015년 12월 24일 0시에 공식 종결선언 되었으나, 보건복지부 「2015 메르스 백서」는 정부의 “향후 조치 계획”이 발표된 2015년 7월 28일을 “사실상 유행 종료” 시점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현황]

구분	집계기간	확진자수	사망자수
코로나19	406일 (2020. 1. 20. ~ 2021. 2. 28.)	90,029명	1,605명
메르스	69일 (2015. 5. 20. ~ 7. 28.)	186명	38명

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ncov.mohw.go.kr), 2021년 3월 2일 20시 접속 및 「2015 메르스 백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 밖에 재해 관련 추경안의 선례로서 2003년·2006년 태풍 및 집중호우, 2015년 감염병·가뭄·장마, 2019년 미세먼지 및 산불과 관련한 추경안이 다수 편성되었고 무엇보다 2020년 이미 코로나19와 관련한 추경안이 4차례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안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것으로 본다면 이는 「국가재정법」상 ‘대규모 재해’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해대책 추경안 편성 연혁]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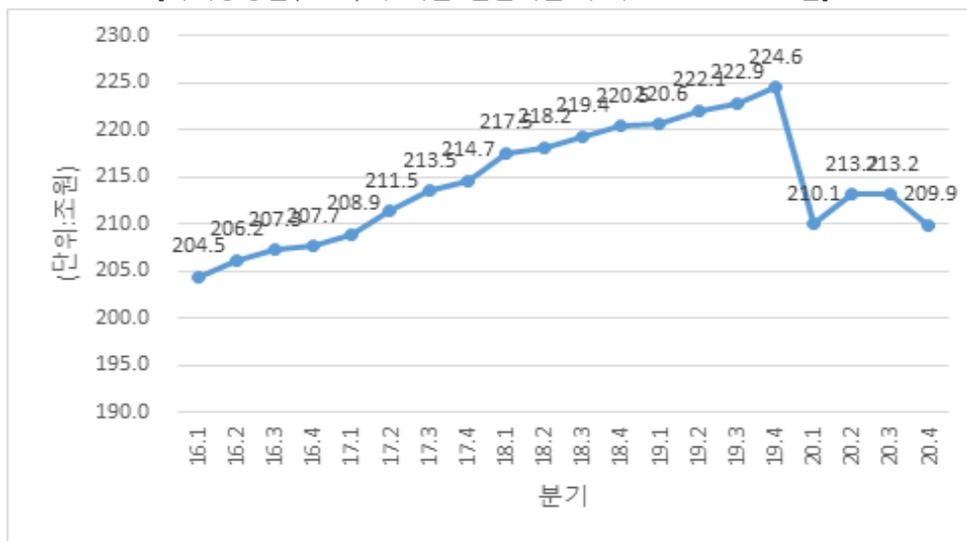
연도	관련 재해	피해규모	추경안 규모	
			재해관련	
2020 (제4회)	- 코로나19	- 코로나19: 900명 사망('20.12.31.기준)	7.8	7.8
2020 (제3회)			35.3	35.3
2020 (제2회)			7.6	7.6
2020 (제1회)			11.7	11.7
2019	- 미세먼지 - 강원산불	- 미세먼지: 특정 곤란 - 강원산불: 재산피해 1,291억원	6.7	2.2
2015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 가뭄 및 장마	- 메르스: 38명 사망	11.8	3.3
2006	- 7월 집중호우 - 태풍 에위니아	- 집중호우: 재산피해 18,344억원 - 에위니아: 재산피해 55억원	2.2	2.1
2003 (2차)	- 태풍 매미	- 매미: 재산피해 42,225억원	3.0	3.0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행정안전부, 각 연도 재해연보·재난연감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이번 추경안의 주 목적을 코로나19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경기침체 대응이라고 본다면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은 경기침체·대량실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다양한 지표를 통해 “경기침체·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존재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근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민간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1분기 204.5조원에서 2019년 4분기 224.6조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가,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2020년 1분기에는 210.1조원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020년 4분기에는 209.9조원 수준으로 코로나19 이전 상태로의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민간지출 추이: 2016~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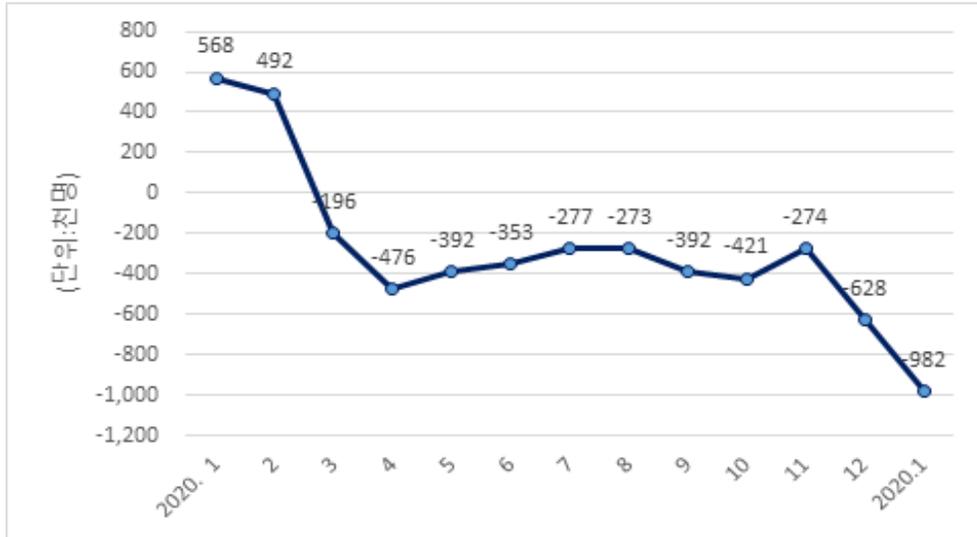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계절조정, 실질, 분기)」, 2021. 3. 4. 14:00 접속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1년 2월)에서는 향후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계소득 여건 부진, 감염우려의 지속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회복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으로 2020년부터 2021년 1월까지 월별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월과 2월은 각각 56만 8천명, 49만 2천명 증가하였으나, 3월에는 19만 6천명 감소하는 등 취업자 수 감소추세가 시작되었고 2020년 12월에는 62만 8천명 감소, 2021년 1월에는 98만 2천명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취업자수 증감현황: 2020년 1월~2021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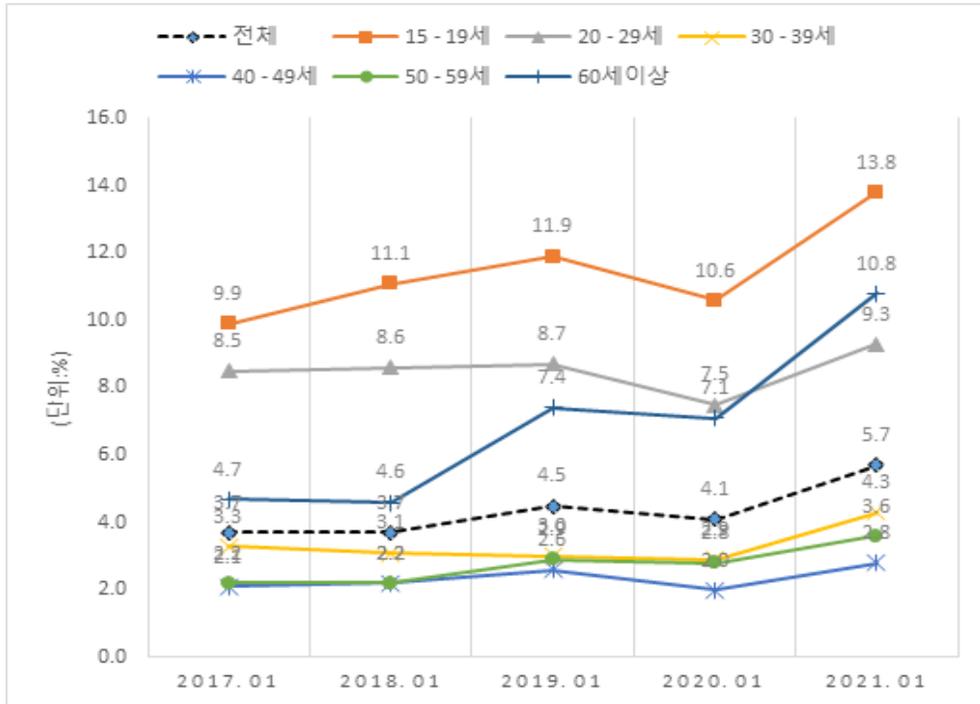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또한 최근 5년간 1월 기준 실업률 추이를 보면, 2017년 1월 3.7%에서 2019년 1월 4.5%까지 상승했다가 2020년 1월 4.1%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2021년 1월에는 5.7%로 상승했다.

연령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2020년 1월보다 2021년 1월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15세에서 19세가 3.2%p(10.6%→13.8%), 20세에서 29세가 1.8%p(7.5%→9.3%), 60세 이상이 3.7%p(7.1%→10.8%) 증가하는 등 급격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청년층의 실업률 증가는 인적자본의 감소 및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노년층의 실업률 증가는 노년층의 빈곤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연령별 전체 실업률 추이: 2017~2021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1.~2021.1.

위에서 언급한 경제지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지출이 위축된 상황이고, 고용상황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기침체·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하면, 이번 추경안은 총괄적인 면에서 「국가재정법」상 “대규모 재해” 요건 및 “경기침체·대량실업의 발생 또는 발생우려”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1. 재원구조

이번 추경안은 국채 추가발행분 9.9조원, 농특회계·환특회계·에특회계의 세계잉여금 2.6조원, 한국은행 잉여금 0.8조원 및 기금의 여유재원 1.7조원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규모 및 재원]

(단위: 조원)

규 모		재 원	
- 세출 증액	15.0	- 국채 추가발행	9.9
		- 농특·환특·에특회계 세계잉여금	2.6
		- 한은 잉여금	0.8
		- 기금 여유재원 활용	1.7
합 계	15.0	합 계	15.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가. 국채발행

이번 추경안은 총규모 15조원의 66.0%에 해당하는 9.9조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제1회 추경안에서 10.3조원, 제3회 추경안에서 23.8조원, 제4회 추경안에서 7.5조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한 데 이어, 이번 추경안에서도 9.9조원의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2008~2020년 추경안 자원 중 국채발행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총규모	국채발행	
			비중
2008	4.9	-	-
2009	28.9	22.0	76.1
2013	17.3	15.8	91.3
2015	11.8	9.6	81.4
2016	11.0	-	-
2017	11.2	-	-
2018	3.9	-	-
2019	6.7	3.6	53.7
2020 제1회	11.7	10.3	88.0
2020 제2회	7.6	-	-
2020 제3회	35.3	23.8	67.4
2020 제4회	7.8	7.5	96.2
2021 제1회	15.0	9.9	66.0

자료: 대한민국정부, 각 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번 추경안의 국채발행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이하 목차 2.의 “재정건전성 분석”에서 본격적으로 서술한다.

나.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이번 추경안에서는 농특회계·환특회계·에특회계의 세계잉여금 2.6조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농특회계, 환특회계, 에특회계에서 발생하는 총 2.6조원의 2020년도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농특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수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나, 2020년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 징수 실적이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한 증권거래세수 증가 및 종합부동산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 2021년 예산편성시 예측을 초과하여 세계잉여금이 2조 3,175억원 발생하였다.

또한 환특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수입액이 1,79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및 과징금 초과 수납액¹⁾ 등 1,280억원 세계잉여금이 2021년 본예산을 초과하여 발생하였다.

한편, 에특회계는 2021년도 본예산에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수입액이 100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사업의 집행잔액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본예산 보다 964억원이 초과 수납되었다.

[각 특별회계별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세계잉여금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계 정	세계잉여금		
		본예산 (A)	추경안 (B)	B-A
농특회계	구조개선사업계정	0	115,382	115,382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0	2,202,143	2,202,143
환특회계		179,895	307,933	128,038
에특회계		10,000	106,400	96,395
	합 계			2,541,958

자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 한은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8,159억원은 2020년 한국은행 결산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 달성되어 한국은행 잉여금도 2021년 정부 예산(기타재산수입)에 계상된 것보다 초과 납부된 것을 활용한 것이다.

「한국은행법」 제99조²⁾는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

1) '18년 6월 독일 자동차청의 벤츠사 조작발표에 따른 과징금(642억) 부과(20.7.) 및 대기개선추진대책(79억원) 등 집행잔액 등

2) 「한국은행법」

제99조(이익금 처분) ① 한국은행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을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에 따라 적립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한국은행은 결산상 순이익금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분한 후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으로, 나머지 일부를 임의적립금으로 처리한 후 잔액을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납부금을 실무상 '한국은행 잉여금'으로 지칭하고 있다.

2021년도 본예산 기준 한국은행 잉여금 수입 예산은 3조 9,729억원으로서, 이는 한국은행의 2020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5조 6,755억원 발생할 것을 전제로 편성된 것이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 발행비용 감소 등으로 2020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은 예상 대비 1조원 이상 초과한 7조 3,659억원을 기록하였으며, 한국은행 잉여금도 5조 1,220억원으로 연동·증가하여 당초 계획 대비 8,159억원이 초과 수납되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이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안에 반영³⁾한 후 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당기순이익 처리 현황]

(단위: 억원)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¹⁾	정부납입금
2013	20,669	6,201	489	13,979
2014	19,846	5,954	494	13,398
2015	27,156	8,147	495	18,514
2016	33,779	10,134	415	23,230
2017	39,640	11,892	415	27,333
2018	32,137	9,641	354	22,142
2019	53,131	15,939	339	36,853
2020	73,659	22,098	341	51,220

주: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등 목적

자료: 한국은행, 각 연도 연차보고서 및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3) 한국은행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기획재정부 소관 기타재산수입(54-545)의 일부로 계상되며, 이번 추경안은 해당 과목의 세입예산을 8,159억원 증액시키고 있다.

[일반회계 기타재산수입 추경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기타재산수입	2,974,694	3,685,829	4,307,671	5,123,558	815,887	18.9
한국은행 잉여금	2,974,160	3,685,334	4,306,100	5,121,987	815,887	19.0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4년간 한국은행 잉여금의 초과 수납액이 매년 3,0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면밀한 추계를 통해 한국은행 잉여금을 본예산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은 시중 통화량 조정을 위하여 이자 비용을 지급하며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한다. 이에 시중 이자율이 낮아지면 통화안정증권 발행비용이 감소하여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 한국은행 잉여금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 한국은행 잉여금은 2017~2020년간 4년 연속 예산 대비 초과 납부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전액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2018~2021회계연도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본예산액 (A)	수납액 (B)	초과수납액 (B-A)	초과수납률 (B-A)/A
2018 예산 (2017년 발생분)	2,177,000	2,733,367	556,367	25.6
2019 예산 (2018년 발생분)	1,912,854	2,214,200	301,346	15.8
2020 예산 (2019년 발생분)	2,974,200	3,685,334	711,134	23.9
2021 예산 (2020년 발생분)	4,306,100	5,121,987	815,887	19.0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기의 지속적인 둔화가 전망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이사회에서는 2020년 3월 1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0%p 인하(1.00~1.25%→0~0.25%)한 이후 2021년 2월말 기준 제로금리 수준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행 또한 2018년 11월 1.75%를 정점으로 점차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2021년 2월말 기준 0.5%를 유지하고 있다.

[2018~2021년 한국 및 미국 기준금리 추이]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1월	12월	7월	9월	10월	3월	5월	2월
한국	1.75		1.50		1.25	0.75		0.5
미국	2.25	2.50	2.25	2.00	1.75	1.25	0.25	

주: 미국 기준금리는 상한을 바탕으로 작성

자료: 한국은행 및 미국 연방준비이사회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최근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금리 및 미국 국채금리는 다소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 시장금리는 2019년 1월 1.991%에서 2020년 7월 1.360%까지 하락했다가 이후부터 상승하여 2021년 2월에는 1.845%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019년 1월 2.71%에서 2020년 7월 0.62%까지 하락했다가 그 이후부터 상승하여 2021년 2월에는 1.26%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9.1.~2021.2. 10년물 국고채 금리 추이]

(단위: %)

구분	2019.1	2019.7	2020.1	2020.7	2020.12	2021.1	2021.2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 금리	1.991	1.506	1.656	1.360	1.675	1.731	1.845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71	2.06	1.76	0.62	0.93	1.08	1.2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FRED-ECONOMIC RESEARCH

즉, 기준금리는 저금리 상태이나 국채의 시장금리는 다소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이와 같은 금리환경의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한국은행 잉여금 수입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편성할 필요가 있다.

라. 기금 재원

정부는 기금에서 1.7조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이번 추경안에 활용하고 있는데,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추경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는 재정의 포괄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고용보험기금의 경우 사회보험적 성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수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측 분류에 따르면 기금재원 1.7조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1조원)·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700억원)·국유재산관리기금(750억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500억원) 등은 기금여유 재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방식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고용보험기금(6,592억원) 등은 자체 재원으로 추경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기금 재원 내역]

(단위: 억원)

기금명	세부 내역	금 액
주택도시기금	공자기금 예탁 확대	10,00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공자기금 예탁 확대	700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자기금 예탁 확대	75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공자기금 예탁 확대	500
근로복지진흥기금	공자기금 예탁 축소	△500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사업 집행	809
고용보험기금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사업 집행	6,592
국민체육진흥기금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사업 집행	694
농지관리기금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사업 집행	49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경사업 집행	16
관광진흥개발기금 ¹⁾	공자기금으로부터 예수	△2,815
합 계		16,795

주: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이번 공공자금관리기금 변경안에서 2,815억원을 예수받았으나, 이번 추경사업에 해당 재원을 활용하지 않으므로, 추경 재원 산출시 해당 예수금을 차감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바탕으로 제작됨

기금 여유자금은 해당 기금의 사업 수행을 위한 예비적 성격의 재원이라는 점에서 이를 회수하여 추경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재정의 포괄적인 활용의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2020년 본예산: 805.2조원→2021년 제1회 추경안: 965.9조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다만, 고용보험기금은 사회보험성 기금으로서 사업성 기금과 달리 여유자금이 미래의 급여(보험금) 지출을 위한 예비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 결산부터 총수입·총지출 기준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등 본격적인 재정구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에도, 2017년 2,202억원, 2018년 3,126억원, 2019년 1조 2,923억원⁴⁾, 2020년 1조 4,752억원에 이어 올해도 추경안⁵⁾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적극적인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근의 저조한 고용여건 속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의 수지가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0.4조원 적자인 상태이고, 제1회 추경안으로 통해 적자폭이 1.1조원으로 증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금재정의 건전성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총수입·총지출 기준 고용보험기금 수지 현황 및 계획]

(단위: 조원)

구분	2019 결산	2020		2021		2022 계획	2023 계획	2024 계획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안			
재정수지	△2.1	△1.4	△2.4	△0.4	△1.1	0.1	3.3	3.4

주: 1. '19년은 결산 기준, '20~'24년은 계획 기준

2. '20년 추경예산 및 '21년 추경안은 국회승인을 통한 기금운용계획변경만 반영

3. '22년~'24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20~'24) 기준

4. 정부내부거래 포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21년도 고용보험기금계획변경안」 등을 바탕으로 제작성

4) 2017~2019년도 추경안 기준

5) 고용보험기금 '고용창출장려금(1046-305)' 사업 증액분 4,874억원의 일부에 해당한다.

2. 재정건전성 분석

추경안 편성으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당초 계획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483.4조원으로 본예산 대비 0.8조원(한은잉여금)이 증가하였다.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15.0조원 증가한 573.0조원이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는 본예산 대비 14.2조원이 증가한 89.6조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경안의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본예산 대비 13.5조원 증가된 126.0조원 적자(GDP 대비 $\Delta 6.3\%$)로 적자폭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 재원으로 특별회계 세제잉여금(2.6조원), 한은잉여금(0.8조원), 기금 여유재원(1.7조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후 나머지 부분을 국채 발행(9.9조원)해서 조달하기로 계획했다. 따라서 추경안의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9.9조원이 증가한 965.9조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본예산 편성시의 GDP는 2,023.1조원으로 전망하였으나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4.8%에서 4.4%로 낮아짐에 따라 2,003.7조원으로 전망되어 GDP전망치 조정효과 +0.4%p와 추경 순효과 +0.5%p의 영향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는 본예산의 47.3%에서 48.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총량]

(단위: 조원,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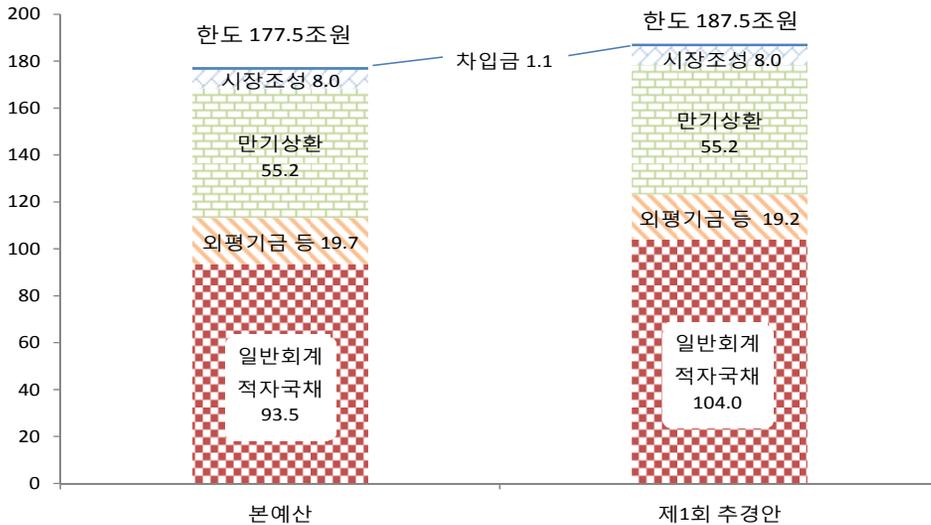
구 분	2020		2021		증감	
	본예산(A)	추경	본예산(B)	추경안(C)	본예산 대비 (C-B)	전년대비 (C-A)
총수입 (증가율, %)	481.8 (1.2)	470.7 ($\Delta 1.1$)	482.6 (0.2)	483.4 (0.3)	0.8	1.6
총지출 (증가율, %)	512.3 (9.1)	554.7 (18.1)	558.0 (8.9)	573.0 (11.9)	15.0	60.7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	$\Delta 30.5$ ($\Delta 1.5$)	$\Delta 84.0$ ($\Delta 4.4$)	$\Delta 75.4$ ($\Delta 3.7$)	$\Delta 89.6$ ($\Delta 4.5$)	$\Delta 14.2$ ($\Delta 0.8\%p$)	$\Delta 59.1$ ($\Delta 3.0\%p$)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Delta 71.5$ ($\Delta 3.5$)	$\Delta 118.6$ ($\Delta 6.1$)	$\Delta 112.5$ ($\Delta 5.6$)	$\Delta 126.0$ ($\Delta 6.3$)	$\Delta 13.5$ ($\Delta 0.7\%p$)	$\Delta 54.5$ ($\Delta 2.8\%p$)
국가채무 (GDP대비, %)	805.2 (39.8)	846.9 (43.9)	956.0 (47.3)	965.9 (48.2)	9.9 (0.9%p)	160.7 (8.4%p)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본예산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 및 국채 발행한도는 177.5조원이다. 제1회 추경안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 및 국채 발행한도는 10.0조원이 증가된 187.5조원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 한도규모 177.5조원에서 차입금 한도 1.1조원을 제외한 176.4조원이 정부의 국고채 발행계획이었다. 이 중 2021년에 도래하는 만기물을 상환 후 재발행(roll-over)물량은 55.2조원이고, 조기상환(buy-back)으로 불리는 시장조성물은 8.0조원이다. 또한 외평기금 등 기금 예수·예탁을 위한 국고채 발행계획은 19.7조원 규모이며,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는 93.5조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었다. 추경예산 편성으로 10.0조원 한도가 증가되어 외평기금 등 기금 예수·예탁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19.2조원(△0.5조원)으로 감소하고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채 발행은 104.0조원(+10.5조원) 규모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 및 국채 발행한도 변경]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면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 재정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7조제8항⁶⁾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때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를 제출하였다.

[추경안에 따른 중기 재정총량 변화(2020~2024년)]

(단위: 조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수입	추경 전	470.7	482.6	505.4	527.8	552.2
	추경 후	470.7	483.4	505.4	527.8	552.2
	차이	-	+0.8	-	-	-
총지출	추경 전	554.7	558.0	589.1	615.7	640.3
	추경 후	554.7	573.0	589.1	615.7	640.3
	차이	-	+15.0	-	-	-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추경 전	△118.6 (△6.1)	△112.5 (△5.6)	△123.2 (△5.9)	△128.2 (△5.9)	△127.5 (△5.6)
	추경 후	△118.6 (△6.1)	△126.0 (△6.3)	△123.2 (△5.9)	△128.2 (△5.9)	△127.5 (△5.7)
	차이	- (△0.0)	△13.5 (△0.7)	- (△0.0)	- (△0.0)	- (△0.1)
국가채무 (GDP대비, %)	추경 전	846.9 (43.9)	956.0 (47.3)	1,081.3 (51.4)	1,207.3 (55.1)	1,338.0 (58.7)
	추경 후	846.9 (43.9)	965.9 (48.2)	1,091.2 (52.3)	1,217.1 (56.1)	1,347.8 (59.7)
	차이	- (0.0)	9.9 (+0.9)	9.9 (+0.9)	9.9 (+1.0)	9.9 (+1.0)
명목GDP (경상성장률)	추경 전	1,929.6	2,023.1 (4.8)	2,104.7 (4.0)	2,189.6 (4.0)	2,277.9 (4.0)
	추경 후	1,919.0	2,003.7 (4.4)	2,084.5 (4.0)	2,168.6 (4.0)	2,256.1 (4.0)

주: 1. 2020년 총수입,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국가채무 및 GDP 대비 비율은 2020년 제4회 추경 국회 확정 기준

2. 차이는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21.3.을 바탕으로 재구성

6)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재정총량 관리방안으로 지출측면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해 특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세입측면에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⁷⁾. 또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중장기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재정보강이라면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 어떻게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편성으로 인해 다소 약화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다시 제고시킬 수 있도록 재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를 제시할 때, 코로나19 방역상황 장기화 및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효과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7) 지출구조조정 방안으로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 실시, 의무지출도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 추진, 재정사업 평가제도(재정사업자율평가, 심층평가, 핵심사업평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투자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자원배분 및 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세입기반 확충방안으로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을 중심으로 정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역외세원 및 고액·상습채납자 등을 대상으로 탈루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추경안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제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 정책목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①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8.1조원), ② 악화된 고용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고용대책 예산(2.8조원), ③ 코로나19 방역대책(4.1조원) 등이다.

각 정책목적에 따른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 목적으로는 ㉠ 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 방역조치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특수고용노동자(이하‘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 한계근로빈곤층에게 생계지원금 및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다음, 긴급 고용대책 목적으로는 ㉤ 집합제한·금지업종 및 경영위기 업종 등에 휴업·휴직 수당 등을 지원하는 ‘고용유지’, ㉥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하는 ‘일자리 창출’, ㉦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과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 ㉧ 양육아동을 둔 여성의 경력단절 위험을 완화하고 저소득 근로자·특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돌봄 및 생활안정’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 목적으로는 ㉨ 코로나19 백신 구매·접종 비용을 보장하는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 코로나19 감염환자에 대한 진단·격리·치료

및 생활지원 등을 위한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㉔ 감염병 전담병원 등 의료기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으로 구성된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주요내용]

(단위: 조원)

구 분	주요내용	규모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 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6.7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0.2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0.6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0.6
긴급 고용대책	고용유지 지원	0.3
	청년·중장년·여성 맞춤형 일자리 창출	2.1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0.2
	근로가구 돌봄 및 생활안정 지원	0.2
방역대책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	2.7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대응	0.7
	의료기관 손실 보상	0.7
총 규모		15.0

자료: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 3., 기획재정부

한편, 정부는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2021년도 기정예산 4.5조원¹⁾을 더하여 총 19.5조원 규모를 “맞춤형 피해대책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추경안을 제외한 기정예산 4.5조원의 내용을 보면, ①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2.5조원), ② 고용지원(1.8조원), ③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지원(0.2조원) 등이다.

1)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중 기정예산 활용

구 분	주요 내용	규모
2021년도 기정예산 활용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 긴급 금융지원(1.4조원), 버팀목 추가자금 지원(0.6조원), 경쟁력 회복(0.5조원)	2.5조원
	○고용지원 - 고용연계 정책금융 지원(1.8조원)	1.8조원
	○저소득층·취약계층 등 지원 - 긴급복지 등(0.14조원), 감염병 예방치료 인프라(0.05조원)	0.2조원

2.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 등으로 입은 피해를 지원하는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안 15조원에 더하여 2021년 기정예산 4.5조원을 포함한 19.5조원을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2020년 1월경 코로나19가 발병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번 추경안을 포함하여 총 4차례의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였다.

1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은 총 14.3조원(국비 12.2조원, 지방비 2.1조원)규모로 2020년 제2회 추경으로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 당 인원수에 따라 40~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은 총 7.8조원 규모로 2020년 제4회 추경으로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은 ① 소상공인의 업종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100~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②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며, ③ 생계위기가구 및 긴급돌봄의 지원을 강화하는 것 등이다.

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은 총 9.3조원 규모로 2021년도 본예산과 2020년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은 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종 및 매출액 규모에 따라 100~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임차료를 간접지원 하는 것이며, ②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③ 코로나19 방역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고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은 총 19.5조원 규모(추경안 15조원+기정예산 4.5조원)로 구성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차, 3차에서 추진되었던 재난지원금의 연장선에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²⁾하여 지급하고,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것이며, ②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③ 청년·중장년·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④ 코로나 백신 구매·접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2) 지원대상: (기존 버팀목 자금) 280만개 → (버팀목 자금 플러스) 385만개
지원금액: (기존 버팀목 자금) 100~300만원 → (버팀목 자금 플러스) 100~500만원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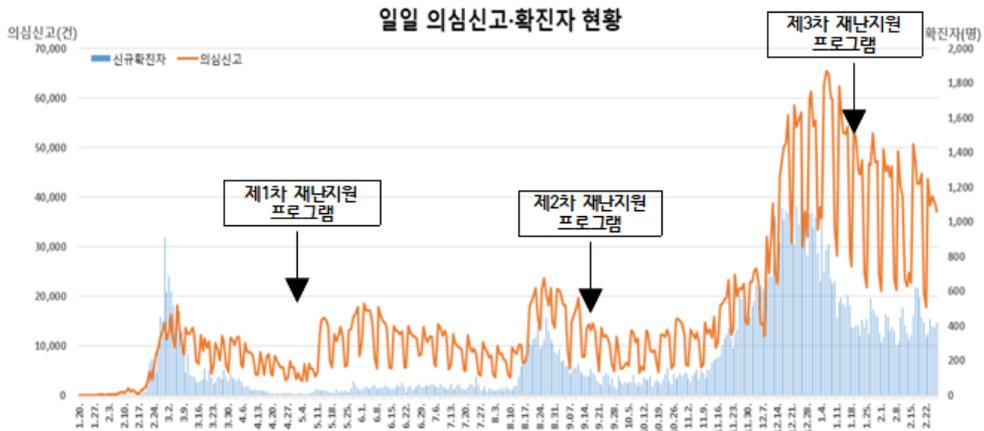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2021년 본예산	2021년 제1회 추경안
규모	○ 총 14.3조원 - 국비 12.2조원+ 지방 2.1조원	○ 7.8조원	○ 9.3조원 - 목적 예비비 4.8조원 - '20년 집행잔액 0.6조원 - '21년 기정예산 3.4조원 - 긴급유계확보경 0.5조원	○ 19.5조원 - 추경안 15.0조원 - '21년 기정예산 4.5조원
주요 지원 대상	○ 전 국민	○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 생계위기 및 육아 부담가구 등	○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 공공의료기관 ○ 생계위기 및 육아 부담가구 등	○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 공공의료기관 ○ 저소득층 및 취약 계층
주요 사업 내용	○ 긴급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 긴급고용안정 패키지 -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및 고용안 정지원금 등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 긴급돌봄 지원 패키지 등 ○ 긴급방역지원 패키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임차료 간접지원 ○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 방역 강화 ○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지원 ○ 근로자·실직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 ○ 취약계층 사회안 전망 보장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안정지원금 ○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

자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20. 4.,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20. 9.,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정부(보도자료), 2020. 1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보도자료), 2021. 3.

1. 코로나19 확산과 재난지원 프로그램 지급 현황

코로나19는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크게 확산되었다. 2·3월에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일별 확진자가 500명을 넘어서는 ‘1차 대유행’이 발생하였고, 8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일어나면서 ‘2차 대유행’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11월 이후 수도권 중심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서 일별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어가는 ‘3차 대유행’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대유행 시기마다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논의하였고, 현재까지 세 차례의 재난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세 차례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실적을 분석하고, 집행실적 부진 사유를 토대로 향후 지급될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실적 제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자료: 질병관리청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가. 제1차 재난지원금 집행실적 분석

정부는 2020년 3월 개최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으며 피해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이상 가구)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정부는 2020년 4월 총 7.6조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국민피해 등을 감안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였고,¹⁾ 긴급재난지원금 단일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추경증액분은 12조 1,893억 200만원이고 집행액(실집행액)은 12조 1,892억 7,200만원으로, 집행률(실집행률)은 99.99%이다.

[제1차 재난지원금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제2회 추경증액분 (A)	집행액 (B)	집행률 (B/A)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긴급재난지원금	12,189,302	12,189,272	99.99	12,189,272	99.99

주: (실)집행액은 2020. 12. 31.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1) 지원대상: 전 국민 대상, 2,171만 가구(동일생계 기준: 부양자-피부양자를 경제공동체로 보는 건강보험체계상 가구 기준 적용)
지원단가: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

나. 제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집행실적 분석

(1) 집행실적 분석

정부는 2020년 9월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하여 ①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② 긴급 고용안정, ③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④ 긴급 돌봄지원 등을 포함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이하 “제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를 제시하였다.

제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인 제4회 추경증액분은 7조 7,464억 8,800만원으로, 집행액은 7조 5,304억 5,400만원(집행률 97.2%)이고, 실집행액은 6조 7,165억 8,900만원(실집행률 86.7%)이다.

[제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분 야	제4회 추경증액분 (A)	집행액 (B)	집행률 (B/A)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3,899,100	3,899,100	100.0	3,288,879	84.3
긴급 고용안정	1,504,360	1,470,873	97.8	1,441,160	95.8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374,922	374,922	100.0	246,420	65.7
긴급 돌봄지원	1,734,870	1,686,864	97.2	1,671,408	96.3
긴급 방역지원	233,236	98,506	42.2	68,533	29.4
합 계	7,746,488	7,530,454	97.2	6,716,589	86.7

주: 1. (실)집행액은 2020. 12. 31. 기준

2. 부처가 사업시행기관을 거치지 않는 직접사업의 경우 집행액을 실집행액으로 인정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집행실적 부진사업 분석

제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사업 중 집행실적이 부진(실집행률 80% 이하)한 사업에는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등이 있다.

[집행실적 부진(실집행률 80% 이하)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	내역사업명	제4회 추경증액분 (A)	집행액 (B)	집행률 (B/A)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재기지원 (소상공인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101,900	101,900	100.0	36,479	35.8
긴급 고용안정 저소득층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사업	80,403	80,403	100.0	58,221	72.4
긴급 생계지원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350,902	350,902	100.0	222,400	63.4
긴급 돌봄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110	110	100.0	27	24.5
	상담·조사 시설 한시 지원	2,360	2,360	100.0	1,000	42.4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56,250	8,244	14.7	8,244	14.7
긴급 방역지원	코로나19 백신 구매	183,863	50,050	27.2	50,050	27.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31,473	31,473	100.0	1,500	4.8

주: 1. 집행실적 및 실집행실적은 2020. 12. 31. 기준

2. 부처가 사업시행기관을 거치지 않는 직접사업의 경우 집행액을 실집행액으로 인정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 중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서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 1,019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나 실집행률은 35.8%에 불과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이미 폐업을 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나, 제4회 추경예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병행 편성되어 실집행이 용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2020년 8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소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증액분 804억 300만원 중 582억 2,1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행률은 72.4%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말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었으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2020. 12. 8. 수도권 2.5단계)되어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이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은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55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³⁾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증액분은 3,509억 200만원이었으나 2,224억원만을 집행하여 집행행률은 63.4%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위 사업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층이 25%의 소득감소를 증명할 경우에 지원하는데 소득감소 증빙이 까다로워 저소득층의 신청이 예상보다 저조하였다는 입장이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결정·관리·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지자체가 수행하도록 전문성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아동보호전담요원 신규 53명에 대한 1개월치 인건비 지급)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증액분 1억 1,000만원 중 2,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행률은 24.5%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은 한시적 근무인력이 아닌 지속근무 인력이므로, 지자체 내 인사부서 협의 및 채용절차 진행에만 최소 3~4개월이 소요되어 집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하였다는 의견이다.

상담·조사 시설 한시 지원 사업(보건복지부 소관)은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에 따른 상담·조사 시설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증액분 23억 6,000만원 중 10억원을 집행하여 집행행률은 42.4%이다. 보건복지부는 상담·조사시설 구축을 위한 장소협의를 및 공사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2020년 연내 추진이 곤란한 지자체가 다수존재 하였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코로나19 특별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에서 제외된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6억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 25% 감소한 경우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고용노동부 소관)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5만원씩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중액분 562억 5,000만원 중 82억 4,400만 원만을 집행하여 집행행률이 14.7%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는 제4회 추경안 편성 당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전면 원격 수업으로의 전환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10일→20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하였으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2020. 10. 12. 전국 1단계)되었고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수요가 감소하였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백신 구매 사업(질병관리청 소관)은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중액분 1,838억 6,300만원 중 50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행률은 27.2%이다. 이는 COVAX Facility 잔금 지급시기가 미도래하였기 때문인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향후 COVAX Facility를 통해 구매한 백신을 국내에 공급할 때 잔금을 지급할 예정이다(2021년도 제1회 추경안에 코로나19 백신 구매 2.3조원 포함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질병관리청 소관)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중액분 314억 7,300만원 중 15억원을 집행하여 집행행률이 4.8%이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추경 편성 후 백신 확보 및 대상자 확정에 시일이 소요되어 2020년 11월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었고 사업기간이 2021년 4월 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4) 정부는 총 백신 구매비용(3조 8,067억원) 중 기확보액 1조 2,133억원(1,723억원(2020년도 이용) + 1,839억원(2020년도 추경) + 8,571억원(2021년도 목적예비비)) 및 2022년 집행예상액 2,450억원을 제외한 2조 3,282억원을 2021년 소요액으로 보고 있다.

다.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집행실적 분석

(1) 집행실적 분석

정부는 2020년 12월 개최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통하여 총 9조 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방안(이하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위 대책은 ①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②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③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재원은 목적예비비 4.8조원, 2020년 집행잔액 0.6조원,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및 2021년 기정예산 활용분 3.9조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은 9조 2,128억 7,600만원으로, 2021. 2. 15. 기준 집행액은 5조 9,886억 9,800만원(집행률 65.0%)이고, 실집행액은 5조 2,493억 7,800만원(실집행률 57.0%)이다.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집행실적 현황]

(단위: 백만원, %)

분 야	재원 계 ¹⁾ (A)	집행액 (B)	집행률 (B/A)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5,598,703	4,719,659	84.3	4,467,049	79.8
코로나 방역 강화	850,278	347,571	40.9	226,623	26.7
맞춤형 지원 패키지	2,763,895	921,468	33.3	555,706	20.1
합 계	9,212,876	5,988,698	65.0	5,249,378	57.0

주: 1) 재원에는 목적예비비, 2020년 집행잔액, 기금운용계획 변경분, 2021년 기정예산 활용분이 포함

1. (실)집행액은 2021. 2. 15. 기준

2. 부처가 사업시행기관을 거치지 않는 직접사업의 경우 집행액을 실집행액으로 인정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2) 집행실적 부진사업 중 주요 사업 분석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중 집행실적이 부진(실집행률 20% 이하)한 사업에는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진단검사비, 고용유지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있다.

[집행실적 부진(실집행률 20% 이하) 사업 중 주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분야	내역사업명	재원 계 (A)	집행액 (B)	집행률 (B/A)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간접 피해지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46,000	39	0.1	39	0.1
	코로나 방역 강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71,600	0	0.0	0	0.0
	진단검사비	86,588	9,500	11.0	9,500	11.0
맞춤형 지원 패키지	고용유지지원금	913,220	163,721	17.9	163,721	17.9
	국민취업지원제도	215,900	3,595	1.7	3,595	1.7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중소기업지원	200,000	2,650	1.3	2,650	1.3

주: 1. 집행실적 및 실집행실적은 2021. 2. 15. 기준

2. 부처가 사업시행기관을 거치지 않는 직접사업의 경우 집행액을 실집행액으로 인정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노동부 소관)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46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3,900만원만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0.1%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직·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유관기관⁶⁾ DB확보 등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집행이 늦어졌으며, 3월 첫째 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5)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장애아돌봄, 노인돌봄, 아이돌보미, 가사간병, 산모신생아서비스

6) 재직요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회보장정보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건강보험공단
소득요건: 국세청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보건복지부 소관)은 지역밀착형 환자치료·관리가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에 감염병 필수·음압병상(200개) 등을 조기 구축하기 위한 사업(국비:지방비=1:1)으로, 기정 예산 716억원이 편성되었다. 다만, 2021년 2월 15일 기준 실집행률은 0%에 인데, 지방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지자체 예산신청 지연에 따라 국비 교부가 지연되고 있고, 예산 실집행을 위한 준비절차(지자체 매칭 예산 배정→지방의료원에 교부)에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분기 중 국비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며, 지자체에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안내하여 지방의료원에 지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진단검사비(질병관리청 소관)는 코로나19 진단 수탁검사기관에 검사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82억원과 목적예비비 783억 8,800만원 등 총 865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5억원만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11.0%에 불과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방역관리 등 보건소 업무 과중에 따라 보건소 검사내역 등록 지연으로 지급 절차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므로, 보건소의 진단검사비 등록을 독려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고용노동부 소관)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수당)를 실시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7,224억원, 고용보험기금 기금변경분 1,908억원 등 총 9,132억 2,000만원 중 1,637억 2,100만원만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17.9%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절차(계획수립 및 신고 → 휴업휴직실시 → 지원금 신청)상 계획과 지급에 약 2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3월부터 지원금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소관)는 고용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의 구직·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10만명, 청년 5만명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최대 6개월)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2,159억원 중 35억 9,500만원을 집행하여 실집행률이 1.7%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꺼번에 21만명이 신청하여 고용센터 인력 대비 수급자격 심사·처리 업무가 과중하여 심사가 늦어졌고, 1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수급자격자로 선정된 이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해야 지급할 수 있어 실

집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신청건수 자체가 안정화 되고 있어 고용센터의 업무 과중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수급자격 인정자에 대한 최소 상담횟수 축소, 대면상담 요건 완화 등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치를 시달하여 빠른 속도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시적경영애로 및 재해중소기업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영위 업종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대출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000억원 중 26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실효율은 1.3%에 불과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후 신청, 평가 등 지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나,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제조업 위주로 지원되어 도소매·서비스 영위 기업(집합금지·제한업종)의 인식 부족에 따라 신청이 저조하므로,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

라. 제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집행률 제고를 위한 방안

2021년 3월 2일, 정부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고,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①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8.1조원), ② 긴급 고용대책(2.8조원), ③ 방역 대책(4.1조원) 분야의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15.0조원 규모이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최초 확진 이후 3월 3일까지 확진자 90,816명, 사망자 1,612명이 발생하였으며, 방역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 충격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한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편성된 재난지원 프로그램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존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집행실적 부진 사유를 토대로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사업 및 기존(유사)사업 실적행률]

(단위: 백만원, %)

분야	사업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변경안)	2·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중 동일(유사) 사업	제2차재난지원 프로그램 실집행률	제3차재난지원 프로그램 실집행률
소상공인· 고용취약 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6,735,046	소상공인새희망자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83.5	93.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	456,277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7.4	75.5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6,000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98.4	94.6
	방문돌봄중사자 한시지원금	30,900	방문돌봄중사자 한시지원금	-	0.1
	한시생계지원금	406,608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63.4	-
	고용유지지원금	203,280	고용유지지원금	100.0	17.9
긴급 고용대책	국민취업지원제도	120,253	국민취업지원제도	-	1.7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52,000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14.7	-
	희망근로 지원사업	213,026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72.4	-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373,117	코로나19 백신 구매	27.2	-
방역 대책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650,000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	31.5

주: 제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실적행률은 2020. 12. 31. 기준,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실적행률은 2021. 2. 15.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1) 기존 행정 DB를 활용한 긴급피해지원자금 신속 집행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특고·프리랜서 등)에 긴급 피해지원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기존 행정 DB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특고·프리랜서 등)에 지급되는 긴급피해지원자금은 기존 제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과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에 편성된 경우에도 70% 이상의 높은 실집행률을 달성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의 경우 신속한 지급이 독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제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등의 경우 추석 전까지 상당수 지급할 것을 계획하였으며⁷⁾,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월 중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은 설날 전까지 지급하도록 계획한 바 있다.⁸⁾

위 사업들은 방역조치 연장·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제2·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지급이 되어온 사업이므로,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행정 DB, 기존 프로그램 참여 이력 등을 활용하고 심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긴급피해지원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원활한 사업 요건 심사를 위한 방안 모색

일부 사업의 경우 관계 부처의 DB 확보 지연, 행정인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관계부처 DB 협조 요청 및 행정인력의 탄력적 조정 등 원활한 사업 요건 심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방문돌봄중사자한시지원금 사업’의 경우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0.1%에 불과한데, 실집행률 부진은 재직요건,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관계부처의 DB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므로 향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DB 협조를 요청하여 신속한 요건 확인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관계부처합동,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추석전 집행 추진상황」, 2020. 9. 30.

8) 관계부처합동, 「코로나19 제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0. 12. 29.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제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1.7%에 불과하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한꺼번에 21만 명이 신청하였고, 고용센터 인력 대비 수급자격의 심사·처리 업무가 과중하여 심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므로 향후에도 과다한 신청이 예상된다면 수급심사 업무에 고용센터 인력 배치를 강화하는 등 탄력적인 인력 활용으로 해당 사업의 집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

(3)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요건 합리화 고려

일부 사업의 경우 지원금 지급 요건이 엄격하여 요건 증명의 어려움으로 신청이 저조하거나 요건 충족에 수일이 소요되어 집행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사업 요건의 합리화를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63.4%에 불과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소득 25% 감소 증빙이 어려워 저소득층의 신청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는 한시생계지원금의 경우, 소득 감소 요건을 완화⁹⁾하고, 실직·휴폐업으로 인한 생계위기 입증 시 지자체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여 현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한시생계지원금 비교]

구분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2020년도 제4회 추경)	한시생계지원금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기준 중위 75%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 요건 없음) 	
위기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25%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감소’시 지원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생계위기 입증 시 지자체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 ○소득감소 심사 시 공적자료 외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다양한 증빙서류 인정

자료: 보건복지부

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시생계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급여성 복지와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타 지원금의 신청이 끝난 후 한시생계지원금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소득감소 기준 완화 기조는 유지할 것이나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소득감소’의 요건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입장임.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하여는 수급자가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횟수를 축소(최저 3회→최저 2회)하여 신속하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요건 증명이 용이하지 않거나 요건 충족에 수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편성된 예산이 적시에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집행률이 연계된 사업 검토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집행률이 연계된 사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요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정부수칙을 고려하여 예산을 심의하여야 하며, 일자리 사업의 경우 비대면 일자리 개발 등 거리두기 단계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은 제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으로 편성된 예산의 14.7%만을 집행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제4회 추경안 편성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2020. 10. 12. 전국 1단계)되었고, 등교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수요가 감소하였다는 입장으로, 동 사업의 경우 사회적 거리가 강화될수록 집행이 촉진된다.

반면,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제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실행률은 72.4%였는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11월 말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 되었으며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2020. 12. 8. 수도권 2.5단계)되어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입장으로, 동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수록 집행이 촉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사업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수요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정부 수칙 및 정책변화 등¹⁰⁾을 고려하여 예산을 심의하여야 하며, 희망근로 지원사업에서는 비대면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기존에는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 117호)」에 따라 2020년 9월 9일부터 연간 최장 20일로 연장되었다. 다만, 이 고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최장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긴급 피해지원금 편성 현황

이번 추경안에서는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5개 부처 8개 사업에서 총 8.1조원의 예산을 신규 또는 확대하여 편성하고 있다.

긴급 피해지원금 편성내역을 지원대상별로 살펴보면, 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6.7조원)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0.2조원) 등 6.9조원, ②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0.6조원), ③ 한계근로빈곤층 및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 및 장학금 등(0.6조원)이 각각 추경안에 편성되었다.

[2021년 제1회 추경안의 피해지원금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지원대상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021	
			본예산	제1회 추경 증액분
소상공인 (6.9조원)	중기부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6,735,046
		소상공인 성장지원 (노점상 지원)	-	20,000
	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220,205
근로 취약계층 (0.6조원)	고용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456,277
	고용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	56,000
	고용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46,000	30,900
취약계층 (0.6조원)	복지부	긴급복지(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185,639	406,608
	교육부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사업	3,994,569	25,000
	기재부	국고채이자상환	20,210,096	182,189
		합 계		8,132,225

주: 정부는 국고채 이자상환은 취약계층지원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추경안 분류 편의상 취약계층 부문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함

자료: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 3., 기획재정부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한편, 이번 추경안은 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데, 과거 2차, 3차 재난지원금과 4차 재난지원금의 주요 사업을 비교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2차~4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의 피해지원금 사업 내역]

2차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3차 (2021년 본예산의 일부)	4차 (2021년 제1회 추경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 아동특별돌봄지원 ○ 비대면 학습지원 ○ 비대면(언택트) 활동 뒷받침 위한 통신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소상공인 2단계 금융지원(임대료 특별지원)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일반 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지원금 ○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자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 9.,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0. 12., 관계부처 합동,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 3.

2. 분석의견

첫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경우는 지원금액을 구분하는 5개 유형 중 일반업종의 경영위기 유형은 해당 업종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조속히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세부업종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안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으로서 6.7조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 및 그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금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2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3차 재난지원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3차보다 지원대상을 105만개 확대(280만→385만개)하고 지원유형을 3가지에서 5가지로 세분화하며 지원 단가도 100~30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사업의 지원 유형]

구 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연장	완화		경영위기	매출감소
판단기준	집합금지 연장 (21.1.2 방역 지침)	금지→제한전환 (21.1.2 방역 지침)	2.14일까지 집합제한 지속	업종평균 매출 20%이상 감소	사업체별 매출 감소
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종	학원 등 2종	식당·카페, 숙박,PC방 등 10종	여행, 공연 등 10종	일반 업종
지원단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대상인원	11.5만명	7.0만명	96.6만명	26.4만명	243.7만명
소요	0.6조원	0.3조원	2.9조원	0.5조원	2.4조원

자료: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 3.,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하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조속히 지원금을 지급하여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정부는 일반업종 중 업종평균 매출이 20%이상 감소한 업종 중에 여행, 공연 등을 포함한 10여개를 선정하여 경영위기 업종으로 지정하고, 일반업종 중 단순 매출감소 사업장보다 100만원을 추가한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아직 구체적인 업종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¹⁾이다.

일반업종의 소상공인은 경영위기 업종인지 단순 매출감소인지 여부에 따라 긴급 피해지원금이 100만원 차이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반(경영위기)업종을 조속히 확정하여 수혜자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나,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노점상의 경우 활용가능성이 낮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중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노점상에게도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노점상에 대한 피해지원금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① 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노점상에게 개소 당 5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② 관리되고 있는 않은 노점상에 대해서는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다.

1)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세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 10여개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추경안의 노점상 피해지원금 사업 현황]

대상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	관리되고 있지 않은 노점상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보건복지부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 소상공인 성장지원 (노점상 지원)	○ 긴급복지 (한시생계지원금)
지원요건	○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지급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6억원/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금융 재산 요건 없음) ○ 사유: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 위기요건: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 및 지자체장이 위기로 인정하는 경우
지원금액	○ 노점상당 50만원	○ 가구당 50만원
지원인원(추정)	○ 4만 개소	○ 80만 가구(노점상 포함)
추경예산안	○ 200억원	○ 4,000억원 (노점상 지원예산 포함)

자료: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 2-1(중기부, 복지부 소관) 재구성

정부는 민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난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하지 않았던 노점상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① 현재까지 노점상 등록·허가제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노점상 영업을 안정적으로 인정받은 점, ② 사업자등록을 하면 각종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대상 노점상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불확실하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복지부의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서 사업자등록 없이 피해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²⁾도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중기부의 ‘소상공인 성장지원(노점상 지원)사업’의 집행이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2) 이전에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익숙하거나 소득감소 증명이 용이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자체 관리대상 노점상의 소득안정 지원자금 참여유인 감소에 따라 집행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노점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효과 제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긴급 피해지원금 지원의 사업효과를 모니터링 하여 차후 추가적인 긴급 피해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의 제도 설계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 피해지원금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2차부터 4차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다. 회차를 거듭하는 동안 지원유형,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이 계속해서 변경되어 왔고, 지원대상도 확대되었다.

[2차~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제도 현황]

구 분	2차	3차	4차
지급시기	2020년 9월경	2021년 1월경	2021년 3월말(예정)
지원대상(계획)	294만개	280만개	385만개
재정소요	3.3조원	4.1조원	6.7조원
지급단가	100~200만원	100~300만원	100~500만원

자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 9.,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0. 12., 관계부처 합동,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 3.

2차 재난지원금(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으로 2020년 9월경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이 지급되었으나, 지원받은 소상공인 들의 사업장 존속여부, 폐업현황 및 지원금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대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역시 2차부터 4차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나, 지원받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한 평가연구는 없는 상황이다.

[2차~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도 현황]

구분	2차	3차	4차
지급시기	2020년 9월경	2021년 1월경	2021년 3월말(예정)
지원대상 (계획)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 법인택시기사: 10만명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 법인택시기사: 8만명 · 돌봄서비스종사자: 9만명	· 특고·프리랜서: 80만명 · 법인택시기사: 8만명 · 돌봄서비스종사자: 6만명
재정소요	0.7조원	0.5조원	0.6조원
지급단가	· 특고·프리랜서 -50만원 ~ 150만원 · 법인택시기사 -100만원	· 특고·프리랜서 -50만원 ~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50만원 · 돌봄서비스종사자 -50만원	· 특고·프리랜서 -50만원 ~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70만원 · 돌봄서비스종사자 -50만원

자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2020. 9., 기획재정부(보도자료),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0. 12., 관계부처 합동,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 3.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진정세 시점을 단정할 수 없고, 차후에도 예상치 못한 감염병의 발발 등으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은 일정한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재난지원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 집단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재난지원금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근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사업효과 및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추후 재난지원금 지급소요가 발생할 경우 재난지원금의 제도설계에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직접일자리 사업 편성 현황

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OECD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및 실업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직접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13개 부처 41개 사업에서 총 1조 1,028억원의 직접일자리 예산을 신규로 또는 확대하여 편성하고 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직접일자리 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주요사업	직접 일자리 사업 수	추경예산 증액분
문체부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등	7	157,150
복지부	자활사업	7	161,774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1	120,534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4	23,421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1	4,267
해경청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1	1,025
해수부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3	4,177
과기부	디지털 전환 지원(정보화)	4	132,720
환경부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4	129,042
여가부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1	3,840
교육부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4	139,584
농림부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3	12,226
행안부	희망근로 지원사업	1	213,026
	합 계	41	1,102,786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취합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을 대폭 확대 편성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하에서는 직접일자리 사업이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석하도록 한다.

2. 분석의견

첫째, 각 부처 직접 일자리 사업마다 시간당 급여단가가 상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업무의 난이도 및 해당 일자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각 적정한 수준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직접일자리 사업의 시간당 급여단가를 보면, 최소 8,720원에서 최대 15,000원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직접일자리 사업의 시간당 급여단가 현황]

부처명	세부사업명	시간당 급여단가 (천원)	자격요건
복지부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11.4	없음
과기부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지식베이스 구축)	15	없음
과기부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바이오 연구데이터 활용기반 조성)	12	대졸자
교육부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	10	성범죄 경력조회 등 채용시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자
교육부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14	없음
교육부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	11.5	없음
해경청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연안안전지킴이운영)	8.72	없음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8.72	없음
행안부	희망근로 지원사업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8.72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환경부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8.72	지역거주민 및 취업취약계층
환경부	환경지킴이 (5대강 환경지킴이)	8.72	없음

주: 임금구조상 시간당 단가로써 임금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운 사업들은 제외하였음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취합

급여의 시간당 단가는 해당 근로의 난이도, 전문성 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이 책정될 필요가 있다. 만약 근로의 난이도 및 전문성에 비해 시간당 급여가 낮다면 해당 일자리 사업의 집행실적은 부진할 것이고, 근로의 난이도 및 전문성에 비해 시간당 급여가 높다면 해당 사업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추경안에 편성된 일부 직접일자리 사업을 보면, 사업참여에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일자리의 사업단가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을 하는 일자리의 시간당 급여단가와 동일한 경우가 있어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제1회 추경안의 직접일자리 사업의 시간당 단가 및 자격요건]

부처명	세부사업명	시간당 단가 (천원)	자격요건
해경청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연안안전지킴이운영)	8.72	없음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8.72	없음
행안부	희망근로 지원사업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8.72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
환경부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8.72	○지역거주민 및 취업 취약계층
환경부	환경지킴이 (5대강 환경지킴이)	8.72	없음
해수부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스마트 어촌지원)	8.72	○IT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및 관련분야 (프로그램 개발, 영상편집, IT교육 등) 경력 2년 이상인 자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8.72	○환경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표창자 및 경력자 ○관련산업체 은퇴자

부처명	세부사업명	시간당 단가 (천원)	자격요건
문체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방송영상콘텐츠분야 인력 지원)	8.72	○연매출 10억원 이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제작지원 인력(작가, PD, 촬영 스태프 등)
문체부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8.72	○공연예술 활동 이력이 있는 자 ○ '20년 활동 실적 증 빙이 가능한 자 ○ '21년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자 등
문체부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8.72	○관련 전공자 및 업계 재직자
문체부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8.72	○관련 전공자 및 업계 재직자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취합

둘째, 각 일자리 사업마다 국고보조율이 상이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직접일자리 사업을 보면, 32개 사업(내역사업 기준)이 100%의 국고보조율로 추진될 예정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40~90%까지 상이한 국고보조율을 보이고 있다.

국고보조율이 100%미만인 사업들을 보면, 행안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산림청의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및 교육부의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등이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직접일자리 사업 중 국고보조율이 100%미만인 주요사업 현황]

부처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국고보조율 (%)
행안부	희망근로 지원사업 (2021 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	90
농림부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농업법인 취업지원)	80
농림부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농식품벤처창업일자리지원)	90
산림청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50
교육부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40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50
문체부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실내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 지원)	80
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 (돌봄인력 한시지원)	48
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돌봄인력 한시지원)	48
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지원(보조교사 지원)>	50.8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취합

국고보조율은 해당 사무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비중에 따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국가보조율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 직접일자리 사업별 국고보조율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셋째, 정책대상의 명확화 및 차별화를 통해 기존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이 부처간 중복되어 일부 사업이 구축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 27.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중 방역·안전 분야에 6.4만개, 그린·환경 분야에 2.9만개, 코로나 실직자 고용지원을 위해 5만개 등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는 업무내용 측면에서 각 부처에 편성된 추정사업간 유사·중복의 우려가 있다.

예를 들면, 이번 추경안의 행안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지역방역 일자리)’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만명은 백신접종지원, 4만명은 생활 방역, 지역경제회복, 친환경 기반 조성 등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인데, 이는 복지부의 방역지원 관련 사업 일자리 및 ‘자활근로’ 사업, 환경부의 ‘재활용품 품질지원 개선’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취약계층 대상 방역·그린뉴딜 직접일자리 사업 현황(일부)]

(단위: 백만원, 명)

소관 부처	세부사업	예산편성	정책대상	2021 추경안 증액분	2021 추경안의 계획인원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방역일자리)	2021년 제1회 추경안	취업취약계층 등	213,026	50,00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방역지원	2021년 제1회 추경안	취업취약계층 등	37,887	5,300
	노인요양 시설 방역지원	2021년 제1회 추경안	취업취약계층 등	41,022	4,033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지원	2021년 제1회 추경안	취업취약계층 등	12,280	1,032
	자활근로 ¹⁾	2021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33,092	5,000
환경부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	2021년 제1회 추경안	취업취약계층 등	115,200	10,000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	지방자치단체	취약계층 (상세조건은 지자체별 상이)	-	-

주: 1) 자활근로사업은 본예산에 5.8만명 기준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3만명으로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며, 이 중 일부는 방역일자리에 투입할 계획임.

자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또한, 2021년 본예산에도 40여개의 직접일자리가 편성되었는데, 본예산의 직접 일자리 사업과 추경안의 직접 일자리 사업이 참여대상과 업무내용 측면에서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공공형과 민간형 모두 만 60세 이상을 지원조건으로 하고 사회서비스형의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로 대상을 한정하는데, 2020년도 행안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이 전체 54.1%를 차지하고 있어 참여대상의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다.

또한 2021년 본예산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내용도 대부분 공원 등 공공시설물 주변 환경미화, 행정보조, 공공시설 방역 등의 활동이고, 이번 추경안의 행안부의 ‘희망근로 지원사업(지역방역 일자리)’도 생활 방역, 지역경제회복, 친환경 기반 조성 등을 주된 업무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업무내용 상 유사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2021년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 현황(일부)]

(단위: 백만원, 명)

소관 부처	세부사업	시행주체	정책대상	2021 본예산	2021 목표인원
보건 복지부	자활근로사업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542,846	63,000
보건 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지원	지방자치단체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159,593	24,896
보건 복지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지방자치단체	만 60세 이상, 공익형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세부유형별로 상이)	1,294,413	785,000
산림청	공공산림 가꾸기	지방산림청	만 18세 이상 실업자 혹은 일용직 근로자	23,115	1,641
지방자치 단체	공공근로사업	지방자치단체	취업취약계층 (지자체별 조건 상이)	-	-

자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환경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각 기초자치단체가 맡아서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처럼 본질적으로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 유사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동일 행정조직(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이 여러 직접일자리 사업들(공공근로사업, 청년대상 일자리사업들, 자활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할 경우 일부 사업이 구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근로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과 유사성이 높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가령,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일자리를 우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가용된 자원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의 확대 수준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근로사업의 구축효과는 더 높을 수 있다.¹⁾

따라서 정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조망하고 지역 수요와 지자체의 행정여력을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중복·구축 효과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계가 불안정하나 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배제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휴·폐업 자영업자, 강사·프리랜서를 포함한 특수직 등에 보다 우선순위를 두는 등 정책대상의 차별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번 추경안에 다수의 청년 직접 일자리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년의 경우는 직접일자리 사업의 참여에 그치지 않고 사업 종료 후 민간 일자리로의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등의 사후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사업에서 청년은 만15세부터 34세까지를 의미하는데, 최근 일자리 사업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만40세까지 확대해서 설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확대된 기준에 따라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청년일자리 사업을 보면 내역사업 기준으로 4개 부처에 총 17개 사업이 편성되었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노인 등의 특정계층의 경우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1) 더불어 행안부의 '지역활력 일자리사업'을 통해 추진될 생활방역, 그린일자리의 경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할 타 부처의 방역·그린 일자리와의 유사성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소득을 보전하는 일자리 사업의 성격이 있고, 은퇴인력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적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 반면, 청년의 경우는 실업상태를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 제공이 주 목적이다.²⁾

이러한 청년에 대한 직접일자리 의의를 감안한다면, 청년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이후 민간일자리 사업으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사후적인 관리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으로 편성된 청년 일자리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후지원프로그램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직접일자리 중 청년일자리 사업 편성 현황]

부처명	분야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 이전 지원프로그램
과기부	디지털	다부처국가생명연구지원 선진화 (바이오연구데이터활용기반 조성)	○ 데이터 운영 전문기관 채용 및 전문 교육프로그램 지원
농림부	그린, 환경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농업법인 취업지원)	○ 우수 농업법인 고용 추가 상담 및 안내 지원
	디지털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농식품벤처창업 일자리지원)	(없음)
	디지털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스마트팜 디지털 일자리지원)	(없음)
	디지털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육성)	(없음)
	디지털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지원)	○ 우수 인재 지원 기업 정규직 전환 채용 유도
해수부	디지털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해양수산벤처창업일자리지원)	(없음)
	디지털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k씨푸드 코디네이터 육성)	(없음)
	디지털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어업법인 취업지원)	(없음)

2)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고용노동부

부처명	분야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직접일자리 사업참여 종료 후 민간일자리 이전 지원프로그램
	디지털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스마트 어촌지원)	(없음)
	디지털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해양사고 기초조사)>	(없음)
	디지털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선박검사정보)>	(없음)
	디지털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해양민족 역사자료)>	(없음)
	디지털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선박등록정보)>	(없음)
	디지털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항로표지정보)>	(없음)
문체부	문화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 산업 육성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없음) ¹⁾
	디지털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경력단절 없이 고용시장에 안 착할 수 있도록 상 담, 교육 등 취업지 원 서비스 안내

주: 1) 문체부는 해당사업의 지원대상은 일정기간 개최되는 대중음악공연으로, 공연종료후 민간일
자리 직접적 이동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임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 취합

특히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르면, 직접일
자리 사업에 한 번 참여한 자는 65세 이상의 노령자, 중증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
자 등이 아니면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청년의 경우 직접일자리 사
업참여는 단기적인 처방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청년의 경우 직접일자리 참여 이후 민간일자리로 이전해 갈 수 있도록
각종 고용서비스 지원사업 및 직업훈련 등 사후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방역 대책사업 편성 현황

이번 추경안에 3개 부처 4개 사업에서 총 4.1조원의 방역 대책사업 예산을 신규로 또는 확대하여 편성하고 있다.

각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질병청에서는 코로나 백신 구매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사업에 2조 3,484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고, 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환자를 전담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예산 6,5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재부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센터 설치운영(4,000억원) 및 코로나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7,000억원) 등을 위해 총 1조 1,000억원의 예비비를 증액하였다.

[2021년 제1회 추경안의 방역 대책사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명	세부사업명	2021	
		본예산	제1회 추경 증액분
질병청	감염병 예방관리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	2,348,400
복지부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400,000 ¹⁾	650,000
복지부	체온계 설치지원	-	8,160
기재부	예비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센터 설치운영 등)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대응)		400,000
			700,000
	합 계		4,106,560

주: 1) 2021년 예비비

자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 분석의견

이번 추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과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백신의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백신 공급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개가능한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신속히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추정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구매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2조 3,484억원의 추경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다.

현재 총 7,900만명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이 계약체결되어 있는데, 이 중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는 2021년 1분기부터, 안센, 모더나, 노바백스는 2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중 코백스를 통하여 화이자 백신이 11.7만회(5.8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57만회(78.5만명)분이 실제로 국내에 공급되었다.

[코로나19 백신 공급 시작 시기 및 실제 공급 물량]

구분	공동구매	개별 제약사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안센	모더나	노바백스
공급 시작 시기	1분기 (2월말)	1분기 (2월말)	1분기 (3월)	2분기	2분기	2분기
실제 공급 물량	11.7만회 (5.8만명)	157만회 (78.5만명)	-	-	-	-

주: 동 표는 2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자료: 질병관리청

이후에 공급되는 구체적인 백신 도입 시기 및 물량 등은 제약사들과의 추후 협상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므로, 정부는 관련 협상을 원활히 추진하여 차질없이 코로나19 백신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제약사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CDA: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및 구매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총 계약 물량과 공급 시작 시기를 제외한 가격 및 추후 확정될 구체적 공급 일정 등은 비공개 사항인데,

백신의 구체적인 공급일정과 공급물량은 국민들의 주요한 관심사이므로 각 제약사 별로 코로나19 백신 공급 일정이 구체화 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무상접종 인프라 지원 및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 지원 등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수립된 소요에 대해 1조 1,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예비비 추경안 중 사용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21년 3월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추경안의 목적예비비 증액분 1조 1,000억원 중 4,000억원은 전 국민 코로나19백신 무상예방 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집행할 계획이고, 7,000억원은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한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 지원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000억원에 대해서는 ① 중앙·3개 권역·18개 광역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백신 접종센터의 운영비 및 ② 민간의료 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7,000억원에 대해서는 ①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비 및 선별진료소의 방역물자 지원, ② 무증상·경증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확진자 검진·치료 유도를 위한 격리치료비 지원, ③ 격리자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으로 사용할 예정임을 제시하고 있다.

[추경을 통한 예비비 증액분 사용계획]

(목적) 예비비	사용 계획
4,000억원	(백신 접종) 2.26일부터 시작된 전국민 무상예방 접종을 신속·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 예방접종의 접근성·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및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등 지원 * (중앙) 중앙의료원, (권역) 3개(중부, 영남, 호남), (지역) 광역18개, 기초232개 ** 국고-건강보험공단 부담
7,000억원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지원 <코로나19 방역대응 추가 지원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확충, 선별진료소(약 620개)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 ○(격리·치료) 무증상·경증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확진자 검진·치료 유도를 위한 격리치료비 지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파견의료인력 수당 지급 등 ○(생활지원 등) 격리자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div>

자료: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기획재정부, 2021. 3.

그런데, 이와 같이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예비비 1조 1,000억원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에 새롭게 사업을 신설하던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제22조¹⁾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기재부는 코로나 방역, 백신 예방접종 관련 소요는 코로나 확산 추이(유행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일반 예산사업으로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복지부·질병청이 추계한 개략적인 소요를 근거로 예비비에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

1)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에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소요되는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용이하지 않더라도, 예방접종 인프라 지원대상(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 및 민간의료 기관)과 범위(설치·운영비 및 시행비)가 확정되어 있고, 감염환자 진단, 격리·치료 및 생활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면 예산편성 당시 예측불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예비비의 본질상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 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으로 6,50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이 차후에 발생할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규모를 예측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방접종 인프라 지원소요 및 감염환자 대응 예산도 일정부분은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추경안 1조 1,000억원 중 사용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예측가능한 예산소요는 가급적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용목적만 확정된 상태로 구체적인 소요가 예측불가능한 금액만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접종) 예방접종 관련 소요는 백신 공급 상황·접종률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큼
(방역) 코로나 확진 규모 등 유행 양상에 따라 유동적 → 사전 예측 어려움

제2장

위원회별 분석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기획재정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 수입은 291조 1,276억 7,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8,158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총지출은 34조 1,256억 8,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2,821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기획재정부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기획재정부	총수입	290,311,789	291,127,676	815,887	0.3
	총지출	32,843,492	34,125,681	1,282,189	3.9

자료: 기획재정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①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납입액을 반영하여 기타재산수입을 8,158억 8,700만원 증액하였고, ② 이번 추경안의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 확대에 국공채발행수입 과목이 9조 9,089억 3,600만원 증액되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주요 세입과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기타재산수입(54-545)	4,307,671	5,123,558	815,887	18.9
공공자금 관리기금	국공채발행수입(81-811)	176,385,467	186,294,403	9,908,936	5.6
합계		180,693,138	191,417,961	10,724,823	5.9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8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① 코로나 방역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예비비에 1조 1,000억원이 증액편성되었고, ② 국고채 발행 확대에 따라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에 1,821억 8,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다.

[기획재정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예비비(3069-300)	8,600,000	9,700,000	1,100,000	12.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8010-803)	3,292,423	3,332,423	40,000	1.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8711-871)	10,897,448	11,087,294	189,846	1.7
공공자금 관리기금	국고채이자상환(1071-780)	20,210,096	20,392,285	182,189	0.9
	일반회계 예탁(8520-851)	93,513,725	104,060,716	10,546,991	11.3
	특별회계 예수이자상환(8712-900)	420,722	419,187	△1,535	△0.4
	기타기금 예탁(9020-900)	50,979,590	51,358,590	379,000	0.7
	기타기금 예수이자상환(9220-920)	559,465	573,205	13,740	2.5
합 계		188,473,469	200,923,700	12,450,231	6.6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가. 예비비 소요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예산을 일반사업으로 전환 검토(기획재정부)

(1) 현 황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자금으로서, 헌법¹⁾ 및 「국가재정법」²⁾에 근거하여 세부사업별 내역을 확정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하는 세출예산 과목이다. 이러한 예비비는 미리 사용목적에 지정하는 목적예비비와 별도의 목적 지정 없이 일반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반예비비로 구분된다.

기획재정부 소관 예비비³⁾ 세부사업은 일반회계의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 총액을 편성하는 사업이다.⁴⁾ 2021년 본예산은 8조 6,000억원이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는 1조 1,000억원이 증액된 9조 7,000억원이 편성되었다.

홍선기 예산분석관(hongsk78@assembly.go.kr, 6788-4625)

- 1)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에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지정할 수 없다.
- 3) 코드: 일반회계 3069-300
- 4) 2021년 본예산 일반예비비: 1조 6,000억원, 목적예비비: 7조원

[예비비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예비비	3,400,000	5,610,000	8,600,000	9,700,000	1,100,000	12.8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 분석의견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무상접종 인프라 지원 및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 지원 등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수립된 소요에 대해 1조 1,000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으나, 예비비 추경안 중 사용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업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21년 3월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추경안의 목적예비비 증액분 1조 1,000억원 중 4,000억원은 전 국민 코로나19 백신 무상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집행할 계획이고, 7,000억원은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한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 지원 등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4,000억원에 대해서는 ① 중앙·3개 권역·18개 광역 및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백신 접종센터의 운영비 및 ② 민간의료 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7,000억원에 대해서는 ① 코로나19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비 및 선별진료소의 방역물자 지원, ② 무증상·경증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및 확진자 검진·치료 유도를 위한 격리치료비 지원, ③ 격리자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으로 사용할 예정임을 제시하고 있다.

[추경을 통한 예비비 증액분 사용계획]

(목적) 예비비	사용 계획
4,000억원	(백신 접종) 2월 26일부터 시작된 전국민 무상예방 접종을 신속·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 - 예방접종의 접근성·편의 제고를 위해 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 설치·운영비* 및 민간 의료기관 시행비** 등 지원 * (중앙) 중앙의료원, (권역) 3개(중부, 영남, 호남), (지역) 광역18개, 기초232개 ** 국고-건강보험공단 부담
7,000억원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대응해 감염환자 진단·격리·치료, 생활지원 등을 집중지원 <코로나19 방역대응 추가 지원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단) 유증상자 진단검사비 확충, 선별진료소(약 620개)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 지원 ○(격리·치료) 무증상·경증확진자 생활치료센터 운영, 확진자 검진·치료 유도를 위한 격리치료비 지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파견의료인력 수당 지급 등 ○(생활지원 등) 격리자 생계지원을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 </div>

자료: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기획재정부, 2021. 3.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5)에 따르면,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예비비 1조 1,000억원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예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일반예산에 새롭게 사업을 신설하든지 기존 사업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편성하는 것이 「국가재정법」 제22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방역, 백신 예방접종 관련 소요는 코로나 확

5)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 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산 추이(유행 양상) 등에 따른 변동성이 커서 일반 예산사업으로 편성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복지부·질병청이 추계한 개략적인 소요를 근거로 예비비에 계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그러나 그 소요되는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용이하지 않더라도, 예방접종 인프라 지원대상(중앙·권역·지역별 접종센터 및 민간의료 기관)과 범위(설치·운영비 및 시행비)가 확정되어 있고, 감염환자 진단, 격리·치료 및 생활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가 정해져 있다면 예산편성 당시 예측불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예비비의 본질상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서 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으로 6,500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이 차후에 발생할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규모를 예측하여 일반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방접종 인프라 지원소요 및 감염환자 대응 예산도 일정부분은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추경안 1조 1,000억원 중 사용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예측가능한 예산소요는 가급적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사용목적만 확정된 상태로 구체적인 소요가 예측불가능한 금액만 예비비로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6) (집중) 예방접종 관련 소요는 백신 공급 상황·접종률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큼
(방역) 코로나 확진 규모 등 유행 양상에 따라 유동적 → 사전 예측 어려움

나. 공공자금관리기금 신규발행 국고채 이자상환 적정성 검토 필요(기획재정부)

(1) 현황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¹⁾은 국고채 발행에 따른 국고채 이자 상환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당초 계획액은 20조 2,100억 9,6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국고채 발행을 9.9조원 증액하면서 이에 대한 이자액이 반영되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1,821억 8,900만원이 증액된 20조 3,922억 8,500만원으로 변경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고채이자상환 2021년도 기금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당초	수정	당초(A)	변경안(B)	(B-A)	(B-A)/A
국고채이자상환	18,905,575	17,755,439	20,210,096	20,392,285	182,189	0.9

자료: 기획재정부

(2) 분석의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신규발행 국고채 이자 지급기간 설정 및 이자 금리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수입측면에서 국고채 신규발행 수입이 9.9조원 증가하고, 기금예수금은 1.1조원 증가하며, 특별회계예수금은 0.1조원 감소할 것으로 계획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10.9조원 중 일반회계로 10.5조원을 예탁하고 기타기금으로 0.4조원을 예탁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출인 일반회계로 예탁금, 기타기금으로 예탁금 변동분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예탁이자, 기타기금으로부터 예탁이자를 수입으로 받게 된다. 반대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수입인 국공채수입, 기금예수금, 특별회계예수금의 변동분에 따른 이자를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지출로 상환해야 한다.

이강구 예산분석관(klee@assembly.go.kr, 6788-4626)

1) 코드: 공공자금관리기금 1071-780

따라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예탁이자 수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898억 4,600만 원을, 기타기금으로부터 45억 4,8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계획했다. 이자 수입인 1,943억 9,400만원은 기타기금으로 137억 4,000만원, 특별회계로 △15억 3,500만원 상환하며, 국고채 이자로 1,821억 8,900만원을 상환할 것으로 계획했다.

[2021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 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목명		2021		증감 (B-A)	산식	이자상환
		당초(A)	수정(B)			
수입	국공채수입	176,385,467	186,294,403	9,908,936	$9,908,936 \times 2.4\% \times 0.766 =$	182,189
	기금예수금	17,627,000	18,772,000	1,145,000	$1,145,000 \times 2.4\% \times 0.5 =$	13,740
	특별회계 예수금	8,041,957	7,914,012	△127,945	$\triangle 127,945 \times 2.4\% \times 0.5 =$	△1,535
	소계			10,925,991		194,394
지출	일반회계로 예탁금	93,513,725	104,060,716	10,546,991	$10,546,991 \times 2.4\% \times 0.75 =$	189,846
	기타기금으로 예탁금	50,979,590	51,358,590	379,000	$379,000 \times 2.4\% \times 0.5 =$	4,548
	소계			10,925,991		194,394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공공자금관리기금 변경안의 산식에서 국고채 표면금리와 이자지급기간을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이자지급기간과 관련하여, 기금 및 특별회계의 예수·예탁금에 적용된 이자는 연간 고르게 예수 및 예탁된다고 가정하여 이자지급기간을 평균 6개월(0.5)로 적용하였다. 이에 반해 일반회계 예탁금에 대한 예탁이자 수입은 기간을 평균 9개월(0.75)로 적용하였다. 국고채 이자상환은 평균 9.2개월(0.766)의 기간이 적용되었다. 이는 추경안 편성에 따라 추가로 신규 발행되는 국고채는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바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주로 상반기에 발행될 것으로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계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이자지급기간의 차등 적용이 적정한 것인지 국회심의과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자산출에 적용된 금리는 2021년 본예산 편성 때 적용되었던 2.4%가 적용되었다. 2019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각 만기물별 국고채의 시장금리 추이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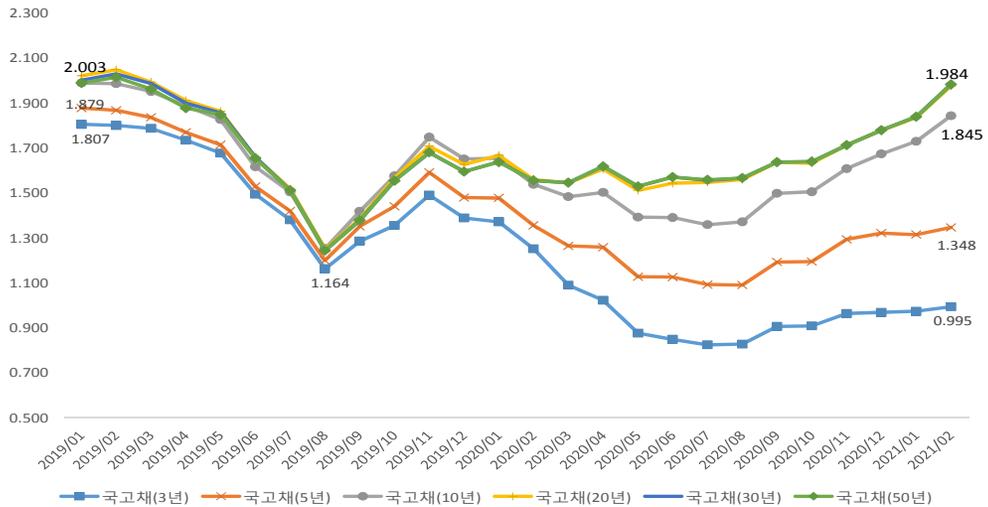
[2019.1.~2021.2. 만기물별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

(단위: %)

구분	2019.1.	2019.7.	2020.1.	2020.7.	2020.12.	2021.1.	2021.2.
3년만기 국고채	1.807	1.382	1.373	0.826	0.970	0.975	0.995
5년만기 국고채	1.879	1.421	1.479	1.094	1.323	1.316	1.348
10년만기 국고채	1.991	1.506	1.656	1.360	1.675	1.731	1.845
20년만기 국고채	2.023	1.520	1.669	1.549	1.780	1.838	1.978
30년만기 국고채	2.003	1.514	1.640	1.558	1.781	1.841	1.985
50년만기 국고채	1.991	1.513	1.639	1.560	1.781	1.841	1.984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19.1.~2021.2. 만기물별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국고채 시장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장기물 금리와 단기물 금리의 차이가 최근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기준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 및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등 장기 국고채 이자금리의 상방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편성으로 증가되는 국고채 신규발행을 단기물 위주로 발행할 경우에는 이자상환 규모가 크게 증가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국고채 장기물 발행 시 장기 국고채 금리 상방요인이 국채발행 표면금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는 6조 682억 4,600만원 수준이다. 또한 총지출은 76조 6,290억 6,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645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교육부	총수입	6,068,246	6,068,246	0	0.0
	총지출	76,464,481	76,629,065	164,584	0.2

자료: 교육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교육부

교육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5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 4개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① 코로나19 재확산 및 등교수업 확대 실시에 대비하여 학교방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490억 1,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② 취약계층 초·중학생 및 대학생에게 온라인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라인 튜터 등 2개 사업에 905억 7,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③ 학부모의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대학생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에 250억원이 증액편성되었다.

[교육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온라인 튜터(1607-300)	0	48,720	48,720	순증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 (1607-301)	0	38,000	38,000	순증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 지원(1607-302)	0	11,012	11,012	순증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 개발 지원(2232-322)	0	41,852	41,852	순증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2645-300)	3,994,569	4,019,569	25,000	0.6
합 계		3,994,569	4,159,153	164,584	4.1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가.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의 사업계획 보완 필요(교육부)

(1) 현황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사업¹⁾은 감염병 취약계층인 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학교(급)에 방역 등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10억 1,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사업	0	0	0	11,012	11,012	순증

자료: 교육부

추경안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인력 3,445명이 190일 동안 일일 3시간 근무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110억 1,200만원을 2021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동 사업은 지자체(시·도교육청) 경상보조사업으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한 총 사업비는 275억 3,000만원이며 국고보조율은 40%이다. 보조인력 3,445명은 특수학교(187교) 1교당 2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중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3,071교)에 학급당 1명 배치한다는 계획이다.²⁾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067-302

2) 2020년 4월 기준 특수학교는 182개교(2021년 5개 신설하여 2021년 현재 187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8,523교 11,661개실이다.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사업 예산 산출 내역]

구분	내용
사업기간	2021년 한시사업
사업추진방식	지자체(시·도교육청) 경상보조, 국고보조율 40%
산출내역	<p>11,012백만원 = 3,445명* × 190일** × 14,020원*** × 3시간 × 40% (국고보조율)</p> <p>* 특수학교(187교) 1교당 2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중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3,071교)에 학급당 1명 배치</p> <p>** 연간 수업일수</p> <p>*** 장애인 활동보조인력 지원단가(2021년, 시간당)</p>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은 의무무상교육이므로 국립학교의 경우 국가가 보조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사립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지원한다.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특수교육보조원(공무직),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으로 2020년 4월 현재 특수학교에 4,856명,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8,590명이 배치되어 있다.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 현황]

구분	특수학교(182교)	특수학급(11,661개)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수	4,856명	8,590명
	학교당 26.7명	학교당 1.0명, 학급당 0.74명
	학급당 0.98명	(미배치 학급: 3,071개)

자료: 교육부(특수교육통계, 2020. 4. 기준)

(단위: 교, 실, 명)

설립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국립	5	166	862	40	46	253
공립	87	2,817	14,940	8,271	11,351	51,204
사립	90	1,985	10,497	212	264	1,287
총 계	182	4,968	26,299	8,523	11,661	52,744

주: 국립특수학교(5교): 서울맹학교, 서울농학교, 한국선진학교, 한국우진학교, 한국경진학교

자료: 교육부(특수교육통계, 2020. 4. 기준)

교육부는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의 질 저하, 퇴행문제, 학부모 돌봄 피로도 등 현장 어려움을 고려하여 특수학교(급) 등교수업 원칙³⁾이 적용되면서 방역 등을 지원하는 보조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일반학교 특수교실(3,071교)의 경우 더욱 보조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187교⁴⁾)의 경우 학교당 2인을 추가로 배치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중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학급당 1명 배치하기 위한 추경안이 편성되었다.

(2) 분석의견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교육청 추경편성 일정으로 인한 집행지연 우려, 수요조사 미흡, 타 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집행부진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① 특수교육 보조인력은 2021년 1학기에 신속하게 지원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 사업은 지자체(시·도교육청) 경상보조방식으로 추진되며 시·도교육청이 총사업비의 60%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시·도교육청의 추경 확정 시점에 따라 집행시기가 달라진다. 즉, 시·도교육청 추경 편성은 교육청별로 상황에 따라 시작 시기가 상이하지만 통상 2개월 내외가 소요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수요조사,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채용에도 통상 1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월에 추경안이 의결되더라도 6월 이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1년 1학기에 특수교육 보조인력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동 사업의 예산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동 사업은 시·도교육청의 수요에 따라 배분되므로 시·도교육청의 수요조사

3)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2021.1.28.)」, 거리두기 2.5단계까지, 3단계 시에도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1:1 또는 1:2 대면교육 제공

4) 2021. 3월, 5교 신설

를 기반으로 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나, 교육부는 2020년 특수교육통계를 기준으로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2021.1.28.)」에 따르면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수업이 원칙이며 3단계 시에도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1:1 또는 1:2 대면교육을 제공해야 하므로, 시·도교육청은 2021년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대한 보조인력을 추가로 배치했을 가능성이 있다.⁵⁾

따라서 시·도교육청의 2021년 현재 특수교육 보조인력 배치현황 및 시·도교육청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③ 교육부는 2021년 본예산(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과 추경안에 편성된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서 특수학교 방역인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사업」에 편성된 특수학교 보조인력과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에 편성된 방역인력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즉, 특수학교 보조인력은 보조인력 업무 외에 자재 소독 등 방역 지원,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지도 등 방역 관련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특수학교 방역인력도 발열체크, 소독, 예방수칙 지도, 급식실·특수학급 방역 등을 지원한다.

2021년 등교수업 원칙으로 방역인력 소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두 사업에서 별도로 특수학교 방역업무 관련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부서간 업무 협조 및 인력간 업무 조정 등을 통해 적정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 교육부는 2020년 10월에 학교방역 인력지원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이미 학기가 시작한 이후라서 자체적으로 배치한 시·도교육청은 미신청하였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5개 교육청이 신청하지 않았다.

[2021년 특수학교 보조인력 및 방역인력 지원 계획]

구분	특수학교 보조인력		특수학교 방역인력	
	2021 본예산	2021 추경예산안	2021 본예산	2021 추경예산안
소관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사업명	장애학생 교육지원 사업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	
지원내용	국립의 특수학교 및 부설학교 특수학급 212명 지원	특수학교 당 2명 추가	특수학교 당 3명	특수학교 당 3명
업무	통상 교사의 지 시를 따라 교수 학습 활동, 신변 처리, 급식, 교 내외 활동 및 등 학교 지도 등의 업무를 지원	보조인력 업무 외에 수업과 관련한 학 습 기자재 소독 등 방역 지원,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지도 등 생활지도 담당	발열체크, 소독, 예방수칙 지도, 급 식실·특수학급 방역 등 지원	

자료: 교육부

④ 동 사업의 추경안은 연간수업일수인 190일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나, 추경 확정(필요시 시·도교육청 추경 등) 후 교부가 가능하므로, 실제 지원일수는 190일 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일 근무시간을 최소 필요시간인 3시간으로 편성 하였으나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적정 업무일수와 일일 업무시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1년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에서 등교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특수학교(급) 방
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 사업의 추경 편성을 통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을 추가로 지
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사업준비에 소요되는 시간,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등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의 집행시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 필요(교육부)

(1) 현황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¹⁾은 코로나19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발열체크, 시설소독, 예방수칙 지도, 급식실 방역관리 등 교내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8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	0	0	0	38,000	38,000	순증

자료: 교육부

추경안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2학기에 한시적으로 방역인력을 지원하며, 지자체(시·도교육청) 경상보조사업(국고보조율 20%)으로 총사업비는 1,900억원이며 국고 380억원, 지방비 1,520억원 규모이다.

방역인력 자격은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을 실시하여 채용 시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자이며, 지원내용은 발열체크, 시설소독, 예방수칙 지도, 급식실 방역관리 등 교내 방역활동 지원이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07-301

[학교 방역인력 한시지원 사업내용 및 산출 내역]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1년 한시사업(2학기)
사업추진방식	지자체(시·도교육청) 경상보조, 국고보조율 20% 총사업비 1,900억원 중 국고 380억원, 지방비 1,520억원
지원대상	전국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산출내역	50,000명* × 4만원** × 95일*** × 20% = 38,000백만원 * 2021년 2학기 방역인력 ** 시간당 10,000원, 1일 4시간 근무 *** 2학기 수업일수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21년 1학기에 필요한 방역인력(54,000명)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30%)과 시·도교육청 자체재원(70%)으로 조달하였으며, 동 추경안은 2021년 2학기에 필요한 방역인력(50,000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국고(20%)와 시·도교육청 자체재원(80%)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2021년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 예산 현황]

구 분	2021	
	1학기	2학기
사업대상	전국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용규모	54,000명	50,000명
단가	시간당 10,000원	
지원일수	학기별 95일, 1일 4시간	
예산	총 1,899억원 - 교육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30%): 567억원 - 시·도교육청(70%): 1,322억원	총 1,900억원 - 국고(20%): 일반회계(380억원) - 시·도교육청(80%): 1,520억원

자료: 교육부

(2) 분석의견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은 2021년 2학기(9~12월) 동안 지원할 학교 방역인력을 현재 확정하는 것이므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향후 코로나19 상황, 적정 수준의 학교 방역인력 규모,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21년 1학기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총사업비의 30%)을 2021년 2월에 교부하였다. 한편 추경안에 편성된 학교 방역인력 지원 사업은 2021년 2학기 방역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2021년 2학기 방역수요를 1학기 수요에 기반으로 50,000명으로 추산하였다.

그러나 학교 방역수요는 코로나19 진행 상황, 방역 정책, 백신 접종 등에 따라 가변적이다. 예를 들어, 2020년과 2021년 수요를 비교해보더라도 2020년은 등교중단 등으로 학기별 47일 방역지원을 요구하였으나, 2021년은 등교원칙 적용으로 학기별 95일의 방역지원을 요구하여 수요에 변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방역인력 지원 추진 현황]

구분	2020		2021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사업대상	전국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전국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운용규모	39,182명	47,473명	54,000명	50,000명
지원일수	학기별 47일, 1일 3.5시간		학기별 95일, 1일 4시간	
예산 (재원)	총 705.4억원 - 교육부 재난 안전관리특별 교부금(30%): 211.6억원 - 시·도교육청 (70%): 493.8 억원	총사업비 미정 - 교육부: 1만명 에 대해 국고 195.8억원(5개 세부사업에서 이용) - 시·도교육청: 나머지 소요 예산 부담	총 1,899억원 - 교육부 재난안전 관리특별교부금 (30%): 567억원 - 시·도교육청 (70%): 1,322억원	총 1,900억원 - 국고(20%): 일반 회계(380억원) - 시·도교육청 (80%): 1,520억원

자료: 교육부

2021년 2학기 학교 방역인력 규모에 대해 현재 확정해 두는 것 보다는 2021년 하반기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시·도교육청 수요조사를 거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격차, 돌봄 문제 등을 고려하여 등교수업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학교현장에 대한 방역이 철저히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과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21년 학교방역인력 지원 사업은 집행시기,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지방교육재정 여건(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시·도교육청 예비비,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예산 편성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의 지원효과성 제고 필요(교육부)

(1) 현황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¹⁾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한 가구 대학생의 안정적 학업 수행을 위해 해당 가구의 대학생を対象으로 근로장학생을 선발·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250억원이 편성되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001,776	3,994,939	3,994,569	4,019,569	25,000	0.6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	0	0	0	25,000	25,000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3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 지원은 2021년 한시사업으로 운영되며,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대학생 중 성적이 C⁰수준 이상인 자가 지원대상이다. 또한 코로나19 등 긴급 경제 사정 곤란자²⁾는 경제 상황이 학자금 지원구간에 즉시 반영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득수준(학자금 지원구간)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보면, 10,000명에 대해 월 평균 50만원을 5개월 지원한다는 것인데, 지원대상(10,000명)은 2020년 학부모가 실·폐업한 대학생 5만명(추정)의 20%를 선발·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월 평균 장학금은 교외 근로단가(시간당 11,150원)에 학업 병행을 위한 월 평균 근로시간(45시간)을 적용하였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645-300(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의 내역사업

2)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정 곤란자 인정기준 예시)

①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

(확인가능 자료)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등

② 기타 피해가 확인되어 긴급한 경제사정 곤란자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 사업내용 및 산출 내역]

구 분	내 용
사업기간	2021년 한시사업(1학기, 5개월) * 지원 대상 확인, 체계 및 시스템 구축 이후 사업 운영 가능
재원	국고 100%
지원대상	학부모가 실직 또는 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대학생 (성적) C ^o 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무관
장학금 시급단가	교내근로: 9,000원 / 교외근로: 11,150원 ※ 대응 투자는 대학 자율 ※ 선발된 근로장학생의 근로시간 실적에 따라 장학금 지급
근로시간	1일, 1주, 1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적용 ※ (1일) 8시간, (1주) 학기 중 20시간 / 방학 중 40시간, (1학기) 520시간
선발방식	지원 대상을 대학과 공유하여 지원 기간 내 우선 선발
산출내역	250억원 = 10,000명*×월 평균 50만원**×5개월*** * 2020년 학부모가 실·폐업한 대학생 5만명(추정)의 20% 선발·지원 추정 ** 교외 근로단가(11,150원) × 학업 병행을 위한 월 평균 근로시간(45시간) *** 1학기(4월~8월)

자료: 교육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안)」(2021. 2.)에 따르면,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에 대해서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³⁾ 한편 동 추경안에 편성된 특별장학금은 소득구간에 상관없이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에 대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위기가구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추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 코로나19 대응 장학금 추가지원 〉

- (지원 대상) 학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지원 금액) 등록금 범위 내에서 등록금의 10% 추가 지원
- (지원 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II유형으로 지원하고, 미신청자는 대학별 교내외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등록금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2) 분석의견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 지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지원규모가 정해지므로, 근로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근로기관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지원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은 월 50만원(월 45시간 근무)을 5개월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대학생이 받는 장학금은 매월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어, 월 17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월 15.3(교내)~19.0만원(교외)이 지급되며, 월 45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5(교내)~50.2만원(교외)이 지급되며, 월 75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월 67.5(교내)~83.6만원(교외)이 지급된다.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 월 지원수준]

(단위: 만원)

구 분	월 17시간	월 33시간	월 45시간	월 75시간
교내(시간당 9,000원)	15.3	29.7	40.5	67.5
교외(시간당 11,150원)	19.0	36.8	50.2	83.6

자료: 교육부

그러나 2020년 1학기 근로장학생 근로시간 분포를 보면, 월 5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월 33시간 미만 근무 비중이 38.8%로 나타나는 등 특별장학금 지원대상자 전체가 예산편성 단가(월 50만원) 만큼 장학금을 지원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0.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근로시간 분포]

(단위: 명, %)

학기당 시간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450 미만	450 이상	합계
월 시간	17 미만	17 이상 33 미만	33 이상 50 미만	50 이상 67 미만	67 이상 75 미만	75 이상	
인원수	6,502	13,741	14,113	10,099	3,847	3,843	52,145
비율	12.5	26.4	27.1	19.4	7.4	7.4	100.0

자료: 교육부

또한 동 사업은 근로를 전제로 지원되는 근로장학금이므로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1학기에는 지원 인원이 저조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의 확산 추세에 따라 근로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존 근로장학사업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근로장학생 본인의 안전을 위해 근로를 중단하거나 근로기관이 방역관리를 위해 출근 최소화 조치를 취하는 등의 사유로 선발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학사업의 신청자 중 선발 비중은 2018년 21%, 2019년 20%에서 2020년 18%로 하락하였다. 다만, 교육부는 근로장학금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2020년 2학기부터는 근로장학생의 재택근무 허용⁴⁾, 교내·교외 근로간의 예산 집행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고, 그 결과 2020년 2학기에는 지원 인원이 전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청 및 지원 현황: 2018~2020년]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1학기	2학기	합계	1학기	2학기	합계	1학기	2학기	합계
신청인원	304,155	291,968	596,123	302,782	312,809	615,591	306,640	292,741	599,381
지원인원	61,534	60,764	122,298	61,624	58,026	119,650	52,145	58,479	110,624
선발률	20%	21%	21%	20%	19%	19%	17%	20%	18%

자료: 교육부, 국가근로장학사업(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 제외)

4) 근로기관의 감염병 예방 방침 및 근로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관의 요청에 따라 허용(일일 근로일지 작성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은 근로를 전제로 지원되고 근로시간에 따라 장학금 수준이 달라진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참여할 수 있는 근로기관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장학금의 지원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코로나 위기가구 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은 2020년 2학기 기준 학부모가 실·폐업한 대학생 5만여명 중 1만명에 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실직, 휴·폐업 가구의 대학생으로 성적 C⁰학점(70점/100점)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우선선발 권장대상은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가구, 국가유공자 등⁵⁾이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긴급 경제 사정 곤란자는 경제상황이 학자금 지원 구간에 즉시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장학생 선발 시 학자금 지원구간⁶⁾을 고려하지 않는다.

[학부모 실·폐업 대학生の 소득구간별 추정]

(단위: 만명, %, 명)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9구간	10구간	미신청	합계
대학생(a)	10.8	13.5	10.7	11.2	10.8	5.2	14.8	8.8	18.	17.7	16.1	77.0	215.3
실폐업률(b) ¹⁾	1.3	1.4	2.7	2.8	2.9	3.0	2.9	2.9	2.8	2.9	2.6	2.5	-
지원대상(a×b)	1,416	1,873	2,890	3,159	3,121	1,561	4,359	2,591	5,029	5,060	4,271	19,343	54,673

주: 1) 2020.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부모가 폐업 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 비중
자료: 교육부

5)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중증인자, 학업·육아 병행학생, 파란사다리 및 글로벌 현장실습 장학생, 희망사다리 장학생(I 유형)

6)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경계값(월 소득인정액)	-	146.3	243.8	341.3	438.9	487.6	633.9	731.4	975.3

기존 국가근로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대상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선별이 대부분 소득구간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1순위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2순위는 학자금 지원 5~6구간, 3순위는 학자금 지원 7~8구간 등이다.

[국가근로장학금 지원대상]

1순위	2순위	3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자금 지원 5~6구간	학자금 지원 7~8구간

주: 긴급한 가계 곤란 학생, 취업연계봉사(장애·외국인 유학생) 유형, 농어촌 근로학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 배제 가능

자료: 교육부

한편 특별장학금은 경제 상황이 학자금 지원구간에 즉시 반영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득적용이 배제되므로 우선선발 권장대상인 장애인, 다자녀가구, 다문화탈북가구, 국가유공자 등으로 우선순위를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장학금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이중 1만명을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우선선발 권장대상으로 충분히 선별할 수 없을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할지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특별장학금이 코로나19로 인한 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신설되어 소득적용을 배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를 선별하여 지원할 경우 코로나19 위기가구의 대학생 중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특별장학금의 지원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수립하여 코로나19 위기가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향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 온라인 튜터 사업계획 보완 필요(교육부)

(1) 현황

온라인 튜터 사업¹⁾은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대상 학습지도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87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온라인 튜터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온라인 튜터 사업	0	0	0	48,720	48,720	순증

자료: 교육부

추경안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업기간은 2021.5월 ~ 2021.10월(채용기간 6개월 기준)이며 인건비를 지자체 경상보조(국고 100%)로 지원하며 인건비 외 다른 부대비용은 시·도교육청 자체재원 또는 학교운영비로 조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튜터(멘토)의 자격요건은 교원자격 소지자, 예비교원 등 대학생, 상담자격 소지자 등 원격·대면 학습지도·상담 등 멘토링이 가능한 자(청년우대)로 4천명을 채용한다. 지원학생은 초등 4~6학년 및 중학교 학생 중 기초학력 보충지도가 필요한 학생이며 튜터 1명당 학생 4명으로 운영한다. 지원학생 대상 온라인 일대일 또는 소그룹 학습지도·상담을 실시하고 오프라인 지도 등을 병행한다.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에듀테크 멘토링과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는 사업이며, 멘토 당 학생수가 온라인 튜터 사업의 경우 4명인 반면,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은 20명 내외로 운영하였다. 또한 온라인 튜터 사업은 초등 4~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²⁾으로 하는 반면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은 초등학생 위주로 운영하였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1607-300

2) 교육부는 2021년 초등 1~3학년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기간제교원을 한시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 튜터 사업은 초등 4~6학년, 중학생을 지원한다.

[온라인 튜터 사업과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멘토링 비교]

구 분	온라인 튜터 (2021년 제1회 추경안)	에듀테크 멘토링 (2020년 제3회 추경)
사업목적· 배경	코로나19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초등학생(4~6학년), 중학생 대상 학습 지도 및 상담 등 지원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 지원을 기본으로 오프라인 병행 지원	- ‘코로나19’ 이후 원격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다양한 학습경험 제공 및 교육격차 예방 필요 - 교육에 기술을 접목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효과 극대화 및 개별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필요
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청년우대)	-
사업기간 (채용기간)	2021.5월~2021.10월(채용기간 6개월) ※ 추경일정 및 학교별 채용사기에 따라 변동	2020.9월~2020.12월(채용기간 4개월)
예산(국고)	487.2억원 4,000명×203만원(주40시간)×6개월 ※ 주40시간 기준, 4대보험료 포함	156.8억원 멘토 2,000명×196만원×4개월 ※ 주40시간 기준, 4대보험료 포함
멘토(튜터)	4천명	2천명(2020년 실적 2,048명)
멘토(튜터) 자격	교원자격소지자, 상담관련자격소지자, 예비교원 등 대학생(청년우대)	멘토링 분야 전공자(교·사대 재학생 포함) 또는 관련 자격 소지자로 에듀테크 활용 원격·대면 멘토링 가능자
학생 지원대상	초4~6, 중학생	초등중심(2020년 지원 실적: 초 약 1,200교/중 약 120교)
학생(멘티)에 대한 지원내용	멘토 1명당 멘티 4명 - 온라인 학습·정서상담 등 멘토링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멘토링 병행, 수업 등 지원	멘토 1명당 멘티 20명 내외 - 에듀테크 기기를 활용한 학습 관리 및 멘토링, 에듀테크 기기 사용법 및 콘텐츠 이용법 교육 - 멘티의 취약 분야 추가 지도, 학습 내용 관련 질문 답변 및 상담 - 멘티의 학습 및 평가 관련 데이터 관리 - 대면과 원격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실시

자료: 교육부

(2) 분석의견

온라인 튜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온라인 튜터 사업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중심으로 기초학력보완을 목적으로 하므로 기 추진한 사업(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의 취약계층 학생 지원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온라인 튜터 사업의 지원학생을 16,000명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취약계층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급여수급자(초4~6학년생, 중학생, 2020. 12 기준) 147,932명을 모수로 하여 10.8%를 지원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비율(중3)이 2018년 11.1%, 2019년 11.8%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급여수급자 대비 지원 대상 비율은 10% 이상으로 산정하였다.

다만, 교육부는 동 사업의 주 목적이 기초학력 저하 예방 및 해소에 있는 만큼 학교에서 지원학생 선정 시, 교육급여수급자에 한정하지 않고 기초학력 보충지도 등 집중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튜터 사업과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의 지원대상 비교]

구 분	온라인 튜터 (2021년 제1회 추경안)	에듀테크 멘토링 (2020년 제3회 추경)
지원대상	초등 4~6학년,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대상 학년의 교육급여수급자(A)	14만 7,932명 (초등 4~6학년, 중학교)	20만 3,182명 (초등학교, 중학교)
지원학생(B)	16,000명	29,353명(2020. 9월 조사기준)
B/A	10.8%	14.4%

주: 교육급여수급자는 2020. 12월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021년 온라인 튜터 사업의 지원학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학생과 학부모의 기초학력 지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2020년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 계획 시 교육급여수급자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산출한 것은

아니지만, 위 표와 같이 시·도교육청 조사 당시(2020. 9월) 지원학생 수를 교육급여 수급자와 비교한 경우 지원학생의 비율이 14.4%로 3.6%p 높게 나오고 있으므로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 추진실적을 참고하여 지원대상 학생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 지원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멘토와 멘티를 설정하여 기초학력보완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사업이므로,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2020년 지원학생 현황을 학년별 등 다양하게 검토하여 2021년 추경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부는 온라인 튜터에 대한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기 추진한 유사사업(에듀테크 멘토링)의 추진 실적을 검토하여 온라인 튜터 사업계획에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튜터 사업은 추진 의사가 있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만 비용부담, 업무부담 등으로 수요가 크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시·도교육청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추경 예산 규모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모든 시·도교육청이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물량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어 사업추진을 원하는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예산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2021년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기초학력 지원 방향 및 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어 지역별 추가적인 인력 수요 여건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판단하는 요인 이외에도 인건비는 국고로 지원되지만 다른 부대비용은 시·도교육청 자체 재원 또는 학교운영비로 조달되어야 하는 점과 2021년에도 코로나19에 따른 수업 및 방역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사업 추진 여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부는 멘토 4,000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시·도교육청의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지원대상자 규모를 산정한 것은 아니므로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안에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의 멘토로 4,000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국회 심사에서 멘토 채용의 어려움을 우려해 2,000명으로 감액 의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멘토에 대한 시·도교육청

의 수요 파악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의 멘토를 2,000명으로 축소하여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조사에서부터 채용까지 2~3개월이 소요³⁾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4,000명이 적정 수준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020년 취약계층 학생 에듀테크 멘토링 추진 실적]

교육청	참여학교(교)	운영 기간
경기	709	2020. 9월 ~ 2021. 1월
서울	300	2020. 9월 ~ 2020. 12월
인천	26	2020. 9월 ~ 2020. 12월
대전	45	2020. 9월 ~ 2020. 12월
대구	149	2020. 10월 ~ 2021. 1월
부산	45	2020. 10월 ~ 2020. 12월
광주	6	2020. 10월 ~ 2021. 2월
울산	1	2020. 9월 ~ 2020. 12월
세종	7	2020. 9월 ~ 2021. 1월
충남	5	2020. 9월 ~ 2021. 2월
충북	11	2020. 9월 ~ 2020. 12월
전남	12	2020. 10월 ~ 2021. 1월
경남	4	2020. 9월 ~ 2021. 1월
경북	2	2020. 9월 ~ 2021. 1월

자료: 교육부

한편, 교육부는 온라인 튜터 사업의 경우 멘토 당 학생수를 4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⁴⁾을 참고한 것이다. 그러나 2020년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이 멘토 당 학생수를 평균 14명으로 운영하였으므로 기존 사업의 멘토 당 학생수 운영방식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멘토 당 학생수를 결정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3) 2020년 추경이 7.3일 확정되었으며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이 9~10월에 시작되었으므로 사업준비 기간은 2~3개월 소요되었다.

4) [서울] 'KT랜선야학'(1대3 대학생 온라인지도), [대구] 온-오프라인 스터디카페(담임교사가 1대5 지도), [경기] 겨울방학 기초학력 멘토링(예비교원 1대1지도)

[2020년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 운영 현황]

(단위: 교, 명)

구 분	학교급	학교수	멘토강사 수	멘티학생 수
플랫폼형	초등	1,066	1,760	24,124
콘텐츠형	초등	130	154	2,801
	중등	126	134	2,428
합 계		1,322	2,048	29,353

자료: 교육부

온라인 튜터 사업의 경우 멘토링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는 에듀테크 멘토링 사업이 2020년 제3회 추경에 편성되어 추진되었으므로 기존 사업의 추진 실적 중 유의미한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에 면밀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의 임금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 필요 등(교육부)

(1) 현 황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¹⁾은 대학 비대면 수업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수업자료 탑재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18억 5,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0	0	0	41,852	41,852	순증

자료: 교육부

추경 편성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청년(만 19세~34세) 중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이 가능한 인력 1,000명을 채용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6개월 간 채용하며 월 임금은 233만원 수준으로 이는 시간당 11,150원(교외근로장학금 지원단가)에 소정근로시간(40시간)과 유급주휴(8시간)를 합할 경우 한달 평균 209시간 근무하는 임금수준이다. 주요업무 내용은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원격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 지원,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매니저, 온라인 원격수업 튜터, 원격수업관련 기술지원 등이다.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34)

1) 코드: 일반회계 2232-322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산출근거	3,000명 × 258만원* × 6개월 × 90% = 41,852백만원 * 2,583,426원 = 11,150원/시간×209시간 + 4대보험 10.86%
지원규모	대학(원) 229개교 및 전문대학 125개교 * 비대면 수업 활용도가 높은 대학 및 학과를 선별하여 지원
지원인원	3,000명(2020년 비대면 수업 관련 대학 인력 수요 반영)
지원수준	시간당 11,150원 (월 233만원 수령) * 교외근로장학금 지원 단가
사업기간/ 지원기간	2021년 단년도/6개월(2021년 1학기 3개월, 2학기 3개월)
지원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유급휴 * 8시간을 합할 경우 한달평균 4.35주 ※ 4.35주 × 48시간 = 209시간 *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 보장
선발 자격 요건	청년(만19세~34세) 중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이 가능한 인력
주요업무 내용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원격교육 교수-학습 모형·교육과정 개발 지원 ·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매니저 · 온라인 원격수업 튜터 · 원격수업 관련 기술지원
지원 방법	대학별 사업계획서 검토 후 승인

자료: 교육부

(2) 분석의견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과 「온라인 튜터 사업」은 청년 대상 일자리 등의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임금수준이 다르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임금수준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21년 제1회 추경안에 청년지원 일자리사업으로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과 온라인 튜터 사업을 편성하였다. 두 사업 모두 청년층을 주로 지원하고 각각 콘텐츠 분야, 기초학력지원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자를 지원하는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수준에 차이가 있다.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의 경우 임금수준이 월 233만원인 반면, 온라인 튜터 사업의 경우 보다 낮은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2만원 수준이다.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과 온라인 튜터 사업 비교]

구분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 (2021년 추경안)	온라인 튜터 사업 (2021년 추경안)	강의제작 운영 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2020년 제3회 추경)
지원대상	청년(만19세~34세) 3,000명	청년 등 4,000명	청년 4,200명
자격요건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이 가능한 인력	교원자격소지자, 상담관련자격소지자, 예비교원 등 대학생(청년우대)	강의 콘텐츠 제작, 수업 자료 탑재, 실시간 화상 강의 지원 가능자
1인당 지원단가	- 임금: 월 233만원=시간당 11,150원(교외근로장학금 지원 단가) × 209시간(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의 합) - 사회보험: (근로자부담) 월 25만원	- 임금: 월 182만원=시간당 8,720원(21최저임금) × 209시간(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의 합) - 사회보험: (근로자부담) 월 21만원	- 임금: 월 180만원=시간당 8,590원(20최저임금) × 209시간(소정근로시간과 유급주휴시간의 합) - 사회보험: (근로자부담) 월 17만원, (사업주부담) 월 17만원

자료: 교육부

한편,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추진된 「강의제작 운영 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사업」의 경우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과 유사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으로 지원되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전문성을 갖춘 자를 채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지만, 두 사업의 업무내용은 화상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등으로 유사하다.

명확한 근거가 없이 연령, 경력, 자격 등이 유사한 청년층에 대해서 임금수준을 달리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또한 임금수준과 자격이 맞지 않을 경우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 사업의 임금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19 이후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설립 등 온라인수업 콘텐츠 제작 여건이 개선되었으므로, 2021년 대학 온라인수업 여건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대학 비대면 수업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은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대학(원) 229개교 및 전문대학 125개교 대상으로 하여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직접일자리 사업이다. 주요 업무는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원격교육 교수-학습 모형 개발 지원,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 매니저, 온라인 원격수업 튜터, 원격수업관련 기술지원 등이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동 사업과 유사한 강의제작 운영 지원 온라인 원격 도우미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교수 강의 자료 제작은 교수 및 대학이 우선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원격교육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지정 운영 사업²⁾이 2020년 추경과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10개소가 운영 중이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개발 사업을 확대³⁾하여 대학 강의에 콘텐츠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0년에 비해 수업콘텐츠 제작 여건이 개선되었다.

또한 교육부의 「2019년도 고등교육 이러닝(원격강좌) 현황 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조사 참여 대학 293개 대학 중 230대학이 이러닝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30개 대학의 전담조직수는 263개이며 조직당 직원수는 평균 5명으로 나타났다.

2) 센터는 스튜디오 등 구축 및 운영, 공통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및 운영, 공동활용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및 컨설팅 지원 등

3) 2019년 결산 114억원, 2020년 본예산 135억원, 2020년 추경 증액 29억원, 2021년 예산 259억원

[이러닝 전담조직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응답대학 수)	전담 조직 수	인원 수	구분 (응답대학 수)	전담 조직 수	인원 수
사립(196)	220	1,123	일반대학(158)	179	1,069
국립(31)	39	193	전문대학(64)	75	234
공립(3)	4	7	대학원대학 등(8)	9	20
합계(230)	263	1,323	합계(230)	263	1,323

자료: 교육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온라인강의 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대학 콘텐츠 제작 여건이 개선되고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이러닝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화상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학의 이러닝 지원 기능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한 후 이를 대학 비대면 수업 콘텐츠 및 자료개발 지원 사업의 예산편성에 면밀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III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은 8조 7,955억 2,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총수입 규모 변동은 없다. 또한 총지출은 17조 6,481억 5,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27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수입	8,795,526	8,795,526	0	0.0
	총지출	17,515,434	17,648,154	132,720	0.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은 AI 학습용 데이터의 추가 구축을 위하여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기금예수금이 975억원 증액되었다.

이미션 예산분석관(misconlee@assembly.go.kr, 6788-46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기금변경안 세입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당초(A)	2021 변경안(B)	증 감	
				(B-A)	(B-A)/A
정보통신 진흥기금	기금예수금(94-943)	460,506	558,006	97,500	21.2

주: 총계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4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 1개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 분야 일 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사업과 다부처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에 1,1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에 186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③ ICT 분야의 창업 촉진을 위하여 ICT창의기업육성 사업에 16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다부처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1138-312)	78,728	93,728	15,000	19.1
	디지털 전환 지원(2137-330)	0	18,600	18,600	순증
정보통신 진흥기금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3161-301)	389,905	487,405	97,500	25.0
방송통신 발전기금	ICT창의기업육성(1139-303)	14,757	16,377	1,620	11.0
합 계		483,390	616,110	132,720	27.5

주: 총계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추경 편성 취지를 고려한 사업 추진 및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현 황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¹⁾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영리기관 등의 디지털 전환²⁾ 인식 제고와 이행 지원을 위해 디지털 전환 기초교육을 제공하며, 컨설팅을 추진하는 내용의 사업이다. 2021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추가경정예산안에 186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디지털 전환 지원	0	0	0	18,600	18,600	순증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³⁾하다는 진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초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으로 동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이미션 예산분석관(mis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2137-330

2)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DI)이란 기업이 디지털 신기술 활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여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일련의 기업 활동을 의미한다.

3) 델 테크놀로지스(Dell Technologies)에서 2021년 2월 발표한 「2020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덱스(Digital Transformation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디지털 성숙도는 2018년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혁신을 아직 시작하지 못한 ‘디지털 후발주자(Digital Laggards)’ 그룹의 비중이 2018년 22%에서 2020년 7%로 급감하였으나, 글로벌 평균(3%)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델 테크놀로지스 공식 기업 블로그)

출연하여 집행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별도의 공고를 통해 교육컨설팅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교육 담당 강사 900명과 컨설팅 담당자 300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은 디지털 전환 교육에 필요한 강사 인건비 등 108억원과 디지털 전환 컨설팅에 필요한 컨설턴트 인건비 등 78억원이 편성되었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추경안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상세내역	산출근거	예산액
① 디지털 전환 교육	900명×6개월×2백만원	10,800
② 디지털 전환 컨설팅	300명×5개월×5.2백만원	7,800
합계		18,600

주: 컨설턴트 인건비 단가는 초·중급 IT컨설턴트(신입 또는 경력직) 채용을 고려하여 IT컨설턴트 평균임금(958만원)의 54% 수준으로 산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2) 분석의견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 사업은 ‘긴급 고용대책’이라는 추경안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코로나19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IT분야 강사나 전문인력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①피해계층 긴급지원금, ②긴급 고용대책, ③백신구입 등 방역대책의 3개 분야로 편성하였다. 이 중 ‘긴급 고용대책’은 최근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피해업종 중심의 고용유지 지원,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지원, 직업훈련·국민취업제도 등 취업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 사업은 ‘긴급 고용대책’ 중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 맞춤형 일자리 발굴 지원 분야에 해당한다. IT분야는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로 정부에서도 청년, 여성,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 교육 지원 사업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인 디지털전환 강사와 컨설턴트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력으로 ‘긴급 고용대책’ 추경을 통한 지원이 시급한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강사는 IT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등 전공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디지털전환 교육을 수료한 자로 제한할 예정이며, 컨설턴트는 관련분야 전공자 및 유경험자 등의 자격요건을 제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교육 강사 및 컨설턴트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안)	추경안
강사	운영기관(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디지털전환 교육을 수료하고,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의 강사로 3개월 이상 활동이 가능하며, 아래 1개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① IT관련학과 졸업자(전문대졸 이상) ② IT관련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 소지자 ③ IT분야 또는 정보화 교육관련 강의 경력 1년 이상인 자 ④ IT관련 교육(160시간 이상)과정 수료자	1인/ 6개월/ 월200만원
컨설턴트	컨설턴트 채용조건 가이드라인(안) ① IT 컨설팅 및 관련분야 유경험자 또는 IT 관련학과 전공자 ② 프로젝트 수행기간 이상의 고용기간 ③ 주 5일 전일 근무 ④ 고용된 컨설턴트의 프로젝트 참여율 최소 70% 이상 ※ 운영기관(컨설팅업체) 자율적으로 채용하되, 채용조건 가이드라인(안) 제공 예정	1인/ 5개월/ 월520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산업분야별 취업자 통계를 살펴보다라도 정보통신업 분야의 2021년 1월 취업자 수는 2020년 4사분기 평균 대비 3,000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243,000명), 숙박음식점업(△117,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50,000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사분기 평균 및 2021년 1월 산업분야별 취업자 통계 현황]

(단위: 천명)

구분	정보통신	보건·사회복지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도매 및 소매업	농업·임업·어업·광업	제조업	기타
2020년 4사분기 평균(A)	838	2,363	2,082	477	3,443	1,455	4,351	11,945
2021년 1월(B)	835	2,120	1,965	427	3,391	1,171	4,401	11,510
B-A	△3	△243	△117	△50	△52	△284	50	△435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http://www.kosis.kr>)

또한, 이번 추경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에는 AI·바이오·중소기업 데이터 구축(0.9만명), IT직무지원(5.5만명) 등을 통해 7만 8,000여개 일자리가 추가될 예정⁴⁾임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디지털 전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IT분야의 전문인력을 디지털 전환 교육 강사와 컨설턴트로 채용할 계획이나, ‘긴급 고용대책’이라는 추경안 편성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여 인력 채용 시 코로나19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IT분야 강사나 전문인력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전환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조속히 수행하고, 수요가 미비할 경우 추가 수요 발굴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은 ①교육과 ②컨설팅으로 사업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①교육 사업은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전환 교육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운영기관에서는 강사 모집, 강사양성 집중훈련, 수요기관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②컨설팅 사업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4) “정부, 2조 투입 일자리 27만개 만든다”, 매일경제, 2021.3.2.

수요처(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기관 등)를 발굴하여 과제 공모에 신청 후 선정이 되면, 과제 1개당 컨설턴트 4명 내외를 신규로 고용하여 팀을 꾸린 후 수요처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순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의 추진 계획]

구분	사업 추진 계획
교육	①운영기관 선정 → ②강사 모집 → ③강사양성 집중훈련 → ④수요기관 모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⑤정산 등 사후관리
컨설팅	①컨설팅 기업 모집·선정(컨설팅 기업에서 수요처 발굴·신청) → ②컨설턴트 채용 → ③컨설팅 제공 → ④정산 등 사후관리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그런데 동 사업은 교육 수요기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교육 횟수는 몇 회 정도로 진행할지 등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초 현재 디지털 전환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3월 중순쯤 도출될 예정이며, 교육 운영기관 등은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수요기관이나 교육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 채용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2020년 6월 국내 기업(1,345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 않거나(603개사, 44.8%) 잘 모르겠다는 응답(330개사, 24.5%)이 69.3%를 차지하였다.⁵⁾ 또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603개사 중 ‘앞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6.8%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한 기업(21.8%)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그 이유로는

5)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은 9.7%에 불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보도자료, 2020.6.15.

6)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은 9.7%에 불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보도자료, 2020.6.15.

‘비즈니스 특성상 필요 없어서(41.3%)’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재정적 여건이 안 돼서(30.9%)’,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24.5%)’ 등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국내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단위: 개사, %)

구분	합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응답수	비중
적극 추진중	131	9.7	6	12.2	125	9.6
일부 추진중	281	20.9	18	36.7	263	20.3
추진하고 있지 않음	603	44.8	12	24.5	591	45.6
잘 모르겠음	330	24.5	13	26.5	317	24.5
합계	1,345	100.0	49	100.0	1,296	100.0

자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은 9.7%에 불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보도자료, 2020.6.15.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나듯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추진하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기업별로 적합한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제공할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사업은 교육 희망기관 등에 대한 기초적인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안이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추경안 심사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조속히 수행하고, 수요가 미비할 경우 추가적인 수요발굴 방안을 마련⁸⁾하는 등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7)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을 적극 추진하는 기업은 9.7%에 불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제공 보도자료, 2020.6.15.

8) 동 사업은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기관 등으로 폭넓게 정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사업이나 ‘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등의 사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어, 지원대상 측면에서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요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

나.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데이터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현 황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으려면 AI가 사물 간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된 대규모의 기계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¹⁾은 이러한 AI 학습용 데이터²⁾를 구축하여 개방형 플랫폼인 ‘AI허브’ 홈페이지³⁾를 통해 공개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등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1년 당초 계획액은 2,925억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975억원이 증액된 3,900억원이 편성되었다.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 2021년도 기금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당초	수정	당초(A)	변경안(B)	(B-A)	(B-A)/A
지능정보산업 인프라조성	76,165	418,786	389,905	487,405	97,500	25.0
지식베이스 구축	39,000	331,500	292,500	390,000	97,500	33.3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은 ①데이터 중심의 인공지능 기술산업 혁신을 통한 글로벌 인공지능 선도국가로 도약, ②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대규모 창출, ③데이터로 야기된 인공지능 산업의 진입장벽 해

이미션 예산분석관(misonlee@assembly.go.kr, 6788-4628)

- 1) 코드: 정보통신진흥기금 3161-301의 내역사업
- 2) 현실 세계에서 인간이 생성하는 정형·비정형의 데이터에 각종 지식과 정보를 라벨링하여 기계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여기서 정형 데이터는 주소록, 인명록 등 이미 DB화 되어 있는 데이터를 말하고, 비정형 데이터는 사람의 음성, 사진, 동영상, 음악 등 DB화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를 말한다.
- 3) AI Hub(<http://www.aihub.or.kr>)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운영 중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등을 지원하는 AI 통합 플랫폼이다.

소 및 대용량 학습용 데이터의 단기간 구축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2017년에 시작하여 2019년까지 총 21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AI 허브 홈페이지를 통해 개방하였고, 2020년에는 당초 계획에 따른 20종과 제3회 추경을 통해 150종을 추가로 구축하였다. 특히, 2020년 추경을 통해 헬스케어, 무인이동체, 농축수산, 국토환경, 안전 등 10개 분야에 150종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한 AI학습용 데이터 구축 현황]

연도	구축데이터	데이터 예시
2017	4개	법률, 특허, 일반상식, 이미지
2018	7개	헬스케어, 관광, 농업, 한국어 음성 등
2019	10개	한영 번역, 사물 이미지, 사람동작 영상 등
2020	170개	도로주행, 랜드마크, 수어영상, CCTV영상 등
합계	191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당초 계획액은 2,925억원으로 음성·자연어, 각종 이미지 데이터, 헬스케어, 교통·물류, 농축수산, 재난·안전·환경, 지역, 자유공모의 8개 분야 총 150종의 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이번 변경안에는 50종의 데이터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97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의 2021년도 당초 계획액 및 변경안 상세내역]

당초	변경안	증감
150종 × 1,950백만원 =292,500백만원	200종 × 1,950백만원 =390,000백만원	+50종 +975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데이터 일자리 효과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클라우드소싱 작업자의 경력경로 개발 등 데이터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식베이스 구축 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든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대규모 창출’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공모 시 일자리 요건⁴⁾을 충족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구축에 시공간 제한 없이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소싱⁵⁾’ 방식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20년 동 사업에 참여한 데이터 구축 인력은 직접고용 7,487명과 클라우드소싱 작업자 3만 1,395명 등 총 3만 8,882명 수준으로 10억원당 117.3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2020년 예산 3,315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제1회 추경안(975억원)을 통해 직접고용 1,855명, 클라우드소싱 작업자 4,875명 등 총 6,73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2020년 일자리 창출 결과를 고려했을 때 달성이 가능한 수치인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데이터 구축 참여 인력 현황]

구분	직접고용	클라우드소싱 작업자	합계
참여인력(명)	7,487	31,395	38,882

주: 2020년 12월말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기업, 협회, 지자체, 비영리기관 등 참여)은 정부지원금 1억원당 최소 2.4명 이상의 인력을 직접채용하여야 하며, 클라우드 소싱 방식을 도입한 데이터 구축 방안 및 총 인건비 대비 클라우드 소싱 인건비 비율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5) 클라우드소싱(crowdsourcing)은 생산과 서비스 과정에서 소비자나 일반 대중을 참여하게 하여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기업 활동에 활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동 사업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정제·가공 등의 단계에서 클라우드소싱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컨소시엄 선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2021년 제1회 추경안 집행에 따른 일자리 창출 목표]

구분	직접고용	클라우드소싱 일자리	합계
일자리 창출	1,855명 (975억원/10억×38.1명)×50%	4,875명 (975억원/10억원×100명)×50%	6,730명
산정 기준	신규(정규/계약직 무관) 채용만 해당하며, 최소 6개월 이상 참여하는 경우만 포함	최소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데이터 구축에 참여한 경우만 포함	

주: 직접고용 및 클라우드소싱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정부 지원금 비율을 각각 50% 적용하여 계상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인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사업에 대량의 일자리를 신규로 제공하는 것은 이번 추경안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으로 판단된다. 특히 2020년 참여인력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다도 20~40대의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50~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인다.

[2020년 참여인력의 연령별 분포]

(단위: 명, %)

구분	~18세	19~34세	35~50세	51~64세	65세 이상	합계
직접고용	127	4,294	2,284	690	92	7,487
클라우드소싱	2,117	16,221	8,119	3,624	1,314	31,395
합계	2,244	20,515	10,403	4,314	1,406	38,882
(비중)	(5.8)	(52.8)	(26.8)	(11.1)	(3.6)	(1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동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데이터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클라우드소싱 방식을 통한 데이터 일자리의 경우 전업이 아닌 부업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부업의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성과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소싱 작업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 플랫폼⁶⁾에 본인인증 후

6) 대표적으로 클라우드웍스, 테스트웍스, 데이터메이커 등이 있다.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PC나 모바일을 이용해 데이터 수집 및 라벨링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곧바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의 지식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나 기본적인 데이터 작업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작업자가 수행한 작업은 검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검수가 완료되면 작업별로 정해진 포인트가 쌓이게 된다. 플랫폼별로 지급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일정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클라우드소싱 데이터 작업은 미취업자나 취업자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부업으로 클라우드소싱 플랫폼에 가입하여 작업자로 활동하는 것을 실질적인 고용 창출 효과로 볼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까지 동 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클라우드소싱 작업자 중 취업자와 미취업자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클라우드소싱 데이터 일자리 확대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를 산정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클라우드소싱 작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3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데이터 구축 작업에 참여한 인력에 한해 일자리 창출 성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다수의 일자리 사업들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⁸⁾을 감안할 때, 동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클라우드소싱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다 면밀하게 산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클라우드소싱 데이터 일자리의 보수 및 경력개발 측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클라우드소싱 작업자의 보수는 작업 종류, 숙련도, 참여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며 2020년 전체 참여인력(3.1만명)의 월 평균 참여시간은 41시간이고, 월 평균 수입은 62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참여인력의 68.3%는 월 평균 수입이 30만원 미만이었으며, 30~50만원 미만은 6.7%, 50~100만원 미만은 9.5%, 100~200만원 미만은 9.4%, 200만원 이상은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7) 법률 관련 데이터의 경우 법학지식 보유여부, 외국어 번역 관련 데이터의 경우 외국어 점수를 요구하는 경우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8) 대표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공공근로 사업,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이 있으며, 이번 추경안에 편성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바이오빅데이터 인력양성 사업의 경우에도 미취업자(고용보협 미가입)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20년 클라우드소싱 참여인력의 월 평균 보수 현황]

(단위: 명, %)

~5만원	5~10만원	10~30만원	30~50만원	50~100만원	100~200만원	200만원 이상	합계
6,351 (20.2)	7,322 (23.3)	7,773 (24.8)	2,114 (6.7)	2,968 (9.5)	2,949 (9.4)	1,918 (6.1)	31,395 (1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물론 클라우드소싱 일자리의 특성상 전업이 아닌 경우도 다수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개인의 데이터 작업량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클라우드소싱 일자리의 전반적인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전체적인 평균 보수가 낮다는 점은 참여인력의 동기부여 및 지속가능성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라우드소싱 작업자가 단순한 데이터 수집·가공 업무에 그치지 않고, 해당분야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경로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클라우드소싱 데이터 일자리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데이터 수집·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 그러나 데이터 일자리가 일시적·부가적 직종으로 고착되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소싱 데이터 일자리에 대한 경력경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9)

이와 같이 동 사업은 클라우드소싱을 통한 데이터 일자리 창출 효과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기준을 마련하여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클라우드소싱을 통한 데이터 일자리가 저임금의 단순 일자리로 고착되지 않도록 보수 수준 관리, 경력경로 개발 등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9)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7월 「바이오 디지털 뉴딜 추진계획」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의 경력경로를 ①데이터 관리자(1년)→②데이터 큐레이터(2~3년)→③데이터 엔지니어(4년~)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다. 바이오연구데이터 활용기반조성 사업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데이터 구축 방안 마련 필요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현 황

바이오연구데이터 활용기반조성 사업¹⁾은 대학 등 바이오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분석·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엔지니어 일자리 1,000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R&D)의 내역사업이다. 2021년 본예산은 264억 2,9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150억원이 증액된 414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바이오연구데이터 활용기반조성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R&D)	(27,718)	(54,118)	78,728	93,728	15,000	19.1
바이오연구데이터 활용기반조성	(3,000)	(29,400)	26,429	41,429	15,000	56.8
바이오데이터 인력양성	(0)	(26,400)	0	15,000	15,000	순증

주: 1.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2. 동 사업은 기존 사업(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으로 지원하던 생명연구자원 관련 예산을 2021년부터 별도 분리하여 편성 중인 사업으로, 2020년까지의 예산은 괄호로 표기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미션 예산분석관(misonlee@assembly.go.kr, 6788-4628)

1) 코드: 일반회계 1138-312의 내역사업

바이오연구데이터 활용기반조성 사업의 2021년 본예산은 바이오연구데이터2 스테이션 구축을 위한 1개 과제에 264억 2,9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제1회 추경안에 편성된 바이오데이터 인력양성은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내용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바이오데이터 전문인력 2,00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264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제1회 추경안은 국내 바이오 연구기관에 ①데이터 관련 일자리 1,000개를 신설하기 위한 예산 108억원과 ②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1억원, 그리고 ③PC등 업무 인프라 지원을 위한 21억원을 편성하였다.

[바이오데이터 인력양성 사업 추경안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상세내역	산출근거	예산액
①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인건비)	1,000명×1.8백만원/월×6개월	10,800
②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개 거점×210백만원	2,100
③ 업무 인프라 지원	1,000명×2.1백만원	2,100
합계		15,0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동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위탁 집행하고,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선정한 한국바이오연구조합(총괄주관기관)을 통해 거점연구기관 9개3)와 거점기관별 바이오 연구소 69개 기관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2) 분석의견

바이오연구데이터 활용기반조성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장기적인 바이오 연구데이터 등록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구체적·장기적인 데이터 등록 계획 수립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2) 바이오연구데이터는 바이오분야 연구실험 활동을 통해 생산되는 생화학분석, 이미지영상, 임상 및 전입상, 유전체, 분자구조, 표현형정보 등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 3) 2020년 선정된 거점연구기관은 9개 기관(아주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생물공학회, 부산가톨릭대학교, 건양대학교)이며, 2021년 추경 집행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 전문인력 2,000명을 채용하여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020년 제3회 추경 사업비 264억원은 2021년 8월까지 집행될 예정이며, 2021년 제1회 추경안은 데이터 인력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5PB⁴⁾인 바이오 연구데이터 등록량을 2025년 30PB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⁵⁾을 구축하고 있다.

[2020~2025년간 세부사업 핵심 목표(안)]

목표	2021	2022	2023	2024	2025
바이오 연구데이터 등록량 (누적)	10PB	15PB	20PB	25PB	30PB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이오 연구데이터 등록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당할 데이터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2020년 제3회 추경에 264억원을 신규로 편성한 후 2021년 본예산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가 2021년 제1회 추경안에 다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추경안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시적 재정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 데이터 인력양성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본예산 편성 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 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이나 연구기관의 데이터 전문인력 고용유지 등의 방법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⁶⁾

4) PB(petabyte, 페타바이트)는 1,000테라바이트(TB), 1,000,000기가바이트(GB)를 의미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2026년까지 바이오 R&D에서 생산된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산업 현장에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을 구축하고 있다.

6)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분법」 제12조의2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받는 R&D사업으로, 2020년 제3회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된 시점(2020년 7월 3일)에는

또한, 동 사업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 구축과 함께 장기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없이 6개월의 단기 일자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1년 추경안을 편성하였고, 집행 이후 2025년까지 데이터 등록 목표 달성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추경안은 ‘긴급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데이터 생산량과 수요가 가장 많은 바이오 연구기관에 데이터 전담일 자리를 시급하게 신설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향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바이오 데이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전 투자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바이오 연구데이터 등록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한시적인 추경 사업을 지원하기에 앞서 보다 구체적·장기적인 데이터 구축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분야 인력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장기간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면밀히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업무인프라 지원에 편성된 엔지니어 지도 수당은 실제 지급예정규모 보다 과다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데이터 인력양성 사업의 이번 추경안은 ①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위한 인건비(108억원), ②교육 프로그램 운영비(21억원)와 ③업무 인프라 지원 2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업무 인프라 지원 21억원은 엔지니어 지도 수당 12억원과 PC 등 업무용 기자재 9억원으로 구분된다.

이미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자문회의 심의가 완료(2020.6.26.)된 이후였기 때문에 분예산 반영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업무인프라 지원 추경안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항목	산출근거	예산액
① 엔지니어 지도 수당	1,000명×0.2백만원×6개월	1,200
② PC 등 업무용 기자재	1,000명×0.9백만원×1식	900
합계		2,1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도수당은 데이터 인력이 근무하는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실에서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담당하는 지도교수에게 지급하는 예산이다. 바이오연구데이터는 연구실에서 R&D를 통해 생산되는 이미지나 영상, 임상 및 전임상, 유전체, 분자구조 등으로, 바이오 분야 지식이 부족한 데이터 인력이 바이오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표준화디지탈화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인력의 업무수행을 지도할 담당교수에 대해 소속기관 규정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추경안은 데이터 인력 1,000명에 대해 월 20만원씩 6개월간 총 12억원의 엔지니어 지도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도교수 1명이 평균적으로 데이터 인력 2명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경안에 포함된 엔지니어 지도수당은 6억원 가량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 지급규모에 맞도록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인력에 대한 지도수당 예산 과다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항목	편성안(A)	실제 지급규모(예상)(B)	A-B
엔지니어 지도수당	1,000명×0.2백만원×6개월 =1,200	1,000명/2명×0.2백만원×6개월 =600	6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행정안전부 소관 총수입은 617억 8,300만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총수입규모 변동은 없다. 다만, 총지출은 57조 6,580억 9,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130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다.

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9,005억 2,000만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총수입 규모 변동은 없다. 다만, 총지출은 11조 9,693억 3,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2억 6,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행정안전부	총수입	61,783	61,783	0	0
	총지출	57,445,067	57,658,093	213,026	0.4
경찰청	총수입	900,520	900,520	0	0
	총지출	11,965,065	11,969,332	4,267	0.04

자료: 행정안전부, 경찰청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개 신규 세부사업이다.

[행정안전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희망근로 지원사업(3131-302)	0	213,026	213,026	순증

주: 총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 경찰청

경찰청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개 사업이다. 코로나19 피해 대비 고용지원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에 42억 6,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다.

[경찰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아동안전지킴이(1132-313)	54,044	58,311	4,267	7.9

주: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가. 희망근로지원 사업의 차별성 확보 및 실수요기반 운영으로 사업성과 제고 필요(행정안전부)

(1) 현 황

희망근로 지원사업(2021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사업)¹⁾은 취업취약계층 등²⁾을 대상으로 단기 공공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계안전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목표 하에 2,130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전액이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율은 90%이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희망근로 지원사업	0	1,286,494	0	213,026	213,026	순증
2021지역활력 플러스 일자리 사업	0	1,286,494	0	213,026	213,026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실시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2010년에 종료 하면서 이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신설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계속과제로 수행 중에 있다³⁾.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3131-302

2)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등 우선선발 예정

3)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균특회계: 3131-300)'은 지역공동체일자리, 마을기업 육성, 지역방역일자리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2018년 특정지역의 고용·산업위기를 이유로 희망근로 지원사업이 재편성되었으며, 매년 예비적 재원을 이용해 한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례적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이전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대체하기 위해 신설되었다가 본예산으로 운영 중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연도별 행정안전부 취약계층대상 직접일자리사업 추진내역]



주: [] 숫자는 해당 사업의 예산규모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제작성

한편,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될 희망근로 지원사업에서 제공될 공공일자리 임금지원은 시간당 8,720원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며, 1일 4시간(월 평균 26일) 근무를 기준으로 4~6개월 간 추진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통해 백신접종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지원 등에 관한 공공일자리 약 5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백신접종센터 행정보조(1만명), 생활방역 및 지역 그린뉴딜 관련 일자리 등(4만명)의 분야에 공공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희망근로 지원사업 주요내용 및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산출근거	예산안
백신접종 행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신접종센터 보조 - 현장접수 지원 - 거동불편 접종자 도움 - 이상반응 관찰구역 관리 	$1만명 \times 8,720원(시급)$ $\times 일4시간 \times 26일 \times 6개월$ $\times 1.15(재료비) \times 0.9(보조율)$	56,317
생활방역 그린일자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 방역 · 자가격리자 관리 등 ·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 · 지역 그린뉴딜 행정지원 등 	$4만명 \times 8,720원(시급)$ $\times 일4시간 \times 26일 \times 4개월$ $\times 1.20(재료비) \times 0.9(보조율)$	156,709
합 계			213,026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2)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최근 3년 간(2018~2020년) 매년 평균 4,8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추경 등 예외적 예산편성을 이유로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중장기 사업 운영계획 그리고 성과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2018년도 이후 매년 동일 세부사업(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내역사업명을 변경하여 추가경정예산 및 예비비를 통한 한시적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희망근로 지원사업 역시 추경을 통한 한시적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내역 및 2021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추진계획]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대상지역	사업기간	계획인원	예산액 (국고보조율)
2018 년도	추경	고용위기지역 8개	'18.7~'18.12	1,910	12,149 (80%)
	예비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9개	'18.12~'19.1	10,379	24,516 (90%)
2019 년도	예비비		'19.3~'19.5	9,901	41,771 (90%)
	추경	고용위기 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9개, 특별재난지역 5개	'19.7~'19.12	13,949	118,894 (90%)
2020 년도	추경(3회)	전국 지자체	'20.8~'20.12	300,386	1,206,091 (90%)
	추경(4회)	전국 지자체	'20.11~'20.12	24,000	80,403 (100%)
2021 년도	추경(1회) 예정	전국 지자체	'20.4~'20.8	50,000	213,026 (90%)

주: 2020년도 참여인원은 잠정적 수치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제작됨

이 사업은 ① 본예산으로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지역방역일자리 사업과의 차별성이 낮고, ② 지난 4년 간 매년 예외적 편성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면서 한시사업을 이유로 타 직접일자리 사업과 달리 중장기계획 및 성과관리 없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먼저,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 중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지역방역일자리 사업과 목적 및 내용, 정책대상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성이 높다. 2018~2019년도에 시행된 희망근로지원사업의 경우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한다는 차별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두 사업 모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비교]

구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 본예산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사업목적	·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지역 방역강화 및 취약계층 생계지원
대상지역	· 전 지방자치단체	· 전 지방자치단체	· 전 지방자치단체
시행주체 및 조건	· 지방자치단체 · 국비 90%, 지방비 10%	· 지방자치단체 ·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자치단체 ·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대상	· 취업취약계층 등 (상세조건 논의 중)	· 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	· 취업취약계층
사업기간	· 4개월~6개월	· 5개월(상·하반기 2회)	· 5개월(상·하반기 2회)
임금조건	· 시간당 8,720원 /최대 주40시간	· 시간당 8,720원 /최대 주40시간	· 시간당 8,720원 /최대 주40시간
일자리 내역	· 백신접종 행정지원 등 · 생활방역 · 지역그린뉴딜 행정지원	· 지역특산물 상품화 등 · 공동작업장 지원 등 · 서민생활 지원 · 공공시설 환경정비 등	· 공공시설 방역 등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행정안전부는 기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정책대상이 한정되고⁴⁾, 일자리 내역 역시 방역 및 그린뉴딜 관련 직무로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사업성격 상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문제가 있어 이번년도 역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역공동체·지역방역 일자리사업과 정책대상이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하고, 특히 방역일자리 사업의 경우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을 대상

4)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경우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이보다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용 면에 있어서도 방역 및 백신접종센터 보조, 친환경 기반 조성, 지역경제회복 등의 업무 모두 기존 계속사업(지역방역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역이다.

다만, 동 추정 사업은 국고보조율이 90%로 본예산 일자리사업 대비 40%가 더 높다는 점에서 일부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들이 상당규모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상과 내역이 대동소이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보다 수행기관의 행정효율화를 위해 본예산 사업과 통합하고 보조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 사업을 편성할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과의 유사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예산 사업과 유사성이 높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집행 및 성과관리에 효율적이다. 만약 본예산 사업과 차별성이 높고, 정책수요로 인해 연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 중장기계획 수립과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의 면밀한 검토·심의를 거쳐 차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매년 상당규모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한시사업을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성과평가와 관리체계도 결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난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나 집행과정에서 노정된 정책의 의도치 않은 부정적 효과들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예외적 예산편성을 통한 연례적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최소한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본예산편성 사업과의 차별성, 정책목표, 편성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사업이 경제현안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단순 인구규모에 비례하는 사업인원·예산배분으로 사업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인구구조의 특성과 실수요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수요조사는 진행 중이다. 정부에서 제시한 계획인원 5만명은 사업 소요예산이 책정된 상태에서 산출된 인원이

며, 행정안전부는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지역별 배분 수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0년도 제3회·제4회 추경 역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극복 희망 일자리와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방자치단체별 수요는 조사예정으로, 예산 확정 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수요에 근거하여 국비를 교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동 사업들의 지역별 예산액과 실집행액 등을 확인한 결과, 실수요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및 경제규모에 근거하여 일괄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괄배분의 문제로 지방자치단체 간 실집행률 및 계획인원 대비 참여 인원의 수준에 편차가 상당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지방자치단체 간 높은 편차는 일부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수준에 따른 것이기도 하나, 오히려 지역별 실수요와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단순한 산정방식에 의해 국비를 교부한 데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일례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인구구조적 특성 상⁵⁾ 공공기관 종사자 및 그 가족 등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인구 비중이 높아 월 2~3회의 모집공고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58% 수준이다. 반면,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 자격요건이 되는 지원자가 많아 근로시간 축소를 통한 추가 선발 및 지방비 추가 부담으로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인다.

5) '2019년도 전국 사업체조사'의 사업종분류별 종사자수 자료를 보면, 공공행정 분야 종사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 평균 3.3%인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17.4%로 높으며 가구 구성원까지 포함할 경우 그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별 국비교부액 및 집행률]

(단위: 천명, 백만원, %)

자치단체명	경제활동 인구 수	코로나19극복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제3회 추경)		지역일자리 사업(제4회 추경)	
		국비교부액	실집행률	국비교부액	실집행률
서울특별시	5,254	223,375	81.7	15,168	74.0
부산광역시	1,703	80,079	92.9	5,300	85.6
대구광역시	1,245	80,640	95.9	3,791	93.8
인천광역시	1,619	67,868	80.3	4,476	72.1
광주광역시	781	33,017	95.9	2,477	82.2
대전광역시	808	32,630	88.8	2,217	66.1
울산광역시	580	25,146	95.4	1,742	95.4
세종특별자치시	183	6,947	51.4	482	57.8
경기도	7,107	292,182	80.1	19,844	55.2
강원도	783	36,901	82.5	2,370	87.2
충청북도	896	36,633	65.8	2,476	46.9
충청남도	1,172	34,054	83.7	3,266	74.2
전라북도	951	40,687	90.5	2,819	87.7
전라남도	984	42,000	88.9	2,911	76.1
경상북도	1,442	80,000	76.8	5,000	86.9
경상남도	1,764	76,320	89.7	5,051	75.9
제주특별자치도	388	17,612	91.5	1,013	76.3
합 계	27,660	1,206,091	84.1	80,403	72.4

자료: 행정안전부

[2020년 희망근로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별 계획인원 및 참여인원]

(단위: 명,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계획(A)	57,506	21,920	17,817	18,385	9,155	9,127	6,898	1,906	84,730
참여(B)	45,327	25,747	19,910	18,676	9,316	9,570	6,172	1,416	82,622
실적(B/A)	78.8	117.5	111.7	101.6	101.8	104.9	89.5	74.3	97.5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획(A)	10,169	10,064	8,073	11,168	10,906	20,708	21,089	4,765	
참여(B)	9,008	7,285	9,042	11,783	10,675	14,471	20,192	4,624	
실적(B/A)	88.6	72.4	112.0	105.5	97.9	69.9	95.7	97.0	

주: 계획인원보다 많은 참여인원은 근로시간 축소에 따른 인원확대, 자치단체의 지방비 추가부담에 의한 사업규모 확대, 중도탈락자로 인한 재선발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침.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지난 사업의 집행성과를 감안하여 지역별 실수요와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배분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대상의 명확화 및 차별화를 통해 기존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사업 및 타부처 방역·그린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구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금번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정책대상자는 취업취약계층 등으로 구체적 요건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5만여 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추진 중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은 총 33개, 목표인원은 1,041,617명이며,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직접일자리 사업은 총 41개로 1조 1,028억원 규모이다. 동 일자리사업들의 시행주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로 특히 추경에 편성된 일자리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등의 일부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할 예정이다.

부처별 소득보전형 직접일자리 사업들의 직무내용과 정책대상, 임금기준 등을 살펴보면, 상호 간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정책대상과 내용의 유사하고 시행주체도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인 상황에서⁶⁾ 국고보조율은 50~90%(자체 공공근로 사업은 국고보조 없음)로 사업 간 중복에 따른 구축 문제를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일자리사업의 상호 간 구축효과(crowding-out) 문제는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평가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⁷⁾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⁸⁾을 매년 추진한다는

6) 본예산과 금번 추경의 직접일자리 사업 모두 기본적으로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같은 소득보전형의 경우 대상이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하다. 일례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공공형과 민간형 모두 만 60세 이상을 지원조건으로 하는데, 2019년도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의 연령별 분포자료에 의하면 60세 이상이 전체 54.1%를 차지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만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참여대상의 측면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더불어 이들 사업의 일자리 내역 역시 공공시설물 환경미화, 행정보조, 공공시설 방역 등의 활동으로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제공할 계획인 일자리의 내역과 유사하다.

7) 동 사업 평가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공공근로사업이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찬임, 2009, “희망근로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8) 희망근로 지원사업과 정책대상과 내용이 유사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자치단체의 자체재원으로 추진된다. 일례로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사업’은 서울시민 중 저소득층, 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보조, 공공시설물 소득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근로사업은 더욱이 부처의 소득보조형 일자리사업과 내용 및 대상에 유사성이 높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율이 높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일자리를 우선 추진할 유인이 존재한다.

[2021년 본예산 소득보조형 및 제1회 추경 직접일자리사업 현황(일부 예시)]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소관 부처	사업명	시행주체	정책대상	계획 인원	예산 규모	국고 보조율
본예산	보건 복지부	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63,000	542,846	82.3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 등	만 60세 이상 등 (세부유형별 상이)	785,000	1,294,413	50 (서울3)
	산림청	공공산림 가꾸기	지방자치단체	취업취약계층	1,706	23,115	50
	행정 안전부	지역공동체/방역일자리	지방자치단체	취업취약계층	13,370	63,883	50
제1회 추경	보건 복지부	의료기관 방역지원	건강보험공단	취업취약계층	5,300	37,887	-
		시설 방역지원	건강보험공단	취업취약계층	4,033	41,022	-
		보건소 코로나19대응 인력지원	건강보험공단	취업취약계층	1,032	12,280	-
		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5,000	33,092	82.31
	환경부	재활용품품질 개선지원	지방자치단체	취업취약계층	10,000	115,200	90

자료: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환경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될 생활방역, 그린일자리의 경우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추진할 타 부처의 방역·그린 일자리와의 유사성 문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과 대상 및 내용에 차별성을 갖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보조율 조정 등을 통해 중복·구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취업취약계층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강사·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에 참여기회를 제공할 예정인데, 현재는 동 사업내용이 소득보조형 일자리에 초점을 두어 최저임금 기준의 저숙련·단순노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참여대상 확대에 대한 정책목적을 달성 및 참여율 제고를 위해 임금수준과 참여직무의 보다 다층적 설계와 사업운영이 필요하다.

9) 기존 취업취약계층은 ① 저소득층(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④ 결혼이민자, ⑤ 북한이탈주민, ⑥ 위기청소년, ⑦ 여성가장, ⑧ 성매매 피해자, ⑨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⑫ 노숙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서는 한시적용사항으로 이를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로 범위를 확대하고 소득·자산기준도 완화하였으며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선발기준도 이에 근거할 방침이다.

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추경편성 효과 제고방안 모색 필요(경찰청)

(1) 현황

아동안전지킴이 사업¹⁾은 퇴직한 노인인력 등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한 후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본예산은 540억 4,400만원이나 코로나19 피해 대비 고용지원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2억 6,700만원이 증액된 583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아동안전지킴이	53,265	38,605	54,044	58,311	4,267	7.9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등교 연기 및 아동안전지킴이 활동기간 단축에 따라 예산이 감액조정됨

자료: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는 아동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 놀이터 및 공원 등을 순찰하고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며, 「아동복지법」 제33조²⁾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활동시간은 1일 3시간 이내, 월 57시간 이내로 매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2021년 기준 활동비는 월 49만 7,040원이며, 활동비 외에 피복과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 지원된다.

최성민 예산분석관(alwaysmile@assembly.go.kr, 6788-4643)

1) 코드: 일반회계 1132-313

2)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 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안전지킴이 개요]

구분	세부내용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3조
업무	초등학교 주변의 통학로, 놀이터 및 공원 등 순찰 및 아동안전 지도
활동시간	1일 3시간 이내, 월 57시간 이내
지원내용	활동비 월 49만 7,040원(2021년 기준), 피복 및 단체 상해보험 가입
선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결격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보조사업자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찰청은 2021년 본예산 기준 10,535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선발하여 전국 초등학교(6,087개교) 평균 1.73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추경안을 통해 1,639명을 추가 선발하여 2021년 8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당 2.0명 수준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추경안 편성내역]

구분	2021년 본예산	2021년 제1회 추경안
선발인원	10,535명(초등학교 당 1.73명)	1,639명 추가 선발(총 12,174명)
활동비 예산	523억 5,700만원 (10,535명×49.7만원×10개월)	40억 7,300만원 증액 (1,639명×49.7만원×5개월)
부대경비 예산	15억 6,000만원	1억 9,400만원 증액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코로나19에 따른 초등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상황에서 추경예산 편성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교확산계획과 연계하여 아동안전지킴이 인력배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이 사업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주된 목적은 전국 초등학교 당 평균 2.0명 수준의 아동안전지킴이를 배치함으로써 아동 성장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³⁾ 현재 아동안전지킴이는 2인 또는 3인이 한 개 조를 구성해 한 조가 1~2개의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추경예산을 통해 아동안전지킴이가 추가 선발되는 경우 한 개 조가 담당하는 초등학교수가 평균적으로 감소함으로써 이전보다 순찰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 순찰 및 아동안전 지도 업무를 수행하며, 이 사업의 성과는 ‘아동안전지킴이 1인당 범죄예방 및 지원 실적’과 ‘아동안전지킴이 만족도’로 측정·평가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실적을 보면, ‘범인 검거 및 지원건수’와 ‘범죄예방 및 보호건수’를 합한 전체 사업 실적이 2018년 82,681건, 2019년 95,635건에서 2020년 24,503건으로, 아동안전지킴이 1인당 실적이 2018년 9.2건, 2019년 9.6건에서 2020년 2.3건으로 각각 감소하였다.

[최근 3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실적]

(단위: 명, 건)

연도	아동안전 지킴이 수(A)	전체 실적			지킴이 1인당 실적(B/A)
		계(B)	범인 검거 및 지원건수	범죄예방 및 보호건수	
2018	9,007	82,681	1,282	81,399	9.2
2019	10,007	95,635	1,485	94,150	9.6
2020	10,535	24,503	469	24,034	2.3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침체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예산 투입액 대비 성과를 살펴보면, 2020년에는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2019년보다 예산 집행액이 25.5%(132억 1,900만원)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초등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 등으로 사업 실적은 74.4%(71,132건) 감소함으로써 ‘예산 집행액 백만원 당 실적’이 2019년 1.85건에서 2020년 0.63건으로 악화되었다.

[최근 3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집행액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건, %)

연도	예산 ¹⁾	집행액(A)	사업 실적(B)	집행액 당 실적(B/A) ²⁾
2018	42,227	42,226	82,681	1.96
2019(a)	51,824	51,823	95,635	1.85
2020(b)	53,265	38,604	24,503	0.63
증감(b-a)	1,441	△13,219	△71,132	△1.22
(b-a)/a	2.8	△25.5	△74.4	△65.9

주: 1) 본예산 기준

2) 집행액 백만원 당 실적(건)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이와 같이 2020년 사업 실적이 전년대비 저조했던 근본적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초등학교 등교연기 및 등교인원 감소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어 초등학교 등교가 정상화되는 시기에는 사업 실적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초등학교 밀집도 완화 조치가 상당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⁴⁾ 이 경우 초등학교 주변 범죄예방 및 보호 소요도 예년보다 감소하여 사업 실적이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

[거리 두기 단계별 등교 기준(2021년 3월 현재)]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밀집도 2/3 원칙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고등학교 2/3) 원칙, 최대 2/3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중 ‘등교’ 부분 발췌

4) 현재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백신접종대상에서 제외돼 있다(임상결과에 따라 추가 접종 가능).

따라서 코로나19에 따른 초등학교 등교인원 감소 상황에서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아동안전지킴이 인력배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초등학교 당 2.0명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추가 선발하는 인원수를 지자체별로 기계적으로 배정하기보다 지역 내 초등학교 간 지리적 근접성,⁵⁾ 초등학교 주변 환경의 유해성 및 학교주변 범죄발생 추이⁶⁾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 추가 배정인원을 결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⁷⁾

[지역별 초등학교 당 평균 아동안전지킴이수]

(단위: 명, 개교)

구분	아동안전지킴이 수(A)	초등학교 수(B)	초등학교 당 지킴이 수(A/B)
합계	10,535	6,087	1.73
서울	1,050	607	1.73
부산	531	304	1.75
대구	399	229	1.74
인천	434	250	1.74
광주	268	155	1.73
대전	258	148	1.74
울산	204	119	1.71
세종	82	48	1.71
경기	2,196	1,277	1.72
강원	611	349	1.75
충북	450	259	1.74
충남	713	409	1.74
전북	730	419	1.74
전남	747	429	1.74
경북	819	471	1.74
경남	875	501	1.75
제주	168	113	1.49

주: 2021년 3월 기준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 5) 초등학교 간 지리적 근접성이 떨어지는 경우 아동안전지킴이 한 개 조가 2개 이상의 초등학교를 순찰하기 어려워 추가 인원배정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 6) 학교주변 범죄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추가 인원배정의 필요성이 더욱 클 수 있다.
- 7) 또한 지역별 코로나19 확산추이, 거리 두기 단계 및 그에 따른 등교제한조치의 강도 등도 추가 배정인원 결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2조 9,775억 4,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은 없다. 또한 총지출은 7조 208억 6,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57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문화체육관광부	총수입	2,977,541	2,977,541	0	0.0
	총지출	6,863,712	7,020,862	157,150	2.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7개 세부사업이며, 모두 신규사업¹⁾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① 수출기업 대상 마케팅, 번역 등 현지 인력 지원을 위해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 기반조성’ 사업에 113억원을 증액편성되었고, 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연예술분야 예술인력 지원 등을 위해 ‘공연예술 진흥기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2개 사업은 신규 세부사업이고, 나머지 사업들은 신규 내역 또는 내내역사업이다.

반 조성' 사업에 403억 8,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③ 안전한 실내스포츠 환경 조성과 민간체육시설업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한 스포츠활동지원' 사업에 693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지출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문화콘텐츠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1231-303)	32,148	43,448	11,300	35.1
	음악산업및대중문화산업 육성 (1232-301)	54,063	76,863	22,800	42.2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1432-300)	39,283	44,683	5,400	13.7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 (1632-324)	11,595	51,975	40,380	348.3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4437-300)	0	4,520	순증	순증
	공연관광 디지털전문인력 지원 (4437-301)	0	3,390	순증	순증
국민체육진흥기금	안전한 스포츠활동지원 (5161-310)	36,584 ¹⁾	105,944	69,360	189.6
합 계		173,673	330,823	157,150	90.5

주: 1. 총계 기준

1) 본예산(당초계획)은 230억 4,400만원이나, '21년 1월 기금변경하여 예산현액이 365억 8,400만원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가.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문화체육관광부)

(1) 현황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¹⁾은 해외수출 계획 및 즉시 수요가 있는 콘텐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화(수출용 콘텐츠 제작, 해외 홍보 마케팅, 번역, 더빙 등)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 당시 17억 6,500만원 규모로 편성된 바 있으며, 2021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이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다시 113억원이 편성되었다.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32,307	34,072	32,148	43,448	11,300	35.1
(성숙단계)수출경쟁력 강화	7,155	8,920	8,103	19,403	11,300	139.5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	0	1,765	0	11,300	11,300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데, 1차 보조사업자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사업관리 및 점검을 담당하고, 2차 보조사업자인 아리랑TV미디어가 지원 콘텐츠를 선정하고 인건비 지급 등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제3회 추경에서 지원대상 인원 수를 160명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인원 수를 확대하여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231-303의 내내역사업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

<p>○ 총 사업예산: 11,300백만원</p> <p>- 인건비: 10,800백만원=1.8백만원×1,000명×6개월</p> <p>- 사업운영비: 500백만원</p>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분석의견

동 사업은 작년 제3회 추경 대비 인력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바, 사업운영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되고, 홍보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공모 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집행한 동 사업의 장르별 지원 및 선정기업 현황을 보면, 총 대상기업 70,939개 중 114개 기업이 지원하여 90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바, 경쟁률이 1.27:1 정도로 크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업집행실적을 보면 90개 기업을 대상으로 173명의 인력지원이 이루어졌고, 현재 보조금 정산 중에 있으나 추경예산이 거의 집행되어 집행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3회 추경사업의 장르별 지원 및 선정기업 현황]

(단위: 개)

구분	계	방송	게임	만화	애니	캐릭터	음악	이야기	영화
대상기업 ¹⁾	70,939	1,148	13,357	6,628	509	2,534	35,670	9,724	1,369
지원기업 ²⁾	114	29	28	6	23	6	9	7	6
선정기업 ³⁾	90	26	21	5	14	5	8	5	6

주: 1) 장르별 콘텐츠 기업 수

2) 인력지원 사업에 지원(신청)한 기업 수

3) 사업에 선정되어 인력지원을 받은 기업 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추경에서 작년 제3회 추경 대비 지원인력 수를 확대한 사유에 대하여, 중간점검 등 운영현황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업 재추진 및 인원 확대를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20년 추경사업(90개 기업, 173명), 참가기

업선정·채용 적격심사, 사업 모니터링 등 지원할 수 있는 행정능력을 고려하여 최대 1,000명(200개 기업, 기업당 5명 내외 지원)을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의 경우에도 코로나19의 지속으로 해외 수출활동(출장·행사 참가)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콘텐츠 현지화 작업(수출용 콘텐츠 제작, 해외 홍보 마케팅, 번역, 더빙 등)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콘텐츠 해외수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동 사업 추진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업은 기업 선정 시 심사를 통해 평가항목 합계 70점 이상인 기업을 선발하고 있는데, 작년 추경사업에서 보듯이 경쟁률이 크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규모를 확대할 경우 동 사업의 취지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사업운영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의 기업 선정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일반부문 (20)	업체현황	- 일반현황 및 조직	10
	수행실적	- 유사분야 사업 실적, 현재 진행 중 사업 사항	10
수행부문 (70)	사업 이해도	- 동 사업의 이해도 및 부합성	5
	수행방법	- 투입인력 구성의 적절성, 지원 예정 사업의 적합성	40
	일정계획	- 세부 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25
관리부문 (10)	산출물 관리 등	- 의사소통(사업진척, 의사소통 관리 등)의 적정성 산출물, 보고서 관리 등의 적정성	10
합 계			1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작년 추경사업에서 전체 대상기업 대비 지원기업의 수가 많지 않았는데, 작년에 신규로 추진한 동 사업의 특성으로 사업을 인지하지 못해 참여하지 못한 콘텐츠기업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홍보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여 사업공모 시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 현황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¹⁾은 대중음악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창작, 실연, 기획 등)에 대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의 내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2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 산업 육성	25,029	21,029	54,063	76,863	22,800	42.2
음악산업 육성	20,341	17,841	49,470	72,270	22,800	46.1
대중문화예술 전문 인력 지원	0	0	0	22,800	22,800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되었으며, 한국연예제작자협회를 보조사업자로 하고, 동 보조사업자가 2021년·2022년 공연계획이 있는 공연제작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면, 공연제작사가 인력을 채용하여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원인력 2,000명의 6개월분 인건비 216억원과 사업운영비 12억원을 편성하였다.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

<p>○ 총 사업예산: 22,8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지원: 21,600백만원=1.8백만원×2,000명×6개월 - 사업운영비(선정, 홍보, 관리, 운영): 1,20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232-301의 내내역사업

동 사업은 대중음악 공연 관련 기획·제작 인력 및 실연자 중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우선 채용)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기준 대중음악 공연업 종사자 중 34세 이하는 약 2,400명, 대중음악예술인(가수 및 안무가) 중 34세 이하는 약 35,42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중음악 공연업 종사자 규모]

(단위: 명)

구 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40~49세	50세 이상	2018년 종사자 수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1,099	1,154	881	858	283	4,275
기타 음악 공연 서비스업	53	88	67	80	17	306
소계	1,152	1,242	948	938	300	4,581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8년 기준)

[소속사가 있는 가수 현황]

(단위: 명)

구 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전체
가수(보컬, 댄스)	145	2,445	1,055	265	93	4,003

주: 1. 34세 이하는 19세 이하(145명)+20~29세(2,445명)+30~34세(30대 1,055명의 절반인 약 527명 추정)=3,117명(추정)

2. 소속사가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비율은 8.8%이므로, 소속사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한 전체 가수 인력은 35,420명으로 추산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1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018년 기준)

(2) 분석의견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동 일자리사업은 ‘대중문화예술’이라는 분야의 특성 상 다른 일자리 사업과 달리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중음악 공연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대중음악 공연은 연극·뮤지컬 등 일반 공연 분야와 달리 방역지침 상 “모임·행사”로 분류되어 현실적으로 1.5단계부터 개최가 곤란²⁾

하여 활동의 장이 상실된 상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문화예술계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제3회 추경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연극·뮤지컬·음악·무용·전통공연 분야에 대해 긴급 일자리를 지원(3,000명, 280억원 규모)하였는데, 당시 대중음악공연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관련 업계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지적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에서 대중음악공연계에 대한 긴급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콘서트나 각종 공연 등이 취소되면서 대중문화예술 종사자(가수 등 실연인력과 공연스텝 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는 34세 이하 청년을 우선채용 대상으로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이번 추경사업 중 동 사업과 장르만 다를 뿐 사업취지나 집행구조가 유사한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³⁾의 경우 별도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중음악공연계만 청년을 우선채용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감소로 특히 젊은 대중음악 공연업 종사자나 대중음악예술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른 장르에 비해 대중음악공연계 종사자들의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을 설계했다고 한다.⁴⁾ 그러나 동 사업의 취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의미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음악공연계 피해를 지원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청년을 우선 채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시 대중음악공연계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2) 2020년 8월 23일 이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명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되었고, 2020년 11월 7일 이후 거리두기 체계 개편(3→5단계)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제한 강화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대규모 콘서트는 지자체 신고·협의를 필요하고, 1.5단계~2단계는 100인 이상 금지, 2.5단계는 50인 이상 금지가 적용되었다.

3) 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공연 등 분야의 공연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4)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제작사가 인력채용 시 청년을 우선채용하도록 할 계획이므로, 우선채용 후 잔여 일자리의 경우 비 청년층이 채용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동 사업은 사업공모 시 2021년·2022년 대중음악공연 개최 계획이 있는 공연제작사를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인데, 공연제작사가 공연을 개최하려면 공연장 대관료, 장비임차료, 실연인력 및 스태프의 인건비 등이 소요되는바, 동 사업이 업체당 10명 이내로 인건비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 업체당 최대 1억 800만원(180만원×10명×6개월)의 인건비가 지원되는 셈이어서 공연제작사 입장에서 공연개최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지원받는 효과가 있다고 보인다.

이처럼 동 사업은 통상적인 일자리사업과 달리 공연개최에 대한 제작비 지원의 성격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한 사업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사업공모 단계부터 구체성 있는 공연계획이 있는 공연제작사를 선정할 필요가 있고, 채용한 공연실연 및 지원인력들에게 6개월 간 적합한 직무가 부여되어 정당한 급여가 지급되는지에 대한 점검·모니터링과 당초 제출한 공연계획에 부합하는 실제 공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결과 평가 등 사업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동 사업은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제작사가 공연개최에 필요한 실연자(가수, 안무가 등)와 지원인력을 채용하게 되는데, 공연제작사는 이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관련 기획사나 업체 등에 소속된 인력들과 6개월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채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2019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속사가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비율은 8.8%(추정)에 불과하여 다수의 대중문화예술인은 소속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이러한 인력들은 동 지원사업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중음악공연계를 지원하려는 것인데, 소속사나 관련 협회 등으로 의견이 대표되지 않는 대중문화예술인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사업 설계 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대중문화예술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대중문화예술'이라는 분야의 특성 상 다른 일자리 사업과 달리 고려해야 할 요인들(지원대상의 범위 설정, 채용인력들의 복무관리, 직무평가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에서 언급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대중음악공연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등(문화체육관광부)

(1) 현황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과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공연예술 분야 활성화를 위해 예술인력들에 대한 긴급 일자리를 지원하고, 공연업계 디지털 기술 활용 직무에 청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연예술진흥기반 조성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 당시 288억원 규모로 편성된바 있으며, 2021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다가 이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336억원이 편성되었다.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67억 8,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7,257	39,117	11,595	51,975	40,380	348.3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0	28,800	0	33,600	33,600	순증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0	0	0	6,780	6,780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공연예술단체에게 3,500명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으로, 3,500명의 5개월분 인건비 315억원과 사업운영비 21억원을 편성하였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1632-324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

<p>○ 총 사업예산: 33,6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지원: 31,500백만원=1.8백만원×3,500명×5개월- 사업운영비: 2,100백만원=6개 협·단체×350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음으로,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의 경우 공연업계 디지털 기술 활용 직무에 청년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참여 기업에 최대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인력 600명의 6개월 간 인건비 64억 8,000만원과 사업운영비 3억 원을 편성하였다.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

<p>○ 총 사업예산: 6,78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지원: 6,480백만원=1.8백만원×600명×6개월- 사업운영비: 300백만원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분석의견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과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자리 사업으로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동 사업이 긴급·한시적인 일자리 지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변화된 환경에서 비대면 온라인 공연 개최 등 공연예술계가 지구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될 계획인바, 민간보조사업자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총괄 관리 역할을 하고, 각 장르별(연극, 뮤지컬, 음악, 무용, 전통공연) 협회·단체를 통해 사업공모가 이루어지며, 선정된 공연예술단체 및 공연예술계 종사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작년 제3회 추경에서는 3,000명을 지원하였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규모를 늘려 3,500명을 지원할 계획인바,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인들에게 경제적인 안전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작년 추경사업에 대한 현장 예술인력의 만족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점²⁾을 규모 확대 사유로 설명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잇따른 공연예술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인다. 동 사업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장평가에서 공연예술계 실업 및 폐업사태 방지와 인력의 경력단절 방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각각 87.8%, 88.0%로 나타나는 등 동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공연계 폐업, 실업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동 사업은 일자리사업이기는 하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측면보다는 위기 상황에 처한 공연예술계에 대한 피해지원과 공연예술인에 대한 소득보조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피해지원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실제 채용된 인력들의 일경험 습득 및 경력 형성 등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취업연계 등 일자리 사업의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당시 한시적 지원(5개월)으로 추진된 것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도 같은 지원기간(5개월)으로 반영되면서 정책수혜자의 입장에서는 향후에도 동 사업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할 수 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한번 시작되면 이해관계자의 형성 등으로 종료가 어려워질 수 있고, 정부지원에 계속 의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긴급·한시적인 일자리 지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코로나19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비대면 온라인 공연 개최 등 공연예술계가 자구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모니터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83.3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사업의 지속 필요성에 대한 긍정 응답은 93.7%로 나타났다.

둘째,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작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일자리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지원인력 규모를 늘렸다는 점에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내실 있는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은 공연업계 디지털 기술 활용 직무(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공연영상화 등)에 청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추진된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해 특화분야를 운영하였는바,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 하나로 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안에 반영된 사업은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추진한 채용지원 사업을 확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2020년 고용노동부 사업과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비교]

(20년 제3회 추경)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21년 제1회 추경)공연작품 디지털 일자리 사업(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5~34세 이하 ◦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고용보험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원 가능 ◦ 1인당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간접노무비(월 10만원) 지원 ◦ 500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5~40세 이하(직무 숙련자 발굴을 위해 당초 연령기준에서 40세까지 상향 조정)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 종류로 공연업 유관 분야 지원기업 선정(참여기업 확대 차원) ◦ 1인당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지원 ◦ 600명 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작년 고용노동부 사업의 경우 목표 채용인원 500명에 미치지 못하는 348명이 실제로 채용되었으며, 사업완료시점인 2021년 6월 기준으로 예산집행률은 8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추경사업은 연령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공연업 유관분야 지원기업도 참여기업으로 확대하기는 하였으나, 지원인력 규모도 늘렸다는 점에서 동 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청년층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통한 디지털 기술 활용 일자리, 일경험 제공으로 고용시장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동 사업의 인건비 지원기간이 최대 6개월이라는 점에서 청년들에게 제한된 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경력 형성 및 직무 경험 축적이 가능한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채용 유형으로 ① 콘텐츠 기획, ② 빅데이터 활용, ③ 기록물 정보화, ④ 공연영상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활용 인력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경력직 선호 비중이 두드러지고, 빅데이터 인력 양성에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비전문적인 업무로 보이는 콘텐츠 기획 및 기록물 정보화 유형에 주로 채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작년 고용노동부 사업의 경우 채용된 인원 348명 중 283명(81.3%)은 콘텐츠기획 직무를 담당하였고, 다음으로 기록물 정보화 35명(10.1%), 빅데이터 활용은 18명(6.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해 공연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청년 구직자의 내실 있는 일경험 제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고용노동부 사업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년들이 실질적인 직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참여기업 모집 시 내실 있는 디지털 기술 활용 직무를 발굴하여 채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실적 제고 노력 필요 등(문화체육관광부)

(1) 현황

MICE¹⁾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²⁾은 온라인, 비대면 국제회의 수요 증가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기획, 홍보 및 회의기술 개발 등 디지털 분야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5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0	0	0	4,520	4,52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동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한국PCO협회를 보조사업자로 하여 공모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고, 지원업체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디지털 전문인력 400명의 6개월분 인건비 43억 2,000만원과 운영비 2억원이 편성되었다.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

- 총 사업예산: 4,520백만원
- 인건비: 4,320백만원=1.8백만원×400명×6개월
- 사업운영비: 200백만원(400명×5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MICE(마이스)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로, 국제회의와 전시회 등을 주축으로 한 융·복합 산업을 뜻한다.

2) 코드: 일반회계 4437-300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을 추진 하면서 타 부처와 협업을 통해 특화분야를 운영하였는바, 문화·체육·관광 분야 중 하나로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 추경에 반영된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은 2020년 고용노동부 예산으로 추진한 채용지원 사업을 확대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원대상을 청년 계층(만 15~34세)에 한정된 고용노동부 사업과 달리 동 사업에서는 청년 계층에 국한하지 않을 예정이고, 고용노동부 사업에 비해 지원 인원 수를 확대(270명 → 400명)할 계획이다.

(2) 분석의견

고용노동부가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으로 추진한 MICE산업 분야 일자리사업의 실적이 저조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채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고,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된 인력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집행한 고용노동부의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의 실적을 살펴보면, 68개 업체가 지원하여 65개 업체가 선정되어 인력지원 혜택을 받았으나, 2019년 기준으로 국제회의업(MICE산업)의 사업체 수가 1,040개³⁾라는 점을 감안하면 참여율이 낮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목표 채용인원 270명에 미치지 못하는 187명의 인력이 실제로 채용되었고, 목표 대비 채용률이 69.3%에 머무르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였다.

[2020년 고용노동부 MICE산업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실적]

목표채용인원	실제채용인원	목표 대비 채용률	예산집행률 ¹⁾
270명	187명	69.3%	19% (*21년 2월말 기준)

주: 1) 동 사업은 '20.12월까지 채용한 자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21. 6월까지 예산을 집행할 예정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 2019년 기준 관광사업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회의업의 업체 수는 1,040개이고, 종사자 수는 10,235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실적 저조 사유에 대하여 동 사업은 작년 제3회 추경 통과 후 하반기에 실시되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집합·모임 제한 조치 강화, 국제회의 연기·취소 등으로 업체들의 인력 채용여력이 감소하여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작년에 비해 올해의 경우 온·오프라인 국제회의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으로 업체의 채용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추경예산 안에 반영된 사업은 청년층에 한정하지 않는 등 참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므로 작년에 비해 사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의업은 현재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⁴⁾되어 있는 등 여전히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작년 사업에 비해 사업규모가 확대된 점을 감안할 때 목표 채용인원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운 MICE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이지만, 향후 온라인·비대면 국제회의 수요 증가에 대응한 MICE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된 인력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면서 해당 사업이 향후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일자리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⁵⁾)과 연계를 강화한 바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용노동부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동 추경사업과 기존 일자리 지원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이 채용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가진 기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4) 전시·국제회의업은 2020년 4월 27일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되었고, 정부는 2020년 8월 30일 전시·국제회의업의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기간을 2021년 3월말까지 연장하였다.

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경우 1인당 연간 9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고용보험 이력 1년 이하 등)과 중소기업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2년 이상 근무할 때 만기금을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마.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 마련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 현황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¹⁾은 해외 공연 관객 대상 온라인 홍보 전문인력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 이후 공연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33억 9,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0	0	0	3,390	3,390	순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을 통해 공연관광업체에 온라인 홍보, 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300명의 6개월분 인건비 32억 4,000만원과 사업운영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공연관광 디지털 전문인력 지원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

<p>○ 총 사업예산: 3,39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3,240백만원=1.8백만원×300명×6개월 - 사업운영비: 150백만원(300명×5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공연관광이란 공연과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 여행객에게 공연이 관광 상품으로서 판매되는 형태를 지닌다. 공연관광의 대상이 되는 공연은 주로 해외 관광객을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일반회계 4437-301

대상으로 난버벌(비언어극), 뮤지컬 등 소리와 동작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난타, 점프, 페인터즈 등)으로 무용이나 전통공연 등 다양한 장르가 포함된다.

동 사업은 전액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보조사업자인 한국공연관광협회가 공모를 통해 지원업체 선정 및 인력채용 등의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공연관광협회 소속 업체 수는 19개(25개 작품)인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공연이 중단된 상황이다.

[한국공연관광협회 소속 공연관광업체 운영현황]

연번	제작사	진행 공연	공연현황	운영현황
1	(주)두비컴뮤니케이션즈	◦사춤	중단 (2020.2)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2	(사)경북미래문화재단	◦하이마스크	중단 (2020.2)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3	(재)정동극장	◦정동극장	중단 (2020.2)	예정된 공연 전면 취소 및 중단
4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아리아라리	중단 (2020.8)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5	(주)연우무대	◦오 당신이 잠든 사이 ◦여신님이 보고계셔 ◦극적인 하룻밤 ◦줄리엔폴	중단 (2020.2)	예정된 공연 전면 취소 및 중단
6	(주)지안컴퍼니	◦뷰티풀 라이프 ◦리미트	중단 (2020.11)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7	(주)키위미디어그룹	◦썬앤문	중단 (2020.2)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8	에이치제이컬처(주)	◦세종 1446 ◦장화신은 고양이	중단 (2020.11)	예정된 공연 전면 취소 및 중단
9	(주)네오	◦김종욱 찾기 ◦작업의 정석	중단 (2020.12)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10	(주)도모컴퍼니	◦당신만이	중단 (2020.11)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11	(주)명보아트홀	◦드럼캣	중단 (2020.2)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12	(주)예감	◦점프	중단 (2020.2)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연번	제작사	진행 공연	공연현황	운영현황
13	(주)터치스카이	◦광쇼	중단 (2020.2)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14	(주)페르소나	◦셰프	중단 (2020.2)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15	(주)펜타토닉	◦페인터즈	중단 (2020.2)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16	(주)피엠씨프러덕션	◦난타	중단 (2020.2)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17	(주)해라	◦판타스틱	중단 (2020.2)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18	한국문화재단	◦춘향전	중단 (2020.2)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19	(주)에스제이비 보이즈	◦쿵	중단 (2020.2)	상설공연장 운영중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분석의견

동 사업의 지원대상인 공연관광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디지털 전문인력 채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지속으로 해외 홍보, 마케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한국공연관광협회 소속 공연(19개사 25개 작품)의 공연 중단(20년 2월~)으로 인해 예약 취소, 상설공연장 대관료, 작품 제작비 등 피해액은 약 800억원으로 추정되며, 2020년 내·외국인 관람객 수는 2019년(207만 3천명) 대비 89% 감소한 23만명(20년 1~2월)을 기록하였다. 한국공연관광협회에 소속된 업체는 상설공연장을 운영하며 공연관광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라는 점에서 이에 속하지 않은 다른 공연관광 업체들도 상당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공연관광업체에 대해 온라인 홍보, 마케팅 등 인력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 이후 공연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

출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동 사업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 사업의 인력지원 규모인 300명의 산출근거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공연관광협회 소속 업체 수가 19개(25개 작품)이고, 대학로 공연관광 축제(웰컴대학로²⁾) 참가 공연(19년 60여개) 및 지역 공연관광 작품(50여개) 등 공연관광 단체(기업) 120여개를 대상으로 언어권별 온라인 홍보·마케팅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규모를 300명으로 산출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공연관광에 해당하는 공연이 특정한 장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공연 중 주로 외국인에게 관광상품으로 판매되는 공연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연관광과 공연관광업체의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추진 시 지원대상의 범위를 가급적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되는 인력들의 직무 예시로 ① 해외 국가별(중국, 일본, 대만 등) SNS 홍보, ② AR/VR 공연 콘텐츠 활용 홍보, ③ 해외 공연관계사 및 여행사(OTA 포함) 대상 온라인 마케팅(공연관광 상품 판촉) 수행 등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마케팅, 홍보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동 사업의 인건비(월 180만원) 수준으로는 전문인력 채용이 어렵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채용인력별 경력, 업무 전문성 등에 따라 사업주가 임금을 자율적으로 추가 부담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업주가 자부담을 높여 임금수준을 높인다면 전문인력 채용이 보다 용이할 수는 있으나, 현재 코로나19로 거의 대부분의 공연관광이 중단되는 등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사업주가 자부담률을 높여 채용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으로 채용하게 되면 동 사업에서 말하는 디지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채용된 인력이 단순 반복적이고 비전문적인 업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향한 관광이 어려운 해외 관객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 공연관광 상품 판매 등 전략적 온라인 마케팅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코로나 안정기 및 점진적 국제관광 재개 시 방

2) 웰컴대학로는 난버벌 퍼포먼스, 전통공연,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한국 공연을 대학로에서 만나볼 수 있는 페스티벌로, 2017년도를 시작으로 매년 가을 국내 및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대학로에서 개최되고 있다.

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사전 홍보와 공연관광 상품 판촉 등 마케팅을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향후 코로나19의 종식 시점과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측면이 크고, 해외의 경우 여전히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을 통한 홍보, 마케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앞에서 언급한 사항 등을 검토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공연관광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업의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바. 민간 실내체육시설 지원대상 선정 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필요(문화체육관광부)

(1) 현황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¹⁾은 코로나19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체육 시설업계에 대한 인력 채용 지원을 통해 업계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실내체육 시설의 트레이너에 대한 직업역량 교육(비대면 사업화 역량, 방역·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693억 6,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2021년도 기금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	5,434	17,634	23,044	36,584	105,944	69,360	189.6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0	0	0	0	69,360	69,360	순증

주: 1. '당초'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액, '현계획'은 당초 계획액에서 자체변경을 통해 변경된 계획액(추경안 국회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2. 2021년 1월 기금변경을 통해 135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을 통해 민간 실내체육시설업에 6,800명의 고용을 지원하고, 이렇게 고용된 인력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800명의 6개월 간 인건비 652억 8,000만원과 역량강화 교육 및 사업운영비 4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 예산은 전액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업하여 민간 전문 위탁업체(보조사업자) 5개소 내외를 선정(4월)하고, 고용기업과 채용인원을 선발·매칭(5월)하여 사업을 집행(6월~12월)할 계획이다.

권순진 예산분석관(sjkwon0523@assembly.go.kr, 6788-4635)

1) 코드: 국민체육진흥기금 5161-310의 내역사업

[민간 실내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

<p>○ 총 사업예산: 69,36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지원: 1.6백만원×6,800명×6개월= 65,280백만원 * 민간기업 자부담 월 0.4백만원(20%) 별도 - 교육지원 : 3,400백만원(0.5백만원×6,800명) * 운동 지도자로서의 전문역량(운동생리학, 지도학 등), 온라인 마케팅 등 비대면 사업화 역량, 시설내 방역 및 안전수칙 등 직무역량 강화 - 사업운영비 : 680백만원(0.1백만원×6,800명)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분석의견

동 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실내체육시설업이 전체 실내체육시설업 규모 대비 한정된 규모라는 점에서 지원업체 선정 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많이 받은 업체들이 선정되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태권도장, 체력단련장(헬스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업은 업체 수 약 6.3만개, 종사자규모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데, 실내체육시설업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에 해당하여 매출감소, 종사자 실업 등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실내체육시설의 생활 속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지침]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m²당 1명으로 인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섭취 금지 ○ 4m²당 1명으로 인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시 이후 운영 중단¹⁾ ○ 음식섭취 금지 ○ 4m²당 1명으로 인원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금지 	

주: 1) 정부는 2021년 2월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하향조정하면서, 운영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1시간 연장하였음.

1. 실내체육시설 중 GX류(줌바·스피닝·에어로빅 등)는 수도권의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에서 집합금지 조치된바 있음.

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바탕으로 제작함

정부는 2020년 6월 이후 추경과 예비비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 피해지원을 실시하였는바,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집합금지된 시설을 기준으로 작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일정요건 충족 시 최대 650만원 수준(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 새희망자금 200만원 + 버팀목자금 3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²⁾ 또한, 이번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500만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1,150만원의 지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6월 이후 실내체육시설업에 대한 지원내용]

구 분	지원내용	대 상	비 고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150만원 (월 50만원×3개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트레이너 등), 영세 자영업자 등	2020년 제3회 추경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집합금지) 150만원(집합제한)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4인 이하)	2020년 제4회 추경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300만원(집합금지) 200만원(집합제한)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코로나19 3차 확산 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12.29.)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집합금지 연장 ²⁾)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포함	2021년 제1회 추경

주: 1) 2021년 1월 2일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으로, 실내체육시설이 이에 해당함
 1. 집합금지·제한 구분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상이함
 자료: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 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20.12.29.), 기획재정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021.3.2.) 등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정부의 피해지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하여 민간 실내체육시설업은 실직, 폐업 등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

2) 표에 제시된 지원금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지원금’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 방역 실내 체육시설 포상’, 서울시의 집합금지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선결제상품권 발행·용자 지원 등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었다.

에 계속 처해있는 상황이므로, 고용여력이 감소한 실내체육시설업계에 대한 인력 채용 지원을 통해 위기극복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동 사업 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동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사업물량인 6,800명은 전체 실내체육시설업의 업체 수(6.3만개)를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규모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지원업체 선정 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선정절차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 앞서 정부가 지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을 받은 실내체육시설 전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데 반하여 동 사업은 업체 한 곳당 한 명의 인력 채용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할 때 최대 6,800개 업체로 지원이 한정된다. 실내체육시설업 업주 입장에서 인건비는 임대료와 함께 운영비용의 상당액을 차지하는 것으로 지원업체로 선정되면 6개월 간 960만원(160만원×6개월)의 인건비 지원을 받게 되는 셈인데, 이 금액은 집합금지업종이 작년 6월부터 올해 초까지 피해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이 최대 650만원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지원액수라고 할 수 있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업은 지역(수도권/비수도권) 또는 업종(GX류/그 외)에 따라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이 나뉘는 등 영업제한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른 매출액 감소폭의 차이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소상공인(상시 근로자 4인 이하) 요건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대형 실내체육시설업은 지원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³⁾

이처럼 민간 실내체육시설업계 내부에서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정도나 정부지원의 차이 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면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직까지 심사절차나 지원업체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이에 정부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도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하였다.

민간 실내체육시설업은 정부의 방역조치(집합금지·집합제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 중 하나로 정부의 피해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한정된 물량으로 지원하는 동 사업의 특성 상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업종별 집합금지 제한 정도나 그간 정부의 피해지원 등 제반사정과 실내체육시설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VI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개 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은 11조 3,655억 2,800만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총수입 규모 변동은 없다. 또한 총지출은 16조 2,985억 1,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9억 400만원이 증액되었다.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은 9,906억 7,400만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총수입 규모 변동은 없다. 또한 총지출은 6조 1,669억 9,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다.

산림청 소관 총수입은 3,860억 3,200만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총수입 규모 변동은 없다. 또한 총지출은 2조 5,516억 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34억 2,100만원 증액되었다.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68억 7,200만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총수입 규모 변동은 없다. 다만, 총지출은 1조 5,416억 9,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yjkim@assembly.go.kr, 6788-4631)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e@assembly.go.kr, 6788-4629)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6788-4632)
고준혁 예산분석관(junekoh@assembly.go.kr, 6788-465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농림축산식품부	총수입	11,365,528	11,365,528	0	0.0
	총지출	16,285,615	16,298,519	12,904	0.08
해양수산부	총수입	990,674	990,674	0	0.0
	총지출	6,162,814	6,166,991	4,177	0.07
산림청	총수입	386,032	386,032	0	0.0
	총지출	2,528,186	2,551,607	23,421	0.9
해양경찰청	총수입	6,872	6,872	0	0.0
	총지출	1,540,669	1,541,694	1,025	0.0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양경찰청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6개 세부사업(일반지출 4개, 내부거래지출 2개)이다. 일반지출 사업은 1개의 신규 세부사업과 3개의 내역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① 농식품분야 긴급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농지이용관리지원 등 3개 사업에 122억 2,6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②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근로자 도입이 제한되어 인력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내국인 근로자 파견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6억 7,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8010-800)	4,234,623	1,924,483	△2,310,140	△54.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1140337)	0	4,747	4,747	순증
	농촌고용인력지원(1140-333)	5,300	5,978	678	12.8
	구조개선사업계정 전출(9303-935)	992,652	3,189,370	2,196,718	221.3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2231-412)	13,920	16,520	2,600	18.7
농지관리기금	농지이용관리지원(4130-412)	18,395	23,274	4,879	26.5
합 계		5,264,890	5,164,372	△100,518	△1.9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3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 1개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해양수산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① 불법 수산물 포획 및 암거래 등에 대한 차단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자원지킴이 채용을 위하여 어업지도

관리 사업에 7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해양교통 안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인력 채용을 위하여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 14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③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19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해양수산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어업지도관리(3132-303)	70,374	71,111	737	1.0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6332-302)	15,787	17,267	1,480	9.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3440-316)	0	1,960	1,960	순증
합 계		86,161	90,338	4,177	4.8

주: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3) 산림청

산림청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4개 세부사업이다.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산림재해일자리, 산림휴양등산증진,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숲가꾸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234억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는 총 2,280명이다.

[산림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산림재해일자리(1931-310)	98,950	107,562	8,612	8.7
	산림휴양등산증진(1743-301)	10,786	15,586	4,800	44.5
	산림생물다양성증진(1934-300)	15,929	19,835	3,906	24.5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숲가꾸기(1534-302)	188,396	194,499	6,103	3.2
합 계		314,061	337,482	23,421	7.5

주: 총계 기준
자료: 산림청

(4)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개 사업이다. 전국 연안 위험구역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하여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 사업에 10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해양경찰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3001-300)	4,686	5,711	1,025	21.9

주: 총계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가.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충분한 수요확보 및 계속고용을 위한 사업 설계 필요(농림축산식품부)

(1) 현 황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¹⁾은 스마트팜, 농식품벤처, 수출 등 농식품분야 유망기업의 디지털 분야 역량을 제고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47억 4,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농업분야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0	0	0	4,747	4,747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동 추경사업은 농업법인 취업지원, 농식품벤처창업 일자리 지원, 스마트팜 디지털 일자리 지원,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육성,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등 총 5개의 내역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법인 취업지원은 청년(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게 1인당 월급(월 202만원 한도)의 80% 이내로 연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법인당 1~3명)할 계획이고, 농식품벤처창업 일자리 지원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기업이 디지털 지원 인력(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채용 시 임금의 9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스마트팜 디지털 일자리 지원은 디지털 지원 인력(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을 채용한 스마트팜 기업에게 6개월간 인건비의 90%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육성은 중소 식품수출

고준혁 예산분석관(junekoh@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140-337

기업의 해외 온라인몰 판매지원 등 1:1 밀착 관리를 위한 청년·여성 코디네이터 채용 시 6개월간 90%의 임금지원을 하는 것이고,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은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이 온라인 쇼핑몰 관리 및 SNS 마케팅 등 관련 분야 청년채용 시 인건비의 90%를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의 내역별 내용]

(단위: 백만원)

	추경안	내 용
농업법인 취업지원	1,957	농산업분야의 신규인력 유입촉진을 위해 농업법인의 실무연수에 참여하는 청년층 대상 인건비 일부 지원 (국비 80%, 자부담 20%)
농식품벤처창업 일자리지원	1,108.8	디지털 지원 인력을 채용한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지원(국비 90%, 자부담 10%)
스마트팜 디지털 일자리 지원	560.4	디지털 지원 인력을 채용한 스마트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 지원(국비 90%, 자부담 10%)
K-FOOD 온라인 코디네이터 육성	560.4	중소 식품수출기업의 해외 온라인몰 판매지원 등 1:1 밀착 관리를 위한 청년·여성 코디네이터 채용 시 임금지원(국비 90%, 자부담 10%)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	560.4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이 온라인 쇼핑몰 관리 및 SNS 마케팅 등 관련 분야 청년채용 시 임금지원 (국비 90%, 자부담 1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들의 어려운 여건·수요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인건비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및 농식품 분야 산업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고, 특히, 비대면·디지털 분야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 분야 기업들이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여 디지털 친화적인 청년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2) 분석의견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은 적극적인 수요발굴 및 홍보 등을 통해 청년 실무연수자와 농업법인체의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은 이번 추경으로 편성되는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영농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농산업분야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청년을 수습 채용한 농업법인에 1인당 월급의 80%(월급 202만원 한도) 이내로 연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고, 법인당 1~3명씩 총 2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 150명에게 1인당 월급 100만원 한도로 연간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18년 및 2021년 추경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지원내용 비교]

	2018	2021
예산액(백만원)	480	1,957
선발인원(명)	150	200
지원기간	3개월	6개월
월급	최대 100만원	최대 202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계획인원의 5.3%에 불과한 8명이 농업법인과 매칭되었고, 추경예산의 6%에 불과한 3,0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며, 그 결과 2018회계연도 결산시정요구를 통해 지적되기도 하였다.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서]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사업 수요 예측의 정확성 제고 및 법인과 청년 간 조기 매칭 완료	내역사업인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은 청년인턴 150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경을 통해 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 법인과 청년 간 매칭 인원은 8명에 불과하였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한 후 예산을 편성하고, 농업법인 풀(pool)의 확충을 통해 법인과 인턴 매칭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여 인력 매칭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것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당초 예상과 달리 사업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사업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상시종사자 6인 이상, 경영규모 기준표 상 고소득 전업농 이상의 경영규모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는 등 농업법인 지원 자격이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파악된다.²⁾

[2018년 및 2021년 추경 농업법인 취업지원사업 지원요건 비교]

	2018	2021
매출액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상시종사자	6인 이상	5인 이상
경영규모	고소득 전업농 이상	전업농 이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제1회 추경사업의 경우,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5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농업법인 지원 자격이 다소 완화되었지만, 사업수요가 충분하다고 단언하기에는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2019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 (2020년 8월~12월 조사)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또는 매출액 5억원 이상 요건을 만족하는 법인의 수는 9,500여 개소이나 해당 법인들의 사업 참여 수요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³⁾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체 수요조사를 포함한 정밀한 사업수요 분석 및 수요발굴을 실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하여 2018년도 추경사업의 저조한 실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대한 재정 지원이 민간분야의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농업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은 민간 농업분야에 신규 취업한 인력에 대한 단기(6개월) 임금지원(최저임금 202만원의 80~90%)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단기 재정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용이 이루어짐으로써, 농식품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궁극적인 사업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외에도 청년농업인의 농업법인 인턴신청이 저조했던 것도 원인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안 편성의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인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취업 청년에게 단순 보조 및 노무보다는 직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가 주어지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등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하여, 사업 참여 경력이 기업의 고용유지 또는 향후 새롭게 취업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업 진행과정 및 종료 전·후의 고용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19년 기준 농업법인 근로자 중 29.7%가 임시일용근로자이고, 단순노무(농업생산) 분야 종사자가 전체의 44.6%를 차지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6개월분 임금을 지원받는 1~3명의 신규 인력을 충원한 농업법인이 단순노무직 기존 인력을 감축할 유인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⁵⁾

4) 「2019년 기준 농업법인 통계조사」 농림축산식품부

5)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경안으로 제출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데이터 일자리 사업의 경우 신규채용인력 및 인력 운영현황에 대한 격주 단위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나. 농지이용 관리지원 사업은 사업추진의 근거 보완 및 사업집행 효율화 방안 검토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1) 현 황

농지조사 및 DB구축 사업은 농지원부 전면개편에 대비한 미등재 농지 전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48억 7,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농지이용관리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농지조사 및 DB구축 사업 2021년도 기금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당초	수정	당초(A)	변경안(B)	(B-A)	(B-A)/A
농지이용관리지원	4,445	9,942	18,395	23,274	4,879	26.5
농지조사 및 DB구축	0	0	0	4,879	4,879	순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1월에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²⁾을 마련하고 농지원부 2개년 일제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를 추진 중인데, 그 내용은 농지원부의 작성대상 확대, 작성기준 및 관할 행정청의 변경 등을 담고 있다.

[농지원부 제도개선 방안]

구 분	현행	변경
작성대상	1천 m ² 이상	모든 농지
작성기준	농업인	필지
관할 행정청	주소지	소재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고준혁 예산분석관(junckoh@assembly.go.kr, 6788-4651)

1) 코드: 농지관리기금 4130-412

2)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농지원부가 농업인(세대) 기준으로 작성되고 농업경영 입증자료 성격이 강조됨에 따라 각 필지(지번)별 농지정보 관리에 취약하고 필지별 농지의 소유·임대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현황, 규제 등 다양한 정보의 분석, 가공, 공개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모든 농지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 작성기준을 필지별로 변경하여 공적장부로서의 역할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농지원부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농지관할 행정청인 지자체가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농지(농업진흥지역 31만ha)에 대한 농지원부를 신규 작성할 수 있도록 사전에 농지 현황을 필지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본예산은 현재 작성되어 있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위한 지자체 인력 지원만 포함되어 있고 미등재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 준비를 위한 예산은 불포함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추가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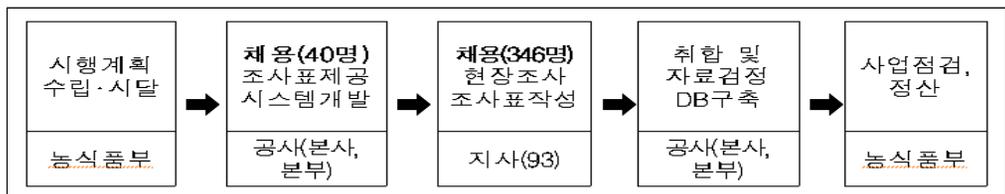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민간경상보조(국비 100%)방식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농지원부 미등재된 농업진흥지역 미등재 농지 31만ha에 대한 현장조사 인력 346명 및 DB구축 인력 40명 등 총 386명의 인력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지조사 및 DB구축 사업 2021년도 기금변경안 산출근거]

항목별 산출내역			사업비	비고
총 계			4,879,000	
현장조사 및 DB구축 소계			4,679,121	총 386명 목표
계			4,324,601	
현장조사	인건비	1,343*×346명×6개월 * 8,720원×7시간×22일	2,787,819	2021년 최저임금, 7시간근로제
	경비	134천원×346명×6개월	278,782	4대보험 등 법정부담금, 10%
계			3,066,601	여비
DB구축	인건비	1,343천원×40명×6개월	322,291	2021년 최저임금, 7시간근로제
		134천원×40명×6개월	32,229	4대보험 등 법정부담금, 10%
사업관리비 소계			199,879	
사업관리	일반관리	326천원×102개소×6개월	199,879	1본사, 8지역본부, 93개지사 공고, 면접 등 근태·안전관리, 현장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조사 및 DB구축 사업 사업추진체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분석의견

농지조사 및 DB구축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의 법령상 근거인 「농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법률은 예산의 편성·집행에 근거를 제공한다.

법률안의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법률안에 대한 심의 결과와 연계하여 예산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안에는 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출의 근거가 될 법령이 미흡한 경우에는 법령을 제·개정하여 근거를 보완하거나 예산안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은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인데, 농지조사 및 DB구축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모든 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작성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법령개정이 되기 전에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이 아니므로, 현재는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법령상 근거인 「농지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³⁾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원부(農地原簿)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대를 말한다)·농업법인 또는 제2항에 따른 준농업법인 별로 작성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은 모든 농지 에 대하여 필지별로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농지 소재지 2. 지목, 면적, 용도지역 3. 농업진흥지역 여부 4. 등기원인, 원인일자 등 농지소유 사항 5. 임차인,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료 등 농지임대차 정보

<p>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p> <p>②준농업법인은 직접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단체·농업생산자단체·농업연구기관 또는 농업기자재를 생산하는 자 등으로 한다.</p>	<p>6.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p> <p>7.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및 조치상황</p> <p>8. 농지전용 사항</p>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인 농지원부의 작성·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 사업의 당초 계획은 농지원부 일체정비를 위한 경비를 자치단체경상보조(국고보조비율 70%)의 방식으로 지자체에 지원하는데 반해, 이번 추경을 통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농지원부 미작성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 비용을 민간경상보조(국고보조비율 100%)의 방식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본예산은 현재 작성되어 관리 중인 농지원부의 일체 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조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추경예산은 농지원부를 신규작성 할 수 있도록 공사가 사전에 미등록된 농지현황을 필지별로 조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정보 시스템을 운영·관리하고 있어 농지원부에 미등록된 농지 기초자료 생성 및 현장조사에 유리하며 단기간(6개월 이내)에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경우 현재 코로나19·AI 등 가축방역 업무·공익적 불체·농지원부 일체정비 등 현안업무 대응으로 인하여, 추경사업인 농지조사 업무까지 추가된다면 예산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에 예정된 농지원부 제도개편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지법령 개정과 농지원부 작성 및 DB 구축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7월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① 현행 「농지법」⁴⁾은 농지원부의 작성주체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지원부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②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경비는 결국 농지원부 작성을 위한 사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농지원부의 작성·관리가 법률상 지자체의 사무이기는 하지만, 지자체가 농지원부를 제대로 작성·관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농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지원부 작성 및 관리체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①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 수산분야 일자리 사업은 사업효과 증대를 위한 면밀한 사업설계 필요(해양수산부)

(1) 현황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¹⁾은 수산분야 경쟁력 제고 및 청년의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해 수산분야 유망기업의 청년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19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불법어업 홍보 등²⁾ 사업은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 또는 체중미달 수산물 포획·유통 등 불법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어업지도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1년 본예산은 3억 6,0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7억 3,700만원 증액된 10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지원 및 불법어업 홍보 등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0	0	0	1,960	순증	순증
어업지도관리	2,552	4,352	70,374	71,111	737	1.0
불법어업 홍보 등	680	680	360	1,097	737	204.7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이 금번 추경안을 통해 수산분야에서 두 가지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수산분야유망기업청년취업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해양수산벤처창업일자리지원,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어업법인취업지원, 스마트 어촌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c@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440-316

2) 코드: 일반회계 3132-303의 내역사업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수산벤처창업일자리지원 분야는 지역별 창업투자 지원센터(부산, 제주, 경북, 강원, 전남, 충남)를 통해 해양·수산·식품 분야 중소·벤처 기업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신규취업자에 대한 6개월분 최저임금(202만원)의 90%를 지자체 보조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고,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분야는 수산식품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 온라인몰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온라인몰 시장 조사, 온라인몰 입점·홍보·판매, 통·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력단절여성 및 청년 35명을 채용하는데 필요한 6개월분 최저임금의 90%를 민간보조로 지원할 예정이며, 어업 법인취업지원 분야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³⁾ 어업법인의 청년(만 18~40세) 신규채용자에 대한 6개월분 최저임금의 80%를 민간보조로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어촌지원 분야는 어촌어항공단이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 어촌체험마을 홈페이지⁴⁾의 정보 현행화, 온라인 예약결제 체계 마련 등의 업무 수행 및 마을 주민들 대상 IT 관련 지식 교육 인력으로 45명을 채용하고, 이에 대한 6개월분 최저임금의 90%를 위탁사업자인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어업 홍보 등 사업은 주요 항·포구 30개소에 개소당 2명의 수산자원 지킴이를 채용·배치하여 불법 수산물 포획·유통 등을 단속하는 감시업무와 불법어업 근절 홍보 및 주요정책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채용인력 60명에 대한 6개월분 최저임금 20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3) 직전 2년 평균 매출액 2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

4) <https://www.seantour.com/seantour/>

[수산분야 일자리사업 세부 내용]

(단위: 명, 개월, 백만원)

세부 사업명	분야	채용 인원	채용 기간	추경안	사업 수행방식	사업내용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해양수산 벤처창업 일자리지원	60	6	714	지자체 보조 (90%)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해양수산·식품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 신규취업자에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 지원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35		435	민간 보조 (90%)	수산식품 중소 수출업체의 해외 온라인몰 진출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온라인 입점 홍보·판매 등) 인건비 지원
	어업법인 취업지원	30		311	민간 보조 (80%)	청년(만 18세~40세)을 채용한 어업법인에 신규인력 인건비 지원
	스마트 어촌지원	45		500	민간 위탁 (90%)	어촌어항공단이 운영중인 어촌체험마을의 홈페이지 등 IT 인프라 개선과 IT 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력 채용
	소계	170		1,960		
어업지도 관리	수산자원 지키미	60		737	직접	어촌지역 주민을 채용하여 불법 수산물 포획·유통행위 단속 등 감시
합계		230		2,697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2) 분석의견

수산분야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은 단기적인 일자리에 대한 재정 지원이 민간분야의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하다.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은 민간 수산분야에 신규취업한 인력에 대해 단기(6개월) 임금지원(최저임금 202만원의 80~90%)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일자리에 대한 단기적인 재정 지원이 지속적인 고용으로 연결되어야 수산분야 경쟁률 제고 및 청년의 어촌 정착지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업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기적인 일자리 채용 지원이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업효과를 검토한 후 필요시 재정당국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사업의 효과 제고 측면에서 기업·법인 등 민간의 지속적인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 지속기업에 대해 관련 사업 선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동 사업은 해양수산벤처창업일자리지원 분야, 어업법인취업지원 분야에서는 각각 해양·수산·식품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어업법인 등의 공모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법인을 선정할 계획으로 대상 기업·법인 선정에 있어 고용지속 가능성 여부를 중요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K-씨푸드 수출 코디네이터, 스마트어촌지원 사업은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수산물 수출지원사업, 어촌체험마을 운영사업 등에 필요한 디지털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채용된 청년 참여자가 사업 종료 후 다른 민간 분야의 유사 업무 직종 구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단순 보조업무보다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어업법인 취업지원 등 수산분야 일자리 사업은 짧은 추경안 편성기간으로 사전 수요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편성되어 사업이 원활히 집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수요조사 및 발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분야 일자리 사업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수산분야의 구인·구직수요가 매칭되어야 실제 고용이라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해양수산벤처창업일자리지원, 어업법인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법인의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구인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그러나 동 사업은 짧은 추경안 편성기간으로 인해 사전 수요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사업이 편성되어, 사업 집행과정에서 구인·구직 수요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수산분야 유망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의 어업법인 취업지원 분야와 유사한 사업으로 과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추진되었으나, 계획인원 150명 대비 5.3%에 불과한 8명만이 농업법인에 취업하였고 추가 경정예산 4억 8,000만원의 6%에 불과한 3,000만원을 집행하는 저조한 성과로 국회의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시정요구를 받기도 하였는데⁵⁾, 동 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수요를 발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5) 다만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이 독립경영대상자로 실무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과 사업대상에 차이는 있다.

**라.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 사업은 DB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마련 및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해양수산부)**

(1) 현 황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¹⁾ 사업은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해양사고, 선박검사, 항로표지 등 해양안전과 관련된 종이문서 및 각종 수기자료 등을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1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해양사고 예방 활동 지원	14,740	14,740	15,787	17,267	1,480	9.4
해양안전정보 디지털화	0	0	0	1,480	순증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동 사업을 통해 만 19~34세 청년 122명을 2021년 6월부터 11월 까지 6개월간 채용하고 월 202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동 사업은 별도의 운영경비 없이 전액 인건비 목적으로만 편성되어 있다. 동 사업을 통해 데이터 베이스(DB)화할 자료는 해양사고 기초자료, 선박검사정보, 해양관측 역사자료, 선박 등록정보, 항로표지정보로 구분되는데, 이 중 해양사고기초자료와 선박검사정보 DB 구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민간경상보조 형태(320-01)로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고, 해양관측역사자료, 선박등록정보, 항로표지정보 DB 구축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직접 수행하여 일용임금(110-04)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광근 예산분석관(kkleec@assembly.go.kr, 6788-4629)

1) 코드: 일반회계 6332-302의 내역사업

[해양교통 안전정보 디지털화 사업 내용]

(단위: 명, 개월, 백만원)

DB화 대상	채용인원	채용기간	추경안	비목	사업수행방식
해양사고기초자료	42	6	509	민간경상보조 (320-01)	민간경상보조(한국해양 교통안전공단 100% 지원)
선박검사정보	36		437		
해양관측역사자료	10		121	일용임금 (110-04)	해양수산부(국립해양 조사원) 수행 해양수산부(지방해양 수산청) 수행
선박등록정보	14		170		
항로표지정보	20		243		
합계	122			1,48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 자료 별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사고 기초자료 데이터의 경우 해양사고 53,000건의 자료에 대한 누락정보 입력, 오류정보 수정 등을 수행하고, 선박검사정보의 경우 약 25,000여건의 선박검사 및 도면검사 정보 등을 전산화할 예정이다. 해양관측역사자료의 경우 조석표(潮汐表) 등 120권 분량의 해양 관측 역사자료를 전산화하고, 선박등록정보의 경우 9천여척의 등록선박정보의 선박 소유자 주소, 연락처, 선박용도 등 선박등록정보를 현행화하며, 항로표지정보의 경우 기존 종이형태로 관리중인 3,200여건의 항로표지 설계도면 및 시설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해양교통 안전정보 디지털화 사업 내용]

DB화 대상	총 자료수	기존 DB 구축 자료수	DB 구축 계획 자료수	사업내용
해양사고기초자료	53,000여건	약18,000건	53,000건	해양사고 관련자료 53,000건 중 누락정보 입력, 오류정보 수정 및 자료 전산화
선박검사정보	25,000여건	-	25,000건	선박검사, 도면검사 정보를 전산화
해양관측역사자료	175권	55권	120권	조석표(潮汐表) 등 해양관측 누적자료를 전산화하여 해역 특성변화 파악 및 예측에 사용
선박등록정보	9,000여척	-	9,000척	선박 등록 이후 소유자 주소, 연락처, 선박용도 등 선박 정보 현행화
항로표지정보	3,200여건	-	3,200건	종이형태로 관리중인 항로표지의 설계도면 및 시설정보를 전산화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2) 분석의견

해양수산부는 해양사고 예방이라는 사업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축하려는 해양교통 안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내실있게 구축하기 위한 충실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

동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한 단기 직접일자리 제공 측면이 있으나, 해양안전과 관련한 문서들을 전산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행정목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업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활용 행정수요를 발굴하여 그에 적합하게 데이터베이스 구축 설계를 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고 엄밀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해양수산부가 제시한 사업계획안을 살펴보면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으로 해양사고기초자료, 선박검사정보, 해양관측역사자료, 선박등록정보, 항로표지정보 등 5개 자료를 설정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필요성으로 각종 해양안전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안전대책 등 관련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짧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기간으로 인하여 해당 자료들을 실제 해양교통 안전 행정 실무 등에서 활용하는 방안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최종 정책목표가 해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체가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행정목적을 구현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될 데이터베이스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될 인력은 월 202만원의 최저임금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으로, 동 사업을 통해 단기 채용될 작업인력의 대부분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그리고 구축대상인 해양안전 분야와 관련된 사전지식이 없는 비숙련자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수행하는 작업이 종이문서 스캔 및 전산화, 정보 현행화·표준화, 누락정보 입력, 오류정보 수정 등 비교적 단순 작업임을 감안하더라도 구축하려는 해양교통 안전분야에 대한 사전교육과 실제 행정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데이터 오류에 대한 검수 없이는 자료의 엄밀성·정확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동 사업은 인건비 외에 사무실 운영, 비품 구비 등의 운영경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일부 작업의 경우 채용된 인원의 개인 PC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할 경우, 산출될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수준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사업 실시에 앞서 작업인력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와 함께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가이드라인을 엄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고, 해양수산부의 해양안전업무 담당자들이 데이터베이스화 공정을 직접 관리감독하여 데이터베이스의 오류를 조기에 발견·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 산림청 소관 직접일자리사업의 보완 필요 사항(산림청)

(1) 현황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산림청 소관 직접일자리 사업은 세부 사업 기준 4개 사업(내역사업 기준 5개)¹⁾으로, 총 2,280명, 234억 2,100만원 규모이다. 사업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안의 일자리 규모 및 예산 규모는 아래와 같다.

[산림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직접일자리 사업 규모]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2021		증감 (B-A)	증감률 (B-A/A)
		본예산(A)	추경안(B)		
합 계	예산	30,891 ¹⁾	54,312	23,421	75.8
	인원	2,222 ¹⁾	4,502	2,280	102.6
산림재해일자리		98,950	107,562	8,612	8.7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예산	19,526	21,548	2,022	10.4
	인원	1,328	1,672	344	25.9
산림보호지원단	예산	2,675	9,265	6,590	246.4
	인원	128	768	640	500.0
숲가꾸기		188,396	194,499	6,103	3.2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예산	8,690	14,793	6,103	70.2
	인원	766	1,342	576	75.2
산림휴양등산증진		10,786	15,586	4,800	44.5
숲길 자원정보 수집	예산	-	4,800	4,800	순증
	인원	-	400	400	순증
산림생물다양성증진		15,929	19,835	3,906	24.5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	예산	-	3,906	3,906	순증
	인원	-	320	320	순증

주: 1) 내역사업 기준으로 작성
자료: 산림청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6788-4632)

- 1) 각 사업의 사업코드는 다음과 같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일반회계 1931-310의 내역사업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34-302의 내역사업
 숲길 자원정보 수집: 일반회계 1743-301의 내역사업
 국가식물통합 DB구축 관리원: 일반회계 1934-300의 내역사업

각 사업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비관찰 및 피해조사, 산림병해충 방제활동 등을 수행하고, ② ‘산림보호지원단은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감시, 산림재해예방 및 산림정화활동을 수행하며, ③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등 산림정비, 정책 숲가꾸기 실행지를 중심으로 목재 등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한다. ④ ‘숲길 자원정보 수집은 GPS를 기반으로 노면상태, 자연경관, 조망점, 쉼터, 화장실 등의 전국 숲길 자원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⑤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은 전국 등록수목원 보유 식물자원의 현황 등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사업들의 추정안 증액규모 및 사업 대상과 추진방식을 살펴보면, 국유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산림청을 통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공유림·사유림 대상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보조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산림청 소관 제1회 추정안의 직접일자리 사업별 대상 및 추진방식]

(단위 : 명)

구 분	추가고용 인원	사업대상 및 추진방식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344	공유림·사유림: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산림보호지원단	640	국유림: 국가직접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576	국유림(248명): 국가직접 공유림·사유림(328명):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숲길 자원정보 수집	400	전국 숲길: 민간보조(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	320	전국 공·사립수목원: 국가직접

자료: 산림청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기존 1,328명 일자리 규모(산림청 328명, 지자체 1,000명)에서 지자체를 통한 고용규모를 344명(지자체 1,000명→1,344명) 증원할 예정이며, 이들은 기존 본예산에는 비교적 소규모로 배치되었던 산림병해충 피해 ‘경미’지역(87개 시·군·구)에 대해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배치 계획(안)]

시·도별	인 원(명)			증감률(%) (B-A/A)
	당 초(A)	변 경(B)	증 감(B-A)	
계	1,328	1,672	344	25.9
서울시	36	48	12	33.3
부산시	100	136	36	36.0
대구시	24	40	16	66.7
인천시	8	12	4	50.0
광주시	8	20	12	150.0
대전시	8	12	4	50.0
울산시	36	48	12	33.3
세종시	4	8	4	100.0
경기도	152	192	40	26.3
강원도	72	92	20	27.8
충청북도	44	68	24	54.5
충청남도	48	84	36	75.0
전라북도	44	76	32	72.7
전라남도	60	92	32	53.3
경상북도	148	188	40	27.0
경상남도	196	212	16	8.2
제주도	12	16	4	33.3
소속기관	328	328	-	-

자료: 산림청

산림보호지원단은 추경안을 통해 27개 국유림관리소에 160개단(640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본예산 기준 128명에서 768명으로 확대 고용할 예정이다. 가장 많이 배치되는 곳은 서울국유림관리소(서울·경기북부)와 수원국유림관리소(경기남부)로 이들은 서울 및 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고는 기타 광역시 및 춘천지역에서 운영 규모를 크게 늘리고 있다.

[산림보호지원단 배치 계획(안)]

국유림관리소	인 원(명)			증감률(%) (B-A/A)	비 고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128	768	640	500.0	
춘천국유림관리소	4	70	66	1,650.0	
홍천국유림관리소	4	8	4	100.0	
서울국유림관리소	11	131	120	1,090.9	서울·경북
수원국유림관리소	9	129	120	1,333.3	경기(남부)
인제국유림관리소	4	8	4	100.0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4	8	4	100.0	
강릉국유림관리소	3	23	20	666.7	
양양국유림관리소	6	10	4	66.7	
평창국유림관리소	6	10	4	66.7	
영월국유림관리소	6	10	4	66.7	
정선국유림관리소	2	4	2	100.0	
삼척국유림관리소	4	8	4	100.0	
태백국유림관리소	5	9	4	80.0	
남부지방산림청(울릉도)	3	3	-	-	울릉도
영주국유림관리소	5	9	4	80.0	
영덕국유림관리소	4	8	4	100.0	
구미국유림관리소	4	64	60	1,500.0	대구
울진국유림관리소	3	7	4	133.3	
양산국유림관리소	5	65	60	1,200.0	부산
충주국유림관리소	4	8	4	100.0	
보은국유림관리소	4	8	4	100.0	
단양국유림관리소	4	8	4	100.0	
부여국유림관리소	4	64	60	1,500.0	대전
정읍국유림관리소	4	8	4	100.0	
무주국유림관리소	4	8	4	100.0	
영암국유림관리소	4	64	60	1,500.0	광주
순천국유림관리소	4	8	4	100.0	
함양국유림관리소	4	8	4	100.0	

자료: 산림청

다음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기존 766명 일자리 규모(지자체 766명)에서 1,342명(국가 248명, 지자체 1,094명) 고용으로 일자리 규모를 576명 증가시키는 것으로, 국가 직접고용 인원(248명)의 경우 산불취약지역 위주로 31개 기관(27개 관리소, 4개 도시지역탐)에 1개단(8명)씩 운영할 계획이고, 지자체 소요인원(328명)은 전국 154개 광역도 내 지자체 중 숲가꾸기 사업면적이 적어 수집단 운영이 시급하지 않은 14개 지자체는 제외하고, 기존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41개 지자체에 1개단(8명)씩 추가할 계획이다.

[지자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배치계획(안)]

(단위: 개(시·군·구 숫자))

구분	전체(A)	제외(B) ¹⁾	필요(C=A-B)	현반영(D)	추가(E=C-D)
광역도	154	14	140	96	41

주: 1) 숲가꾸기 사업량이 100ha 미만 등 수집단 운영이 시급하지 않은 14개 지자체
자료: 산림청

(2) 분석의견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추경을 통해 직접일자리 사업의 고용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취업취약 계층의 목표참여율이 달성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취업취약계층의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안의 주요 편성목적의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긴급 고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에 대한 고용을 지원하고, 청년·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경험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에 맞추어 산림청 소관 추경일자리 사업은 취업취약계층 및 청·장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림청 소관 추경 일자리 사업의 대상]

사업명	사업대상 등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대상) 취업취약계층
산림보호지원단	(지원수준) 174만원/월(보험 별도) (지원기간) 5개월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대상) 취업취약계층 (지원수준) 174만원/월(보험 별도) (지원기간) 6개월
숲길 자원정보 수집	(대상) 취업취약계층, 청·장년, 여성, 산촌주민 (지원수준) 174만원/월(보험 별도) (지원기간) 5개월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	(대상) 취업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지원수준) 174만원/월(보험 별도) (지원기간) 6개월

자료: 산림청

기존에 본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던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1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하며, 2021년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추가하고 있다.²⁾ 또한 동 지침은 일자리 사업별로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을 설정하고 있는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운영, 산림보호지원단운영 사업은 60.0%,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³⁾ 사업은 68.5%로 목표 참여율을 설정하여 2020년 45%, 60.2%에 비하여 상향되었다.

최근 4년 간 동 사업들의 취업취약계층 목표참여율 및 실제참여율을 살펴보면, 목표참여율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으나, 실제참여율의 경우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아가 2020년의 경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과 산림보호지원단의 취업취약계층 참여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비록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2) 취업취약계층 정의 및 범주(산림청, 「2021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정의: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1인가구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인, (21년 한시적용) ⑬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코로나19로 실직 또는 무급휴직 중인 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사실상)폐업·휴업한 자영업자, 소득이 급감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3)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산림청은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에 대해 별도로 참여율을 취합하지 않고 있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참여율로 대체

자가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희망일자리 사업 등 COVID-19에 대응한 지역일자리 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서 2021년에는 취업취약계층의 참여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특히 산림보호지원단은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고용인원이 본예산에 비하여 대폭 증가(142명→1,802명)되었던 사업으로, 규모 증가에 따라 취업취약계층 참여율이 전년에 비하여 대폭 하락하였다. 이번 추경안 또한 본예산에 비하여 고용규모를 6배로 확대(128명→768명)하고 있는 만큼 취업취약계층의 참여율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사업별 취업취약계층 목표·실제 참여율]

(단위: %)

구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보호지원단		공공산림가꾸기 ¹⁾	
	목표참여율	실제참여율	목표참여율	실제참여율	목표참여율	실제참여율
2017	미제시	28.0 (441/1,575)	미제시	27.9 (38/136)	미제시	87.0 (2,025/2,324)
2018	30.0	41.0 (1,054/2,570)	30.0	40.7 (59/145)	45.0	42.0 (985/2,349)
2019	35.0	65.9 (1,461/2,217)	35.0	66.2 (92/139)	55.0	44.9 (2,626/5,848)
2020	45.0	40.5 (836/2,066)	45.0	29.9 (539/1,802)	60.2	60.0 (2,333/3,889)
2021	60.0	- (-/1,672)	60.0	- (-/768)	68.5	- (-/2,217)

주: 1)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산림청은 산림바이오메스수집단에 대해 별도로 참여율을 취합하지 않고 있어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참여율로 대체

1. () 안의 수는 (취업취약계층 참여자수/전체 참여자수)를 의미하며, 2021년은 추경안을 통해 증가되는 일자리를 포함하여 작성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작성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소득보전이라는 재정지원일자리의 목적 상 제시된 목표참여율을 달성하는 것이 직접일자리 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산림청은 직접일자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취업취약계층 목표 참여율 달성을 위하여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비 매칭이 적기에 이루어 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본예산 대비 고용규모를 크게 증가시키는 사업은 관리 여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과 지자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사업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이루어지는 지자체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편성가능성 및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동 사업들의 경우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존재하는 사업이기에 적기에 지방비를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편성된 일자리사업의 실집행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 지방비 매칭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산림복지전문업(숲해설, 유아숲교육, 산림치유 위탁)의 실집행률은 56.2%에 그쳤으며, 산림보호지원단 사업 또한 지자체 실집행률은 82.4%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에 비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2020년 제3회 추경 산림청 소관 일자리사업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추경 (+α)	집행기관	교부액 (배정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100대 명산 패트롤)	1,750	소계	1,750	1,740	99.4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750	1,740	99.4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서비스도우미)	643	소계	643	591	91.9
		직접	267	251	94.0
		지자체	376	340	90.4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347	소계	347	334	96.3
		직접	347	334	96.3
산림서비스도우미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1,103	소계	1,103	1,103	100.0
		직접	1,103	1,103	100.0
산림서비스도우미 (숲해설, 유아숲교육, 산림치유 위탁)	10,152	소계	10,152	8,169	80.5
		직접	6,066	6,019	99.2
		지자체	3,827	2,150	56.2
		(미교부)	259	-	0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내역사업)	추경 (+α)	집행기관	교부액 (배정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산림재해일자리 (산사태현장예방단)	2,118	소계	2,118	2,012	95.0
		직접	1,095	1,018	93.0
		지자체	1,023	994	97.2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	5,683	소계	5,683	4,682	82.4
		직접	-	-	-
		지자체	5,683	4,682	82.4
산림공간정보기반조성 (디지털숲가꾸기)	2,184	소계	2,184	2,015	92.3
		직접	2,184	2,015	92.3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3,983	소계	3,983	3,811	95.7
		직접	2,264	2,109	93.2
		지자체	1,719	1,702	99.0
임도시설 (임도관리단)	10,958	소계	10,958	10,931	99.8
		직접	10,958	10,931	99.8
산림병해충방제 (선단지 예찰조사)	4,180	소계	4,180	4,180	100.0
		한국임업진흥원	4,180	4,180	100.0

자료: 산림청

2020년 6월에 제출되어 7월에 국회에서 의결된 2020년 제3회 추경에 비하여 올해 추경안은 3월에 제출된 만큼 집행가능성은 작년 일자리 사업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비 매칭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행이 부진하여 사업 효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앞서서 면밀하게 지역별 일자리 배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산림보호지원단 사업은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국유림관리소에 인원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국가가 직접 추진한다는 점에서 집행가능성은 다른 두 사업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자리 규모가 본예산에 비하여 6배(128명→768명) 증가하는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서 관리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서울·경기, 광역지자체 등에 위치한 국유림관리소의 경우 많게는 17.5배, 적게는 13배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산림보호지원단 배치 계획(안)(일부)]

국유림관리소	인 원(명)			증감률(%) (B-A/A)	비 고
	당초(A)	변경(B)	증감(B-A)		
계	128	768	640	500.0	
춘천국유림관리소	4	70	66	1,650.0	
서울국유림관리소	11	131	120	1,090.9	서울·경기도(북부)
수원국유림관리소	9	129	120	1,333.3	경기(남부)
구미국유림관리소	4	64	60	1,500.0	대구
양산국유림관리소	5	65	60	1,200.0	부산
부여국유림관리소	4	64	60	1,500.0	대전
영암국유림관리소	4	64	60	1,500.0	광주

자료: 산림청

이들 국유림 관리소의 전체 직원 숫자를 살펴보면, 춘천 40명, 서울 36명, 수원 38명, 구미 32명, 양산 36명, 부여 37명, 영암 31명으로, 40명 이외의 인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도 기존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근무환경 인프라 조성 등의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바.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 사업의 보완 필요 사항(산림청)

(1) 현황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 사업¹⁾은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전국 등록수목원 보유 식물자원에 대한 DB를 구축하고 취업취약계층에게 산림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안에서 신규 편성되었다. 추경안에는 320명을 6개월 고용하기 위한 예산 39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 사업의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산림생물다양성증진	14,474	14,334	15,929	19,835	3,906	24.5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	-	-	-	3,906	3,906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산림청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 운영 사업의 세부 산출근거]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 운영: 3,906백만원
- (인건비) 320명×1,744천원×6개월=3,348백만원
- (보험료) 3,348백만원×11.4%=382백만원
- (운영비) 320명×550천원=176백만원

자료: 산림청

동 사업에서는 보유식물 종수 및 수목원 규모에 따라 인력을 차별화하여 65개의 공립·사립·학교 수목원에 배치할 예정이며, 20ha 이상으로 수목원 규모가 큰 사립수목원은 관리 인력을 2~3명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각 수목원별 인력배치 기준]

식물자원 규모(종)	배치 인원(명)	비고
1,000 ~ 2,000	4	20ha 이상인 사립수목원 +2명
2,001 ~ 3,000	5	"
3,001 ~ 4,000	6	20ha 이상인 사립수목원 +3명
4,001 ~ 6,000	7	"
6,001 이상	8	"

자료: 산림청

안병후 예산분석관(hihoo@assembly.go.kr, 6788-4632)

1) 코드: 일반회계 1934-300의 내역사업

(2) 분석의견

국가식물 통합 DB구축 관리원 운영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기일자리 사업으로 저숙련자 위주의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식물조사 등은 일정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보이므로 교육 등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식물 DB구축 관리원의 주요 임무는 식물유전자원의 식재 및 현지외 보전 관리, 수목원별 유용식물자원 현황 조사·DB입력으로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식물 DB구축 관리원 주요 임무]

- 식물유전자원의 식재 및 현지외 보전 관리
 - 수목원 내 보유식물 생육 관리 및 식물상태(개화, 결실 등 생활사) 모니터링
- 수목원별 유용식물자원 현황 조사 및 DB입력
 - 희귀특산식물(산림청), 멸종위기종(환경부)의 등급별 조사
 - 보유식물 현황(식물크기, 품종, 이력 등) 조사
 - 식물 현황 데이터베이스 입력(식물 조사 목록 양식에 기준하여 작성)

자료: 산림청

모니터링 및 현황조사를 위해서는 식물 상태 등에 대한 일정 정도의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저숙련자의 경우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예로, 국가식물 DB구축 관리원이 작성하여야 하는 식물현황 조사표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 과명, 학명, 국명, 식물의 성상, 식재지, 근원직경, 수고, 흉고직경 등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량을 함에 있어도 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등 작성에 있어서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물 조사표(예시)]

구분	과명	학명	국명	식물의 성상	수량	식재지	희귀	특산	근원직경 (R/cm)	수고 (H/m)	흉고직경 (B/cm)	수집년	수집자	채집지
1	예시			교목	1	A구역	등급	OX	5	3	4	2021	홍길동	백두산
2	예시			관목	1	A구역								
3	예시			다년생초본	1	A구역	CR							
4	예시			일년생초본	1	A구역								

※ 식물현황 조사표 작성 기준

- 목분류
 - 교목 : 기본적인 「수고 H(m) x 흉고직경 B(cm)」을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수관폭, 수관의 길이, 지하고, 뿌리분의 크기, 근원직경 작성한다.
 - 곧은 줄기가 있는 수목으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 x 흉고 직경 B(cm)」 또는 「수고 H(m) x 수관폭 W(m) x 흉고직경 B(cm)」을 작성한다.
 - 줄기가 흉고부 아래에서 갈라지거나 다른 이유로 흉고부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수목은 「수고 H(m) × 근원직경 R(cm)」 또는 「수고 H(m) × 수관폭 W(m) × 근원직경 R(cm)」으로 표시한다.
 - 상록성 침엽수로서 가지가 줄기의 아랫부분부터 자라는 수목은 「수고 H(m) × 수관폭 W(m)」으로 작성한다.
 - 덩굴성 식물과 같이 수고 외의 수관폭이나 줄기의 굵기가 무의미한 수목은 「수고 H(m)」로 작성한다.
 - 관목 : 기본적으로 「수고(m) × 수관폭(m)」으로 작성하며, 필요에 따라 뿌리분의 크기, 지하고, 가지수(주립수), 수관길이 등을 작성한다.
 - 일반적인 관목류로서 수고와 수관폭을 정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목은 「수고 H(m) × 수관폭 W(m)」으로 작성한다.
 - 수관의 한쪽 길이 방향으로 성장이 뛰어난 수목은 「수고 H(m) × 수관폭 W(m) × 수관길이 L(m)」로 작성한다.
 - 줄기의 수가 적고 도장지가 발달하여 수관폭의 측정이 곤란하고 가지수가 중요한 수목은 「수고 H(m) { × 수관폭 W(m)} × 가지수(지)」로 작성한다.
- 초분류 : 기본적으로 분얼 또는 포트 규격으로 작성한다.(분얼 수 : 뿌리에서 나온 눈(축)의 개수)
- 특산식물 구분 : 산림청 지정 식물
- 희귀식물 등급 구분 : EX(전 멸종), EW(자생지 멸종), CR(심각한 위기종), EN(멸종위기종), VU(취약종), NI(위기 근접종), LC(관심 필요종), DD(자료부족종), NE(평가불가종)을 구분하여 작성

자료: 산림청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사업 시작 전 ① 국립수목원에서 공·사립수목원의 전문관리인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추진하고, ② 참여자 선발 이후에는 공·사립수목원 전문관리인이 참여자를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진행하고, ③ 위탁교육기관에서 수목원별로 현장 방문(수목원별 월 1회 방문)하여 2차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참여자는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되, 식물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유경험자 등 전문성을 갖춘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6개월의 짧은 고용기간과 단기간 진행되는 교육기간을 고려할 때 관련 능력을 충분히 배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임금 또한 최저임금 수준²⁾으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이 사업에 참여할 충분한 유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2) 월 인건비 : 8,720원×8시간×25일=1,744,000원 / 4대 보험료 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목원 DB를 구축하여 식물자원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를 생각할 때, 초기 조사에서 가능한 정확한 식물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산림청은 업무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동 추정사업은 한시적 목적의 단기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동 내역사업은 전국 등록수목원 보유 식물자원에 대하여 현황조사 및 이력관리를 진행하여 국가자원화 하는 것으로, 산림청에 따르면 이렇게 구축된 DB는 국가표준 식물종관리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기초 DB로 활용하고, 국가생물종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대국민 공개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식물과 관련된 체계적인 관리·운영 체계인 국가수목유전자원수집제도를 신규로 도입·적용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데, 동 내역사업을 통해 구축된 DB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식물 자원 보전관리에 있어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 내역사업은 추정안에 편성된 한시적 목적의 단기일자리 사업인 만큼 사업효과의 지속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산림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산림청은 2009년부터 국·공·사립수목원의 식물자원 보존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등록 수목원별 사용자(관리자)가 국가표준식물종관리시스템에 신규 식물자원 정보 등을 업로드 하여 DB를 현행화 해야 하나, 대부분의 공·사립 수목원의 경우 DB관리 인력 부족, 시스템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다.³⁾

이와 같이 전수조사 이후에도 공·사립 수목원 차원에서의 DB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축한 DB의 신뢰성·적시성이 떨어져 그 활용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사업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산림청에 따르면 전국 68개 수목원 중 48개 수목원이 사용 중이며, 사용 중인 수목원이라도 DB 현행화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사.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식 검토 필요 (해양경찰청)

(1) 현 황

연안안전지킴이 사업¹⁾은 지역주민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채용하여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업무를 보조하게 하려는 일자리 사업으로,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1년 본예산은 2억 7,000만원이나 300명의 추가 채용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0억 2,500만원이 증액된 12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연안안전사고 예방활동	4,649	4,649	4,686	5,711	1,025	21.9
연안안전 지킴이	0	0	270	1,295	1,025	379.6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 규정²⁾을 근거로 2021년 본예산에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당초 본예산에는 전국 연안 위험구역³⁾ 총 40개소에 80명을 2인 1조로 배치하고, 월 57

김유진 예산분석관(yj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3001-300의 내역사업

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주민으로서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 등을 민간연안순찰요원으로 위촉하여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순찰·지도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연안순찰요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민간연안순찰요원의 위촉방법,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간(1일 3시간) 6개월 활동을 기준으로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안에서는 전국 연안 위험구역 150개소에 300명을 추가로 배치하기 위하여 10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다.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2021년도 본예산 및 추경안 편성내역]

구 분	본예산	추경안
인원	80명	380명
배치	40개소	190개소
활동기간	월 57시간(1일 3시간), 6개월	월 57시간(1일 3시간), 6개월
예산	270백만원	1,295백만원
일반수용비	- 운영·홍보비, 현장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10백만원	- 운영·홍보비, 현장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48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활동비 235백만원 (6개월×월 수당 489,630원*×80명) *20년 최저시급 8,590원×57시간 - 단체상해보험가입비, 피복비, 신분증 제작 등 부대경비 25백만원	- 활동비 ¹⁾ 1,133백만원 (6개월×월 수당 497,040원*×380명) *21년 최저시급 8,720원×57시간 - 단체상해보험가입비, 피복비, 신분증 제작 등 부대경비 114백만원

주: 1) 당초 본예산 편성인원 80명에 대해서도 2021년 최저시급 인상분을 반영하여 활동비를 산출함
자료: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첫째,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은 2021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상황에서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으므로, 연안안전지킴이 선발과 배치, 교육훈련, 복무관리 등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당초 동 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해양경찰청은 2월에 연안안전지킴이를 배치할 연안 위험구역을 선정하고, 3~4월에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선발과 민간보조사업자 공고·선정을 완료 하며, 5월부터는 필요한 용품지급과 교육실시를 통해 연안안전지킴이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위험구역”이란 연안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점(길이×폭)을 말한다.

[2021년도 연안안전지킴이 사업개요]

구 분	주요내용
사업규모	전국 19개 해양경찰서, 연안 위험구역 190개소, 총 380명
선발방법	해양경찰서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
선발기준	서류심사(40점), 체력검사(30점), 면접(30점)
주요임무	연안사고 예방 제도·홍보 활동, 초동구호 및 구조지원, 인명구조합 등 안전시설물 점검·관리
추진일정	(2월) 연안안전지킴이 사업대상지 선정 → (3~4월)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선발, 민간보조사업자 공고·선정 → (4~5월) 보험계약, 복제 및 신분증 등 용품 지급 → (5~10월) 연안안전지킴이 교육훈련 및 순찰활동, 운영실태 점검

자료: 해양경찰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2월 말 현재 본예산에 반영된 연안 위험구역 40개소의 선정은 완료하였으나, 아직 연안안전지킴이 선발기준과 방법, 교육훈련과 운영기준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 신규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전에 사업규모가 연안 위험구역 190개소, 380명으로 당초보다 약 5배 크게 확대되었음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시행함으로써 사업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추경안이 확정되면 해양경찰청은 연안안전지킴을 배치할 연안 위험구역을 추가로 150개소를 선정할 계획인데, 2020년 기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전국 연안 위험구역은 910개소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연안사고의 위험성, 연안해역 이용객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배치구역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으로 분류되어 취업취약계층의 우선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기는 하나, 연안안전지킴이는 대국민 안전제도 활동뿐만 아니라 연안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초동구호 및 구조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되므로, 적격자의 선발과 교육의 내실화로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동 사업은 1일 3시간, 주 3회 정도로 운영될 계획인데, 2020년 해양경찰청의 일부 시범운영 사업결과에 따르면, 개인사정에 따른 활동일정 수시변경, 순찰장비 부재에 따른 취약시간대 활동제약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안전사고 발생 취약일시 위주로 정기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집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 직접수행과 민간보조사업자 간접수행의 적절한 업무범위와 집행체계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은 해양경찰청 직접수행(일반수용비)과 민간보조사업자의 간접수행(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구분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해양경찰청은 연안안전지킴이 모집·선발과 교육훈련, 복무관리 등 연안안전지킴이 운영과 홍보를 담당하고, 민간보조사업자는 연안안전지킴이 활동비 지급, 보험계약, 복제 및 신분증 등 용품 제작·지급을 담당할 계획이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민간보조사업은 민간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해양경찰청이 핵심업무인 연안안전지킴이 선발부터 교육, 활동실적 등 전반적인 인력관리와 사업홍보를 집행하면서 연안안전지킴이 활동비의 지급만을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대행시키는 것은 보조사업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보험계약 및 용품제작 업무는 모두 민간보조사업자가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양경찰청에 납품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현행 사업 집행 방식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역할이 크지 않음에도 오히려 민간보조사업자 공고·선정, 부정수급 모니터링 및 재무감사 등 보조사업 관리부담 등을 초래하여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먼저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직접수행과 간접수행의 적절한 업무범위와 집행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Ⅶ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개 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6조 7,862억 5,1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다. 또한 총지출은 11조 4,061억 8,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202억 500만원 증액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은 5조 8,502억 9,100만원으로 본예산과 동일하나, 총지출은 27조 2,265억 4,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조 8,450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산업통상자원부	총수입	6,786,251	6,786,251	0	0
	총지출	11,185,977	11,406,182	220,205	2.0
중소벤처기업부	총수입	5,850,291	5,850,291	0	0
	총지출	20,381,496 ¹⁾	27,226,542	6,845,046	33.6

주: 1)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당초 총지출은 16,823,996백만원이나,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20,381,496백만원으로 총지출을 변경하였고, 동 총지출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부

윤성식 예산분석관(yoons@assembly.go.kr, 6788-4666)

김유진 예산분석관(yjkim@assembly.go.kr, 6788-4631)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된 세입과목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963억 9,500만원 증액되었고, ②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으로 기금예탁금이 감소함에 따라 기금예탁이자수입 과목이 15억 3,500만원 감액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입 과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전년도세계잉여금(89-893)	10,000	106,395	96,395	963.9
	기금예탁이자수입(95-953)	76,319	74,784	△1,535	△2.0
합 계		86,319	181,179	94,860	109.9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세부사업 1개이다. 동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을 위하여 2,202억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5146-303)	0	220,205	220,205	순증
	공자기금예탁금(8701-801)	693,632	565,687	△127,945	△18.4
합 계		693,632	2,990,170	92,260	13.3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경정 또는 변경된 세입과목의 내역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이 6조 7,550억 4,600만원 증액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기금변경안 수입과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일반회계전입금(91-911)	4,920,801 ¹⁾	11,675,847	6,755,046	137.3
합 계		4,920,801	11,675,847	6,755,046	137.3

주: 1) '일반회계전입금'의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당초 계획액은 1,363,301백만원이나, 자체변경을 통해 4,920,801백만원으로 계획액을 변경하였고, 동 계획액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1. 총계 기준

자료: 중소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3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 신규사업은 없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① 고용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일자리창출효과가 높은 비대면 분야 창업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9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②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노점상 등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에 6조 7,550억 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창업사업화지원 (5132-302)	442,456	532,456	90,000	20.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출(8420-882)	1,363,301	8,118,347	6,755,046	495.5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성장지원 (4131-317)	3,688,896 ¹⁾	10,443,942	6,755,046	183.1
합 계		5,494,653	19,094,745	13,600,092	247.5

주: 1)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의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당초 계획액은 131,396백만원이나, 자체변경을 통해 3,688,896백만원으로 계획액을 변경하였고, 동 계획액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1. 총계 기준

자료: 중소기업부

가.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의 재정소요 및 지원방식 점검 필요 등(산업통상자원부)

(1) 현황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¹⁾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202억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0	73,012	0	220,205	220,205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동 사업에서는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115만 1,000호를 대상으로 3개월간 전기료의 30~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총 18.5만호에 월평균 전기요금 추정액 19.2만원의 50%를 6개월간 지원하는 예산 53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은 총 96.6만호에 대해 월평균 전기요금의 30%를 6개월간 지원하는 예산 1,669억원이 계상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에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동 사업에서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소상공인 19.5만호의 전기료를 6개월간 50% 지원하였다. 2021년 추경예산안은 2020년에 지원받은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월평균액이 19.2만원이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월별 전기요금을 추정하고, 총 2,202억원의 소요비용을 산출하였다.

윤성식 예산분석관(yoons@assembly.go.kr, 6788-4666)

1)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146-303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의 연도별 비교]

구분	2020년 지원	2021년 지원계획
지원대상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19.5만호	집합금지제한 업종 전국 소상공인 115.1만호
지원기간	6개월간	3개월간
지원기준	전기요금의 50%	전기요금의 30~50%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소요재원	730.1억원	2,202억원
자격검증 방식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공유받아 자체 검증 후 감면 적용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목록을 제공받아 전기요금 감면 적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추경예산안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산출근거]

구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및 기준	- 영업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115.1만호 -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 수혜 소상공인 중 영업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
지원내용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3개월간 전기요금 30%(월 최대 36만원 한도) 또는 50%(월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
산출근거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5.1만호에 총 2,202억원 지원 - 집합금지 업종: 18.5만호 × 19.2만원 × 3개월 × 50% = 53,300백만원 - 집합제한 업종: 96.6만호 × 19.2만원 × 3개월 × 30% = 166,900백만원

주: 전기료 기준금액 19.2만원은 2020년 지원대상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의 월평균 전기요금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 지원 대상 중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 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별도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소상공인 목록을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²⁾에게 전달하고, 전기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2) 구역전기사업은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제11항).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에서는 2021년에 시행한 방역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에 따라 지원유형을 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집합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일반업종(매출감소)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연장) 업종 11.5만호, 집합금지(완화)³⁾ 업종 7만호, 집합제한 업종 96.6만호로 파악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에서는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집합금지 업종은 매출액 증감에 관계없이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따라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집합제한 업종 96.6만호 중 2020년에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의 지원대상]

구분1	지원유형		업종 및 업체수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집합 금지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5만호
		집합금지(완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7.0만호
	집합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96.6만호 (2020년 매출액 증가 소상공인 제외)
	일반업종(경영위기)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 등
	일반업종(매출감소)		사업체별 매출 감소

주: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 지역별로 상이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021.3.2.)을 토대로 작성

그리고 동 사업의 실제 예산 집행은 보조사업자인 한국전력과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감면한 이후 실적을 제출하면 사업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방식 및 내용은 향후 국회심의 과정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3) 집합금지(연장) 대상은 2021년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 집합금지(완화) 대상은 상기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에서 제한으로 방역조치 강도가 완화된 업종에 해당한다.

(2) 분석의견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지역별로 방역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과 매출액 증가 소상공인 규모에 따라 잠재적 지원대상자가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의 수혜 대상 중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2021년 1월 2일에 결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이나 동 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방역기준이 완화된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집합제한 업종에는 2021년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이 지속된 업종이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지원 대상 판단기준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18.5만호, 집합제한 업종 96.6만호 소상공인을 잠재적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잠재적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2021년 1월에 시행된 3차 재난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확인된 소상공인 현황을 토대로 추정하였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 지원대상 중 전기요금 지원대상 현황]

구분	지원유형	판단기준	
전기요금 지원대상	집합 금지	집합금지 (연장)	2021년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연장 업종 대상(11.5만호)
		집합금지 (완화)	2021년 1월 2일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대상(7.0만호)
	집합제한	2021년 2월 14일까지 집합제한이 지속된 업종 대상(96.6만호)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021.3.2.)을 토대로 작성

정부는 2021년 1월 2일 발표된 방역지침에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차이가 있으며, 이 후 지역별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을 취하여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역별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다르게 이루어진 곳이 있다. 따라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 3차 재난지원금과 지원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에서는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 중 2020년에 전년 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며, 이러한 기준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상공인 매출액 증감은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0년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일을 2021년 1월 25일에서 2월 25일까지로 연장하였는데,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일이 연장되면서 부가가치세 기준 매출액이 증가 또는 감소한 소상공인 규모를 추경예산안 편성 시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은 향후 부가가치세 증감 여부를 파악하는 가운데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잠재적 지원대상 소상공인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할 경우 당초 계획한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예산 부족으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도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방역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매출액 증감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회의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기요금을 일정 비율로 감면해주는 방식의 지원은 소상공인의 실제 피해 여부와 다르게 전기사용량이 많은 업종이나 시설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피해규모·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직접 보조하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이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에서 지원 받은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혜 대상 소상공인은 양 사업에서 함께 지원을 받게 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은 소상공인별 지원금액을 집합금지(연장)·집합금지(완화)·집합제한 업종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정액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연장) 업종 소상공인은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업종 소상공인은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전기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지원유형에 따라 30~50% 비율로 3개월간 최대 1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에서는 전기사용량이 많은 업종이나 시설규모가 큰 소상공인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2021년 추경예산안을 통한 소상공인 직접 보조 예산]

	대상	버팀목자금플러스 사업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사업
집합 금지	집합금지(연장)	소상공인별 500만원	소상공인별 월간 전기료의 50%
	집합금지(완화)	소상공인별 400만원	
	집합제한	소상공인별 300만원	소상공인별 월간 전기료의 30%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3.2.을 토대로 작성

2020년 추경예산을 통한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서는 월 60만원 한도로 6개월간 전기요금을 지원하였으며, 6개월간 최대 지원금은 360만원이었다. 2020년 전기요금 지원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중 한국전력과 직접계약을 맺은 단독 소비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지원된 전기요금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300만원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402호(0.4%), 100~300만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1만 1,449호(10.2%)이다. 전기요금 지원액 100만원 이상의 소상공인은 분석대상 전체 소상공인 11만 1,903호 중 1만 1,851호(10.6%)이나 이들에게 지원된 전기요금은 지원총액 500.4억원 중 195억원(39.0%)을 차지하고 있어 전기사용량이 많은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지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의 일정비율을 지원할 경우 전기사용량이 많은 특정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 2020년도 실적현황]

전기요금 지원액	소상공인 수(호)	점유율 (%)	평균 지원액(만원)	지원 총액(억원)	점유율 (%)
300만원 이상	402	0.4	301.9	12.1	2.4
100~300만원	11,449	10.2	159.7	182.9	36.6
50~100만원	19,105	17.1	69.5	132.9	26.6
30~50만원	20,131	18.0	38.8	78.2	15.6
10~30만원	47,566	42.5	18.5	88.0	17.6
10만원 이하	13,250	11.8	4.7	6.2	1.2
합계	111,903	100	44.7	500.4	100

주: 상기 자료는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은 단독 소비자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집합건물 소비자를 포함한 전체 분포와는 다를 수 있음.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소상공인은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 PC방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기사용량이 많아 전기요금 부담액이 클 것이다. 또한 동일 업종에서도 시설규모가 큰 소상공인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공과금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을 가진다. 소상공인은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업장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을 지출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이 감소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업종이나 시설규모 등에 따라 전기요금 등의 고정비용이 큰 소상공인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소상공인도 있다. 전기요금 지원 사업에서 전기사용량에 비례한 소상공인이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소상공인의 실제 피해액과 관계없이 고정비용에서 전기요금 비중이 큰 소상공인이나 시설규모가 큰 소상공인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전기사용량에 비례하여 지원규모가 달라질 경우 소상공인의 실제 피해 규모와 다르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기준과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지원금 성격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된 특별회계 사업범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4),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5)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11(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⁶⁾에 근거하여 2021년 추경예산안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로 편성되었다. 2021년 추경예산안은 에특회계로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특회계의 공자기금 예탁금 1,279억 4,5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에특회계의 전년도 세계잉여금 1,063억 9,5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 재난

-
- 4) 「중소기업기본법」 제16조(소기업 대책) 정부는 소기업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해저광물자원 개발법」·「해외자원 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 사업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1.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피해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에너지가격(전기요금) 안정 목적으로 에특회계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에특회계로 편성하였다.

에특회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에너지의 수급 및 가격안정,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에특회계는 법정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한다. 법정부담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자나, 석유정제업자나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자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업이다. 에특회계에서 전기요금을 직접 지원한 경우는 2018년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과 2020년 추경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이 있었다.

[에특회계 전기요금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회계	사업명	예산 구분				지원대상
			본예산	추경	예비비	예산현액	
2018	에특 회계	전기요금 한시할인 지원	0	0	35,669	35,669	기초수급자, 장애인·상이·독립유공자, 차상위계층 등의 전기요금 할인액 30% 확대(7~8월)
2020	에특 회계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0	73,012	0	73,012	대구·경북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의 50%
2021	에특 회계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0	220,205	0	-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전기요금의 30~5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5와 「에너지법」 제16조27에 명시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2020년 제1회

7) 「에너지법」 제16조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이하 “에너지복지 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이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라 한다)에

추경예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에특회계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 예산을 에특회계로 편성하였다.

에특회계를 통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 중 2018년 폭염에 대응한 전기요금 한시 지원 사업은 법률에 명시된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추진되어 에특회계로 추진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반면 코로나19에 대응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전기요금 지원은 에특회계 사업범위를 정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에 지원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에 명시된 에특회계 사업범위 중 하나인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에 근거하여 소상공인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동 지원은 에너지 가격 안정보다는 집합금지·제한 등의 방역지침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을 가진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도 에특회계를 통한 지원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 제4조⁸⁾에 따라 회계별로 특정한 설치 및 사용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한 사업은 법이 정한 사업 범위 안에서 수행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에특회계로 추진할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에특회계를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대한 에너지의 공급

2. 냉방·난방 장치의 보급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의 개선
3. 그 밖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관련 복리의 향상에 관한 사항

8)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재정소요 명확화 및 집행 관리 강화 필요(중소벤처기업부)

(1) 현황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¹⁾은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이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6조 7,3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전액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하였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2021년도 기금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소상공인 성장지원	87,541	3,666,906	131,396	3,688,896	10,443,942	6,755,046	183.1
소상공인 역량강화	7,980	3,562,180	8,000	3,565,500	10,300,546	6,735,000	188.9
버팀목자금 플러스	0	0	0	0	6,735,000	6,735,000	순증

주: '당초'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액, '현계획'은 당초 계획액에서 자체변경을 통해 변경된 계획액(추경안 국회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소기업 총 385.2만 명을 대상으로 100~5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지원금 6조 7,180억원이 편성되었고, 콜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하여 운영비 170억원이 편성되었다.

김유진 예산분석관(yj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7의 내역사업

[2020년도 제4회 추경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편성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산출근거	예산안
지원금	· (100~500만원)×385.2만 명	67,180
집합금지업종(연장)	· 500만원×11.5만 명	6,000
집합금지업종(완화)	· 400만원×7.0만 명	3,000
집합제한업종	· 300만원×96.6만 명	29,000
일반업종(경영위기)	· 200만원×26.4만 명	5,000
일반업종(매출감소)	· 100만원×243.7만 명	24,000
운영비	· 콜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 7,455백만원 · 통합관리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3,588백만원 · 공공요금 및 수수료 5,003백만원 · 사업홍보 1,000백만원	17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2020년 1월 국내 최초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1년간 세 차례의 대유행(3월 1차, 8월 2차, 12월 3차)²⁾에 따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지속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광범위한 경제적 충격과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직접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3차에 걸쳐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번 추경안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제4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며, 제1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보편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나, 제2·3·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월별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 현황]

(단위: 명)

구 분	'20년 1월	'20년 2월	'20년 3월	'20년 4월	'20년 5월	'20년 6월	'20년 7월
확진자 수	11	3,139	6,361	979	703	1,334	1,506
구 분	'20년 8월	'20년 9월	'20년 10월	'20년 11월	'20년 12월	'21년 1월	'21년 2월
확진자 수	5,642	3,865	2,714	7,768	26,564	17,494	11,495

자료: 통계청

참고로,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명칭이 변경되어 왔으며, 예산액은 지원대상 및 업종별 지원금액의 확대에 따라 3.3조원, 4.1조원, 6.7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코로나19 피해 대응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

구 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안)
재난지원금 차수	제2차	제3차	제4차
지원 대상	소상공인 294만명	소상공인 280만명	소상공인·소기업 385만명
지원 시기	2020년 9월	2021년 1월	2021년 3월
예산	2020년 제4회 추경예산	2021년 본예산	2021년 제1회 추경안
	3.3조원	4.1조원 ¹⁾	6.7조원
지원 기준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 (연장) 500만원 - (완화) 400만원 ·집합제한업종 300만원 ·일반업종 - (경영위기) 200만원 - (매출감소) 100만원

주: 1) 2021년 예비비 3.6조원 및 20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집행잔액 이월예산 0.5조원 포함

1. 예산(안) 편성 기준으로 작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는 선별기준의 형평성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유형, 지원단가, 매출기준 등을 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이전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사업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주요내용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이전 사업들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³⁾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받아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등은 10인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5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상시 근로자 수 제한을 완화하여 법률상 소상공인 아닌 소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하였다.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이전에는 사업장 1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였으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사업장 운영개수에 따라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최근의 신규창업자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지원업종 유형과 관련하여 이전 사업들은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등 3개 유형으로 구분되었으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일반(매출감소) 업종 등 총 5개 유형으로 세분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2021년 1월 2일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내용을 반영하여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과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을 구분한 것이며, 일반업종의 경우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피해수준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영위기 업종과 그 밖에 기타 업종을 구분한 것이다.

지원업종 유형에 맞추어 지원단가도 5개 수준으로 조정하였으며,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5개 유형에 대해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셋째, 매출기준과 관련하여 이전 사업들은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여부와 연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였고,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자로서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다.

그러나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집합금지(연장, 완화)업종은 이전과 동일하게 매출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나, 집합제한업종의 경우 2019년보다 2020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일반(경영위기, 매출감소)업종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자로서 연매출이 10억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도록 연매출 한도를 상향하였다.

[코로나19 피해 대응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의 비교]

구 분	제2차 새희망자금	제3차 버팀목자금	제4차 버팀목자금 플러스(안)	비 고
지원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소기업	확대
	* 상시 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 등: 10인 미만 - 숙박·음식점 등: 5인 미만		* 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음 * 1인 다수 사업장 운영 시,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 * '20.12.이후 신규창업자 포함	
지원업종 유형	3개(금지·제한·일반)		5개(금지2·제한1·일반2)	세분화
지원단가	업종별 100~200만원	업종별 100~300만원	업종별 100~500만원	인상
매출 기준 ¹⁾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연장, 완화): 없음	변화없음
	- 집합제한: 없음		- 집합제한: 매출감소	신설
	- 일반: 매출감소, 연매출 4억원 ↓		- 일반(경영위기, 매출감소): 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	매출한도 상향

주: 1)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우 매출감소는 2019년 대비 2020년 연간매출액 비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021.3.) 바탕으로 제작됨

(2) 분석의견

첫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아직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매출액 증감여부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규모의 산출이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조속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정소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지원대상의 확대, 지원유형의 세분화, 지원단가의 인상 등 선별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총 385만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6.7조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는 이전 버팀목자금 사업에 비해 지원규모가 각각 105만개, 2.6조원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아직 동 사업의 세부적인 선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업종별 지원규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우선, 정부는 2021년에 시행한 방역조치의 강도, 업종별 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업종을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일반(매출감소)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선별기준]

구분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업종	
	연장	완화		경영위기	매출감소
판단 기준	집합금지 연장 (21.12 방역지침)	금지→제한 전환 (21.12 방역지침)	‘21.2.14.까지 집합제한 지속	업종 평균 매출 20%이상 감소 등	사업체별 매출 감소
업종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5종 등 11종	학원 등 2종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10종	여행, 공연 등 10종	일반업종
대상	11.5만개	7.0만개	96.6만개	26.4만개	243.7만개
단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소요	0.6조원	0.3조원	2.9조원	0.5조원	2.4조원
매출	무관		매출감소	매출감소, 연매출 10억원 이하	
합계	약 385만개, 6.7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2021.3.) 바탕으로 제작성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합금지(연장/완화)·제한시설을 추가·변경하는 등 정부지침과 다르게 방역조치를 시행할 수 있어 지역에 따라 5개 지원유형에 해당하는 업종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상이한 방역조치와 그에 따른 지원유형별 업종이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일반업종 중에서도 업종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는 등 피해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영위기업종 10개를 선별하여 다른 업종에 비해 1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나, 아직 그 판단기준과 세부업종이 확정되지 못하였다.

일반업종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혜자 가운데 약 70~8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위기업종 대상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예측보다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그동안 일반업종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권을 제한받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금 최소금액인 10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동 사업에서는 200만원, 100만원으로 차등지원을 받게 되는데, 개별 사업체별 피해규모에 따른 차등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충분히 수용가능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부는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하였던 이전과는 달리 사업장 운영개수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현재 같은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원단가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겠다는 기준(2개 운영 시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시 180%, 4개 운영시 200%)을 정하였지만, 여러 종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장 운영개수에 따른 지원금의 산출방식과 지원한도가 결정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1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지원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적절한 지원기준을 설정하지 못하면 다수 사업장을 보유하여 상대적으로 소득·매출이 클 수 있는 특정인에게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부기준 수립 시 다양한 사업운영방식별로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이전 재난지원금 사업과 달리 일반업종뿐만 아니라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도 매출기준을 적용하여 2019년 대비 2020년 연간매출액이 증가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러한 매출액 증감여부는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계획인데,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일이 2021년 2월 25일까지였기 때문에 추경안 편성 시점에서는 매출액 증감여부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수를 정확하게 추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아직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매출액 증감여부에 따른 소상공인·소기업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규모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세부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소요를 보다 면밀하게 추계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지난 제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당시 집합금지업종 15만명, 집합제한업종 32.3만명, 일반업종 243.4만명을 포함하여 총 290.7만명에게 3조 2,180억원을 지급하게 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집행결과 총 251.1만명에게 2조 7,631억원을 지급하여 당초 재정소요 추계와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집행결과]

(단위: 만명, 억원)

구 분	편성		집행	
	대상수	예산액	대상수	지급액
집합금지업종	15	3,000	12.4	2,478
집합제한업종	32.3	4,840	25.7	3,860
일반업종	243.4	24,340	212.9	21,293
합 계	290.7	32,180	251.1	27,63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아직 이전의 버팀목자금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사업 간 집행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추경목적에 맞추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신속하게 의결되어 3월 말부터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 이전의 버팀목자금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2월 말 현재 1차 신속지급을 완료하고, 1차 확인지급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3월 중에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이의신청·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 추진경과]

구 분	지원대상	지원 또는 신청 시기
1차 신속지급	‘20.11.24. 이후 집합금지·제한 대상 기존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1.11.~
1차 확인지급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 공동대표·사회적기업·협동조합·미성년자 등	(온라인 신청) 2.1.~2.26. (방문신청) 2.16.~2.26.
2차 신속지급	‘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원대상 선별	3월 중 공고 예정
2차 확인지급		
이의신청·처리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등	3월 중 공고 예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제작

이에 따라 만약 정부의 목표대로 3월 말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버팀목자금 사업의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이의신청·처리 집행시기와 중첩되게 된다. 참고로, 이의신청·처리의 경우 새희망자금 사업 당시 총 51,458건이 접수되었고, 집합금지·제한업종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의신청 처리에 약 54일 정도 소요되었음을 고려하면, 사업 간 집행의 중첩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 이의신청·처리 현황]

구 분	신청건수	평균 처리일수
집합금지업종	6,609	53.5일
집합제한업종	2,850	53.7일
일반업종	41,999	21.2일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소상공인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집행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사업별로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아직 이전의 버팀목자금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사업 간 집행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전 사업보다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기준, 지원유형이 세분화되어 지원대상자 선별을 위한 DB구축과 지원금 신청·지급 업무 등에 정교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경목적에 맞추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 예산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1) 현 황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¹⁾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의 일환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개소당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려는 사업이다.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노점상 4만 개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 2021년도 기금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소상공인성장 지원	87,541	3,666,906	131,396	3,688,896	10,443,942	6,755,046	183.1
소득안정 지원자금	0	0	0	0	20,000	20,000	순증

주: 1. '당초'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액, '현계획'은 당초 계획액에서 자체변경을 통해 변경된 계획액(추경안 국회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노점상이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고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노점상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현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무등록 노점상은 지난 제2·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다만 저소득층으로서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지원요건에 해당하면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노점상 특성상 사업의 지원요건인 소득감소 등을 증명하기 어려워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추경안에서는 별도로 노점상 대상 긴급 피해지원금 사업을 편성하였다.

김유진 예산분석관(yj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4131-317의 내역사업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개요]

구 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리대상 노점상
지원요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별도 심사 없음)
지원규모	4만 개소, 200억원
수행기관	민간경상보조사업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분석의견

첫째,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은 예산추계가 부정확하고,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노점상의 다양한 특성들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선행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노점상 관리 현황 등을 조속히 파악하여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은 전국 노점상 가운데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서울시의 거리가게 허가제²⁾와 같이 지자체의 노점상 등록·허가제에 포함되어 있거나 시장상인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등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노점상을 관리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동 사업은 관리대상 노점상에게 현금 50만원을 지급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면서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³⁾을 통해 제도권 내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 사업의 추정안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 관리대상 노점상을 4만 개로 예측하였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현황을 조사하여 도출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관리대상 노점상 비율을 통계상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추정에 있어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2) 일정 요건을 갖춘 노점상에 도로점용을 허가하는 대신 점용료를 받고 노점상 영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관리대상 노점상을 전통시장 내 노점상과 전통시장 외 노점상으로 구분하고 각각 충남과 서울의 노점상 관리 현황을 참고하였는데, 지자체별로 전통시장 내외 노점수 분포와 이 중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비중의 상이함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추계 과정에서 2018년도 자료와 노점수가 아닌 소상공인 사업체수 등을 수치로 활용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 2021년도 추경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안 산출근거	예산안
• 전국 지자체 관리대상 노점상 4만* 개소 × 50만원	20,000
① 전국 전통시장 내(內) 노점상 산출내역: 충남 기준으로 추정 · 2018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 점포수 228,384개, 충남 전통시장 점포수 10,397개(4.6%) · 충남 전통시장 내 관리가능 노점수 802개 → 전국 전통시장 내 관리가능 노점수: 약 1.7만개(802개소/4.6%)	
② 전국 전통시장 외(外) 노점상 산출내역: 서울 기준으로 추정 · 2018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중 서울 소상공인 사업체 비중 19.0% · 서울 전통시장 외 관리가능 노점수 5,303개소 → 전국 전통시장 내 관리가능 노점수: 약 2.8만개(5,303개소/19.0%)	
③ 전국 지자체 관리대상 노점상 총 4.5만개로 추정되었으나, 지역별 전통시장 노점 및 도로점용 노점 분포를 감안 시 과다산정가능성이 있어 4만개 수준으로 보정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 노점상의 실제 다양한 운영형태와 기(既)사업자 등록여부, 소득과 매출감소여부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함께 제기될 소지가 있다.

이에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은 예산추계가 부정확하고,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노점상의 다양한 특성들이 고려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원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선행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국 노점상 관리 현황 등을 조속히 파악하여 예산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은 노점상의 사업자등록 가능성이 낮을 수 있고, 노점상이 보건복지부(한시생계지원금) 사업을 통해 동일하게 5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효과 제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은 전국 지자체 관리대상 노점상 모두가 지원요건인 사업자등록을 충족하여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지급받을 것을 가정하고 추경안이 산출되었다.

그런데 ① 현재까지 노점상 등록·허가제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노점상 영업을 안정적으로 인정받은 점, ② 사업자등록을 하면 각종 세금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리대상 노점상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불확실하다.

또한, 관리대상 노점상은 동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번 추경안에 함께 편성된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사업에서 동 사업과 동일한 금액인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사업은 소득이 감소하거나 지자체장이 위기가구로 인정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원칙적으로 지자체 관리여부에 따라 관리대상 노점상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득안정지원자금, 미관리대상 노점상은 보건복지부의 한시생계지원금 사업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관리대상 노점상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업을 신청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전에 보건복지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어 상대적으로 익숙하거나 소득감소 증명이 용이한 경우 등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자체 관리대상 노점상의 소득안정 지원자금 참여유인 감소에 따라 집행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많은 노점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효과 제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사업 비교]

구 분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명칭	소득안정지원자금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관리 노점상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요건	사업자등록 (별도 심사 없음)	①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② 재산: 대도시 6억/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원(금융재산 요건 없음) ③ 사유: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 - 위기요건: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감소율 무관), 지자체장이 위기로 인정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결정 등)
지원단가	50만원	50만원
지원규모	4만 개소	80만 가구
수행주체	민간경상보조사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안	200억원	4,000억원

자료: 중소기업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제작성

아울러 동 사업의 집행체계를 살펴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총괄적인 사업관리를 수행할 예정이나, 실제 노점상 관리주체가 지자체이므로 노점상에 대해 사업신청을 안내하고 지원금 신청을 받는 것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 집행절차]

· 사업공고(중기부) ⇨ 신청 안내(지자체 → 노점상) ⇨ 사업자등록(노점상)
⇨ 지원금 신청(노점상→지자체) ⇨ 지급 정보제공(지자체→소진공) ⇨ 지원금 지급(소진공)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따라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원활하게 사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비대면 분야별 합리적인 지원
배분기준 마련 필요(중소벤처기업부)**

(1) 현 황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¹⁾은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시제품 제작, 마케팅, 해외진출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1년 본예산에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의 내역으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신설하고 200개사 지원을 기준으로 3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600개사 추가 지원을 위하여 900억원이 증액된 1,200억원이 편성되었다.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창업사업화 지원	400,784	460,784	442,456	532,456	90,000	20.3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45,000	45,000	105,000	195,000	90,000	85.7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0	0	30,000	120,000	90,000	300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은 비대면 분야 벤처기업이 전체 평균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추경안에서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편성되었으며, 비대면 분야 예비창업자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유진 예산분석관(yjkim@assembly.go.kr, 6788-4631)

1) 코드: 일반회계 5132-302의 내역사업

[2021년도 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개요]

구 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내용	비대면 분야별로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 자금 및 특화 프로그램 제공
지원규모	800개사(기업 당 1.5억원 내외)
수행기관	창업진흥원(전담기관), 분야별 주관기관(각 부처 추천 전문기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동 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총괄적인 사업관리는 창업진흥원에서 전담하나,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대면 분야별로 각 부처 추천 전문기관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부처의 해당 분야 정책이 연계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분석의견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분야별로 사업수요와 시장상황, 일자리창출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추경편성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분야 및 업력별로 합리적인 지원 배분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은 기존에 지원대상을 창업성장단계에 따라 창업 이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사업, 창업 3년 이내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창업 3~7년 이내 도약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으로 내역을 구분하여 지원하였다.

그러나 2020년부터 BIG3, 소재·부품·장비 등 혁신산업의 성장을 집중지원하기 위하여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을 별도로 신설하고, 지원단가를 업력에 상관없이 가장 큰 수준인 1억 5,000만원으로 증대하였으며, 2021년에는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사업의 신규 내역으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추가하였다.

[2021년 본예산 기준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업종	지원단가	본예산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창업 이전)	전체	65.5	100,246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초기기업 (창업 3년 이내)	전체	70	100,260
창업도약패키지	창업도약기업 (창업 3~7년 이내)	전체	150	102,000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7년 이내 창업기업	BIG3, 소재·부품·장비 비대면 등 신산업	150	105,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월 말 현재 의료, 교육, 농림·식품, 물류·도시 등 10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분야별로 소관 부처 추천 주관기관을 모집 중에 있으며, 3월 주관기관 선정·평가를 완료한 이후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모집하고 5월부터 창업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면 당초 본예산 지원계획보다 4배 증가한 800개사를 지원하게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비대면 분야 및 업력별 선발기업수는 아직 미정인 상황이다.

[2021년도 비대면 분야별 주관기관 모집 현황]

분야		소관부처	분야	소관부처
① 의료	비대면 의료	보건복지부	⑤ 물류도시(스마트물류, 스마트시티)	국토교통부
	의료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⑥ 해운·수산	해양수산부
② 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부	⑦ 친환경	환경부
	에듀테크	산업통상자원부	⑧ 기반기술(AI, 보안기술 등)	특허청
③ 여가활동(스포츠)	문화체육관광부	⑨ 디지털 콘텐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④ 온라인 농림·식품	농림축산식품부	⑩ 유레카 (비대면 분야 혁신 아이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0년 9월 제3회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예비창업패키지 사업과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서 시범적으로 부처협업체계를 통해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을 선발하였는데, 당시에는 선발기업수를 분야별로 예비창업의 경우 10개사(기반기술만 10개사), 초기창업의 경우 20개사로 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선발기업수를 균등배분한 결과 경쟁률은 최소 2.3:1에서 최대 33.7:1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비대면 분야와 창업단계에 따라 사업수요, 성장속도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부터는 세부 비대면 분야를 기준으로 주관기관별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인데, 위와 같이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총 800개사를 일률적으로 배분하면 선발기업수 달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평가결과가 낮은 경우에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등 전략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

[2020년 9월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선발 현황]

구분	분야	신청기업수	선발기업수	경쟁률
예비창업	의료	47	10	4.7:1
	교육	59	10	5.9:1
	기반기술	46	20	2.3:1
초기창업	의료	279	20	14:1
	교육	582	20	29.1:1
	농식품	353	20	17.7:1
	물류	206	20	10.3:1
	로컬	674	20	33.7: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부처협업을 통한 비대면 스타트업 선발」 2020.9.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동 사업은 일자리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추경안에 편성되어 비대면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도 중요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분야별로 사업수요와 시장상황, 일자리창출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야 및 업력별로 합리적인 지원 배분기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73조 4,071억 4,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다. 또한 총지출은 90조 8,031억 3,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조 2,265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다.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104억 6,9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경사항이 없다. 또한 총지출은 2조 7,416억 3,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조 3,484억원이 증액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보건복지부	총수입	73,407,144	73,407,144	0	0.0
	총지출	89,576,593	90,803,135	1,226,542	1.4
질병관리청	총수입	10,469	10,469	0	0.0
	총지출	393,237	2,741,637	2,348,400	597.2

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9개 세부사업이며, 이 중 3개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① 복지 사각지대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복지 사업에 4,066억 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② 방역 및 돌봄 인력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해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등 6개 사업에 1,617억 7,4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③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 2개 사업에 6,581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긴급복지(1133-300)	185,639	592,247	406,608	219.0
	자활사업(1137-300)	620,031	653,123	33,092	5.3
	다함께 돌봄 사업(1338-314)	41,259	43,702	2,443	5.9
	지역아동센터 지원(1338-300)	187,418	211,619	24,201	12.9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3140-404)	1,614,123	1,624,972	10,849	0.7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4333-304)	0	37,887	37,887	순증
	노인요양시설 확충(2232-301)	66,917	107,939	41,022	61.3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지원 (4333-318)	0	8,160	8,160	순증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09)	0	662,280	662,280	순증
합 계	2,715,387	3,941,929	1,226,542	45.2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개 사업이다.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을 위하여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에 2조 3,484억 원이 증액편성되었다.

[질병관리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감염병예방관리(4838-303)	32,341	2,380,741	2,348,400	7,261.4

주: 총계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가.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가구의 명확한 선별기준 마련 등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보건복지부)

(1) 현 황

긴급복지사업¹⁾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긴급복지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기존 생계지원 제도(생계급여 등)와 코로나 대응 특별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 편성되었다.

2021년 긴급복지사업의 본예산은 1,856억 3,900만원이나 신규 내역사업인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066억 800만원이 증액된 5,922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긴급복지사업	165,628	769,219	185,639	592,247	406,608	219.0
한시 생계지원 사업	0	0	0	406,608	406,608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발생 이후 긴급복지사업은 2020년도 제1회, 제3회, 제4회 등 3회의 추경과 2021년 제1회 추경안이 편성되었다.

2020년 제1회 추경에서는 긴급복지 신청자의 증가로 인하여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아 2,000억원이 증액되었고, 제3회 추경은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른 긴급

이은미 예산분석관(eunmee@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133-300

생계지원에 대한 자치단체 수요조사(2020.5.19. ~ 5.27.)를 반영하여 긴급 생계지원 500억원²⁾과 긴급 생계지원 업무 증가에 따라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지원하기 위해 26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제4회 추경에서는 코로나19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혜택³⁾에서 제외된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6억원 이하 및 공적이전소득이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3,509억 2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긴급복지사업 집행현황: 2017~2020년]

(단위: 백만원, %, 건)

구 분	예산			집행현황			지원실적
	본예산	추경	계 (A)	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17	111,304	10,000	121,304	121,304	115,940	95.58	250,568
2018	111,304	19,582	130,886	130,884	124,404	95.04	254,119
2019	142,176	20,411	162,587	162,587	159,330	97.99	336,782
2020	165,628	603,591	769,219	769,219	617,047	80.21	1,199,831
본예산	165,628	0	165,628	165,628			
1회추경	0	200,000	200,000	200,000	394,710	94.35	839,967
3회추경	0	52,689	52,689	52,689			
4회추경	0	350,902	350,902	350,902	223,769	63.76	359,864

주: 2020년 1·3회 추경은 긴급복지 증액 추경에 해당하며, 4회 추경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위한 별도 추경에 해당

자료: 보건복지부

이번 2021년 제1회 추경안에 따르면, 기존 생계급여, 구직급여 등 기존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와 코로나 대응 특별지원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 등 약 80만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4,000억원을 전액 국비 지원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지원대상 가구 선별 등으로 인하여 226개 시·군·구 업무를 보조할 한시인력 456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456명×242만원×6개월)로 6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다.

2) 29,915가구에 대해 3개월간 생계지원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3) 코로나19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사회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이다.

(2) 분석의견

사업 추진 시 소득 감소 기준 시점 등에 따라 한시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 기준 마련 등 철저한 사업준비가 필요하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직, 휴·폐업 등이 발생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 사업의 지원대상 가구는 소득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75%(2021년 본예산 반영기준: 4인 가구 기준 월 3,657,218원 이하), 재산기준으로 일정액(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가구 중 소득감소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감소 요건으로 2019년과 2020년의 평균 소득을 비교하는 안과 2020년 11월에서 2021년 2월 사이의 특정월과 2019년에서 2020년 중 특정월의 소득감소를 비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다른 현금급여성 복지 지원(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고용지원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과 중복수급은 불가하고, 신청기간 2개월과 지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1개월을 계획하고 있는 점은 2020년 제4회 추경으로 편성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가구의 요건과 동일하다.

2020년 제4회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과 2021년 제1회 추경 사업으로 편성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차이점은 가구당 지급액이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은 지원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지급되었으나,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지원금은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5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긴급복지 사업 비교: 2020년 추경 편성과 2021년 추경(안)]

구분	긴급복지(2021년기준) (완화된 기준 적용)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2020년 제4회 추경)	한시생계지원 (2021년 제1회 추경(안))
지원 대상 요건	(소득) 기준 중위 75% (일반재산)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 1.7억 이하 (금융재산) 1인 774만원, 4인 1,231만원 등	(소득) 기준 중위 75% (재산)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 (금융재산 요건 없음)	
위기 사유	실직·휴폐업·질병 등 + 지자체장이 위기사 유로 인정하는 경우 추가	소득 25% 감소 → 소득감소 (신청률 저조 등)	· ‘소득감소’시 지원 ·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생계위기 입증 시 지자체장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 · 소득감소 심사 시 공적자료 외 통장사본 등 다양한 증빙서류 인정
중복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재난지원금과 생계급여 등 타 급여성 복지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액	1인 47.5만원/2인 80.2 만원/ 3인 103.5만원/ 4인이상 126.7만원	1인 40만원/2인 60만원/ 3인 80만원/4인 이상 100만원	인원수 무관 가구당 50만원
예산 규모	2021년 1,856억원 편성 (12만 가구)	편성 3,509억원(55만 가구) → 집행 2,237억 원(36만 가구)	4,000억원 편성 (80만 가구)
집행 시기	연중 지원 ※ 완화된 기준은 3월까지 적용	2020. 9. 22(추경통과) 신청: 10~11월 지급: 12월 중	2021.3월 추경통과 후 신청: 4~5월 지급: 6월 중
집행 방식	지자체보조 · 보조율 차등적용 (국비:지방비) * 서울(5:5), 그 외(8:2)	지자체보조 · 국비 100%	지자체보조 · 국비 100%

자료: 보건복지부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지원 단가인 가구 당 50만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서 지급하는 사업자등록 노점상 지원금 50만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50만원,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50만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게 편성하였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사업자등록이 없는 노점상은 소득과 재산기준, 소득감소 여부 등을 파악하지 않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 노점상과는 달리 지원요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지급 결정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시·군·구별 설치되어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⁴⁾에서 이루어진다. 긴급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보면,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요청,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지원을 받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지원비용 환수 등에 심의·의결⁵⁾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은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기로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소득감소 요건에 대한 기준 등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기존 현금성 복지제도나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 대상자 선별 및 확인을 위한 관련 정보 시스템 연계·활용이 적절히 수행되고 지원 대상 기준 및 신청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자격은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며, 위원 임기는 2년 이상 3년 이하이다.

5)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① 긴급지원연장 결정, ②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③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 환수 결정, ④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이다.

나. 자활사업의 사업유형별 대상자 규모 조정을 통한 집행 효율성 제고 필요(보건복지부)

(1) 현황

자활사업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빈곤 탈출을 촉진하고 빈곤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2021년 본예산은 6,200억 3,100만원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등 경제난이 가속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증가함에 따라 자활근로 대상자 규모를 확대하는 계획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30억 9,200만원이 증액된 6,531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자활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자활사업	580,754	604,774	620,031	653,123	33,092	5.3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의 자활사업 증가 규모는 5,000명으로 이는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자활근로 참여자 5.8만명에서 6.3만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확대되는 5,000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자활근로 유형별(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로 기존 참여자 수(2020년 12월말 기준) 비율(근로유지형 12%, 사회서비스형 68%, 시장진입형 20%)을 적용하여 근로유지형 600명, 사회서비스형 3,400명, 시장진입형 1,000명으로 배분하였다.

또한, 자활근로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비 307억 8,90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은미 예산분석관(eunmee@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1137-300

(2) 분석의견

자활사업은 참여 사업 유형별로 프로그램 준비 기간이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 기간, 프로그램 준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등 사업 유형별 대상자 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이 증가하여 자활사업의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2021년 제1회 추경안에서는 5,000명의 규모로 자활근로 참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활사업의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소득·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여 자활근로 신청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활근로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19년 1월 166.9만명에서 2020년 1월 179.8만명, 2021년 1월 205.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배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법정 차상위계층은 2019년 1월 54.4만명에서 2020년 1월 54.8만명, 2020년 12월 59.7만명으로 2020년 연간 약 5만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는 2019년 1월 2.9만명, 2020년 1월 3.7만명, 2021년 1월 4.0만명으로 2년간 1.1만명이 증가하였다.

[자활근로 참여자 현황: 2019~2020년]

(단위: 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19	29,148	31,535	33,487	35,443	37,056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0,169	41,734	43,351	45,123	47,038	48,903
20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36,722	39,502	40,338	41,823	43,735	45,801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47,946	49,621	50,815	52,437	54,260	55,436

자료: 보건복지부

2) 2021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임시근로자 56.3만명, 일용근로자 23.2만명의 감소로 기초생활수급자 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자활사업 사업실적: 2017~2020년]

(단위: 명)

연 도	계획인원	참여자 수
2017	45,000	41,050
2018	46,500	41,617
2019	58,000	48,903
2020	58,000	55,436

주: 참여자 수는 급여지급 누적참여자 수입
 자료: 보건복지부(행복e음)

취약계층의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대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안에서는 자활근로 참여자 규모를 2021년 예상 기초생활수급자 발생인원 대비 자활근로 참여자 비율(2020년 말 기준 2.7%)을 고려하여 2021년 본예산에 반영된 자활근로 참여자 5.8만명에 신규 예상 참여자 수를 5,000명으로 정하였다.

[2020년 월별 증가율 적용 시 2021년 예상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단위: 만명)

20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79.8	181.6	183.8	187.1	190.8	194.2
2021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97.0	198.6	200.3	201.9	203.2	204.3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05.2	207.3	209.8	213.6	217.8	221.7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24.8	226.6	228.6	230.4	231.9	233.1

주: 시설 수급자를 제외한 전체 수급자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예산은 ‘인건비’와 ‘자재비’ 등 ‘사업비’로 구성되고, 자활기업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인건비 예산규모를 정한 후,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 위탁사업 규모(예산지원액, 참여인원, 자활사업내용 등)를 정하고 있다.³⁾

3) 「2020년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이번 추경안에는 근로유형별 사업 인원을 2020년 12월말 기준 자활 사업단 유형별 참여 비중(근로유지형 12%, 사회서비스형 68%, 시장진입형 20%)을 적용하여 참여 인원수를 정하여 인건비를 산출하고, 인건비 대비 사업비 비중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다.

[2021년 제1회 추경안에 편성된 자활사업 유형별 계획 규모]

구분	근로유형	계획인원	단가 (1일 기준)	편성규모
근로 유지형	현재 근로능력이 매우 미약한 자로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유형	600명 (12%)	29,240원	(인건비) 1,733백만원 (사업비) 91백만원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사업(사회복지시설도우미형)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유형	3,400명 (68%)	49,860원	(인건비) 16,744백만원 (사업비) 4,186백만원
시장 진입형	일정한 매출액(총 사업비의 30% 이상)이 발생하고, 일정기간(최대 3년)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유형	1,000명 (20%)	56,950원	(인건비) 5,625백만원 (사업비) 2,411백만원
합계		5,000명 (100%)		

자료: 보건복지부

사업유형별 준비 기간, 자활근로 참여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유형별 참여자 수의 계획 규모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자활근로 사업단 유형별 참여비율을 근거로 근로유지형 12%, 사회서비스형 68%, 시장진입형 20%로 편성하였다.

그러나 2019년 자활근로 참여자 중 근로유지형의 비율이 14%, 사회서비스형이 61%, 시장진입형이 25%로, 2020년에는 사회서비스형의 비중이 증가하고 타 사업 유형의 비중이 감소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로유지형은 지역사회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으로 사업수요가 단기간에 증가하기 어려우며, 시장진입형 유형은 운영 실적이 양호한 자활근로 사업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번 추경안에 추가로 계획된 신규 참여자가 근로유지형이나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바로 배치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21년도 추경 예산 편성시에는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의 활성화 추이, 자활근로 신규참여자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자활사업 유형별 참여자 수 규모를 재산정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 노인요양시설의 규모·여건에 부합하는 방역 인력운영 방식 마련 필요(보건복지부)

(1) 현황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¹⁾은 치매·중풍 등 장기요양 수급자의 증가에 대응한 요양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노인요양시설사업 확충사업의 내역 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에 방역보조 인력 채용 및 배치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이 편성되었다.

2021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본예산은 669억 1,700만원이나 신규 내역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410억 2,200만원이 증액된 1,079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다.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86,406	69,385	66,917	107,939	41,022	61.3
노인요양 시설 등 방역지원	0	0	0	41,022	41,022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1년 제1회 추경안에 편성된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²⁾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방역보조인력을 채용하여 노인요양시설 등에 배치함으로써 노인요양시설의 방역부담을 경감하고, 채용확대를 통한 일자리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은미 예산분석관(eunmee@assembly.go.kr, 6788-4638)

1) 코드: 일반회계 2232-301

2) 2020년 이후노인요양시설 등에 지원한 방역 관련 예산은 별도로 편성된 바 없었으며,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재까지 기존인력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설 내 방역 업무까지 함께 수행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부내역]

(인건비) 38,660백만원(4,033명)

(입소시설) 노인요양시설(3,849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913개)
- 5,762개소 × 1명 × 2.13백만원/명 × 5개월 × 70%(채용률) × 90%(국고부담)
= 38,660백만원

(위탁기관 운영비) 2,362백만원

(채용비용) 5,762명 × 200,000원/명 = 1,152백만원
(교육출장비) 5,762명 × 5개월 × 2회/월 × 20,000원/명 × 70% = 807백만원
(관리운영비) 5,762명 × 5개월 × 20,000원/월 × 70% = 403백만원

동 사업은 방역지원 인력을 노인요양시설 3,849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913개소 등 총 5,762개소에 1명을 배치하도록 계획하였다. 인건비 단가는 월 213만원, 기간은 5개월이며 국고지원율은 90%로 편성되었다. 또한, 방역 지원인력의 채용, 교육출장 및 관리운영비로 2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다.

(2) 분석의견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규모 노인요양시설 및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여건에 부합한 방역인력 배치와 운영방식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등 방역 지원 사업은 노인요양시설(3,849개소)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1,913개소)에 1명의 방역지원 인력을 채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시설 소독, 청결 및 출입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 내 감염병 유입,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 지원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예산편성은 2020년에 실시한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의 인력 채용률 70%를 적용하여 4,033명의 방역인력 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 정원은 10명 이상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직원 수는 입소자가 10명 이상 30명 미만일 경우 최소 9명이고, 입소자가 30명 이상일 경우 최소 19명이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동 시설은 입소정원이 5명 이상 9명 이하로, 주로 노유자 시설 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직원 수는 4~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비하여 입소자 및 직원 수가 2배 이상이고, 시설 규모 등이 상이하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방역 인력 배치를 입소자 수 및 시설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명을 배치하는 것은 실제 업무량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동 사업의 유사사례인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의 방역인력 채용률 70%를 감안한다면, 모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방역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감염력이 높은 코로나19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운영 방식을 정치하게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되도록 면밀한 사업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대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방역 필요 인력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2명 이상을 배치하고,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지역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을 4시간씩으로 조정하여 채용함으로써 방역인력 지원 시설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번 추경안에 방역인력 지원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 중 이용시설인 주야간·단기보호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인 양로시설도 방역관리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방역인력 배치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 추진 사업(「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의 채용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방역인력 채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채용 관련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원을 위하여 5,762명의 인력채용비 11억 5,200만원(1인당 채용비 20만원), 교육출장비 8억 700만원, 관리운영비 4억 300만원 등 23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2020년에 실시한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채용인원, 채용기준, 계약집행 예정 금액 등의 제안요청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낙찰된 업체와 계약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에서 채용과 관련한 세부내역으로 채용시스템 구축(채용 홈페이지 등), 서류전형(정량요소 심사 및 진위확인, 정성요소 심사), 인성검사(인성검사 도구 개발 및 실시), 면접 심사(면접위원 섭외, 면접운영 지원인력 파견, 편집자료 제공 등) 등을 편성하였다. 특히, 대규모 인력 채용이라는 시급성을 고려하여 채용절차를 간소화하여 정성요소는 제외하고 약식면접으로 추진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0년 제3회 추경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방역지원 사업」의 예산 추계를 기간제근로자 1,000명 모집 시 2억원이 소요된 사례를 참조하여 1인당 채용비용을 2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안에서 인건비 산출에 적용한 채용률 70%를 적용할 경우 약 3억 4,500만원의 채용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며, 대규모 인력 채용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거 사례를 참고하여 방역 인력 채용과 관련한 정확한 비용 산출을 실시하고 채용 예산을 적정한 수준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라.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의 개별 약국의 다양한 수요 반영 필요 및 추진절차 간소화 필요(보건복지부)

(1) 현 황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¹⁾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약국 종사자 및 약국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약국 내 비대면 체온 측정기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된 세부사업이며, 8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0	0	0	8,160	8,160	순증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국 약국 23,000개소 중 90%에 해당하는 20,700개소에 비접촉 거치식 체온계 설치를 지원하고자 8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90%이며,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별 약국은 약 4만원(438,000원 × 10%)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된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 산출 근거]

<p>○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81억 6,000만원) = $438,000\text{원(대)} \times 23,000\text{개소} \times 90\%(\text{국고보조율}) \times 90\%(\text{예상 신청률})$</p>

자료: 보건복지부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4333-318

동 사업은 대한약사회가 보조사업자인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한약사회는 2021년 4~5월 2개월간 약국의 구매 신청을 바탕으로 구매계획을 확정하여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교부(6월) 이후 7~8월 중 비접촉 거치식 체온계를 구매하여 개별 약국에 공급할 계획이다.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및 계획]



자료: 보건복지부

(2) 분석의견

동 사업 추진 시 약국의 규모 등 개별 상황에 적합한 형태의 체온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 사업의 추진절차에 따르면 개별 약국에 체온계가 신속하게 공급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

동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근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23,000개소 중 90%에 해당하는 20,700개소에 일괄적으로 비접촉 거치식 체온계를 각 개소당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구매비용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 그러나 이러한 일괄적 지원은 개별 약국의 상황에 맞는 형태의 체온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²⁾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각 약국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동 사업 추진 시 약국의 규모 등 개별 상황에 적합한 형태의 체온계 구매·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³⁾

2) 예컨대, 규모가 작은 약국에서는 거치식 체온계를 거치할 공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약국은 거치식 체온계보다 파지식 체온계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영업장 및 매출 규모가 큰 약국들 중 일부는 이미 거치식 체온계를 구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약국은 구비되어 있는 거치식 체온계에 보조적으로 활용할 파지식 체온계에 대한 수요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대한약사회를 통해 동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인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국 23,000개소 전부를 대상으로 구매 신청을 받아 구매 계획을 확정할 계획인데, 이에 약 2개월(4~5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6월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체온계를 구매하여 실제로 각 약국에 공급되는 시점은 7월 이후이다.

이러한 동 사업의 추진절차로 인하여 코로나19 일별 신규 확진자가 300~400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약국 이용자의 감염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신속히 달성하기에는 다소 늦은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약국 이용자의 감염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을 신속히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 약국에 체온계가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동 사업의 추진 절차를 간소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3) 대안 중 하나로는, 일괄적으로 비접촉 거치식 체온계를 지원하는 방안 대신 일정 수준의 금액 한도 내에서 각 약국의 상황에 맞는 종류의 체온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의 철저한 방역인력 관리필요(보건복지부)

(1) 현황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¹⁾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하여 방역인력을 채용, 의료기관에 배치하여 의료기관 등의 방역부담을 경감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46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78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0	46,720	0	37,887	37,887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방역인력 5,300명을 5개월간 한시적으로 채용하고자 378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355억 6,000만원은 인건비이며 23억 2,700만원은 위탁기관 운영비이다.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될 방역인력은 환자분류, 발열체크, 환자안내 등의 방역지원 업무를 5개월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 산출 근거]

-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37,887백만원
 - 인건비: 5,300명 × 2.13백만원 × 5개월 × 70%(채용률) × 90%(국고보조율) = 35,560백만원
 - 관리운영비(국민건강보험공단): 2,327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4333-304

채용될 인원의 지원자격은 만 65세 이하, 주5일 전일제 근무가 가능한 사람 등이며 우대조건은 장애인, 의료기관에서 방역업무 경력이 1개월 이상인 자, 보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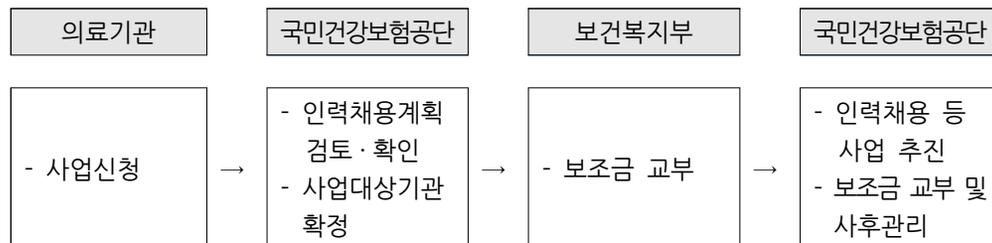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채용인력 지원자격 및 우대조건]

○ 지원자격
- 만 65세 이하인 사람
- 주5일, 전일제(09:00~18:00)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장애인 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41항에 해당하는 장애인만 해당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에서 방역업무 경력이 1개월 이상인 자
-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관련 학과 졸업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 채용공고 직전 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낮은 사람
- 고령자(50세 이상) 또는 청년(34세 이하)인 사람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당시와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추진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인력채용계획을 검토·확인, 사업대상기관을 확정 후 방역인력을 일괄적으로 채용하여 각 의료기관에 파견하게 된다.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 추진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2)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방역인력 채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채용 이후 빈번한 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 사업은 전국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4,106개소,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35개소 등 총 4,141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는 채용될 5,300명의 방역인력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의 병상규모에 따라 차등배정할 계획이다. 민간의료기관에는 100병상 미만의 경우 0.5명,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인 경우 1명,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인 경우 2명을 파견하며, 공공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각 5명씩 배치하게 된다. 다만, 위 원칙을 골자로 하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코로나19에 직접 대응하는 의료기관에는 방역인력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²⁾

[의료기관 병상규모별 방역인력 배정 계획]

(단위: 개소, 명)

의료기관(병상)규모	기관수	기관당 인원	배정인원(계획)
100병상 미만	1,761	0.5	903
100병상 이상 200병상 미만	1,326	1	1,326
200병상 이상 300병상 미만	663	2	1,326
3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228	4	912
500병상 이상 1,000병상 미만	110	5	550
1,000병상 이상	18	6	108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등)	35	5	175
계	4,141	-	5,300

자료: 보건복지부

2) 해당 원칙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당시에도 적용되었다. 코로나19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의료기관(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감염병 진단병원) 597개소에 2,345명의 방역인력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예정이었던 5,288명 대비 44.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467억 2,000만원)을 통해서도 수행된 바 있다. 당초 4개월간(2020년 8월 14일~12월 13일) 방역인력 총 5,288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는 사업기간을 2021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하였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방역인력 채용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³⁾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방역인력 신청자 부족, 사업참여 의료기관과의 매칭 문제, 빈번한 퇴직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에 비해 불충분한 방역인력이 채용·배치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 사업을 통해 채용된 이력이 있는 총 6,166명 중 중도 퇴직자가 1,332명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동 사업의 수행이 다소 부진했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채용 자체의 어려움이 아닌 채용 이후의 방역인력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채용된 방역인력이 배치 받은 의료기관의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업무내용이 당초 예상했던 바와 다르다고 여겨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입장이다.⁴⁾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방역인력 채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당시 채용된 방역인력의 퇴직이 빈번하였음을 고려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한 동 사업의 추진 시 채용될 방역인력의 잦은 퇴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외에도 동절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확진자 증가, 사업참여 의료기관 등의 사업기간 연장 요구 등이 있어 사업기간을 연장하였다.

4) 이러한 점을 고려,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당시의 성과를 고려하여 채용률을 70%로 가정하였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제 집행된 인건비 421억 1,400만원을 실제 사업기간 5.3개월(2020년 8월 14일~2021년 1월 22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월 급여 210만원으로 나누어주면 월 평균 급여지급 방역인력 3,784명이 산출된다. 해당 3,784명을 계획상 방역인력 5,288명으로 나누어주면 채용률 70%를 얻을 수 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출 시 활용한 채용률 70%에 대한 근거]

○ 채용률 70% = 월평균 급여지급 방역인력 3,784명(인건비 지급액 42,114백만원 ÷ 사업기간 5.3개월 ÷ 월급여 2.1백만원) ÷ 계획상 방역인력 5,288명

자료: 보건복지부

바.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의 차질없는 집행 필요(보건복지부)

(1) 현황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¹⁾은 코로나19에 대응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비용 및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6,500억원이 편성되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0	458,125	0	662,280	662,280	순증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0	350,000	0	650,000	650,000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2)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응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감염병 환자 진료·격리,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2740-309의 내역사업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1의2.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2.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3.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4. 제47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4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2호의2 및 제13호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5. 감염병환자등이 발생·경유하거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사실을 공개하여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손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손실에 준하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손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범위와 보상액의 산정, 제3항에 따른 지급 제외 및 감액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쇄·정지, 오염장소 소독 등)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3)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손실보상 대상 및 범위 개요]

구 분	보상 대상 (유형)	보상 범위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¹⁾ 지정,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	설치운영비용 시설·장비·인력 손실비용
	감염병 환자, 의사환자 등 진료	시설·장비·인력 소요 및 손실비용
	의료기관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	시설·장비·인력 손실비용
	환자 등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의 공개	상기에 준하는 손실
격리시설	시·도지사가 지정한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	설치운영비용 시설·장비·인력 손실비용
약국 등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의료기관 손실에 준함
일반 영업장 등	방역조치에 따른 폐쇄, 출입금지, 이동제한, 오염물건 폐기 등	시설·장비·인력 손실비용
	환자발생 및 오염장소 소독 및 필요조치 등	소독 및 필요조치 비용
	감염병예방조치에 따른 음식물, 물건 폐기, 공중위생시설/장소 소독, 어로 사용 제한 등	음식물, 물건의 평가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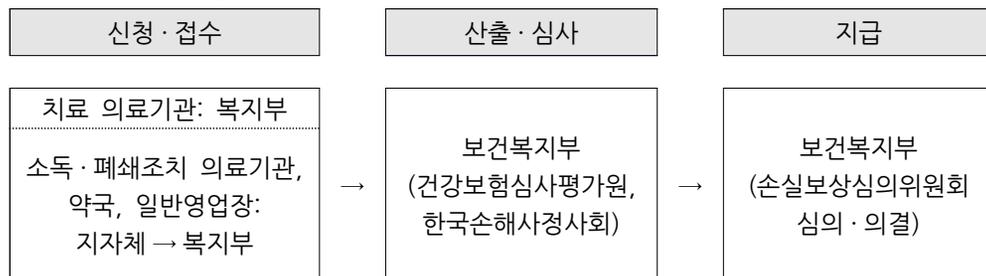
주: 1) 감염병관리기관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의료기관임
자료: 보건복지부

감염병 전담병원⁴⁾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 조치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감

-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의 대응을 위해 지정되는 의료기관을 의미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들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5)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실보상 청구를 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는 보상금을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⁶⁾ 심의·의결 후 지급하게 된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의 보상금 지급 절차]



자료: 보건복지부

(2) 분석의견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6,500억원 중 5,690억원은 치료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으로 9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며, 810억원은 소독·폐쇄조치 기관에 손실보상금으로 9개월간 지급될 예정이다. 동 예산안에 대한 산출 근거는 다음과 같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손실보상)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6)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원칙·대상·기준 등)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며,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전문가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 산출 근거]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6,500억원

- (치료의료기관) 1일 환자 치료병상 3,600병상* × 586천원** × 30일 × 9개월 = 5,690억원
- (소독·폐쇄조치 기관) 일평균 확진자 300명 × 0.2개소*** × 5백만원**** × 30일 × 9개월 = 810억원

* 일평균 확진자 300명 × 중등증 이상 병원 치료 환자 비율 30% × 평균 치료일수 20일 + 평균 병상 가동률 50%

** 2021년 치료의료기관 확보병상당 평균 보상액

*** 2020년 확진자 수 60,732명 대비 소독·폐쇄 손실보상 청구기관 13,859개소 비율

**** 2020년 소독·폐쇄 손실보상 지급 개소당 평균 보상액(8,966개소, 44,093백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환자 치료,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폐쇄·소독 등도 꾸준히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동 사업의 2020년(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이용) 및 2021년 예산(예비비)도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비, 이용 등으로 확보한 9,423억 800만원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손해사정사회와의 위탁계약 연장에 따른 4억 7,400만원 이월⁷⁾, 운영비 600만원 불용 외에 전액이 집행되었다. 2021년에는 예비비 4,000억원을 배정받은 바 있으며, 96.5%에 해당하는 3,861억 7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사업의 2020년 및 2021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2021(2월 28일 기준)				
	본예산	추경	예비비, 이월용	집행액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0	350,000	523,08 ^{b)}	941,828	0	474	400,000	400,474	386,107

주: 1) 예비비 총 551,400백만원을 2차례(3월 350,000백만원, 10월 201,400백만원)에 걸쳐 배정받았으며, 이용으로 40,908백만원을 확보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의 대상별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회(2020년 4월~2021년 2월, 매월 지급)에 걸쳐 치료의료기관 377개소에 총 1조 2,68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폐쇄·소독조치기관에는 7회(2020년 8월~2021년 2월, 매월 지급)에 걸쳐 총 577억원이 지급되었다.

7) 위탁사업 계약 종료일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3월 31일로 변경되었으며, 위탁사업 종료시 지급할 위탁사업비 잔금을 차년도로 이월하였다.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단위: 개소, 억원)

구분	합계 ¹⁾	치료의료기관							폐쇄 업무 정지	선별 진료소
		소계 ¹⁾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	중증환자 입원치료	중증환자 전담치료	기타 치료의료		
기관수	377	182	97	11	28	91	75	7	32	163
지급액	12,683	11,724	7,580	1,042	3,857	6,969	6,439	61	31	928

주: 1) 각 유형별 중복되는 기관수는 제거하였으며,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을 합산하였음

1. 위 지급액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매월 지급된 보상금을 합산한 수치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폐쇄·소독조치기관)]

(단위: 건, 백만원)

구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건수	14,342	1,973	1,235	11,087	47
지급액	57,700	50,571	1,676	5,163	291

주: 위 지급액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매월 지급된 보상금을 합산한 수치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하여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등 제약사들과 코로나19 백신 총 7,900만명분에 대한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2021년 2월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전국민 집단 면역⁸⁾ 형성 이전 예기치 못한 대유행이 재차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이행에 따른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동 사업의 신속한 집행 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8) 집단 면역이란 집단의 대부분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졌을 때, 감염병의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됨으로써 면역성이 없는 개인이 보호를 받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사.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사업을 통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 도모 필요 (질병관리청)

(1) 현 황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사업¹⁾은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감염병예방관리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조 3,484억원이 편성되었다.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감염병예방관리	11,106	226,442	32,341	2,380,741	2,348,400	7,261.4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0	183,863	0	2,348,400	2,348,400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2조 3,484억원은 계약을 체결한 총 7,900만명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총 소요 예산 약 3조 8,067억원 중 기배정액 1조 2,133억원을 제외한 2조 6,474억원에서 2022년 집행예상액 2,450억원을 제외하여 산출되었다.²⁾ 질병관리청은 동 예산을 활용하여 구매 완료한 총 7,900만명분의 백신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경덕 예산분석관(choi8807@assembly.go.kr, 6788-3728)

1) 코드: 일반회계 4838-303의 내역사업

2)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고, 제약사와 구매 계약 논의 이전 상황으로, 백신의 종류·규모·도입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하였다.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증액분 산출 근거]

○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2조 3,484억원) =
총 구매비용(3조 8,067억원) - 기배정액*(1조 2,133억원) - 2022년 집행예상액 ¹⁾ (2,450억원)
* 1,723억원(2020년 이용) + 1,839억원(2020년 추경) + 8,571억원(2021년 예비비)

주: 1) 현재 백신별 수급 상황, 구체적인 도입 일정 및 물량 등이 불확실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실제 예산 집행이 2022년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금액임
 자료: 질병관리청

구매 완료한 7,900만명분의 백신에 대해 살펴보면, 질병관리청은 개별 제약사와의 계약에 앞서, 2020년 10월 9일 코백스³⁾와의 계약으로 코로나19 백신 1,000만명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2,000만회분, 1,000만명분), 화이자(2,600만회분, 1,300만명분) 등과의 계약 체결을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2월 26일 기준으로 총 1억 5,200만회분, 7,900만명분의 백신이 확보되어 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

(단위: 만 회, 만 명)

구분	공동구매		개별 제약사				계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물량	회	2,000	2,000	2,000/600	600	4,000	4,000	15,200
	명	1,000	1,000	1,000/300	600	2,000	2,000	7,900
계약일	'20.10.9	'20.11.27	'20.12.23/ '21.2.15	'20.12.23	'20.12.31	'21.2.16	-	-

주: 1. 동 표는 2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2. 화이자 백신은 2020년 12월 23일 2,000만회분(1,000만명분) 계약 체결 후, 2021년 2월 15일 600만회분(300만명분)을 추가로 계약하였음
 3. 동 표의 수치는 각 제약사와의 계약에 따른 백신 확보(계약) 현황을 의미하며, 실제 공급받은 백신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자료: 질병관리청

3) 코백스(COVAX facility)는 2021년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20%까지 코로나19 백신을 균등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다국가 연합체이다. 코백스와의 계약을 통한 코로나19 백신은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백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참여국에게 백신 후보군에 대한 선택 여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코백스를 통해 공급될 코로나19 백신의 종류 및 물량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2) 분석의견

질병관리청은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과 구체적인 백신 도입 시기, 물량 등에 대한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여 동 사업의 집행 뿐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계약되어 있는 총 7,900만명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중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는 2021년 1분기부터,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는 2분기부터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 중 코백스를 통하여 화이자 백신이 11.7만회(5.8만명)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57만회(78.5만명)분이 실제로 국내에 공급되었다.⁴⁾

[코로나19 백신 공급 시작 시기 및 실제 공급 물량]

구분	공동구매	개별 제약사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공급 시작 시기	1분기 (2월말)	1분기 (2월말)	1분기 (3월)	2분기	2분기	2분기
실제 공급 물량	화이자 11.7만회 (5.8만명)	157만회 (78.5만명)	-	-	-	-

주: 동 표는 2월 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자료: 질병관리청

참고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제약사와 체결한 비밀유지협약(CDA: 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및 구매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총 계약 물량과 공급 시작 시기를 제외한 가격, 추후 확정될 구체적인 공급 일정 등의 세부 계약 조항 등은 모두 비공개 사항이다. 이에 따라, 상기 언급한 백신 공급 시작 시기 외에 구체

4) 이에 따라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며, 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하여 국가가 보상해주게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적 월별 공급 일정은 현재 시점에서 공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계약에 따른 구매 비용은 선급금과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질병관리청은 계약 체결 이후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백신이 실제 우리나라에 인도되는 시점에서 잔금을 지급하는데⁵⁾,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예산 집행은 선급금 지급 시점 혹은 잔금 지급 시점에 이루어지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기배정액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을 통해 2020년에 확보한 1,723억원은 연내에 전액 집행되었으며,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1,839억원) 및 2021년 목적예비비(8,571억원)로 확보한 1조 410억원 중 약 4,232억원이 집행되었다.

질병관리청은 기배정 예산의 집행잔액 6,178억원(9,909억원 - 3,731억원) 및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2.3조원을 활용해 구매 완료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잔금을 각 제약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백신 도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2021(2월 28일 기준)				
	본예산	추경, 이연용 등	집행액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코로나19 백신 선납금	0	172,300 (이용)	172,300	0	0	0	0	0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	0	183,863 (추경)	50,050	0	133,813	857,100 (예비비)	990,913	373,117

주: 동 표의 두 내역사업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편의상 ‘코로나19 백신 선납금’과 ‘코로나19 해외 백신 도입’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두 내역사업 모두 코로나19 백신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그 성격이 동일한 사업임

자료: 질병관리청

구체적 백신 도입 시기, 물량 등은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과의 추후 협상을 통해 정해질 예정인데, 관련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동 사업의 집행뿐 아니라 코로나19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

5) 다만, 일부 제약사에는 선급금 지급 후 백신 허가 시점 등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추후 백신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해당 제약사가 어느 제약사인지는 비밀유지협약 및 구매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 또한, 공급 물량에 따라 잔금은 1회에 전액 지급될 수도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들과 구체적인 백신 도입 시기, 물량 등에 대한 협상을 원활히 진행하여 동 사업의 집행 뿐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접종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각 제약사별로 코로나19 백신 공급 일정이 구체화되는 대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규모

환경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2조 9,405억 4,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총지출은 11조 3,046억 5,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32억원이 증액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수입은 25조 6,834억 6,700만원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한 총수입 규모 변동은 없다. 또한 총지출은 37조 8,562억 3,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조 2,075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환경부	총수입	2,940,546	2,940,546	0	0.0
	총지출	11,171,451	11,304,651	133,200	1.3
고용노동부	총수입	25,683,467	25,683,467	0	0.0
	총지출	35,648,654	37,856,232	2,207,578	6.2

자료: 환경부, 고용노동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주요사업

(1) 환경부

환경부 소관 세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경정된 세입과목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전입금이 51억 6,20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과징금 부과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세입액과 2020년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으로 인해 세계잉여금이 1,280억 3,800만원 증가되었다.

[환경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주요 세입 과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환경개선	세계잉여금(89-893)	179,895	307,933	128,038	71.2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91-911)	5,349,043	5,354,205	5,162	0.1
합 계		5,528,938	5,662,138	133,200	2.4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환경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5개 세부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없다.

고용 충격에 대응한 환경일자리 확대, ASF 대응 등 환경 현안 대응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재활용품 분리선별을 위해 1,152억원, ASF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 대응 인력 확충에 56억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예방·감시를 위해 40억원, 국립공원 및 5대강 환경 정비 등을 위해 84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다.

[환경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 (8010-800)	5,349,043	5,354,205	5,162	0.1
환경개선 특별회계	분리배출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1432-306)	4,403	119,603	115,200	2,616.4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1633-301)	505,561	509,561	4,000	0.8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1831-309)	32,017	37,617	5,600	17.5
	환경지킴이(1831-324)	43,537	51,937	8,400	19.3
합 계		5,934,561	6,072,923	138,362	2.3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2)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18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①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해 청년 일자리창출지원 등 11개 사업에 1조 3,620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고, ②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등 3개 사업에 2,94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③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개 사업에 5,431억 7,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지출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고용센터인력지원(1031-300)	88,531	95,926	7,395	8.4
	청년센터운영(1032-303)	4,273	10,733	6,460	151.2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1042-301)	0	56,000	56,000	순증
	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	467,600	1,028,720	561,120	120.0
	내일배움카드(일반)(1065-300)	214,504	261,904	47,400	22.1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1234-300)	828,647	948,900	120,253	14.5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1234-303)	54,181	174,715	120,534	222.5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235-300)	0	456,277	456,277	순증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1339-302)	0	52,000	52,000	순증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1056-317)	148,029	188,029	40,000	27.0
고용보험 기금	고용유지지원금(1045-350)	1,372,832	1,576,112	203,280	14.8
	고용유지자금용자(용자)(1045-356)	15,000	56,660	41,660	277.7
	고용창출장려금(1046-350)	186,481	486,541	300,060	160.9
	내일배움카드(고보)(1063-352)	800,501	820,501	20,000	2.5
	직업훈련생계비대부(용자)(1092-352)	43,443	84,491	41,048	94.5
	고용안정장려금(1345-350)	154,979	208,170	53,191	34.3
근로복지 진흥기금	생활안정자금(용자)(3062-306)	99,051	149,051	50,000	50.5
	방문돌봄중사자 한시지원금 (3068-324)	46,000	76,900	30,900	67.2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9005-840)	26,000	0	△26,000	△10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9005-841)	24,000	0	△24,000	△100.0
합 계		4,574,052	6,731,630	2,157,578	47.2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의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한 타 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방안 강구 필요 등(환경부)

(1) 현 황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¹⁾은 단독주택이나 농·어촌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재활용폐기물의 적정선별 및 처리 등 적체 방지를 위한 공공선별시설 인력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를 통해 선별 부담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21년 동 세부사업의 본예산은 44억 300만원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내역사업 예산 1,152억원이 증액되어 총 1,196억 300만원이 편성되었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	3,767	45,988	4,403	119,603	115,200	2,616.4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	42,221	2,600	117,800	115,200	4,430.8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배달, 택배 등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해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이 급증²⁾함에 따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내역사업을 통해 선별장과 공동주택 등에 재활용품 분리·선별 인력을 채용하였으며, 2021년 본예산에서는 10개 시·도 자치단체의 총 53개 공공선별장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00명의 공공선별장 선별인력 채용을 위해 26억원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활안정 및 소득안정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2020년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추가 인력 채용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인건비 및 운영경비 예산을 추가로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공동주택·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소에서 분리배출을 지원하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홍보하는 ‘자원관리도우미’ 인력 총 10,000명을 충원한다는 계획이며, 2021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일 8시간 및 총 6개월 근무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을 고려하여 1,15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 세부 산출내역]

- 공동(분리배출장)·단독주택(거점수거지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소에서 분리배출(투명페트병 등) 지원 및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홍보
 -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 1만명, 1,152억원(국비)
 - (인건비) 1만명* × 2.1백만원/월 × 6개월 × 90%(보조율) = 1,134억원
 - * 공동주택 8,000명(1만6천단지×2명/4단지), 단독주택 2,000명(재활용 동네마당 등 1,000개소×2명)
 - (운영비) 1만명 × 0.2백만원(안전장비, 교육비 등) × 90%(보조율) = 18억원

자료: 환경부

2)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대비 2020년 재활용폐기물 발생량은 약 12.1%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 분석의견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부는 타 부처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중 본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과의 적극적인 상호보완 및 연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택배·배달 등 비대면 소비증가로 재활용폐기물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바, 음식물·이물질이 묻은 용기나 비닐류,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등이 선별장에 반입된 후 적정하게 재분류되지 못할 경우 잔재물로 폐기되어 잔재물처리 비용부담, 적체량 증가 등 선별장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가능자원의 급격한 공급량 증가와 재생원료 적체 현상은 재활용 관련 업계의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폐기물 수거 대란 등 국민들의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내역사업 예산 422억 2,100만원(국비 100%)을 신규 편성하여 재활용폐기물 선별장 지원인력과 공동주택 자원관리도우미 등 총 10,843명을 채용하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고,³⁾ 2021년 본예산에서는 채용 규모 및 분야를 축소하여 공공선별장 선별인력 총 400명을 충원하기 위해 26억원(국고보조율 50%)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직면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여성이나 청년, 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공공 단기 일자리를 확충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 및 소득안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부는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지역별 공동주택 현황과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된 재활용동네마당 개소수 등을 고려하여 총 10,000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신규 채용하기 위한 예산 1,152억원(국고보조율 90%)을 증액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공공선별장 선별인력과 제1회 추경예

3)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추진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의 결산 결과, 당초 목표한 채용인원 총 10,843명 중 97.3%인 10,553명을 채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산안에 편성된 자원관리도우미를 비교해보면, 우선 공공선별장 선별인력은 지자체에서 운영(직영 또는 위탁) 중인 공공선별장에서 폐기물 선별 전에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반입·반출량 확인 및 실적 전산화 등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사무실 주변 정리·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총 400명의 인원이 53개 기초자치단체 공공선별장에 약 5개월(21.3~8월) 간 배치될 예정이며, 국고보조율은 50%(지방비 50%)이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자원관리도우미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리배출장이나 단독주택 지역에 설치된 재활용동네마당 등 거점수거지점에 배치되어 생활폐기물 배출 단계에서 재활용불가품을 사전적으로 선별하고, 리플릿이나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을 안내·계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자원관리도우미의 채용 규모는 전국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만 6천여단지에 4개 단지당 2명의 순회 근무 및 2020년까지 환경부의 국고지원을 통해 설치된 재활용동네마당(약 1,000개소) 1개소당 2명 근무를 기준으로 총 10,000명으로 산출하였다.⁴⁾ 환경부는 자원관리도우미 인력을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 간 채용할 계획이며, 국고보조율은 재활용폐기물의 급증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90%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2021년 본예산 또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추진 중인 타 일자리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행정안전부가 2021년 추경예산안을 통해 추진할 계획인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경우,⁵⁾ 시행주체(지자체), 국고보조율(90%), 수행기간(4~6개월) 등이 본 사업과 유사하므로 지자체 내에서 동 사업을 수행할 때 채용이나 급여 지급, 복무 관리 등을 연계하여 수행한다면 행정력을 보다 절약하고 사업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17개 광역시·도 및 시·군·구를 대상으로 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630명에 대한 수요가 제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5) 행정안전부는 금번 희망근로 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백신접종센터 행정보조 인력 1만명, 생활방역 및 그린뉴딜 관련 일자리 등에 4만명 등 총 5만여 개의 공공일 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총 2,130억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환경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추진 중인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검토 또는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때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타 공공일자리 사업과의 연계 추진방안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필요시 지자체 내 환경 관련 부서 외에 일자리 관련 부서 등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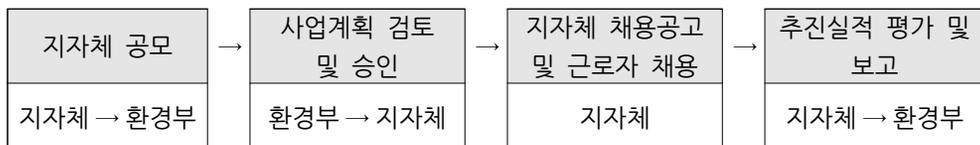
둘째, 환경부는 민간역무대행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사업 추진방식이 변경된 점을 고려하여 사업 준비과정 뿐만 아니라 인력 채용 후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체계 및 과업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추진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내역 사업의 예산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되어 한국환경공단에 전액 집행되었고,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단기일자리 근로자를 채용하여 해당 지역 내 선별장 및 공동주택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1년 본예산부터 동 내역사업의 추진방식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추경예산안을 통해 추가된 자원관리도우미 지원 사업 또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 사업의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환경부가 개별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 후,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치며, 사업 승인을 받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단기일자리 근로자 채용 공고 및 계약 체결, 현장 배치 등을 수행한 후 추진실적을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는 이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추진체계]



자료: 환경부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4조⁶⁾에 근거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선별시설 및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2021년 본예산에서 추진 중인 공공선별장 선별인력 지원 사업과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자원관리도우미 지원 사업 모두 개별 지자체에서 인력 채용과 교육·훈련, 과업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은 민간역무대행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인력 채용뿐만 아니라 교육·훈련, 업무 관리 등을 일괄적으로 수행하였는바,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 추진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 소관으로 사업 체계 및 운영방식이 전환될 경우, 개별 지자체의 여건이나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⁷⁾

따라서 환경부는 지자체의 채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한편, 사업 준비과정 뿐만 아니라 인력 채용 후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체계 및 과업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⁸⁾

6)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7) 예를 들어, 2020년 제3회 추경사업 추진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온라인 교육 매뉴얼과 핸드북 등을 마련하여 채용인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의 경우 지자체가 자체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또는 지자체의 교육·훈련 체계가 미흡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다.

8) 일례로, 환경부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감시단의 경우, 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직접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인력을 선발·운영하는 방식이나, 지자체가 채용한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복무관리 등은 환경부의 책임 하에 진행함으로써 사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의 인력 활용계획 구체화 등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환경부)

(1) 현황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¹⁾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보호·치료 및 자연방사 등을 통해 자연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조류독감(AI), 농작물피해 등 야생동물로부터 기인하는 질병과 피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의 2021년 본예산은 320억 1,700만원이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야생멧돼지 ASF 확산 차단을 위한 수색 및 소독 인력, 멧돼지 개체수 파악을 위한 서식현황 조사인력 등 ASF 대응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한 예산 56억원이 증액되어 총 376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28,410	36,413	32,017	37,617	5,600	17.4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2019년 10월 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최초로 검출된 이후, 경기·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ASF 양성개체가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예비비와 이·전용 등을 통해 ASF 대응 관련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²⁾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을 통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수색, 발생지역 소독, 멧돼지 포획 등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매개체를 제거하고, 야생멧돼지 이동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유지보수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였다.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09

2) 2020년 ASF 대응을 위해 배정받은 목적예비비와 이·전용액은 각각 317억 3,900만원, 816억 300만원으로 예비비와 이·전용액을 합한 1,133억 4,200만원 중 약 80.9%인 916억 9,100만원이 광역울타리 및 차단울타리 설치를 위해 활용되었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야생멧돼지 ASF 발생이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① 멧돼지 서식흔적을 중심으로 사체 혹은 이상 징후 개체가 있는지 면밀히 수색하여 감염원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한 폐사체 수색인력 300명, ② ASF 발생지점과 주변 흔적(비빔목·물웅덩이·목욕장 등)을 소독하여 잔류 바이러스 등 감염원을 제거하고 매몰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소독 인력 65명, ③ 야생멧돼지의 생태 및 개체군 동태 등 서식밀도를 조사하여 포획목표 설정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서식밀도 조사 인력 40명 등 총 405명의 ASF 대응 인력 추가채용을 위한 예산 56억원을 증액하였다.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 산출근거]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모집 대상	채용 인원	산출근거	증감액
폐사체 수색	지역 주민	300	(예찰) 300명*×210만원/월×6개월 = 3,790백만원 (사후처리) 20만원/개체 × 35개체** × 17개 시·군 × 6개월 = 360백만원 * 300명 = 17개 시·군 × 18명 ** 시군별 추가 예상되는 폐사체수 기준	4,150
발생지역 소독	지역 주민	65	(인력) 65명(13개 시·군×5명)×210만원/월×6개월 = 820백만원 (물품) 13개 시·군×100만원×10회=130백만원	950
서식현황 조사	전문가	40	(조사원) 40명*×210만원/월×6개월=500백만원 * 서식지 조사는 5일/월, 분석은 15일/월 간 수행하며, 발생 및 인접지역 20개 시·군별로 2인당 1조로 구성	500
합 계		405		5,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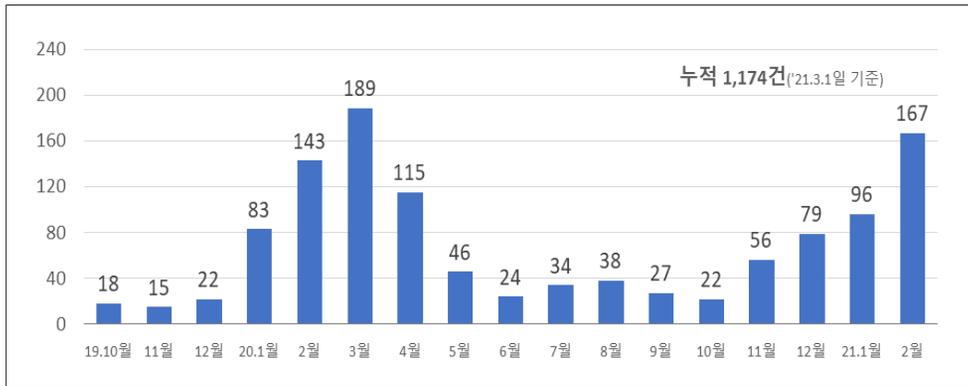
자료: 환경부

(2) 분석의견

환경부는 ASF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 채용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 활용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019년 10월 3일 국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초로 발생한 이래 2021년 3월 1일 기준 총 누적 1,174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멧돼지의 생태적 특성상 겨울철 교미기(11월~1월)가 끝나고 흩어졌던 개체들이 다시 무리를 이루면서 집단 내 감염으로 인해 1월부터 4월간 발생건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 야생멧돼지 ASF 발생 현황('19.10~'2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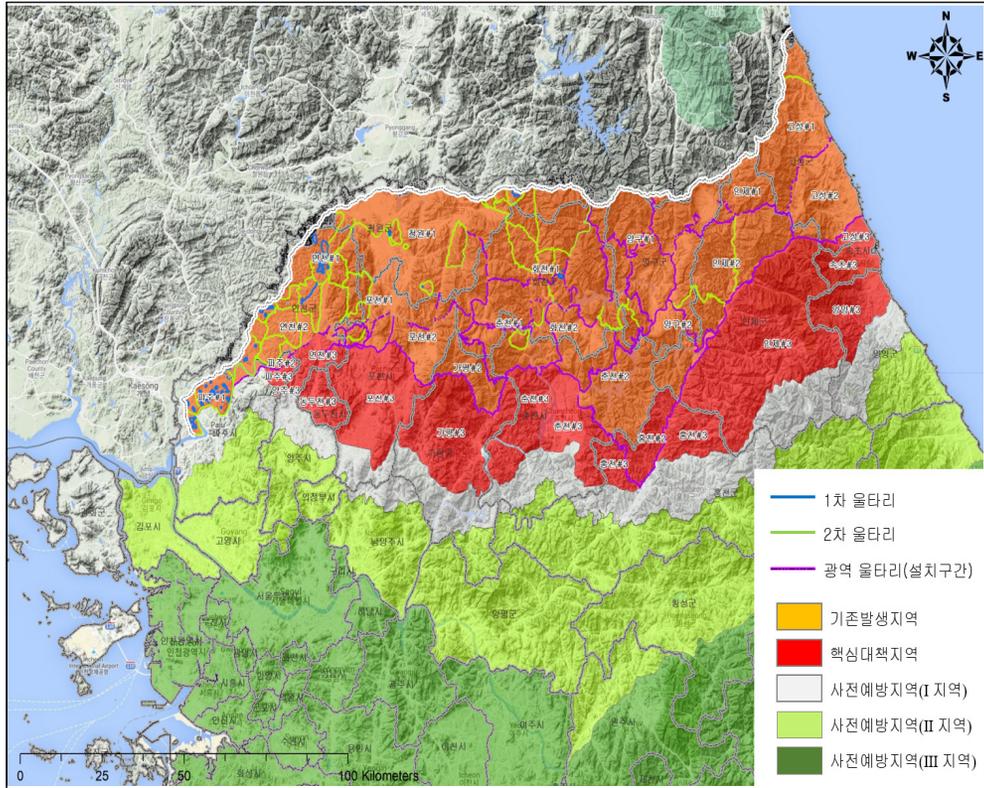
자료: 환경부

이에 따라, 환경부는 ASF 발생 초기부터 멧돼지 폐사체 수색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DMZ 이북지역에서는 군과 협력하여 양성 멧돼지 폐사체의 신속 제거 및 확산여부를 조기에 파악하고 있다. 또한, ASF 발생지점 주변으로 1·2차 울타리를 설치하고 지역간 확산 차단을 위한 광역울타리 설치 및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³⁾ 특히 발생지역에서는 포획틀과 트랩을 활용하는 특별포획단 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인 포획전략을 적용하는 한편, 확산 우려가 적은 지역은 제한적인 총기포획 확대 등 포획전략을 다변화하여 대응하고 있다.

3) 2021년 3월 1일 현재 1차 차단울타리는 총 45개소 121.7km, 2차 차단울타리는 총 33개소에 699.6km가 설치되었으며, 광역울타리는 총 1,182.7km가 설치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확대된 발생지역⁴⁾을 반영하여 ASF 관리지역을 ‘기존 발생지역’, ‘핵심대책지역’ 및 ‘사전예방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차등화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⁵⁾

[ASF 관리지역 구분 도면(안)]



자료: 환경부

4)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1~3월 당시 4개 시·군에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현재 13개 시·군으로 발생지역이 확대되었다.

5) [ASF 관리지역별 대응체계]

구분	세부내용
기존발생지역	차단 울타리로 세부 구획화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하여 외부 유출을 차단, 기존 발생지역 내로 발생범위 한정
핵심대책지역	기존 및 신규 광역울타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사전 예측을 통한 선제조치로 확산상황을 조기 종결
사전예방지역	비발생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오염원 유입 여부를 주기적 확인 및 사전 대비태세 완비

자료: 환경부

이와 같이,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ASF 대응을 위해 폐사체 수색팀, 특별포획단, 현장점검반, 울타리 관리 등의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본예산에서는 수색 인력 170명, 울타리 관리 인력 137명 등 총 307명 규모의 인력 채용을 위한 예산 38억 3,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2021년 2월말 현재 본예산에 반영된 폐사체 수색인력 관련 인건비 예산 43억원 중 24.4%인 10억 5,000만원이 이미 집행된 상황으로, 연중 일관된 ASF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 하에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56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폐사체 수색 인력과 소독 인력, 서식밀도 조사 인력 등 총 405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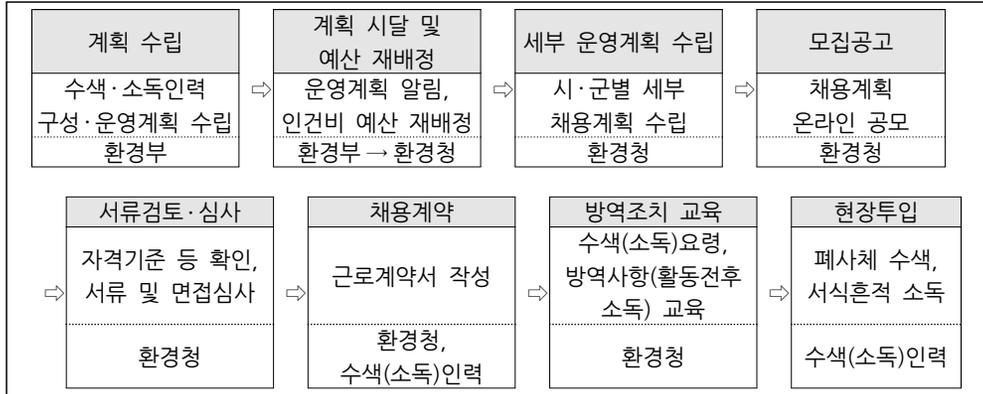
[ASF 대응 인력 신규 채용 규모 및 유형별 역할]

구 분	역할 및 임무	지원 규모
폐사체 수색	멧돼지 서식흔적을 중심으로 사체 혹은 이상 징후 개체가 있는지 면밀히 수색하여 감염원 조기제거 및 ASF 확산 방지	(21년 본예산) 170명, 43억원 (21년 추경) 300명, 41.5억원
소독	ASF 발생지점 및 주변 흔적(비빔목·물웅덩이·목욕장 등)을 소독하여 잔류 바이러스 등 감염원 제거, 매몰지 관리 상태 점검	(21년 본예산) 해당없음 (21년 추경) 65명, 9.5억원
서식밀도 조사	야생멧돼지의 생태 및 개체군 동태 등 서식밀도를 조사하여 포획목표 설정 등의 기초자료 구축	(21년 본예산) 해당없음 (21년 추경) 50명, 5억원

자료: 환경부

환경부에 따르면, 폐사체 수색 및 소독 인력은 수색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GPS 및 사진 전송 등 일일 업무보고가 가능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며, 서식밀도 조사 업무의 경우, 서식지와 멧돼지 흔적을 통해 멧돼지 개체수를 추정할 수 있는 기초지식이 필요하므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생물학 전공 대학생 또는 대학원 재학생을 중심으로 채용할 예정으로, 수색·소독 인력과 서식밀도 조사 인력 모두 약 6개월 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ASF 대응 신규인력 채용절차(예시)]



자료: 환경부

하지만 폐사체 수색 및 소독인력 운영 대상지역의 대부분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산악지역이고, 주로 고령자로 구성된 지역주민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색·소독 실시지역을 구체화하는 등 세부 활용계획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인력 채용의 효과성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환경부 및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겨울철 교미기(11~1월) 및 봄철 멧돼지 출산기(4~5월) 이후 개체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온상승에 따라 곤충·야생동물 등 매개체의 활동과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된다.⁶⁾

따라서 환경부는 한정된 기간(6개월) 동안 제한된 인력(300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월별 멧돼지 개체수 증감 추이, 지역별 ASF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지역별(시·군)로 배치될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6)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21.2.25), “중수분, 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대책 추진”

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사업의 사전조사 완료 등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환경부)

(1) 현황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¹⁾의 내역사업인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를 비롯하여 핵심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이 밀집된 지역의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목적으로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민간감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동 내역사업의 2021년도 본예산은 149억 3,000만원이나 지자체의 미세먼지 감시공백을 지원하는 한편, 고용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단기 일자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40억원(26.8%)이 증액되어 총 189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내역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291,744	286,544	505,561	509,561	4,000	0.8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14,930	14,930	14,930	18,930	4,000	26.8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동 사업은 지역 핵심배출원에서의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행위를 상시 감시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현장 이행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1년 본예산에서는 전국의 약 10만개 미세먼지 배출관리대상 사업장 중 6만개 사업장을 감시하기 위한 총 1,000명의 감시단 인력 채용을 위해 인건비와 고용보험 및 운영관리비 등 149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공무원 1인당 약 40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감시단의 지원으로도 관리가 어려운 감시공백이 여전히 존재하며,²⁾ 이로 인해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633-301

각종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환경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미세먼지 감시단 인력 500명을 추가 채용함으로써 지역별 핵심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추경안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취업취약계층 등 취업보호대상과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관련 분야 산업체 은퇴자 및 최근 3년 이내 전역 장병 청년 등 500명을 감시단 인력으로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27억원)와 고용보험(3억원), 피복비, 장비·소모품 구입비를 포함한 운영경비(10억원) 등 총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율은 50%이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2021년도 추경안 세부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세부내역
인건비	2,700	- 500명 × 1.8백만원/월 × 6개월 × 50%(보조율)
고용보험	300	- 500명 × 20만원/월 × 6개월 × 50%(보조율)
운영비	1,000	- 500명 × 4백만원 × 50%(보조율)
합 계	4,000	

자료: 환경부

(2) 분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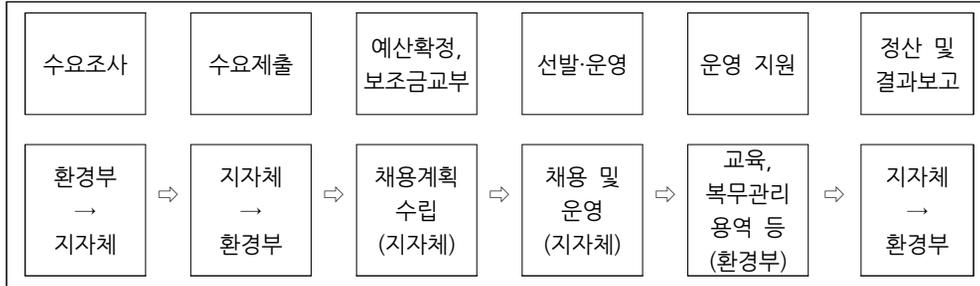
첫째,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시단 추가인력 채용을 위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요 조사를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명확하고 집행가능한 사업 규모를 제시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의 추진체계 및 절차를 살펴보면, 환경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가 미세먼지 감시단 인력 채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에 근거하여 예산이 확정되고 보조금이 교부되면 지자체가 직접 해당 인력을 채용·운영하게 된다.

2)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 관리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243개 지자체에 약 10만개 수준으로, 지자체의 담당공무원 1인당 약 400개소를 관리하고 있어 지자체의 미세먼지 감시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후, 인력 운영과정에서 환경부는 채용된 감시단 인력에 대한 교육 및 복무관리 등의 운영지원을 총괄하며, 채용기간이 종료되면 지자체로부터 정산 및 결과보고를 받는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추진체계]



자료: 환경부

미세먼지 감시단의 경우,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채용조건이 상이할 수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취업보호대상 및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관련 산업체 은퇴인력, 환경 분야 자격증 소지자, 최근 3년 이내 전역장병 등은 우선 선발하고 있다.

특히, 동 사업은 지방비 매칭이 필요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는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요조사 결과 도출된 채용인원(1,210명) 및 예산 규모(국비 149억 7,200만원)를 고려하여 본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2021년도 본예산 수요조사 결과]

(단위: 백만원, 명)

보조사업자	2021년 본예산 신청 현황			
	합계	국비	지방비	인원
합 계	29,944	14,972	14,972	1,210
서울특별시	1,478	739	739	50
부산시	1,166	583	583	25
대구시	444	222	222	16

(단위: 백만원, 명)

보조사업자	2021년 본예산 신청 현황			
	합계	국비	지방비	인원
인천광역시	1,038	519	519	29
대전시	300	150	150	32
광주광역시	553	276	276	24
울산시	550	275	275	15
세종시	350	175	175	12
경기도	9,374	4,687	4,687	375
강원도	3,975	1,987	1,987	145
충북	1,909	955	955	88
충남	2,614	1,307	1,307	179
전북	1,304	652	652	41
전라남도	1,965	982	982	57
경북	1,700	850	850	64
경남도	1,026	513	513	52
제주특별자치도	200	100	100	6

자료: 환경부

그러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미세먼지 감시단 추가 인력(500명)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한 물량으로,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사전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추경예산안에 대한 지자체별 수요조사 실시 결과 지자체의 수요가 부족할 가능성이 존재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조속히 완료함으로써 명확하고 집행가능한 사업 규모를 제시하는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에 따른 성과를 철저히 검토·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고용노동부의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및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미세먼지 감시단 인력은 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②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여부 감시, ③ 불법소각 행위, 악취배출 업소 순찰 및 신고, ④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확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감시단은 평상시에는 지역별 순찰 및 감시 활동을 수행하나, 비상시 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

[미세먼지 감시단의 주요 임무 및 역할]

구 분	세부역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 배출가스 단속대상 운행차량을 측정장소로 유도, 배기가스 측정을 위해 정지상태에서 차량 조작, 단속과정에서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 관리 담당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여부 감시	- 주기적 순찰을 통해 방진벽 부적정 설치, 세륜 및 측면살수 시설 미가동, 수송차량 덮개 미설치 등의 불법사례를 사업장 외부에서 증거사진 촬영 및 관할기관 신고
불법소각 행위, 악취배출 업소 순찰 및 신고	- 도심지역 주기적 순찰을 통해 영농폐기물, 사업장·건설공사장 폐자재 불법소각 행위, 악취 유발 사업장 등을 적발 후 당사자에게 안내, 증거사진 촬영 및 관할기관 신고 - 공무원과 협업하여 합동 순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확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준수사항 확인, 사업장의 준수사항 미이행 확인 시 관계기관 신고 ※ 사업장 밖에서 육안으로 건설공사장 운영상황 등 파악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이와 같은 미세먼지 감시단 인력의 활용을 통해 제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19.12. ~ '20.3.) 및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20.12. ~ '21.1.) 동안 총 98,174건의 점검실적, 73건의 행정처분, 117건의 과태료 부과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제시하였다.

[미세먼지 감시단 활용실적]

(단위: 건)

구분	불법소각			사업장			비산먼지		
	점검실적	행정처분	과태료	점검실적	행정처분	과태료	점검실적	행정처분	과태료
1차 계절관리제	11,219	0	46	13,755	17	7	21,099	12	20
2차 계절관리제	6,792	1	28	19,840	13	8	25,469	30	8
합계	18,011	1	74	33,595	30	15	46,568	42	28

자료: 환경부

그러나 동 사업은 직접일자리 지원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대한 지출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에 따른 성과를 철저히 검토 및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³⁾ 및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시행하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등에 따라 동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 강화 필요 등(환경부)

(1) 현 황

환경지킴이 사업¹⁾은 생태 우수지역에 대한 국민들의 체험·관찰욕구 증대에 대응하여 양질의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연훼손을 예방하며, 생태·경관 보전지역, 국립공원 및 5대강 주요수계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환경지킴이 사업을 통해 자연환경해설사, 국립공원지킴이, 주민감시요원 및 5대강환경지킴이 등 일자리 사업을 운영 중이며, 2021년도 본예산은 435억 3,700만원이나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와 5대강환경지킴이 등 2개 내역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단기 일자리를 추가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84억원(19.3%)이 증액되어 총 519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다.

[환경지킴이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환경지킴이	43,315	43,264	43,537	51,937	8,400	19.3
국립공원지킴이	15,912	15,912	16,085	20,285	4,200	26.1
5대강환경지킴이	9,707	9,656	9,807	14,007	4,200	42.8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국립공원지킴이 내역사업은 국립공원 탐방객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자연 자원 훼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탐방객을 계도·안내하는 녹색순찰대 일자리 사업과 탐방객 안전관리 및 구조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구조대로 구성되나,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직접일자리 사업에 해당하는 녹색순찰대 관련 예산을 42억원 증액하여 일자리(본예산 442명+추경예산안 300명)를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재정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1) 코드: 환경개선특별회계 1831-324

능력이 떨어지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2021년 본예산을 통해 5대강환경지킴이 385명 채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연령층이나 거주요건 등 채용요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층을 사업 대상으로 확대하여 300명의 일자리를 추가 채용하기 위한 예산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다.²⁾

[환경지킴이 사업 2021년도 추경안 세부 편성내역]

구 분	세부 편성내역
국립공원지킴이 (녹색순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3,600백만원 - 인건비: 300명 × 8,720원/hr × 209hr × 6개월 = 3,280백만원 - 법정부담금: 3,280백만원 × 11.774% = 320백만원 ○ 운영비: 600백만원(=300명×2백만원) - 피복 및 등산화 구입비 20만원, 교육비 10만원, 각종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20만원, 여비 150만원 등
5대강환경지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및 법정 부담금: 3,600백만원 - 인건비: 385명 × 8,720원/hr × 209hr × 6개월 = 3,232백만원 - 법정부담금: 3,232백만원 × 11.386% = 368백만원 ○ 운영비: 600백만원 - 월정액 여비: 300명 × 25만원/인 × 6개월 = 450백만원 - 기타운영비(150백만원): 교육비(30백만원) 0.1백만원/인 × 300인, 각종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자료: 환경부

(2) 분석의견

환경지킴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투입되는 국립공원지킴이 녹색순찰대와 해양수산부의 바다환경지킴이 등 기타 인력과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쓰레기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국립공원지킴이 녹색순찰대 사업과 5대강환경지킴이 사업은 모두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국립공원지킴이 사업 예산은 국립공원공단에 출연(100%)하고 있으며, 5대강환경지킴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집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지킴이 녹색순찰대를 통해 매년 442명의 직접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3월 4일 현재 2021년도 본예산을 통해 배정받은 녹색순찰대 인력 442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³⁾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추가 채용할 300명의 녹색순찰대에 대해서는 전국 29개 국립공원 사무소에 인력을 배분한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안내 및 탐방안내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등 국립공원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지킴이 녹색순찰대 추가인력 활용계획]

(단위: 명)

구 분	활용 분야	인 원
계	-	300
코로나19 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탐방객 대상 거리두기 안내 (고지대, 탐방로 등)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탐방안내소 등 다중 이용 시설 방역 	114
국립공원 현장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처리 인력 강화 * 2020년 국립공원공단 국정감사 시,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보강 및 대책 마련 촉구(윤준병 의원) ○ 국립공원 자원보호 및 탐방서비스 제공 	186

자료: 환경부

또한, 환경부는 추가로 채용되는 녹색순찰대 인력 중 일부를 활용하여 해양쓰레기 처리 강화, 국립공원 환경미화와 순찰 등 국립공원 현장관리 인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통해 바다환경지킴이 인력이 운영되고 있는바, 환경부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정화

3) 국립공원 녹색순찰대의 자격요건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의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킴이”에 준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학력이나 전공, 연령 제한은 없고 소득이나 자산 기준 초과자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선발하고 있다. 참고로, 2020년 국립공원지킴이 녹색순찰대 모집 경쟁률은 1.7:1을 보였으며, 2021년 모집 시에는 선발 목표인원 442명 대비 참여자격을 충족한 응시인원이 1,031명으로 경쟁률이 2.3:1로 증가하였다.

활동을 통해 건강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의 바다환경지킴이와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처리 인력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부의 바다환경지킴이⁴⁾는 육상의 환경미화원과 같이 주요 해안에 상시관리 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들의 활동범위는 개별 지자체 단위에서 확정되나 해안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영역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국립공원공단법」에 의거하여 국립공원공단에서 수거하여야 하는바, 태안해상·변산반도·다도해해상·한려해상 등 4개 국립공원 지역에는 해양수산부의 바다환경지킴이가 투입되지 않고 국립공원공단에서 녹색순찰대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추가로 편성한 해양쓰레기 처리 인력 또한 4개 해양 국립공원 지역에 투입되어 해양쓰레기 처리 및 정화 활동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므로 해양수산부 바다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역할과의 중복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녹색순찰대 중 해양 국립공원 배치계획]

(단위: 명)

근무지 (국립공원사무소명)		합계	본예산	추경예산안
		(A+B)	배치현황(A)	배치계획(B)
합 계		742	442	300
해양 국립공원	한려해상	16	9	7
	한려동부	38	21	17
	태안해안	27	15	12
	다도해해상	23	17	6
	다도해서부	24	18	6
	변산반도	28	16	12

자료: 환경부

4) 바다환경지킴이 내역사업의 2021년도 예산은 총 1,000명에 대한 인건비 및 부대경비 지원을 위해 66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자체 보조사업(국고보조율 50%)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해안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 인력·장비의 부족, 관계기관 간의 협업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그동안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비록 최근 들어서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및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국립공원 내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관리방안’(20.11)을 마련하였고, 연 2회에 걸쳐 ‘관계기관 정례협의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는 여전히 관할구역 지자체의 책임이며, 국립공원 지역의 폐기물 수거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라 국립공원공단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해양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책임 전가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은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추가로 채용되는 인원을 포함한 녹색순찰대 인력과 바다환경지킴이 등 다른 인력과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쓰레기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5대강환경지킴이 채용요건을 완화시키는 계획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환경지킴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5대강환경지킴이 사업은 5대강 본류·지류 등 약 5,259km에 이르는 수계를 대상으로 불법 낚시·어로, 쓰레기 투기, 차량 세차 등 환경오염행위를 감시·계도하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를 통한 정화활동을 수행하며, 하천변 불법경작지 및 불법시설물 등 수계 현황조사, 현장체험 등을 통해 지역주민 교육·홍보활동을 수행하는 환경지킴이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동 내역사업은 2007년 이후 매년 평균 167명 규모의 인원을 채용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환경지킴이 사업이 정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사업에 포함되면서 채용규모가 385명으로 크게 증원되었다. 2021년 또한 본예산에서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85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정부 지원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300명의 인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5대강환경지킴이 수계별·연도별 채용계획]

(단위: 명)

구 분	활동구간	인 원				
		2019	2020	2021		
				본예산	추경	계
계		167	385	385	300	685
한강청	팔당권역 남한강권역 북한강권역	24	35	35	50	85
낙동강청	서부, 동부 낙동강상류·하류	25	76	76	40	116
금강청	용담호권역 대청호권역 금강상류·하류	44	72	72	50	122
영산강청	영산강권역 섬진강권역 댐주변	37	38	38	40	78
원주청	남한강권역 북한강권역 동해안권역	-	50	50	50	100
대구청	낙동강상류·중류 금호강권역	37	84	84	40	124
전북청	섬진강	-	30	30	30	60

자료: 환경부

환경부는 금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추가 채용될 300명의 인원을 활용하여 미호천, 왕숙천, 곤지암천 등 상시 오염지역 30개소를 선정하여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재 5대강환경지킴이가 순찰 중인 구역 외에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류·소하천 주변에 투입하여 쓰레기 집중 수거 및 점검·계도 활동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는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된 5대강환경지킴이 인력 채용 시 고용노동부의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해당 수계에 거주하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지역주민 및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반복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한하였다.

[5대강환경지킴이 채용 자격기준]

구 분	자격기준
2021년 본예산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수계에서 거주하고 다른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주민 -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라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선발. - 또한, 근무시작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이내에 2년 이상 참여한 적이 있는 자는 1년 간 참여를 제한
2021년 추경예산안 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취약계층 우선 채용 및 목표 채용 비율(73%) 미적용 - 반복참여 여부에 대한 제한 조건 완화(참여제한 없음)

자료: 환경부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추가 인력을 조기에 채용하여 5대강에 대한 집중적인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① 취업취약계층 우선 채용 및 목표 채용 비율(73%)을 미적용하여 취업취약계층 외에도 다양한 계층 및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② 반복참여자에 대해서는 재공고 시 감점 후 채용하였으나, 반복 참여 여부에 대한 제한 조건 또한 완화시킨다는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행 5대강환경지킴이는 소득보조형 일자리로 주로 50~60대 계층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층 등 다양한 연령층에도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5대강환경지킴이 사업의 고용인원 대비 취업취약계층의 고용률을 살펴 보면, 2018년 69.9%, 2019년 66.7%, 2020년은 68.4% 수준으로 유사한 사업인 국립공원지킴이 사업의 취업취약계층 고용률(2019년 92.5%, 2020년 89.6%)에 비해 낮은 실정으로,⁵⁾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⁶⁾에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취업취약계층 목표 채용비율을 완화하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다만, 5대강환경지킴이 사업의 취업취약계층 고용률은 고용노동부의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 상 목표비율인 2018년 40%, 2019년 50%, 2020년 55.2%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특히, “2021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 자치단체 합동지침”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사람 또한 취업취약계층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취업취약계층 목표 채용비율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5대강환경지킴이 취업취약계층 채용 현황]

(단위: 명, %)

구분	응시현황			취업취약계층	
	채용예정인원	응시인원	경쟁률	채용인원	비율
2018	167	444	2.7:1	117	69.9
2019	167	492	2.9:1	111	66.7
2020	385	1,083	2.8:1	273	68.4

자료: 환경부

따라서 환경부는 5대강환경지킴이 채용요건과 관련해서는 보다 신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취업취약계층 채용 할당 및 목표 비율은 그대로 적용하되 반복참여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키는 등의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 청년도전 지원 시범사업의 구직단념청년 중심 멘토링 집행관리 강화 및 타 멘토링과의 차별성 마련 필요 등(고용노동부)

(1) 현황

오프라인 청년센터 사업¹⁾은 지역별 청년친화 공간을 활용하여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체감도 향상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센터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1년 본예산은 18억 8,000만원이나 구직단념청년²⁾ 5,000명을 발굴하고 구직단념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64억 6,000만원이 증액된 83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오프라인 청년센터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청년센터 운영	4,912	4,912	4,273	10,733	6,460	151.2
오프라인 청년센터	1,880	1,880	1,880	8,340	6,460	343.6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32-303의 내역사업

2) 구직단념청년(니트, NEET;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은 학업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취업을 위한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지칭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이를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내 구직단념청년 분류에 해당하는 청년 및 자체적으로 마련할 세부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 세부 분류 기준은 전문가 검토회의 이후 조정 예정이다.

[사업지원대상 구직단념청년 기준(모두 충족 要)]

①	최근 6개월간 고용보험 DB상 취업 이력이 없을 것 ¹⁾
②	최근 6개월간 고용부 직업훈련·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이력이 없을 것
③	구직단념 문답표 작성결과 총점 21점 이상(만점 30점)일 것 (교육이력, 구직욕구, 생활환경, 직업이력, 구직활동 등으로 구성)

주: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유사하게 DB 상 근로일수 총 10일 미만인 경우까지 참여 가능

자료: 고용노동부

오프라인 청년센터 사업은 자치단체가 청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발굴·제안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선정하여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의 경우 총 12개소³⁾에 대하여 개소당 1.5억 원 을 지원(매칭비율 20%)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1년 오프라인 청년센터 주요 사업내용]

구 분	개요 및 직무예시
청년센터 운영 인프라 마련	○ 청년커뮤니티, 청년정책 이벤트, 청년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청년 중심 공간 마련
청년정책 통합 안내 프로그램	○ 온라인 청년센터를 활용, 방문 청년에게 전 부처의 청년정책 상시 안내·연계
청년의 취업·사회참여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 커리어 컨설팅, 현직자 멘토링, 취·창업 프로그램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생활경제, 노동, 주거, 예술 등과 관련된 특강워크숍 등 사회참여 역량강화 프로그램
청년 희망 멘토링	○ 장기구직자, 저소득층, 니트(NeET) 등 구직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진로지도·탐색, 심리상담 및 치유, 직무능력 개발, 현장체험 등) 운영 ※ 지원금의 20% 이상으로 사업 대상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	○ 유사분야 진출 희망하는 청년들 간의 커뮤니티 활동과 취창업 아이디어 발굴 등 활동 지원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	○ 온라인청년센터와 연계한 화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센터 운영 사업 시행지침」, 2021.1.을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안에 지역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취업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하겠다는 ‘청년도전 지원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청년센터 내역사업에 64억 6,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모를 통해 자치단체 청년센터 20개소를 선정 후 이들 청년센터가 구직단념청년 5,000명을 발굴하도록 하고, 구직단념청년의 프로그램 참여와 청년센터의 구직단념청년 발굴·관리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구직단념청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센터별 프로그램 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고용노동부는 2021.3.4. 청년센터 운영 지원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결과는 향후 발표 예정이다.

[청년도전 지원 시범사업 추경안 편성 세부 내역]

○ 오프라인 청년센터 사업 소요예산 6,460백만원
- (지자체 청년센터 운영비) 4,000백만원 = 20개소 × 200백만원*
* 인건비(3~5명) 2,400백만원, 강사초청비·교육자료 구매비 등 1,600백만원
- (구직단념청년 응원금) 1,000백만원 = 5,000명 × 20만원
※ 구직단념청년이 지자체 청년센터의 상담 프로그램(2~3개월 소요) 이수 시 청년에게 지급
- (청년센터 인센티브) 1,000백만원 = 5,000명 × 20만원
※ 구직단념청년이 청년센터의 상담 프로그램(2~3개월 소요) 이수 시 센터에 10만원 지급하고, 해당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완주시 센터에 10만원 추가 지급
- (홍보비) 200백만원
- (운영비) 260백만원 = 컨설팅·모니터링비 170백만원 + 프로그램 개발비 90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청년 및 운영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단념청년 발굴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고, 이후 국민취업지원제도로의 연계 및 일경험·취업 연계를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안) 사업 추진체계]

STEP 1	STEP 2	STEP 3
구직단념청년 발굴(5,000명+ α) → 상담, 프로그램 참여(2~3개월) * STEP 1, 2에서 중도탈락하는 인원을 감안, STEP 1 참여청년 추가발굴(+ α)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5,000명 목표)	일경험 및 취업연계 (5,000명 목표)
자치단체 청년센터(20개소 선정) → 집단 개별 맞춤형 상담 제공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에 초점)	특성에 따라 1유형(청년특례), 2유형(청년 일반) 연계	국민취업지원제도 완주 후 고용까지 연계
(상담) 심리안정, 진로 자신감 증진, 대인관계 능력 향상 (구직이로 해소) 자기소개서이력서 컨설팅 진로직업상담 1:1 멘토링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수시 청년에 20만원 가점에 10만원 지급	(추가상담) 구직단념청년이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완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추가상담 제공 (인센티브) 청년이 국민취업 지원제도 완주시 청년센터에 추가 인센티브 10만원 지급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체험형 연계 (취업)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프로그램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오프라인 청년센터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규로 도입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단계별 프로그램 설계시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3개월간 진행되는 맞춤형·단계별 프로그램 제공을 목표로 순천·군산·부산 등 우수 청년센터의 프로그램 벤치마킹 및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외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립·운영 계획은 현재로서는 미비한 상황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현재도 장기구직자·저소득층·구직단념청년 등 구직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밀착 멘토링 프로그램(“청년희망멘토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년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원금의 20%(3천만원) 이상을 구직으로 청년 발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 멘토링 프로그램은 인원 모집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오프라인 청년센터에서 수행된 청년희망멘토링 과정 중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수행된 청년희망멘토링 프로그램은 21개 과정(2,560명), 장기구직자·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수행된 청년희망멘토링 프로그램은 6개 과정(20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장기구직자·구직단념청년 대상 청년희망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프로그램명	인원수(명)
부산시	취약청년 심리회복을 위한 마음터치 프로그램	35명
	찾아가는 진로·취업특강	33명
군산시	청년희망프로그램 밀담	62명
순천시	자기소개서 첨삭 및 면접컨설팅	16명
	꿈청 상담소 운영(1:1심리상담)	32명
	꿈청 상담소 운영(소그룹 집단상담)	30명

자료: 고용노동부

그리고, 2021년 본격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⁴⁾ 사업에서도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다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목적 및 내용	시간
성취 프로그램	18~45세 구직자	장기실업 예방, (재)취업 촉진 자신감과 자존감 회복, 구직동기 부여 및 구직 기술 향상	24h (4일)
(Hi)고졸청년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졸(예정) 취업준비생	취업의욕 제고 취업기술과 직장적응력 강화	12h
(청취력)청년취업 역량프로그램	청년구직자 (18~34세)	역량기반 채용관행에 적합한 구직기술 강화 및 역량개발계획 수립	24h (4일)
(allA)청년니트진로 역량강화프로그램	취업취약 청년층	자신감 제고 및 생애비전 설계	24h (4일)
(CAP+)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	청년 (18~34세)	합리적 직업선택 지원 자기탐색, 기업탐색, 서류작성 모의면접 등 구직기술 향상	24h (4일)
취업희망프로그램	심리적 취약계층	자신감 향상 및 근로의욕 증진 사회성(대인관계) 향상	24h (4일)
단기취업특강 (8종)	전체 구직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요령 근로기준법 취업정보수집 등	각2h
단기집단상담 (10종)	전체 구직자	행복한 대화 이끌기, 취업어려움 극복하기, 강점분석, 취업목표 정하기 등	각3h

자료: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제작성(검색일: 2021.3.1., URL: <https://www.work.go.kr/kua/intro/pgmIntro.do>)

결과적으로, 동 사업이 기존에 수행하던 ‘청년희망멘토링’의 경우 계획상 구직 단념청년 등 구직애로 청년을 멘토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원 모집이 용이한 청년을 중심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고, 포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도 다양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용노동부는 신규로 도입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구직단념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단계별 프로그램 설계시 기존 사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⁵⁾

4) 코드: 일반회계 1234-300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이후 민간위탁기관 상담사와 청년센터 상담사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취업지원에 혼선을 방지하고 각 상담사의 책임 및 인센티브 지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단념청년이 청년센터의 상담·프로그램(2~3개월 소요)을 이수한 경우 1인당 센터에 10만원을, 해당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이수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1인당 센터에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으로, 10억원(5,000명 × 2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로 편성하였다.

구직단념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된 이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상담사가 해당 청년에 대한 맞춤형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르면 청년센터 상담사도 여전히 해당 청년에게 상담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청년이 상담을 여러 상담사에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구직단념청년에게 민간위탁기관 상담사와 청년센터 상담사가 상이한 상담을 수행하는 경우 청년의 취업지원에 있어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⁶⁾

그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기관 상담사는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의 성격 및 빈도, 구직자의 조기취업 정도, 취업처의 임금수준, 구직자의 취업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데, 청년센터 상담사가 독자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민간위탁기관 상담사가 해당 청년의 취업에 기여한 정도를 알기 어려워 제공한 서비스의 성과에 근거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우려가 있다.

5)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은 12h~24h(3~4일)의 프로그램이나,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취업역량 강화 단계 앞단에서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여 취업의욕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2~3개월 운영하는 사업으로 설계함으로써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희망멘토링’ 등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6)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청년도전지원사업 상담사는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취업의욕을 고취하는 프로그램을 완주하기 위한 지속적인 상담을 수행하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민간위탁 상담사와 차이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이 요구될 수 있으며, 상담의 시간이 일반 청년에 비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청년특례) 취업인센티브 단가표]

(단위: 만원)

취업역량평가 ¹⁾	구분	~185 미만	~215 미만	~245 미만	~245 이상
A, B등급	6월 이내 취업	70	90	110	160
	12월 이내 취업	50	70	90	140
	18월 이내 취업	30	50	70	100
C, D등급	6월 이내 취업	50	70	90	140
	12월 이내 취업	30	50	70	120
	18월 이내 취업	10	30	50	100

주: 1) A, B등급은 취업역량이 낮고, C, D등급은 취업역량이 높은 청년을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한국형 실업부조 -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매뉴얼 유형1(상세본)」(2020.12.)
 을 바탕으로 재구성

또한, 청년센터 상담사의 상담과 청년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프로그램 완주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완주하는 경우 해당 청년센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및 그 기여 수준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이후 민간위탁기관 상담사와 청년센터 상담사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구직단념청년의 취업지원에 혼선을 방지하고 각 상담사의 책임 및 인센티브 지급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바. 목표인원 증가를 고려한 청년디지털일자리 내실 있는 실무경험 제공 필요(고용노동부)

(1) 현황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¹⁾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일자리창출지원의 내역사업이다. 2021년 본예산은 4,676억원이나 본예산 목표 지원인원 5만명에 더해 6만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5,61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조 28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0	796,338	467,600	1,028,720	561,120	120.0
청년디지털일자리	0	561,136	467,600	1,028,720	561,120	120.0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2020년 제3회 추경에서 6만명 지원을 목표로 신규 도입되었으며, 2021년 본예산에는 목표 지원인원 5만명에 대하여 4,676억원을 편성하였다. 2021년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IT 활용가능한 직무²⁾에 3개월 이상 근로계약으로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지원수준은 인건비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이다.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043-301의 내역사업

2) 고용노동부는 기업에서 신청 시 다음과 같이 채용분야를 유형별로 구분·제출하도록 하여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청년을 채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① 콘텐츠 기획(홈페이지·유튜브·SNS 등 온라인 분야 기획·관리·운영)
- ② 빅데이터 활용(AI, 앱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신산업 분야)
- ③ 기록물 정보화(기업내 아날로그 문서 등 전산화 및 DB화 등)
- ④ 기타 IT 직무(그 외 기업별 특화된 IT 활용 직무)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개요	IT 활용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¹⁾
지원기간	최대 6개월
근로조건	3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지원수준	· 월보수총액 200만원 이상: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 월보수총액 200만원 미만: 지급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주: 1)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안에 목표 지원인원을 6만명 추가로 확대하기 위하여 5,611억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는데, 고용노동부는 추경 편성 목적으로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 및 IT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하여 청년의 구직단념 및 장기미취업을 방지하고, 기업이 향후 디지털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추경안 편성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추경안 편성 세부 내역]

○ 청년디지털일자리 소요예산 561,120백만원
- (기업지원금) 541,236백만원 = 6만명 × 지원금액 평균 164만원 ^① × 지원기간 평균 5.5개월 ^②
① (지원금액) 최대 180만원 지원, 청년의 근로시간(15시간 이상) 및 기업의 지급임금을 고려하여 평균 164만원 수준으로 산정(간접노무비 10만원 포함)
②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지원, 청년의 고용유지율을 고려하여 평균 5.5개월로 산정
- (인센티브사업비) 18,900백만원 = 기본운영비 12,000백만원(6만명×20만원) + 인센티브 ^③ 6,900백만원
③ (인센티브) 정규직 채용 또는 조기전환: 6만명 × 90% × 10만원
빅데이터 유형 채용: 6만명 × 25% × 5만명
청년창업기업 채용: 6만명 × 25% × 5만명
- (수용비 등 경상경비) 984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목표 지원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이 내실 있는 IT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0~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유형별 채용인원을 보면, 홈페이지·유튜브·SNS 등 온라인 분야 기획·관리·운영 직무인 콘텐츠 기획 직무에 채용된 인원이 2020년의 경우 56.7%, 2021년의 경우 6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AI, 앱 개발, 빅데이터 분석 등 신산업 분야에 채용된 인원은 2020~2021년 각각 전체 채용 인원의 24.4% 및 18.5%에 불과하다.

[2020~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유형별 채용인원]

(단위: 명, %)

구 분		참여신청	채용계획승인	실제채용	비중 ¹⁾
2020	콘텐츠 기획	50,822	42,593	29,232	56.7
	빅데이터 활용	24,897	21,815	12,586	24.4
	기록물 정보화	11,152	9,185	5,689	11.0
	기타	10,373	7,138	4,029	7.8
	합 계	97,244	80,731	51,536	100.0
2021	콘텐츠 기획	35,539	27,934	5,638	64.2
	빅데이터 활용	13,292	10,837	1,625	18.5
	기록물 정보화	6,670	4,826	986	11.2
	기타	4,597	3,041	532	6.1
	합 계	60,098	46,638	8,781	100

주: 1) 연도별 실제 채용 전체 인원 대비 유형별 채용 인원의 비율을 의미함

1. 2020년의 경우 일반분야 유형별 채용인원을 의미함

2. 자료 추출 시점은 2021.2.28.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특히, 사업 수행 기간이 경과할수록 채용 인원의 직무 유형이 콘텐츠 기획으로 편중되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다. 월별 전체 채용 인원 중 콘텐츠 기획 유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21년 2월의 경우 해당 유형이 월

전체 채용 인원의 68.5%를 차지하는 등 2020년 보인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비해 빅데이터 활용 유형이 월별 전체 채용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2월의 경우 전체 채용 인원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2020~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유형별 실제 채용인원]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콘텐츠 기획	7 (28.0)	1,907 (47.4)	4,613 (51.8)	5,291 (55.9)	6,363 (58.0)	11,051 (61.0)	2,796 (60.3)	2,842 (68.5)
빅데이터 활용	12 (48.0)	1,211 (30.1)	2,493 (28.0)	2,385 (25.2)	2,496 (22.7)	3,989 (22.0)	947 (20.4)	678 (16.4)
기록물 정보화	5 (20.0)	538 (13.4)	1,035 (11.6)	1,053 (11.1)	1,252 (11.4)	1,806 (10.0)	577 (12.4)	409 (9.9)
기타	1 (4.0)	370 (9.2)	770 (8.6)	744 (7.9)	862 (7.9)	1,282 (7.1)	315 (6.8)	217 (5.2)
합계	25 (100.0)	4,026 (100.0)	8,911 (100.0)	9,473 (100.0)	10,973 (100.0)	18,128 (100.0)	4,635 (100.0)	4,146 (100.0)

주: 1. 괄호 안 수치는 월별 총 채용인원 대비 유형별 채용인원의 비율을 의미함

2. 자료 추출 시점은 2021.2.28.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이는 빅데이터 활용 유형으로 분류되는 신산업분야의 인력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 온라인 기획·관리 업무로 보이는 콘텐츠 기획 유형의 인력 수요가 장려금 지급에 더욱 가파르게 반응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직무 유형별로 청년의 실무 경험 제공 및 기업에게 창출하는 부가가치 수준을 정량화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우나, 빅데이터 활용형은 신산업 분야 연구·개발 및 지원 실무를 수행함으로써 IT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SNS·유튜브 등 IT 수단을 활용하여 기업 외부와의 홍보·소통을 진행하는 콘텐츠 기획형에 비해 업무 난이도 또는 기업의 장기적 업무 역량 개선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 유형별 개요 및 직무 예시]

구분	개요 및 직무예시
콘텐츠 기획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온라인 콘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메뉴 등에 대한 기획·개발·관리·지원 - 설명·홍보 등의 목적으로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관리·지원 - 유튜브, SNS, 모바일 메신저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 채널의 기획·관리·운영·지원 - 기타 온라인을 활용한 기획·제작·관리·운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빅데이터 활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플리케이션 개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IT 기술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지원 - 빅데이터·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연구·개발·지원 - 기타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형 신산업 분야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
기록물 정보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내 문서, 기록물 등의 DB화 등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에 관한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중인 문서, 기록물에 기재된 정보의 전산 입력 - 중간·최종 제조물의 사진 촬영, 3D 스캔 등을 통한 DB 구축·지원 - 지리·인물정보 등 비제조물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 등을 통한 DB 구축·지원 - 기타 IT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
기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유형 이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위 유형에 포섭되지 않는 직무(기업의 채용계획서 제출 시 직무내용 서술 필요)

주: 1) 기존에 개발된 IT기술을 단순히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IT 기술·프로그램·산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직무를 의미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2021.1.을 바탕으로 재작성

과거 집행 추세를 고려하면 이번 추경안을 통해 목표 지원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하는 데 비해 채용되는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단순 온라인 기획·관리 업무로 보이는 콘텐츠 기획 등 직무에 주로 채용될 가능성이 있는바, IT 활용가능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근무 또는 연관 분야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일자리로 적극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본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면 빅데이터 활용형 등 타 유형에 대한 취업 비중이 증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목표 지원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이 내실 있는 IT 실무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분야에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자 목표 인원 증가에 따른 집행관리 필요(고용노동부)

(1) 현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¹⁾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본예산은 8,286억 4,700만원이나 선발형 청년특례 목표 지원인원을 5만명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202억 5,300만원이 증액된 9,489억원이 편성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국민취업지원제도	277,128	277,128	828,647	948,900	120,253	14.5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사업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²⁾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구성되는데, I 유형 지원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을 제공하고, II 유형 지원자에게는 구직활동 참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I 유형은 취업경험 등 기준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는데, 요건심사형은 법령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원되고, 선발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4-300

2)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에 대한 예산은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세부사업’(코드: 일반회계 1234-301)에 편성되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단위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단위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사업,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세부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별 요건 비교]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 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50%↓	3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50%↓ (청년특례 120%↓)	3억원 이하 (청년은 별도고사)	X
II 유형 (舊 취성패)			중위소득 100%↓ (청년층 소득무관)	X	X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표 지원인원은 총 59만명으로, 이 중 I 유형 목표 지원인원은 요건심사형(저소득층) 25만명, 선발형 청년 10만명, 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 5만명이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I·II 유형 본예산 기준 목표 지원인원]

(단위: 만명)

구 분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비경활	합계
I 유형	요건심사형	25	-	-	-	25
	선발형	-	10	-	5	15
II 유형		4	13	2	-	19
합 계		29	23	2	5	59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1년 제1회 추경안을 통해 I 유형 선발형 청년특례 5만명을 확대(+793억원)하고, 기채용 기간제 채용기간 연장(8→10개월) 및 기간제근로자 400명을 추가 채용하고자(+124억원) 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로 청년의 구직활동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신청 초기임에도 청년신청자 수가 대거 늘어나고 있어 청년특례 지원규모를 5만명 확대하고, 기간제 직업상담원 추가채용 및 기채용 근로자의 채용기간을 연장하여 기간제 직업상담의 업무량 과중을 경감하겠다는 입장이다.

(2) 분석의견

청년특례 목표 지원인원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층 취업자에 대하여 고임금 등 양질의 일자리가 알선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1.3.3.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의 집행 현황을 보면 선발형 청년특례의 경우 약 4.5만명이 선정되어 이 중 2.2만명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³⁾ 수립을 위한 초기 상담을 진행 중이고, 2.3만명은 IAP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IAP 수립을 완료한 사람 중 0.9만명은 구직촉진수당 수령 중에 있다.

동 사업 시행 초기임에도 청년층의 정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안에 따른 목표 지원인원 증가분(+50,000명)의 연내 집행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 유형별 참여 현황]

(단위: 명)

구 분	본예산 기준 목표인원	선정인원(3.3. 기준)
합 계	400,000	128,990
요건심사형	250,000	57,224
선발형	청년층	100,000
	비경활	50,000

자료: 고용노동부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으로의 개편 이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⁴⁾에서 민간위탁기관에게 지급한 2018~2020년 청년층 취업처 월임금별 임금연동인센티브⁵⁾ 지급 현황을 보면, 청년층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1구간 취업자의 비중이

3)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선정되는 경우 전담 상담자와의 상담을 통해 참여자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Individual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수립된 IAP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한 경우 해당 활동을 입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IAP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① 인적사항, ② 주요 경력, ③ 취업희망 직종·분야 내지 창업희망업종, ④ 직업훈련 계획, ⑤ 참여자의 취업지원 경로 등

4)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동 사업은 예산 사정에 따라 매년 지원 규모가 변동되고,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도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어 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발전시킨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5) I 유형 청년특례 지원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상담 및 취업지원경로 설정, 직업훈련·일경험·창업·해외취업지원 등 연계)는 민간위탁기관에서 제공하는데,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조기취업 정

증가하고 4구간 취업자의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청년층 취업처 월임금별 임금연동인센티브 지급 현황]

(단위: 건, %)

연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계
2018	165만원 미만	165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230만원 미만	230만원 이상	
	10,992 (21.76)	18,214 (36.06)	9,273 (18.36)	12,039 (23.84)	50,518 (100.0)
2019	180만원 미만	180만원 이상 210만원 미만	210만원 이상 240만원 미만	240만원 이상	
	6,906 (22.58)	11,858 (38.77)	4,563 (14.92)	7,266 (23.76)	30,593 (100.0)
2020	185만원 미만	185만원 이상 215만원 미만	215만원 이상 245만원 미만	245만원 이상	
	3,587 (27.26)	5,068 (38.51)	2,429 (18.46)	2,078 (15.79)	13,162 (100.0)

- 주: 1. 1구간에서 4구간으로 갈수록 고임금 취업처를 뜻하며, 임금연동인센티브의 각 구간은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하여 조정됨
 2. () 안의 수치는 연도별 총 지급 건수에 대한 각 구간별 지급 건수의 비중임
 3. 임금연동인센티브는 취업자가 취업 이후 3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되는바 최근 연도에 가까울수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미취업자 또는 3개월 미만 근무자가 많아져 임금연동인센티브 지급 건수가 적어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2020년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청년층 취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취업자 중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취업 비중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취업처의 임금수준은 취업자의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취업자의 고용유지율 및 실업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청년이 고임금 등 양질의 취업처에 알선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례 목표 지원인원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층 취업자에 대하여 고임금 등 양질의 일자리가 알선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 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수준, 수급자의 취업역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민간위탁기관에 취업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 때 취업자의 임금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는 4개 구간으로 구분되는데, 연도별로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 상·하한액이 산정되는바 각 구간의 상·하한액은 연도별로 다를 수 있으나 취업처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인지 또는 고임금인지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인원 확대를 고려한 양질의 일경험 제공 기업 적극 발굴 필요(고용노동부)

(1) 현 황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 등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 본예산은 541억 8,100만원이나 인턴형 지원자를 2만명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는 1,205억 3,400만원이 증액된 1,747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0	0	54,181	174,715	120,534	222.5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본예산을 통해 신규 도입된 동 사업은 동년 본격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참여자가 민간기업·NGO·공공기관 등에서 일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 유형은 구직의욕과 일경험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2가지(체험형, 인턴형)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이번 추경안에서 목표 지원인원이 증가한 인턴형은 참여자 중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은 있으나 일경험이 필요한 자로, 민간기업 등에서 3개월간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직무 중심 일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²⁾ 지급이 조기 종료되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고, 참여기관에게는 월 10만원의 멘토링 수당을 지급한다. 참여자 및 참여기관을 알선한 운영기관에 대하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234-303

2)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의 경우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면서 취업활동을 수행한다.

여는 기본급 10만원 및 취업성공시 2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 본예산에 따른 목표 지원인원은 6,000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유형별 비교]

구분	체험형	인턴형
목적	일경험을 통한 구직의욕 고취, 직장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일경험을 통한 직무역량 향상 및 취업연계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견습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참여기업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피보험자 5인 이상)	취업연계 가능한 민간기업 등 (피보험자 5인 이상, 참여신청 1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無)
지원기간	30일(사업장 휴무일 제외)	3개월
일경험 시간	1일 4시간 원칙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원칙
지원액	(참여자)구직촉진수당+ 실비(1일 21만원) (참여기관)멘토링수당(월 10만원)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¹⁾ 조기 종료 후 최저임금 수준(월 182만원) 지급 (참여기관) 담당자 멘토링비(월 10만원) (운영기관) 기본급10만원, 취업성공금20만원
직무내용	기초적 사무보조, 사회서비스 보조 등 다양한 체험형 직무	직무보조 수준이 아닌 취업에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실제 직무수행
'21 목표 지원인원 (21 본예산)	23,000명 (167억 9,000만원)	6,000명 (351억 500만원)

주: 1)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참여자의 경우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하면서 취업활동을 수행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인턴형 20,000명을 추가 확대하기 위하여 1,205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청년층이 선호하고 취업 연계 가능성이 높은 인턴형 확대에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사업 추경안 편성 세부 내역]

○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1,205억 3,400만원
- (참여자 수당) 109,349백만원 = 2만명 × 182만원 × 3개월
- (참여기업 멘토링 수당) 6,000백만원 = 2만명 × 10만원 × 3개월
- (민간위탁비) 4,800백만원 = 위탁기본금 2,000백만원(2만명 × 10만원) + 인센티브 2,800백만원(2만명 × 20만원 × 70%)
- (운영비) 385백만원 = 일반수용비 300백만원, 업추비 30백만원, 여비 25백만원, 연구비 30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2) 분석의견

2021년 신규 사업으로서 집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일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양질의 일경험 제공 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서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참여자와 참여기업을 연계하는 운영기관(9개소)만을 선정한 상황으로, 아직 참여기업은 모집·심사 중으로서 2021.2.26. 기준 423개사(5인 기준)³⁾가 인턴형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일경험에 참여하기까지 2개월 가량 소요⁴⁾되어 실제 참여자와 참여기업간 연계는 3월 이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아직 동 사업을 통해 일경험프로그램 참여 기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간 매칭을 수행한 사례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이 원하는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 기업이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 3.4. 현재 전산망을 구축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받은 참여 기업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 중이며, 입력 완료 후 운영기관에서 참여 적격 여부를 판단·결정할 예정이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심사(최대 1개월) → 초기 상담 및 취업활동계획 수립(최대 1개월)

[2021년 권역별 인턴형 프로그램 참여 기관 계획 및 모집 현황]

(단위: 명, 개소수)

사업지역	당초 계획		모집(2.26.)
	본예산 목표 인원	최소 모집 기업 수 (20인 기준)	모집 기업 수 (5인 기준) ¹⁾
서울	1,320	330	130
경기 남부	860	215	70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철원군	1,200	300	3
강원	120	30	7
대전, 세종, 충북, 충남	520	130	130
광주, 전북, 전남, 제주	600	150	10
대구, 경북	520	130	46
부산	860	215	10
울산, 경남			17
합 계	6,000	1,500	423

주: 1) 5인 이상 기업이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 시점(2021.3.3.)에서는 20인 이상 기업의 수를 분류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 2020.12.23.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인턴형 2만명에 대하여 참여기업을 추가적으로 공모할 경우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목표 지원인원이 대규모로 증가하면서 모집 필요 기업수도 크게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본예산 목표 지원인원 6,000명에 대한 최소 모집 기업 수(20인 기준)⁵⁾를 1,500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 적용하여 1개소당 평균 4명의 인턴을 배치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목표 지원인원이 20,000명 추가적으로 증가하면 최소 모집 필요 기업수도 5,000개소로 추가로 증가하게 되는데, 현재 기업 모집 추세를 고려하면 참여 기업 모집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더 많은 사람에게 일경험

5) 일경험 프로그램에는 5인 이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데, 다만 고용노동부는 각 운영기관별로 20인 이상 기업에 대한 최소 모집 기업수를 설정하여 일경험 프로그램의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추경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사업 시행 초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실제 기업에서 일경험을 수행한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로 증가하는 지원 인원에게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021년 신규 사업으로서 집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일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기업들에 매칭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향후 유사 사업 수행 이전 재정부담 경감 방안 고려 필요(고용노동부)

(1) 현황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²⁾·프리랜서³⁾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단년도 사업으로 4,56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0	1,126,011	0	456,277	456,277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동 사업은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프리랜서³⁾ 중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자들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상자에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동 사업에 따른 지원금은 2020~2021년 총 3차례에 걸쳐 집행되었다. 1차 지원(20.5.18. 공고)의 경우 총 50.6만명⁴⁾에 대하여 1인당 150만원(20.3~5월의 소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일반회계 1339-302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고,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뜻한다.

3) 고용노동부는 특고·프리랜서의 종류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다.

-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점검원, 간병인, 대리운전·택시 서비스 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복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득·매출 감소에 대하여 50만원×3개월분)을 지원하였고, 2차 지원('20.9.23. 공고)의 경우 총 61.4만명에 대하여 50만원(기수혜자) ~ 150만원(신규 신청자, '20.8~10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하여 50만원×3개월분)을 지원하였으며, 3차 지원('21.1.6. 기수혜자 공고, '21.1.15. 신규 신청자 공고)의 경우 총 70만명에 대하여 50만원(기수혜자) ~ 100만원(신규 신청자, '20.12~'21.1월의 소득·매출 감소에 대하여 50만원×2개월분)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⁵⁾

[1~3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개요]

구분	공고일	1인당 지원액	목표 지원인원	실지원인원
1차	'20.5.18.	150만원 ('20.3~5. 소득감소 지원)	총 114만명	총 149.6만명 ¹⁾ · (특고·프리랜서) 50.6만명
2차	'20.9.23.	· 기수혜자 50만원 · 신규 신청자 150만원 ('20.8~10. 소득감소 지원)	총 70만명 · (기수혜자) 50만명 · (신규 신청자) 20만명	총 61.4만명 · (기수혜자) 47.3만명 · (신규 신청자) 14.1만명
3차	'21.1.6. '21.1.15.	· 기수혜자 50만원 · 신규 신청자 100만원 ('20.12~'21.1. 소득감소 지원)	총 70만명 · (기수혜자) 65만명 · (신규 신청자) 5만명	57.1만명 · (기수혜자) 57.1만명 · (신규 신청자) 17만명 신청

주: 1) 그 외 영세자영업자 93.7만명, 무급휴직자 5.2만명에게 지원이 이루어짐
2) 3차 지원금 신규 신청자는 약 17만명으로, 2021.3.2. 기준 지급 요건을 심사 중임. 고용노동부는 이 중 약 12만명이 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금 실행 시점은 3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입장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제1회 추경안에 편성된 4차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기수혜자와 신규 신청자로 나누는데, ① 기수혜자는 1~3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의미하고, ② 신규 신청자는 1~3차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 중 '20.10월 ~ '2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⁶⁾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의미한다.

4) 1차 지원의 경우 특고·프리랜서 외에 영세 자영업자 및 무급휴직자를 동 사업에서 지원하였으나, 2차 지원부터 특고·프리랜서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였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사업으로, 무급휴직자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고용부)·긴급복지(복지부) 사업 등을 통해 지원된다.

5) 3차 지원의 경우 기수혜자 57.1만명에 대하여는 지급이 완료되었고, 신규 신청자(17만명 신청)에 대하여는 현재 심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약 12만명이 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원금 실행 시점은 3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4차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기수혜자의 경우 소득요건 및 소득감소요건 증명이 불필요하나, 신규 신청자의 경우 ① 특고·프리랜서로 '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 기간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이면서 '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이고, ② '21년 2월 또는 3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 때, 신규신청자의 비교 대상 기간은 '19년 월평균 소득, 2020년 2월, 2020년 3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중 하나를 고른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지원자에 대하여는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별도 심사 없이 3월 내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 신청자에 대하여는 4월 중 인터넷 신청 또는 콜센터 방문 접수를 받아 5월 내로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안을 통해 기수혜자 70만명 및 신규 지원자 10만명 등 총 80만명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1~3차 지원금 기수혜자 70만명에 대하여 각 50만원을, 4차 지원금 신규 지원자 10만명에 대하여 각 100만원(50만원 × 2개월)을 지원할 계획이고, 그 외 사업운영 예산으로 기간제 상담·접수·심사 인건비 및 콜센터 등 운영비를 편성하였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추경안 편성 세부 내역]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4,562억 7,700만원
- (기수혜자) 350,000백만원 = 70만명^① × 50만원
 - ① 1차 51만명, 2차 14만명, 3차(추정) 12만명 등 총 77만명의 90%(2~3차 탈락률 고려)
- (신규 수혜자) 100,000백만원 = 10만명^② × 100만원
 - ② 3차 신규탈락자(추정) 5만명, 일시적 고보가입자 1만명, 소득감소 시점 변경에 따른 신규 대상자 4만명 등
- (사업운영비) 6,277백만원 = 심사인력 600명(2개월), 접수·상담인력 200명(1개월) + 콜센터 용역비 등 사업운영비

자료: 고용노동부

6) 다만, 산재보험 가입대상인 특고 14개 업종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다(14개 업종: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건설기계기사, 골프장캐디, 쿼터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7) 2021.2~3월 2개월간 소득보전분으로서 월 50만원 × 2개월분을 지원한다.

(2) 분석의견

기수혜자 누적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 사업 수행 이전에 재정부담 경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기수혜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 외 소득 및 소득감소 요건은 확인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득 감소가 확인되어 지원금을 받은 기수혜자의 경우 대다수가 저소득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최소한의 확인 작업만 거치고, 지원액은 기지원받은 금액 및 신규 지원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만원으로 설정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기수혜자에 대한 집행 속도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수혜자는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⁸⁾의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채로 지급이 이루어지는바 1~3차 지원 시점에 비해 현재 생계가 개선된 사람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4차 신규 지원자 자격 및 소득감소요건]

구분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1차	① 특고·프리랜서로 '19.12~'20.1월에 월 5일이상 노무 제공 또는 월 2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② '19년 연소득(연수입) 7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3~4. 평균 소득·매출이 비교대상기간 [※] 의 소득·매출 대비 25~50% 이상 감소 (※ '19년 월평균, '19.3., '19.4., '19.12., '20.1. 중 택1)
2차	① 특고·프리랜서로 '19.12~'20.1월에 총 10일이상 노무 제공 또는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② '19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20.8. 또는 '20.9.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 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 '19년 월평균, '19.8., '19.9., '20.6., '20.7. 중 택1)
3차	① 특고·프리랜서로 '20.10~'20.11.에 활동하여 해당 기간에 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② '19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20.12. 또는 '21.1.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 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 '19년 월평균, '19.12., '20.1., '20.10., '20.11. 중 택1)
4차	① 특고·프리랜서로 '20.10~'20.11.에 활동하여 해당 기간에 5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② '19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21.2. 또는 '21.3.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 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 '19년 월평균, '20.2., '20.3., '20.10., '20.11. 중 택1)

자료: 1~3회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각 공고문 및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 ① 2019년 월평균, ② 2020.2월, ③ 2020.3월, ④ 2020.10월, ⑤ 2020.11월 소득 중 택1

물론, 기수혜자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 상황에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 전 심사를 배제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4차 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기수혜자의 소득감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집행하는 현 사업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 추가적인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과거 회차 기수급자와 전회차 신규 지원자 중 고용보험 가입이 확인되어 지원에서 제외되는 자 등 외의 특고·프리랜서가 다음 회차 기수혜자로 누적됨에 따라 향후 재정부담이 누증될 가능성이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도 동 사업과 유사한 구조로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생계안정 목적의 지원금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기수혜자 누증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유사 사업 수행 이전에 재정부담 경감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집행관리 철저 및 적정예산 편성 필요 등(고용노동부)

(1) 현 황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¹⁾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실직한 취업취약계층이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용창출장려금의 내역사업인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특례사업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2021년 당초 계획액은 942억 2,000만원이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규 지원인원이 50,000명 편성되면서 3,000억 6,000만원이 증액된 3,94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다.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2021년도 기금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당초	수정	당초(A)	변경안(B)	(B-A)	(B-A)/A
고용창출장려금	1,143,095	1,779,221	186,481	486,541	300,060	160.9
고용촉진장려금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49,244 (0)	275,704 (247,290)	94,220 (76,400)	394,280 (349,460)	300,060 (300,060)	318.5 (395.3)

주: 1. 괄호 안은 기금변경안에 따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현황임

2. 내역사업 중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21년부터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되었음. 따라서 고용창출장려금 세부사업의 2020년 당초 및 수정 계획액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액이 포함되나 2021년 당초 및 변경안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액 미포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 중이던 고용촉진장려금²⁾의 특례 규정으로서 제3회 추경을 통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도입, 목표 지원인원을 5만명으로 하여 신규 지원을 수행하였고, 2021년 당초 기금운용계획에는 2020년 12월 말 기준 고용된 사람에 대한 잔여 지원분 764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악화된 취업여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046-350의 내역사업

2)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30~60만원의 장려금을 1~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건에 대응하여 실업자의 신속 취업을 지원하고자 2021년 신규 지원을 위한 기금변경안을 편성하였다.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2020년 수행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에 비교하여 지원 대상을 완화하는 대신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대상은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실업자 외에 2020.2.1. 후 1개월 이상 실업자 및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1년의 경우 이를 1개월 이상 실업자로 확대하였다. ② 지원수준은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³⁾만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4)

- 3)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의미하며, 대규모기업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별표 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제조업	C	500명 이하
광업	B	300명 이하
건설업	F	
운수 및 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	

주: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자료: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4)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과 비교하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지원수준이 높아지고, 지급기간 및 주기가 축소되었다. 구체적으로는, ①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실업자 외에 1개월 이상 실업자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 근로계약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허용하며, ③ 지원 수준은 근로자 1인당 30~60만원에서 10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확대하였으며, ④ 지급기간 및 주기를 1~2년간 매 6개월 단위에서 최대 6개월간 매 3개월 단위로 변경하였다.

[고용촉진장려금과 2020~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비교]

구분	고용촉진장려금	'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안)
지원 대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¹⁾	①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실업자 ② '20.2.1. 이후 1개월 이상 실업자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①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실업자 ② 1개월 이상 실업자
지원 요건	무기계약으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좌동
유효 기간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후 1년 이내 고용된 자	'20.12월 말까지 고용한 자에 대하여 '21.9.30까지 신청	사업시행기간 고려하여 설정 예정
지원 수준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원(대규모/우선지원)	근로자 1인당 월 80~100만원(대규모/우선지원)	근로자 1인당 월 10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지급 기간·주기	1~2년간 매 6개월 단위	6개월간 매 3개월 단위	좌동

주: 1) 그 외 중증장애인(1개월 이상 실업), 가족부양 여성가정(1개월 이상 실업), 섬지역 거주자(1개월 이상 실업) 등이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안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신규 지원인원 5만명⁵⁾에 대하여 6개월간 지원한다고 가정하여 예산을 산출하였는데, 이 중 2만명은 청년을, 그 외 3만명은 일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추경안 편성 세부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인건비 300,060백만원 - (인건비) 300,000백만원 = 50,000명 × 100만원 × 6개월 - (운영비) 60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5) 고용노동부는 목표 지원인원을 5만명으로 설정한 사유로 2021년도의 경우 이미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을 인정한 사업장이 늘어나고, 2020년에 비해 코로나19 지속 상황에도 백신 등 긍정적 전망으로 상대적으로 채용 여력이 있는 사업장이 다수일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다는 입장이다.

(2) 분석의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최대 지원기간이 아닌 평균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추경안에서 5만명 신규 지원을 목표로 5만명 전부가 6개월간 지원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여 계획액을 산출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이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시행된 이후 2020년 말까지 누적 지원인원은 13,163명으로서 2020년 집행액은 485억원(예산액 대비 19.6%)에 불과하다.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월별 지원인원 및 집행액 추이]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지원인원 ¹⁾		집행액	
	당월	누계	당월	누계
7월	-	-	-	-
8월	-	-	-	-
9월	128	128	127	127
10월	1,073	1,201	1,540	1,667
11월	3,350	4,551	11,101	12,768
12월	8,612	13,163	35,715	48,483

주: 1) 2020년도에 지급한 인원에 대한 승인원임
자료: 고용노동부

더불어, 2020년 말 기준 고용된 사람에 대한 잔여지원분으로 편성된 2021년 당초 계획액(764억원) 중 2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211억원(27.7%)으로써 집행 추세가 저조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⁶⁾

6) 2020~2021년 기간 전체에 대하여 2021.2.26. 기준 누적 지원인원은 18,486명(신청 26,023명)이다. 다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020년 집행 부진에 대하여 2020.12.31.까지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한 장려금은 2021.9.30.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현재 총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수급자 전부가 최대 수급기간인 6개월간 장려금을 수급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집행이 이루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장려금 지급자에 대한 평균 지원기간을 산출하기 어려워가 최대 지원기간을 기준으로 계획액을 산출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 진행 기간이 짧아 현재 평균 지원기간 산출이 어렵다는 사유로 최대 지원기간을 기준으로 계획액을 산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타 고용장려금 사업의 예산 규모 산출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⁸⁾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여 2021년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⁹⁾, 최대 지원기간이 아닌 평균 지원기간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¹⁰⁾

둘째,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제시된 청년층 목표 지원인원을 달성하기 위한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2021.3.3.)의 일환으로 이번 기금계획변경안에 따른 목표 지원인원 5만명 중 청년층 목표 지원인원을 2만명으로 설정하였다. 상기 목표치를 설정한 사유로서 고용노동부는 2020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1.3만명) 중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약 35%(0.46만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의욕치를 반영하여 2021년 목표 지원인원 5만명 중 40%를 청년층 목표 지원인원으로 설정하였다는 입장이다.

7) 고용노동부는 3개월 단위로 장려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고, 2020년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2021년 9월 말까지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므로 2021.3.3. 현재 시점에서 6개월 이전 지원중단자 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8)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신규로 도입된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의 경우 최대 지원기간은 6개월임에도 2020년 제3회 추경안 및 2021년 예산안에서 평균 지원기간을 5.5개월로 하여 예산액을 산출한바, 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코드: 일반회계 1044.301, 고용보험기금 1061.350)의 월별 고용유지율(1개월 1.0, 2개월 0.97, 3개월, 0.95, 4개월 0.92, 5개월 0.90, 6개월 0.90)을 활용한 것이다.

9)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사업시행시 지원대상 및 요건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신속 지원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다.

10)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이 계속사업이 아니고, 예산내역 산출시 6개월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예산부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현 계획상으로는 청년과 그 외 실업자 간 각각의 목표 인원 구분만이 있을 뿐, 지원 조건,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등 각각의 세부조건이 동일하여 청년 목표 지원인원을 달성하기 위한 청년에 특화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나 맞춤형 집행 계획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서 제시된 청년층 목표 지원인원을 달성하기 위한 내실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카. 고용안정장려금 당초 계획액 산출의 정확성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1) 현황

고용안정장려금 사업¹⁾은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거나,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재고용하여 고용을 안정시키는 사업주에게 인건비·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 변경 계획액은 2,002억 1,500만원이나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내역사업에서 목표 지원인원이 추가되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는 531억 9,100만원이 증액된 2,534억 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2021년도 기금변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당초	수정	당초	현계획(A)	변경안(B)	(B-A)	(B-A)/A
고용안정장려금	151,192	199,965	154,979	200,215	253,406	53,191	26.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4,355	45,462	18,175	41,965	65,755	23,790	56.7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	25,054	51,877	35,092	56,538	75,924	19,386	34.3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93,642	90,118	86,381	86,381	96,396	10,015	11.6

주: 1. '당초'는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액, '현계획'은 당초 계획액에서 자체변경을 통해 변경된 계획액(추경안 국회제출 직전 계획액)을 의미

2.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은 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② 정규직 전환 지원, ③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④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등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제1회 기금변경안에 편성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내역사업별 개요는 다음과 같다.

김윤수 예산분석관(kim.yoonsoo@assembly.go.kr, 6788-4633)

1) 코드: 고용보험기금 1345-350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내역사업별 개요]

내역사업		주요 내용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임금감소 보전금	임금감소 보전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금액을 사업주에게 최대 1년간 지원		
		전환 후 소정 근로시간	1인당 지원금액 한도	
		주 15~25시간	월 40만원	
		주 25~35시간	월 24만원	
		단, 임신 근로자는 주 15~30시간: 월 40만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지원		
	대체인력 지원금	소정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최대 1년 2개월 지원		
		구 분	1개월	1년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원	520만원
		대규모기업	30만원	360만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게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지원		
		주 1~2회	주 3회 이상	
		5만원/주	10만원/주	
	일·생활균형 인프라지원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에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 * 정보·보안시스템 등 시스템 구축비용 최대 2천만원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업무효율화, 근로시간 관리 강화 등으로 주 52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300인 미만 기업에 간접노무비 지원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 × 6개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1호인센티브 월 10만원 추가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대규모기업 월 1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의 인건비 지원		
		구 분	1인당 지원금액 한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120만원)	
		대규모기업	월 30만원(임금의 80% 한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한편, 고용노동부는 동 사업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녀돌봄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확대, 육아휴직 신규신청자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 제1회 기금변경안을 편성하였다. 특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사업,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내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사업의 경우 2021년 초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각각 1.5만명, 1.0만명 추가 지원을 위한 계획액을 확보하였음에도 현재 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한 것이다.

[2021년 고용안정장려금 기금변경안 편성 사업별 계획액 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당초 계획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추경안	합 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계획액	18,175	+23,790	+23,790	65,755
	인원	10,000	+15,000	+15,000	40,000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계획액	23,554	+21,446	+19,386	64,386
	인원	10,935	+9,955	+9,000	29,890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계획액	50,080	-	+10,015	60,095
	인원	18,964	-	+3,793	22,757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분석의견

전년도 사업 집행 추이를 최대한 고려하는 등 당초 계획액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금변경안이 편성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및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사업의 경우 2021년 2월 말 기준 집행 현황을 보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에 따른 계획액의 49.5%,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의 경우 25.4%,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의 경우 10.3%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추경안 대비 집행액도 워라밸일자리 31.6%,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17.8%,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8.6%로 나타나 현재 집행 추세를 고려하면 각 사업별 증액분의 연내 집행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 고용안정장려금 기금변경안 편성 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초 계획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A)	추경안(B)	'21.2월말 기준 집행액(C)		
					C/A	C/B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18,175	41,965	65,755	20,784	49.5	31.6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23,554	45,000	64,386	11,440	25.4	17.8
육아휴직등 부여지원금	50,080	50,080	60,095	5,155	10.3	8.6

주: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규모는 당초 계획액 대비 누적액이고, 추경안 규모는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규모 대비 누적액임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2021년 당초 기금운용계획 국회 확정 후 약 2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에도 추경을 통한 예산액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초 계획상 추계가 현실과 괴리되어 이루어진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위라벨일자리 장려금의 경우 2021년 당초 계획상 월평균 집행액은 14억 5,300만원인데 비해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2020년 3~8월 월평균 집행액이 22억 900만원이었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의 경우 2021년 당초 계획상 월평균 집행액은 19억 6,300만원인데 비해 2020년 3~8월 월평균 집행액은 27억 7,100만원으로서 두 사업 모두 2021년 당초 계획상 월평균 계획액 대비 2020년 3~8월 월평균 실적집행액이 4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라벨일자리장려금·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21년 당초 계획액 및 '20년 실적집행 현황(월평균)]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년 당초 계획상 월평균 계획액(A)	2020년 3~8월 월평균 실적집행액(B)	B-A	(B-A)/A
위라벨일자리 장려금	1,453	2,209	756	52.0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1,963	2,771	808	41.2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동 사업들은 2020년 연중 자체변경 및 제1~4회 추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획액을 증액하였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경우 제1회 추경을 통해 364억원을 증액하였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는 2020년 초 자체변경을 통해 86억원을 확보한 바 있고, 동년 제4회 추경을 통해 153억원을 증액하였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2020년 기금운용계획변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계획	자체변경	추경	증감 사유
워라밸일자리장려금	14,355	△5,300	+36,407	· 제1회 추경(+364억원, 3.17. 확정) · 사업비 조정(△53억원, 12.30. 변경)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15,000	+13,934	+15,250	· 자체변경(+86억원, 2.28. 변경) · 제4회 추경(+153억원, 9.22. 확정) · 사업비 조정(+53억원, 12.30. 변경)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의 경우 2019년 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코로나19가 확산되었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연중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및 추경을 통해 집행 증가 추세에 대응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증대된 사업 수요, 장려금별 지급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고용노동부는 2020년의 집행 추세를 고려하여 2021년 예산안을 편성하거나 또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 집행 추이를 최대한 고려하는 등 당초 계획액 산출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1

개요

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여성가족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수입은 6,987억 4,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규모 변동은 없다. 또한 총지출은 1조 2,065억 4,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다.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총수입·총지출 규모]

(단위: 백만원, %)

여성가족부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여성가족부	총수입	698,747	698,747	0	0.0
	총지출	1,200,108	1,206,544	6,436	0.5

자료: 여성가족부

나.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사업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편성된 사업은 3개 세부사업이다.

주요 목적별로 살펴보면, ① 민간기업 채용 유도를 위해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사업에 41억 6,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② 청소년 보호 유해매체 모니터링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에 13억 1,2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③ 아이돌봄서비스 연계활성화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9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여성가족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세출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 기금명	세부사업명(사업코드)	2021 본예산(A)	2021 추경안(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1234-311)	70,170	74,333	4,163	5.9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피해예방 (2233-332)	6,094	7,406	1,312	21.5
	아이돌봄 지원(2334-341)	251,493	252,454	961	0.4
합 계		327,757	334,193	6,436	2.0

주: 총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가.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의 고용안정성 효과 제고 필요(여성가족부)

(1) 현황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¹⁾은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직업 상담, 직업 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창업 지원 및 사후 관리, 경력단절예방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1년 본예산은 701억 7,0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1억 6,300만원이 증액된 743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다.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	58,518	58,518	70,170	74,333	4,163	5.9
새일센터 지정·운영	56,499	56,499	67,830	71,993	4,163	6.1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추경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고용위기²⁾ 상황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하여 새일인턴 지원 인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편성내역을 보면 ① 새일인턴 2,000명 증원에 따른 인턴채용지원금³⁾ 38억 4,000만원, ② 새일인턴 전담 취업상담사 40명 배치를 위한 예산 3억 2,300만원이 반영되었다.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1234-311의 내역사업

2) 2020년 여성 실업자 수는 48만 4천명으로 실업률은 4.0%에 달한다(통계청, 연간 고용동향).

3) 여성가족부는 증원 인원 2,000명의 인턴 기간(3개월) 동안 기업에 지급하는 인턴채용지원금을 추경안에 편성하고, 인턴 종료 후 6개월 시점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장려금(인턴 60만원, 기업 80만원)은 최소 9개월(인턴 3개월, 근속기간 6개월) 이후 집행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추경안에 미편성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 추경안 편성내역]

○ 새일인턴 지원 인원 증원: 인턴채용지원금(기업) 38억 4,000만원
- 2,000명×80만원×3개월×80%
○ 새일인턴 전담 취업상담사 한시적 배치: 3억 2,300만원
- 40명×231만원×7개월×50%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새일인턴의 정규직 등 취업률은 매년 95% 이상에 달하고 있으므로, 추경안 편성에 따른 사업 규모 확대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고용안정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새일인턴 운영 사업 개요]

· 인턴 대상: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 인턴 기간: 3개월
· 지원 내역: 1인 총액 380만원
- 기업 240만원(80만원×3개월)
- 인턴 60만원(6개월 고용유지 하는 경우 지급)
- 기업 80만원(6개월 고용유지 하는 경우 지급)

자료: 여성가족부

(2) 분석의견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일인턴 취업자의 고용유지현황, 퇴직 사유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은 2021년부터 지원 규모가 확대⁴⁾된 사업으로, 당초

4)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 지원 규모 추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본예산	추경안 포함
1인 지원 총액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80만원	380만원
지원인원	6,177명	6,177명	6,177명	7,777명	9,777명 (추경안 2,000명)

자료: 여성가족부

본예산에는 ① 인턴 지원인원은 2020년 6,177명에서 2021년 7,777명으로, ② 1인당 지원액은 2020년 1인 총액 300만원에서 2021년 380만원으로 확대 편성되었다.

추경안에 따른 증원 2,000명을 포함하면, 2021년 동 사업 지원인원은 총 9,777명으로, 전년도 지원 인원인 6,177명에 비하여 3,600명(58.3%)이 증가한 규모이다.

여성가족부는 추경안에 증원된 인원 2,000명의 인턴 기간(3개월) 동안 기업에 지급하는 인턴채용지원금 3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고용유지장려금⁵⁾(인턴 60만원, 기업 80만원 지급)은 추경안 편성에서 제외하였다.

[2020년·2021년 새일인턴 지원 현황]

구분	2020	2021	
		본예산	추경안
지원한도	1인 총액 300만원	1인 총액 380만원	1인 총액 240만원
지원내역	· 기업 240만원(80만원×3개월) · 인턴 60만원(6개월 고용유지)	· 기업 240만원(80만원×3개월) · 인턴 60만원(6개월 고용유지) · 기업 80만원(6개월 고용유지)	· 기업 240만원(80만원×3개월)
지원대상	6,177명	7,777명	2,000명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의 규모가 확대된 것은 새일인턴의 경우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 또는 상용직으로 채용되는 비율이 연례적으로 95% 이상에 달하는 등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일인턴 취업자의 고용유지 현황⁶⁾을 살펴보면, 높은 취업률에 비하여, 6개월 시점의 고용유지율은 70%대로 떨어지고, 12개월 시점의 고용유지율은 40~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5) 고용유지장려금은 새일인턴의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상용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급하므로, 최소 9개월(인턴기간 3개월, 근속기간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6) 여성가족부는 인턴 종료 후 6개월, 12개월 시점(2회)에 고용유지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인턴 취업자의 고용유지율을 점검한다.

[연도별 인턴 취업 현황(2015~2020년)]

(단위: 명)

연도	연계인원	인턴종료 (A)	취업자 수 (B)	취업률(%) (B/A)	고용유지율(%)	
					6개월	12개월
2015	7,589	6,126	5,798	94.6%	73.0%	48.2%
2016	7,143	5,851	5,589	95.5%	72.1%	46.5%
2017	7,201	5,959	5,785	97.1%	73.3%	36.5%
2018	7,410	5,859	5,618	95.9%	72.3%	54.0%
2019	7,351	6,063	5,853	96.5%	73.4%	-
2020	6,945	5,812	5,658	97.4%	-	-

자료: 여성가족부

새일인턴의 경우 대부분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된 여성으로, 일단 취업이 되더라도 일과 육아 병행 등의 사유로 인해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신속한 재취업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일인턴 취업자의 고용유지현황, 퇴직 사유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분석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나.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장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필요(여성가족부)

(1) 현 황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¹⁾은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변종 유해매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안에 13억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5,955	5,921	6,094	7,406	1,312	21.5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	-	-	1,312	1,312	순증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시간제 재택근무를 통해 분야별(모바일·영상물·SNS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인력 190명, 시간제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모니터링 데이터 취합 및 통계 등을 관리하는 인력 10명 등 총 200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으로, 전체 인력의 60% 이상은 여성으로 채용한다.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2233-332의 내역사업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추경안 주요내용]

- 사업분야: 방역·안전 일자리
- 사업내용: 채팅앱, SNS, 영상물서비스(OTT서비스) 등 신·변종매체의 청소년 유해 영상물 등 상시 모니터링
- 사업규모: 총 200명
 - 모니터링(시간제 재택근무) 인력 190명
 - 관리(시간제 사무실 근무) 인력 10명
- 사업대상: 60% 이상 여성 채용
- 시행방법: 민간경상보조(전액 국비 보조)
- 세부 산출내역
 - 시간제 모니터링 인력 인건비 12억 1,200만원: 200명×101만원×6개월 (4대보험, 주휴수당 등 포함)
 - 운영비 1억원(임차료, 통신비, 인쇄·조사·교육비 등)

자료: 여성가족부

(2) 분석의견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이 한시적인 재택근무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도록 종합적·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여성 등에게 재택근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채팅앱, SNS, 영상물서비스(OTT서비스) 등 각종 신·변종 유해매체를 통한 대리구매, 대리입금, 도박, 성매매 유인, 청소년 유해매체물 홍보 등 청소년 유해물을 상시 점검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 운영안]

분야	관리	모니터링	합계	비고
모바일앱 모니터링	2명	40명	42명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SKT원스토어
영상물 모니터링	2명	70명	72명	(국내)웨이브, 티빙, 왓챠플레이 등 (국외)유튜브, 넷플릭스 등
SNS 모니터링	4명	80명	84명	(국내)네이버·카카오(카페, 블로그) 등 (국외)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행정지원	2명	-	2명	-
합계	10명	190명	200명	-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사업²⁾을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 모니터링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총 인력이 19명에 불과하여 모니터링 업무는 주로 인터넷·음반·게임물 등 분야에 한정된 측면이 있었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사업 주요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법」 상 의무사항 및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이행 점검 -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감시·발굴 및 전문적·시의적 대응 - 청소년유해음반 및 음악파일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성 심의·결정 지원 및 유통 차단 ○ 사업수행기관: (사)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2021년 예산: 6억 3,300만원 ○ 인력 규모: 센터장 포함 총 19명
--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범람하는 신·변종 유해매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이 한시적인 재택근무 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2013. 1.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출범

또한 여성가족부는 동 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운영 사업³⁾을 수행하는 (사)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로 지정하여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시스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바, 별도의 내역사업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를 확대하여 종합적·장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및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안) 주요 현황]

구분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수행기관	(사)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사)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예정
인력구성	19명 (센터장 1, 연구원 1, 연구보조원 4, 보조원 13)	200명(시간제) (모니터링 인력 190, 관리 인력 10)
주요매체	인터넷, 음반, 게임물 등	모바일앱, 영상물, SNS 등 신·변종매체
주요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법 이행여부 점검 • 인터넷신문 청소년유해성광고 실태 점검 • 음반·음악파일의 청소년유해성 점검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지원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이행 점검, 불법인터넷게임 홍보 커뮤니티 및 게임아이템거래증개 커뮤니티 실태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SKT 윈스토어의 채팅앱 대상 법령 이행 여부 등 상시 점검 • 네이버 및 카카오의 카페·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의 대리구매, 대리입금, 성매매 유인 등 게시물 점검 • 유튜브,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왓챠플레이 등 영상물 서비스 (OTT서비스)의 청소년유해영상물 유통·홍보 실태 등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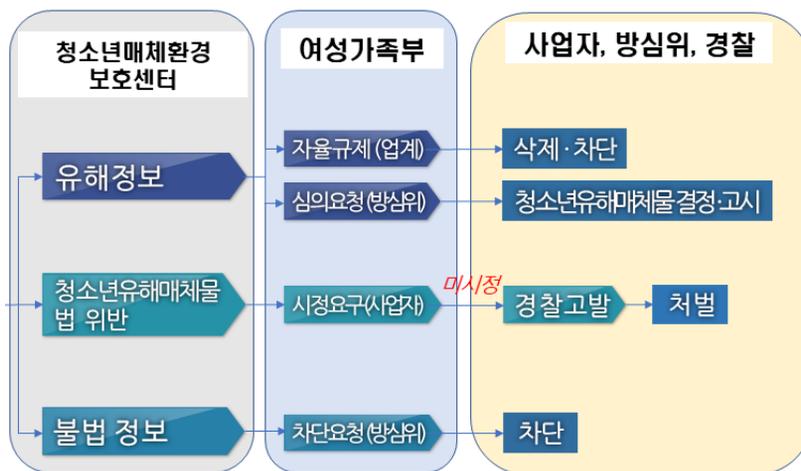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3)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및 피해예방 사업(일반회계 2233-332)의 내역사업

둘째, 신·변종 유해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다양한 청소년 유해물의 소관 부처, 유관 기관, 관련 사업체 등과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해물 유통 및 확산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매체 모니터링단 운영 사업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찰청, 사업자 등과 연계한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모니터링 시스템⁴⁾을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의 모니터링 업무 추진 체계]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동 사업은 각종 신·변종 유해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광범위한 청소년 유해물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처·기관 간 사업의 중복성 또는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사업 운영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유해물의 소관 부처, 유관 기관, 국내외 사업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의 자율규제⁵⁾ 등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유해물 유통 및 확산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4)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차단 요청,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사업자 자율규제 요청 등을 거쳐 삭제·차단 조치를 하고,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조치

5) 구글의 유튜브 신뢰기반 신고자 프로그램 등

* 신뢰기반 신고자(Trusted Flaggr):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콘텐츠를 신고하는 개인, 정부 기관 및 비정부 단체(NGO)

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 및 아이돌보미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필요(여성가족부)

(1) 현 황

아이돌봄 지원 사업¹⁾은 맞벌이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양육공백 발생 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1년 본예산은 2,514억 9,300만원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는 9억 6,100만원이 증액된 2,524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 2021년도 제1회 추경안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2021		증 감	
	본예산	추경	본예산(A)	추경안(B)	(B-A)	(B-A)/A
아이돌봄 지원	243,993	243,993	251,493	252,454	961	0.38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51,742	51,742	52,026	52,436	410	0.79
서비스제공 기관 운영	18,709	18,709	18,543	19,094	551	2.97

주: 2020년 추경은 제4회 추경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추경안의 내역사업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① 아이돌보미 양성·관리 사업에 아이돌보미 3천명에 대한 양성교육비 4억 1,000만원, ②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에 전담인력 70명 채용을 위한 예산 5억 5,100만원이 각각 반영되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방역 인력 가정 등의 양육공백 확대 상황²⁾에 최대한 대비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여성, 청년 등의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선 예산분석관(moonrise@assembly.go.kr, 6788-4636)

1) 코드: 일반회계 2334-341

2) 아이돌보미 이용률 추이: 2018년 81.1% → 2019년 84.7% → 2020년 89.5%

[아이돌봄 지원 사업 추경안 주요내용]

- 사업내용: 아이돌봄미 신규 양성 및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확충
- 사업규모: 아이돌봄미 3,000명,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70명
- 사업대상: 청년, 여성 등
- 시행방법: 지자체 보조(국고보조율 30%~70%)
- 세부 산출내역
 - 아이돌봄미 양성교육비 4억 1,000만원: 3,000명×21만원(80시간 기준)×65%
 -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채용: 5억 5,100만원: 70명×202만원×6개월×65%

자료: 여성가족부

(2) 분석의견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이돌봄미 신규 양성인원은 연례적으로 목표 대비 50~60%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서비스제공기관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³⁾상 아이돌봄미 양성 과정을 살펴보면, 전국 서비스제공기관⁴⁾이 개별적으로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하고, 합격자는 양성교육 이수 및 현장실습을 거친 후 소속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는 체계이다.

3) 2022년부터 개정법률에 따라 광역지원센터가 아이돌봄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복무관리, 돌봄서비스 수급 조정 등 업무 수행

법률 제17283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2020. 5. 19. 개정, 2022. 1. 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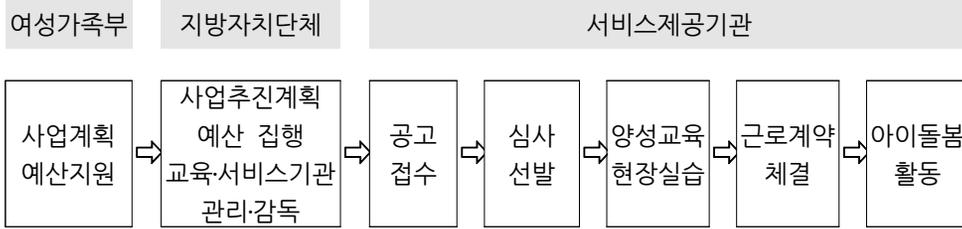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원활하게 아이돌봄미를 관리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이하 “광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봄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봄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봄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2021년 2월 기준 전국 서비스제공기관 227개소

[신규 아이돌보미 일자리 양성 과정]



자료: 여성가족부

따라서 추경안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예산이 일자리 확대에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 채용을 확대하여 이용자 가정에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아이돌보미 양성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 양성인원은 연례적으로 목표 대비 50~60%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18~2021년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구분	양성목표 (예산상 교육인원)	양성인원	목표대비 달성률	양성교육비	
				예산액	결산액 ¹⁾
2018	6,888	3,496	50.8	940	356
2019	10,000	5,859	58.6	1,365	791
2020	4,500	2,709	60.2	614	-
2021.1. ²⁾	8,800	-	-	1,204	-

주: 1) 2020년 결산액은 정산 진행 중

2) 2021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021년의 경우 추경안을 포함한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 인원 목표는 11,000여 명에 달하는데, 동 사업의 최근 실적을 고려할 때 연내 목표 달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추경안에 따라 양성인원 목표를 지자체별로 재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서비스제공기관은 국고 예산 지원 외에는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기관으로, 배정된 인원을 연내 채용·활동하도록 하려면 소속 아이돌보미의 급격한 증원에 따른 노무·관리 등의 부담⁵⁾을 경감할 수 있는 실질적·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추경안에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70명 채용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한시적인 아이돌봄전담인력 운영안을 마련하여 지자체별로 전담인력 인원을 분배·채용하도록 할 계획인바, 각 지자체 및 서비스제공기관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아이돌보미의 활동 중단, 퇴직 등을 방지하는 한편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재활동 유도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별로 아이돌보미 증원 계획을 세우고,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지속적인 신규 아이돌보미 양성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후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을 살펴보면, 증가율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 아이돌봄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서비스제공기관 적정 인력(2021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안내)
- 노무전담인력: 소속 아이돌보미 200명 이상 1명 배치 원칙, 별도 배정·통보된 경우 채용 가능
- 전담인력, 지원인력: 소속 아이돌보미 50명당 1명 신규 채용 가능(권장)
- 아동학대사례관리전담인력: 서비스제공기관 1개소에 1명 배치
(다만, 소속 아이돌보미 25명 미만 기관에는 배치하지 않고, 200명 이상 기관에는 1명 추가 배치 가능)

[2018~2021년 아이돌보미 양성인원 및 활동 아이돌보미 현황]

(단위: 명, %)

구분	양성목표 ⁶⁾ (사회서비스일자리)	양성인원	활동 아이돌보미	증 감	
				인원	비율
2018	2,000	3,496	23,675	-	-
2019	7,000	5,859	24,677	1,002	4.2
2020	4,000	2,709	24,469	△208	△0.8
2021.1.	6,600	-	22,907	△1,562	△6.4

주: 2021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신규 양성교육비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활동 아이돌보미 증가율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되면 사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밖에 없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활동 아이돌보미의 부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를 적절히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신규양성을 통한 아이돌보미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⁷⁾ 등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아이돌보미의 활동 중단, 퇴직 등을 방지하는 한편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아이돌보미의 재활동 유도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6) 여성가족부는 정부 국정과제 일환인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아이돌보미를 신규로 양성하여 일자리를 증원한다는 계획

7) 아이돌보미 월평균 임금 추이(기본시급 8,730원)

(단위: 천원)

구분	월평균임금		
	시간제	종일제	수당(연장, 주휴)
2017	775	1,407	-
2018	921	1,671	-
2019	907	1,323	150

자료: 여성가족부

집 필

총괄 | 송병철 예산분석실장

심의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중 예산분석총괄과장
신은호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태규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정석배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홍선기 진달래 이강구 윤성식 김유진
이광근 안병후 이미선 고준혁 이은미
권순진 김정선 김성은 김윤수 최경덕
정성영 최성민 박은형 유승선 황종률
오현희

지원 | 황아람 예산분석관보
장유진 김보나 강숙자 임윤주 행정실무원
김예은 자료분석지원요원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1년 3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394-7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1



nabO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



**건전한재정
희망한미래**



(0722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555-14